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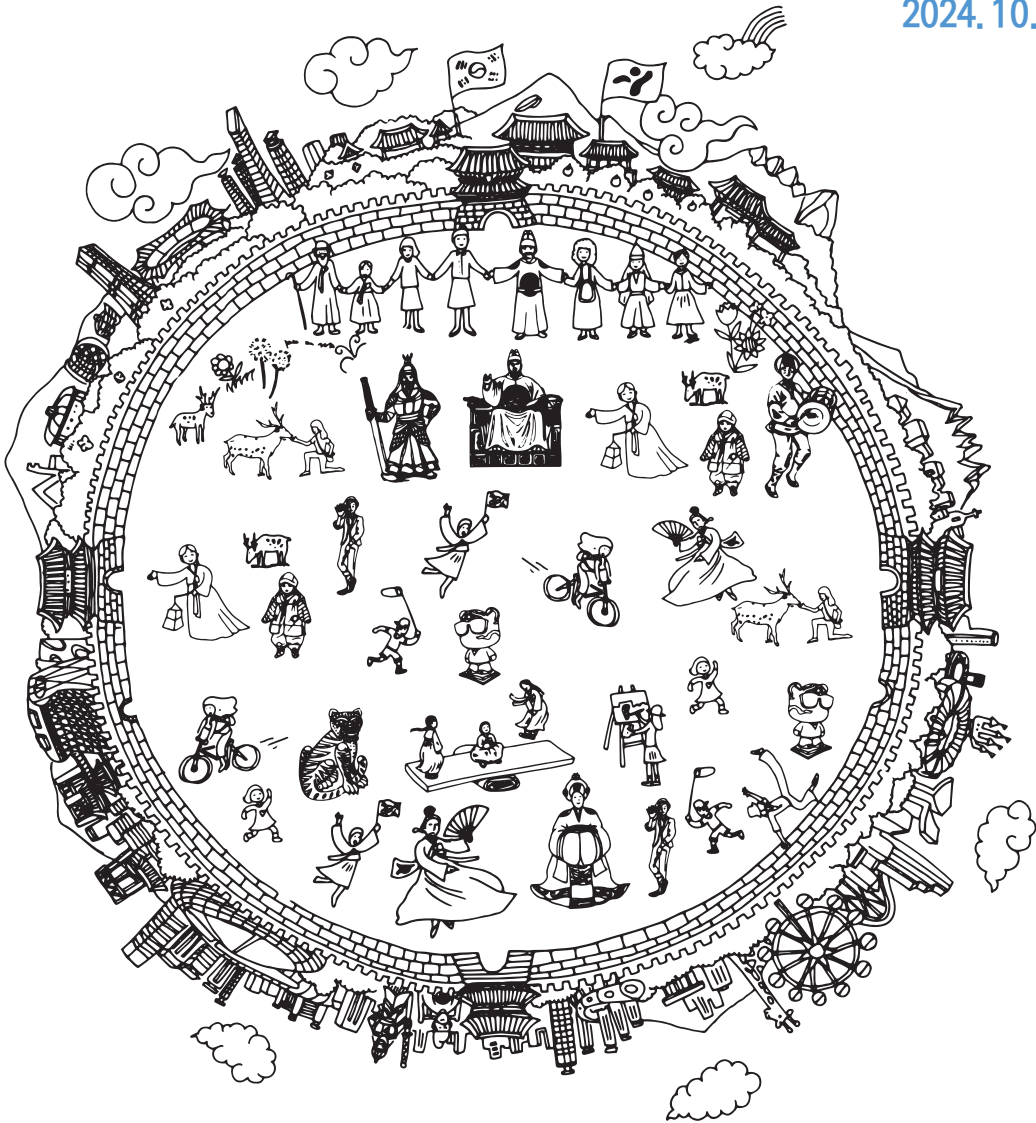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16호
2024. 10. 17.(목)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4-2829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24-283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0

◆ 고 시

제2024-479호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5
제2024-480호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5
제2024-484호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4
제2024-485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수색6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61
제2024-486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72
제2024-487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73
제2024-48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77
제2024-489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89
제2024-49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97
제2024-491호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00
제2024-492호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24
제2024-493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8
제2024-494호	면목동 86-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56

◆ 공 고

제2024-2789호	수도요금 채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88
제2024-2798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90
제2024-2804호	과태료 채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192
제2024-2805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193
제2024-280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194
제2024-2809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 예고	196
제2024-2813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5
제2024-2814호	지명경쟁 입찰 참가 공시송달 공고	206
제2024-2819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부품안전인증 취소) 공고	207
제2024-282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08
제2024-2823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240
제2024-282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244
제2024-2827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공고	252
제2024-28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253

◆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제2024-350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57
------------	--------------------------------------	-----

◆ 구 공 고

제2024-12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용산구)	341
제2024-12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용산구)	342
제2024-1299호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동대문구)	343
제2024-17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359
제2024-17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362
제2024-17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365
제2024-216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초구)	372

◆ 사업소고시

제2024-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75
제2024-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76
제2024-4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77
제2024-41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78
제2024-4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79
제2024-4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380

◆ 정 정

제2024-279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381
제2024-217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정정)(서초구)	382

자치법규 등**[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9호****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설치 목적 및 기능이 유사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맞춰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3~5조 삭제)

나.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하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 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전화: 02-2133-7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팩스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 1) 팩 스 : 02-2133-0722
- 2) 이메일 : simhany@seoul.go.kr

- 3) 우 편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1층)
-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도 게재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제보”를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거처 보상금을”을 “거처”로, “지급한다”를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2.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3. 장애인 인권차별 관련 조사 및 구제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복지정책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신청이 접수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삭 제>

당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인권
차별사례가 발생한 경우

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나.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정한다)

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라. 시의 위탁사무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

마.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
지 시설

③ 시장은 기관의 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
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계전문가 등의 조사참여)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재

<삭 제>

<삭 제>

정적 지원) ① 시장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제보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경우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 ⑤ (생략)

제6조(정보제공자 보상금 지급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제보-----

---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

----- 거쳐 -----
-----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32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정책결정 보좌 인력 확보 및 서울 대개조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정 행정수요에 적합한 정책 결정 보좌 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임기제 직위 “소통수석” 신설

나. 市 공간전략과 연계한 도심복합개발 실행력 강화 및 도심활성화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도시공간본부 사무분장 정비

- (도시공간전략과) 도심복합개발사업 총괄,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등 신규 사무분장 명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및 ‘공공기여 기금 운용’ 업무 이관 (← 도시재창조과, 도시계획과)
- (도시재창조과) DDP 일대 활성화 사업 사무분장 명시
- (신속통합기획과) 정비사업 외 신속통합기획 확대 대상 명시
- (도시관리과) 경관심의회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경관계획 수립 관련 업무 이관 (←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24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제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sygl108@seoul.go.kr
-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비전전략특보,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을 “비전전략특보, 소통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로, “비전전략특보,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을 “비전전략특보, 소통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중 “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을 “도시경관 및 빛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정책”을 “정책(경관계획 수립 제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제21조제5항제13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심복합개발법 운용 및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제6항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DDP일대 활성화 정책 조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1조제8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을 “정비사업, 특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등 신속통합기획 추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총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보좌기관) ① (생략)	제3조(보좌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민생, 정무, 정책, 비전전략, 미디어 콘텐츠, 문화, 디지털 영상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u>비전전략특보</u> , <u>미디어콘텐츠수석</u> , <u>기획수석</u> , <u>메시지수석</u> , <u>문화수석</u> , <u>디지털영상수석</u> 을 두며, 민생소통특보, 정무특보, 정책특보, <u>비전전략특보</u> , <u>미디어콘텐츠수석</u> , <u>기획수석</u> , <u>메시지수석</u> , <u>문화수석</u> , <u>디지털영상수석</u>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 ----- ----- ----- 비전전략특보, 소통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을 ----- ----- 비전전략특보, 소통수석, 미디어콘텐츠수석, 기획수석, 메시지수석, 문화수석, 디지털영상수석은 ----- -----.
제18조의2(디자인정책관) ① (생략)	제18조의2(디자인정책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디자인정책관은 디자인진흥정책, 디자인산업, <u>도시경관계획 및 도시빛정책</u> 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② ----- 도시경관 및 빛 정책----- -----.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시경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략)
3.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브 부여 총괄
4. ~ 13. (생략)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④ (생략)

⑤ 도시공간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3. (생략)

⑥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 정책(경관계획 수립 제외) -----
2. (현행과 같음)
- <삭제>

3. ~ 12. (현행 제4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제21조(도시공간본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2. (현행과 같음)
13.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정책 기준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도심복합개발법 운용 및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5. 역세권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현행 제13호와 같음)

⑥ -----
-----.

1. ~ 14. (생 략)

15. 공공기여 관련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⑦ (생 략)

⑧ 도시재창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7.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⑨ 신속통합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추진
에 관한 사항

3. ~ 8. (생 략)

⑩ 도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신 설>

<신 설>

⑪·⑫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삭 제>

⑦ (현행과 같음)

⑧ -----
-----.

1. ~ 5. (현행과 같음)

6. DDP일대 활성화 정책 조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⑨ -----
-----.

1. (현행과 같음)

2. 정비사업, 특별계획구역, 준
공업지역 등 신속통합기획 추
진-----

3. ~ 8. (현행과 같음)

⑩ -----
-----.

1. ~ 11. (현행과 같음)

12.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인센티
브 부여 총괄

⑪·⑫ (현행과 같음)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79호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29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의거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 9. 4.)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구역 지정 사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휴먼타운 2.0(건축법 특례) 사업을 추가하여 건축 기준 완화, 배제를 받아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신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규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구로구 구로2동 429번지 일대	-	증) 52,196	52,196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다.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52,196	100.0	
정비기반시설	소계	13,083	25.1	
	도로	13,083	25.1	
택지		39,113	74.9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2,196	-	52,196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9,596	-	39,596	75.7	-
제2종일반주거지역	10,533	-	10,533	20.2	-
제3종일반주거지역	2,067	-	2,067	4.1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2분야 8개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A.기반시설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고보조명(5개) - LED경관조명기구: 1개 ●이동형 감시카메라(4개) - 태양광 이동형 CCTV: 1개	-
	범죄예방환경설계	●스마트폴(6개) - 1개 ●반사경(10개) - 1개	-
	유흥공간 정비	●패컨테이너 제거, 오픈스페이스 조성: 30㎡ (2.5m×12m) - 조경이나 벤치 설치	-
	주차 공간 확보	●담장허물기사업 (연계사업 진행) ●스마트 공유주차 센서 부착 - 스마트 공유주차센서 24면 (1면 200,000원)	-
	급경사 골목 정비	●미끄럼방지포장 :260㎡	-
	노후 계단 정비	●유니버설 디자인, 계단 및 화단 조성, 콘크리트 경사 정비 - 계단 손잡이 : 16m - 계단 정비공사 : 24㎡ (3m×8m) - 화단 : 4단 - 자전거 레일 : 8m	-
	커뮤니티 가로 조성	●먹자골목 720㎡, 바닥매립등120개 - 투수성포장 : 120m×6m, 바닥매립등: 1개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중심가로길 1,400㎡ - 스탠실포장: 200m×7m●골목길 980㎡ - 블록포장: 245m×4m	
B.생활SOC설 치	생활 SOC시설 조성	●토지매입비 - 84-12대(101.3㎡), 84-13대(45.7㎡), 84-14대 (114.8㎡)	-

※ 상기구상(안)은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건축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결정 예정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72.6	82	429-1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54.6	429-7	429-1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52.1	86-1	86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34.6	84-1	84-1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48.3	84-3	84-7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197.7	86	88-14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197.8	86	87-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5.1	87-1	87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66.6	87-1	136-54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24.5	85-12	85-1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84.9	84-14	85-26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07.7	81	429-5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22.9	429-1	429-30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가1	8	국지도로	66.5	317-163	317-21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가2	8	국지도로	236.2	88-25	317-93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기정	소로	3	가3	6	국지도로	190.7	429-30	317-22	일반도로	1979.05.17	구획정리사업 (구로지정) 서고 151호 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시행방법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신설	생활SOC시설	구로동 84-12 일대	261.80	358.95	지하1층 ~ 지상3층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 설치계획(건축 규모, 시행방법 등)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 향후 위치 확정시 변경 절차 시행

7)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명칭	면적(㎡)	
신규	구로2동 살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52,196	39,596 (제2종일반주거지역_7층이하)
			10,533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7 (제3종일반주거지역)

(1)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계획: 변동사항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용적률	200%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높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제2종(7층 이하)·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용도를 따른다.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영2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준용 ※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법 제9조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 시설 제외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대상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신규	196동	별도 지정 없음 (신축, 개보수 등)	보조금 지원(집수리 사업을 준용) 저층 주거지 지원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한 저층 주거지 지원)	

(3) 대지안에 조경계획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사항	구역전체	•대지안에 조경설치 면적은 200㎡ 이상의 대지의 경우 조성	

(4) 대지안에 공지계획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사항	구역전체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에 공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기준 준수	
권장사항		•주차장 공간에 따라 조성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권장 - 전면 조성방식: 건물 전면에 화단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지반 확보 - 측면 조성방식: 건물 측면 여유공간에 화단이나 텃밭 조성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8)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해당사항 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이동형 감시카메라, 고보조명 설치	A. 기반시설정비
	• 오픈스페이스조성,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한 주차공간 및 자연친화적인공간조성	A. 기반시설정비
	• 공사 및 운영시오염물에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권장사항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권장사항
	•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보행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노면의 미끄럼 사고가 다발하는 지역의 도로에 미끄럼방지 재질로 도로포장 진행	A. 기반시설정비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대상지 일부 구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 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11) 세입자 주거 대책: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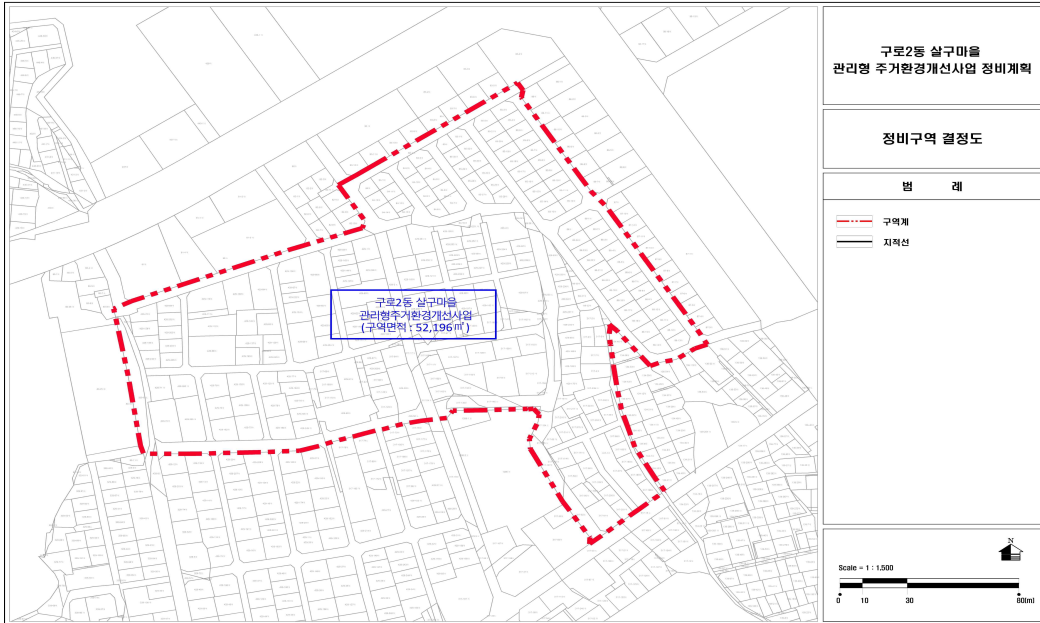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감시	•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A. 기반시설 정비
영역성 강화	• 기존 유휴공간에 배치된 노후화된 컨테이너 박스를 제어하여 유휴공간 오픈스페이스 조성 • 담장허물기사업을 통해 집안에 주차공간 및 자연 친화적인 조정공간 조성 • 각 골목에 맞는 골목길 개선 및 도로포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공중선 정비를 통한 전주 이설로 경관 개선	A. 기반시설 정비
활동의 활성화	• 생활SOC시설 조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B. 생활SOC시설조성
유지관리	• 안심 골목길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 예정	B. 생활SOC시설조성
방범용CCTV설치	•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이동형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투기행위자에게 시각·청각적인 계도 효과 • 가로등과 감시카메라가 없는 골목에 스마트폴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 및 편의기능 제공	A. 기반시설 정비
커뮤니티시설 조성	• 생활SOC시설 내 다목적 배움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참여 기반의 커뮤니티 공간 제공	B. 생활SOC시설조성

2. 관련도면: 붙임 참조

- 1)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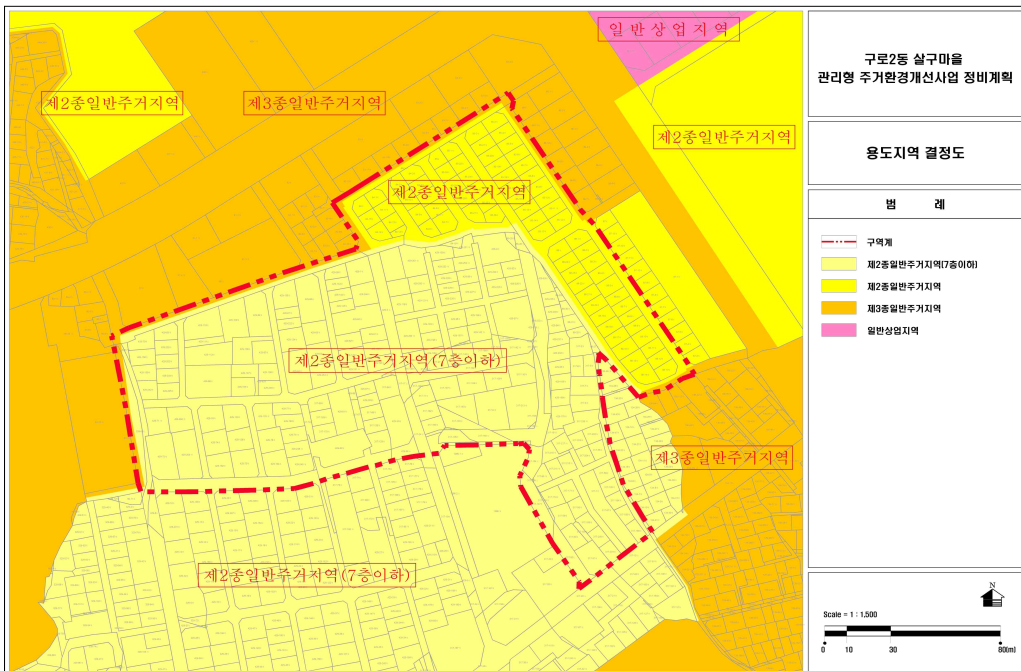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 내용은 주민의 알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9) 및 구로구청(도시개발과, ☎02-860-2517)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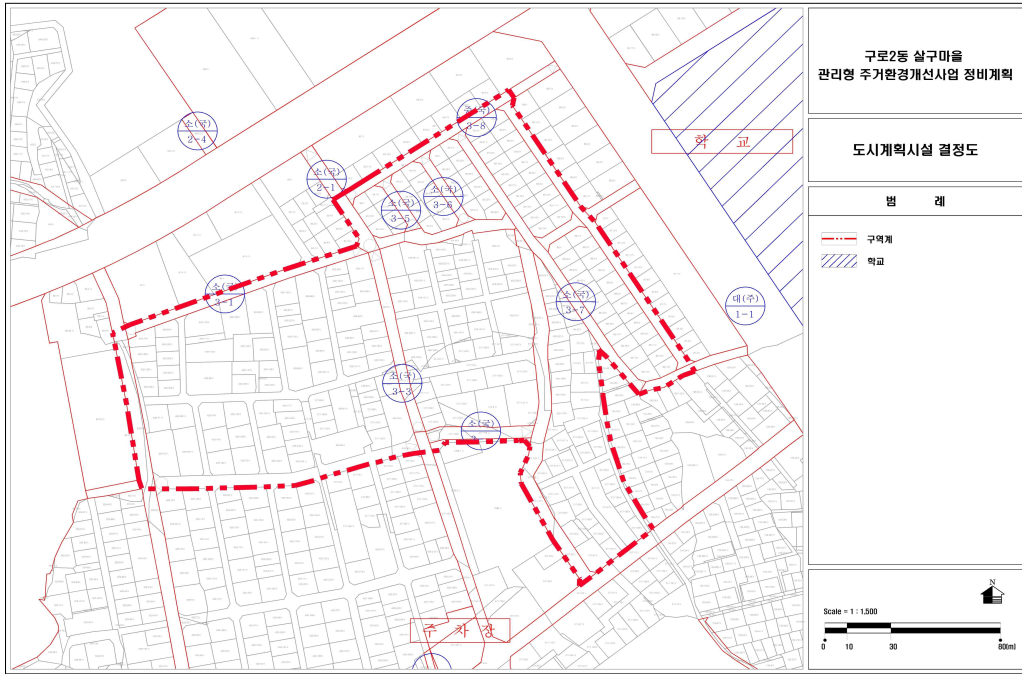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1항 ①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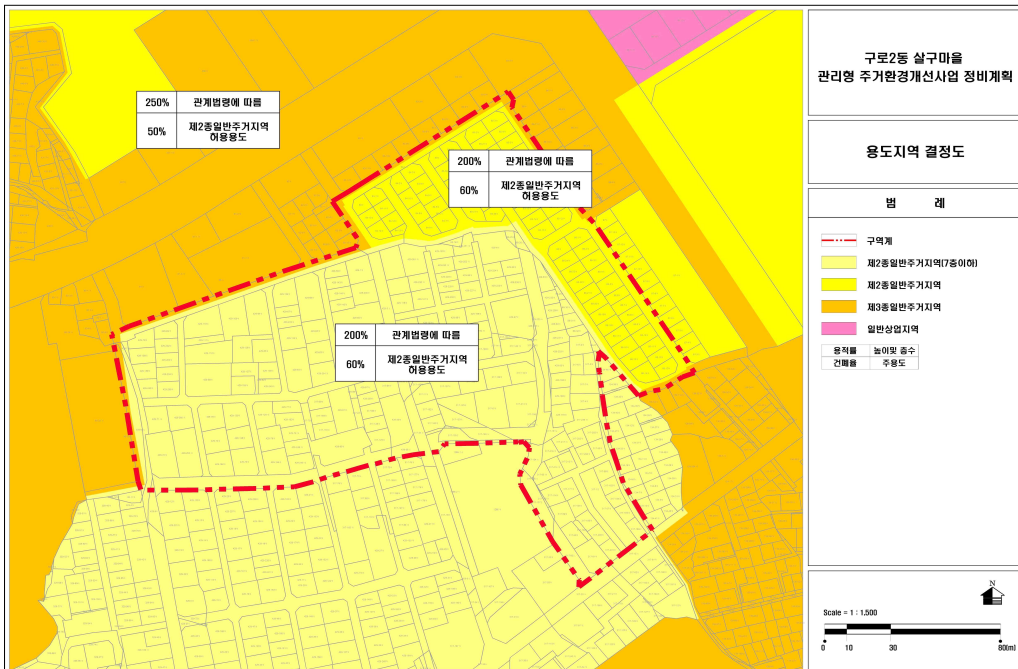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도(신규) 】

역사, 문화, 사람과 삶이 어우러진 생활이 여유롭고 안전한 구로2동 살구마을

A. 기반시설 정비

A1 쓰레기(무더기) 처리(구로2동주민센터) 및 쓰레기
- 이동형 강사(K-아파트)와 고보조영을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및 예방



- 가로등과 강사(K-아파트)가 있는 골목에 스마트로 생활을 통한 범죄예방 및 안전기능 제공



A-2 유희공간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

- 오픈스페이스 조성, 노후계단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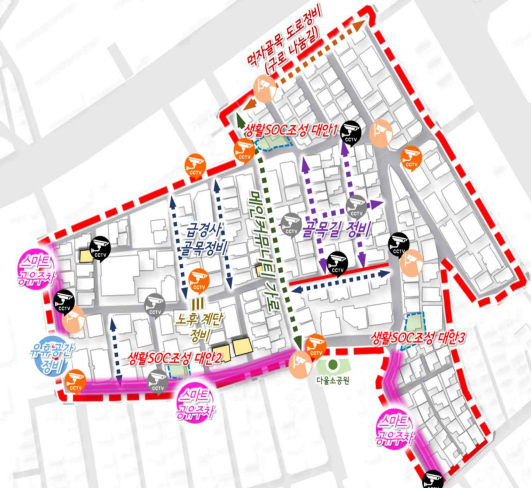
-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A-3 보행자로 개선 및 경관개선

- 각 골목 테마의 맞는 골목길 개선 및 도로 포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공중선 정비 및 전차 이동을 통한 경관개선





B. 생활SOC시설 설치

B 생활SOC 조성
- 생활SOC시설 내지역에 필요한 경로당, 마을관리소, 물품창고 등 조성



C. 소규모주택정비사업

C 자율주택정비사업
- 1단계 자율주택정비사업 도입을 통한 주택밀집 및 경관(바우더)개선(수입 함) 인증 여려운 집 (후안타운 20가정)을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차등밀집 경관개선



 사업대상지
 예천리유니타스카로
 스마트공동주택시스템

 기존 CCTV-6개
 스마트로-6개
 이동형 CCTV -4개

 고보조영 -5개
 반사경 설치회영 -10개
 그린파킹 후보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0호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3동 288-7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 9. 4.)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구역 지정 사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에, 휴먼타운 2.0(건축법 특례) 사업을 추가하여 건축 기준 완화, 배제를 받아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는 여건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정비구역의 명칭: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 지정조서(신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	-	증) 36,450	36,450	-

◎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심의내용(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가결

다. 정비계획의 수립

1)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내용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 예상 세대수	비고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구로구청장	해당없음	-
주택의 보전·정비·개량	계획수립 이후	토지등소유자		

2)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36,450.0	100.0	
정비기간시설	소계	4,237.9	11.6	
	도로	4,237.9	11.6	
택지		32,212.1	88.4	

3)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6,450	-	36,450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	25,515	-	25,515	73.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0,935	-	10,935	26.4	-

(2)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4)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3분야 7개사업)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A. 생활SOC 시설조성	1. 생활SOC 조성		• 노인 및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조성, 주민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옥상정원 조성	-
B. 스마트 가로환경 개선	1. 생활 가로 개선 사업	개봉로12길	• 태양광 발광형 표지판(1개소), 공유주차(50면), 과속방지턱(2개소), 스마트 안심가로등(2개소)	-
		개봉로10길	• 보차평면분리포장(1,360㎡), 과속방지 시스템(1개소), 공유주차(50면), 업라이트정원등(40개소)	-
		개봉로6길	• 보차분리도로포장(400㎡), 스마트벤치벤치(1개소), 플랜트박스(30개소), 담장벽면 도색(6개소)	-
	2. 교차로 개선		• 디자인 포장(300㎡), 과속방지턱 설치(2개소), 반사경(1개소)	-
	3. 쓰레기 없는 마을 조성		• 인공지능 쓰레기분리수거함(1개소), 이동형 CCTV(1개소), 플랜트박스(6개소)	-
	4. 마을정원 조성		• 스마트벤치(2개소), 마을지도(2개소), 플랜트박스(20개소)	-

구분	사업명	세부내용	비고
C. 마을 안전개선	1. 안심 골목길 조성 (CPTED 설계)	• 스탠실포장(1,000㎡), 스마트안심가로등(2개소), 바닥매립등(30개소), 전주회전형 CCTV(4개소), 반사경(4개소)	-
	2. 재해 저감사업	• 보이는 소화기(8개소)	-

※ 상기구상(안)은 추후 주민협의, 주민동의,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건축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1)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가1	6	국지도로	52.1	279-15	279-18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1	가2	6	국지도로	212.2	403-171	289-9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3	나1	6	국지도로	27.2	403-190	403-189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3	나2	6	국지도로	19.5	289-18	289-17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3	다1	6	국지도로	178.7	289-8	290-9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3	다2	6	국지도로	145.0	288-20	280-38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기정	소로	3	라1	6	국지도로	43.6	290-3	290-2	일반도로	1970.09.29.	건설부공고 제109호 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신설안)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시행방법	비고
			부지면적	연면적	층수		
신설	생활SOC시설	개봉동 280-1 개봉동 280-36	320	640	4	-	-

- ※ 공동이용시설 위치 미확정
 ※ 설치계획(건축 규모, 시행방법 등)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 예정
 ※ 향후 위치 확정시 변경 절차 시행

7)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명칭	면적(㎡)	
신규	개봉3동 너른뜰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36,450	25,515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935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계획: 변동사항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78조(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제55조 (용도지역 안에서 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용적률	200% 이하	250% 이하	
높이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제2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	-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 용도를 따른다. - 불허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령22조) 등 기타 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준용 ※ 다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법 제9조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4호, 제25호 시설 제외		

(2)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 계획 (신규)

구분	대상 건축물	정비개량계획	지원계획	비고
신규	116동	별도 지정 없음 (신축, 개보수 등)	보조금 지원 (집수리 사업을 준용) 저층 주거지 지원 (휴먼타운 2.0 사업을 통한 저층 주거지 지원)	

(3) 대지안의 조경계획

구분	적용 범위	계획 내용	
의무사항	구역전체	•대지 안에 조경 설치 면적은 200㎡ 이상의 대지의 경우 조성	

(4) 대지안의 공지계획

구분	적용범위	계획내용	비고
의무사항	구역전체	• 서울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 준수	
권장사항		• 주차장 공간에 따라 조성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권장 - 전면 조성방식: 건물 전면에 화단이나 텃밭을 조성하여 자연지반 확보 - 측면 조성방식: 건물 측면 여유 공간에 화단이나 텃밭 조성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등에 관한 계획: 관련 법령에 따름

8)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해당 사항 없음

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인공지능 재활용 분리수거함, 이동식 태양광 쓰레기 CCTV-스피커 설치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3. 쓰레기 없는 마을조성)
	• 옥상녹화, 벽면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구역전체 권장사항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구역전체 권장사항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구역전체 권장사항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입 불가지역 및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및 스마트 CCTV 기능 확대 및 안전시스템 구축	C. 마을안전개선 (2. 재해저감 사업)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현황	• 대상지 일부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상대보호구역 (11,077㎡)에 해당함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 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의2.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구분	계획내용	비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주택을 정비·개량·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라 행위 및 시설 제한	

11) 세입자 주거대책: 해당사항 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구분	계획내용	비고
자연 감시	• 담장은 주변 감시와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해 낮은 높이의 담장 조성을 권장 •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영역성 강화	• 주택 주변 또는 골목길에 플랜트 박스 설치를 통한 골목길 경관개선 • 업라이트 조명등 설치를 통한 조도 개선 및 영역성 강화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C. 마을안전개선
접근성 방지	• 태양열 발광형 표지판으로 일방 통행길 출입 통제 효과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활동의 활성화	• 골목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벤치 및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활성화 유도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유지관리	• 생활가로 개선사업, 안심 골목길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운영 예정	B. 스마트 가로환경개선
방법용 CCTV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 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 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C. 마을안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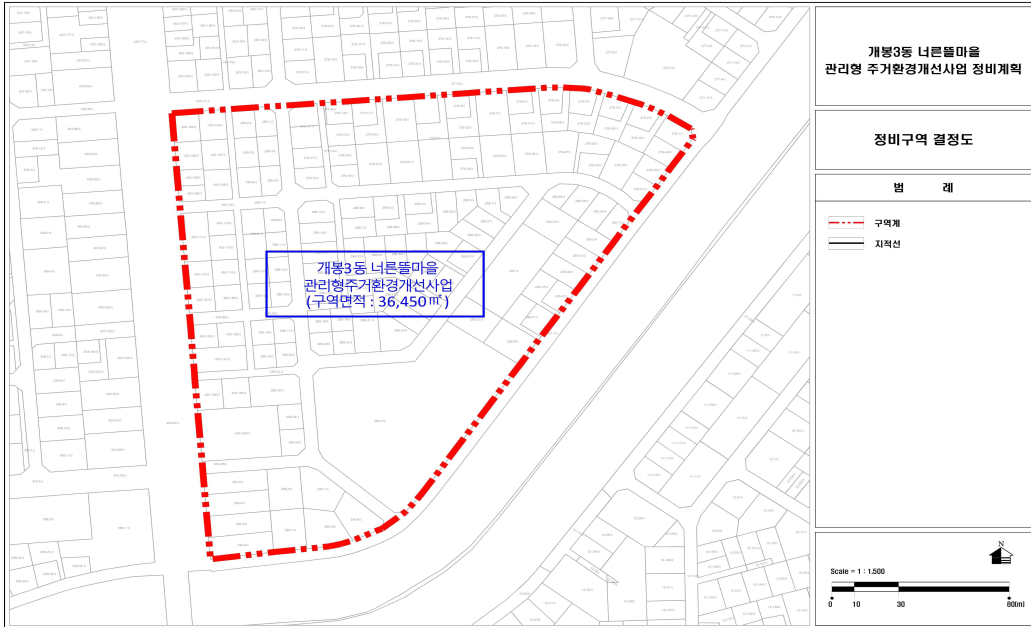
2. 관련 도면: 붙임 참조

1)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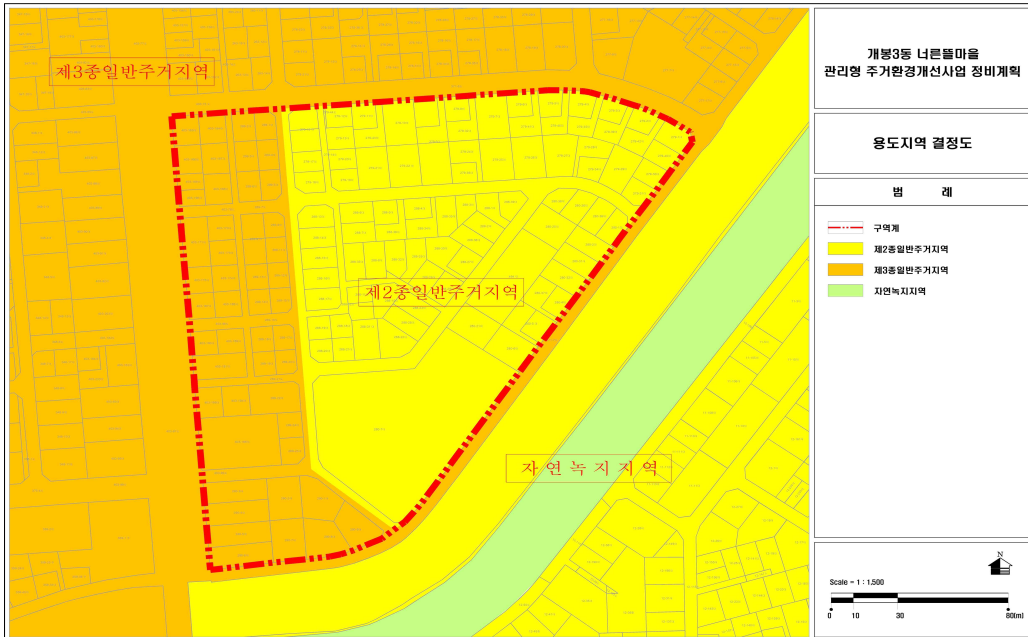
3. 고시 관련된 자세한 세부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49) 및 구로구청(도시개발과, ☎02-860-2517)에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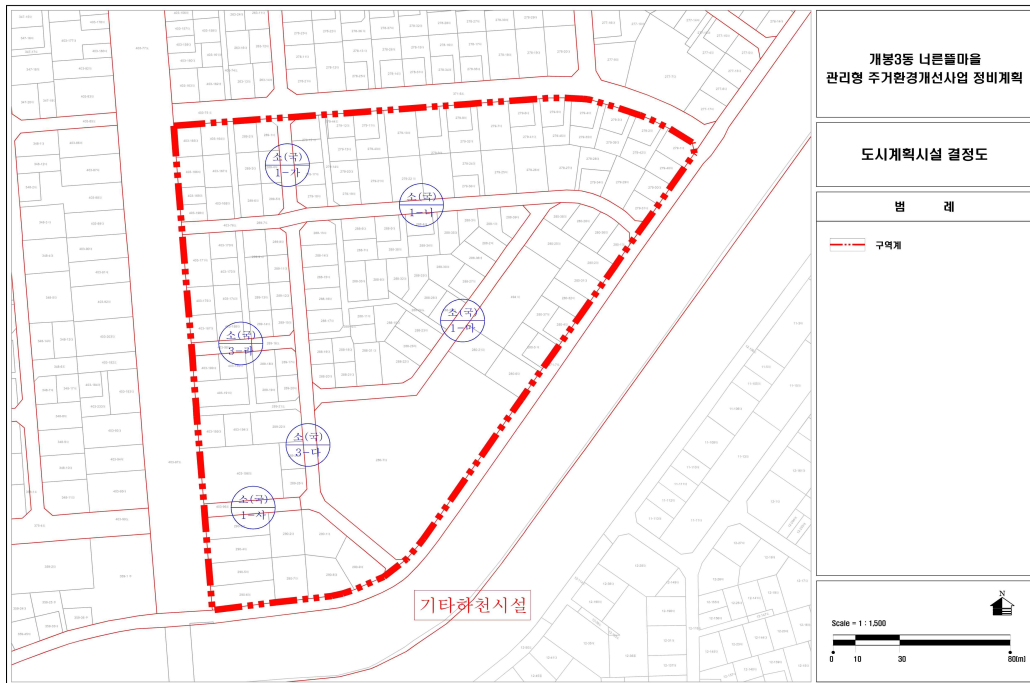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제1항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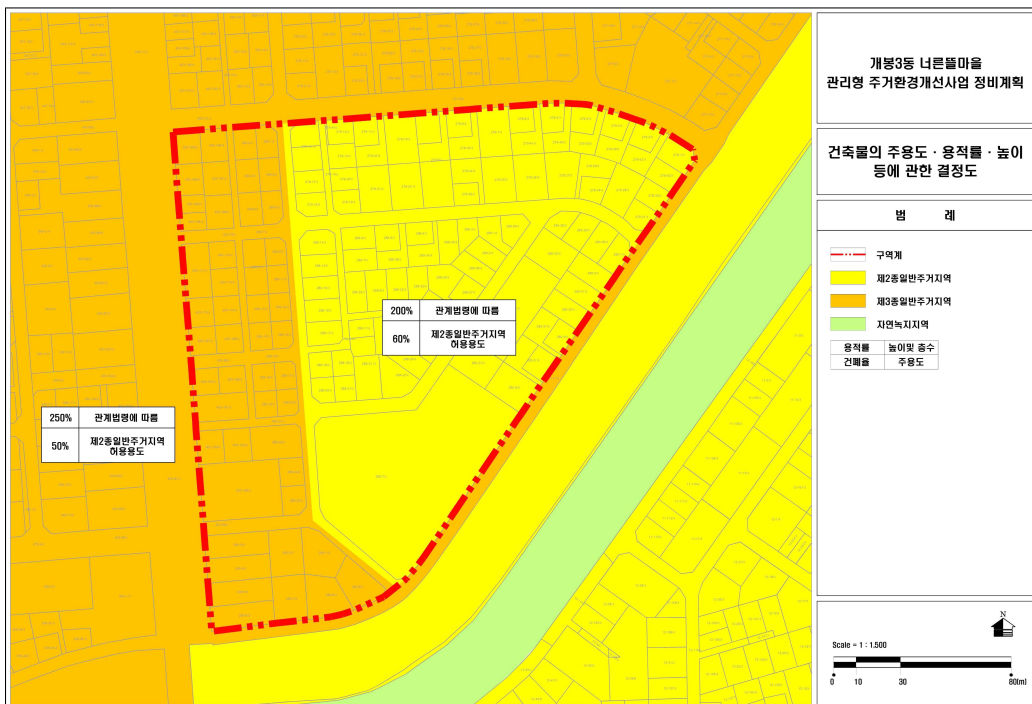
【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건축물에 대한 주용도·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계획도(신규)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4호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이하 ‘불광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2024.08.2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	증) 13,145.1	13,145.1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3,145.1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842.2	6.4	-
	도 로	842.2	6.4	-
획 지	소 계	12,302.9	93.6	-
	획 지	12,302.9	93.6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3,145.1	-	13,145.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04.1	감) 13,104.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145.1	13,145.1	100.0	-
준주거지역	41.0	감) 41.0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	불광동 600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104.1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불광동 276-5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1.0	◦ 구역내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토지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은 정비구역 지정도서 참조)

가. 추정 비례율 산출근거

구 분	항 목			금 액(만원)
수 입	소 계			24,922,549
	분양주택	토지등소유자	184세대(보류지2세대포함)	14,883,300
		일 반	76세대	6,350,400
	공공임대	재개발의무	40세대	1,144,600
		국민주택규모주택	21세대	240,100
	기타시설	근린생활시설	토지등소유자	384,200
			일 반	2,024,600
	매출부가세			-104,651
	기타수입			-
지 출	소 계			15,914,835
	공사비			11,701,652
	보상비			1,142,310
	관리비			318,373

구 분	항 목	금 액(만원)
	설계비	204,394
	감리비	281,301
	부대경비	1,460,837
	예비비	805,968
총전자산 추정액		8,803,751
추정비례율	102.31% = {총수입(24,922,549만원) - 총지출(15,914,835만원)} ÷ 총전자산(8,803,751만원)	

※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공사비 및 분양가 변동표

비례율 변화표		변동률	공사비				
			-10%	-5%	0%	5%	10%
변동률		평균단위단가 (만원/3.3㎡)	621	655	690	724	759
분양가 (34형 일반분양기준)	10%	3,344	140.27%	133.35%	126.43%	119.51%	112.59%
	5%	3,192	128.21%	121.29%	114.37%	107.45%	100.53%
	0%(기준)	3,040	116.16%	109.23%	102.31%	95.39%	88.47%
	-5%	2,888	104.10%	97.17%	90.25%	83.33%	76.41%
	-10%	2,736	92.04%	85.11%	78.19%	71.27%	64.35%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2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위길	서울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92 (92)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위길	서울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85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호 (1969.1.18)	-
변경	소로	1	(1)	6~10	국지 도로	285 (173)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호 (1969.1.18)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소로 1-(1)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장기(안)에 따라 향후 구역 남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불광동 613-2)과 불광1동주민센터(불광동 613-1)가 정비될 경우, 진흥로까지 양방 2차로 일괄 확폭 고려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	중로2-(1)	◦ 변경 - B=12m, L=92m → B=15m, L=92m(92)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접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를 위해 도로 확폭
소로3-2	소로1-(1)	◦ 변경 - B=6m, L=285m → B=6~10m, L=285m(173)	◦ 진·출입로의 원활한 소통 및 장애 확장성을 고려 일부 구간 도로 확 폭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주차장	불광동 600번지 일대	-	증) 2,340	2,340	-	입체적 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주차장	불광동 600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내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	증) 2,340	2,34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층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340㎡ - 수평투영면적 = 2,340㎡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60면)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법 정		계획면적(㎡)	
주 민 공 동 시 설	합 계	-	100세대 이상 ~ 1,000세대 미만 (321세대×2.5㎡×1.25)	1,003.1	1,210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적용
	경로당	확지	300~500세대 미만 : 198㎡ 이상	198	200	
	어린이집	확지	300~500세대 미만 : 198㎡ 이상	198	200	
	작은도서관	확지	300~500세대 미만 : 108㎡ 이상	108	110	
	주민운동시설	확지	-	-	245	육내/육외시설
	어린이놀이터	확지	-	-	350	-
	다목적실	확지	-	-	105	-
관리사무소		확지	10㎡+[(321-50)×0.05㎡]	23.6	8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서울시 주택조례 제8조의4 및 별표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및 제55조의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변경될 수 있음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준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불광8	13,145.1	획지	12,302.9	불광동 600번지 일대	78	-	-	78	-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13,145.1	획지	12,302.9	불광동 600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	60 이하	250 이하	80m 이하 (25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총 세대수 : 공동주택 321세대(재개발의무임대 40세대, 국민주택규모 21세대) - 전용 60㎡ 이하 : 164세대 - 전용 60㎡ 초과 ~ 85㎡ 이하 : 157세대 ◦ 의무공공임대 건설계획(전용면적기준) : 40세대 <table><tr><th colspan="2">건립규모</th><th>기 준</th><th>세대수</th><th>비율(%)</th></tr><tr><td colspan="2">합 계</td><td rowspan="4">계획세대수의 15% 이상 (법 제54조에 따른 세대수 제외)</td><td>40세대</td><td>100.0</td></tr><tr><td colspan="2">40㎡ 이하</td><td>21세대</td><td>52.5</td></tr><tr><td colspan="2">40㎡ 초과 ~ 50㎡ 이하</td><td>-</td><td>-</td></tr><tr><td colspan="2">50㎡ 초과 ~ 60㎡ 이하</td><td>19세대</td><td>47.5</td></tr></table> ◦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전용면적 (㎡)</th><th colspan="3">세대수(세대)</th><th colspan="2" rowspan="2">비율(%)</th><th rowspan="2">비고</th></tr><tr><th>분양</th><th>재개발 의무임대</th><th>국민주택규모 주택</th></tr><tr><td rowspan="2">60㎡이하</td><td>39㎡</td><td>24</td><td>21</td><td>15</td><td>18.7</td><td rowspan="2">51.1</td><td rowspan="2">-</td></tr><tr><td>59㎡</td><td>83</td><td>19</td><td>2</td><td>32.4</td></tr><tr><td rowspan="2">60㎡초과~ 85㎡이하</td><td>74㎡</td><td>62</td><td>-</td><td>-</td><td>19.3</td><td rowspan="2">48.9</td><td rowspan="2">-</td></tr><tr><td>84㎡</td><td>91</td><td>-</td><td>4</td><td>29.6</td></tr><tr><td colspan="2" rowspan="2">합계</td><td>260</td><td>40</td><td>21</td><td colspan="2" rowspan="2">100.0</td><td rowspan="2">-</td></tr><tr><td colspan="3">321</td></tr></table>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계획세대수의 15% 이상 (법 제54조에 따른 세대수 제외)	40세대	100.0	40㎡ 이하		21세대	52.5	40㎡ 초과 ~ 50㎡ 이하		-	-	50㎡ 초과 ~ 60㎡ 이하		19세대	47.5	구 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분양	재개발 의무임대	국민주택규모 주택	60㎡이하	39㎡	24	21	15	18.7	51.1	-	59㎡	83	19	2	32.4	60㎡초과~ 85㎡이하	74㎡	62	-	-	19.3	48.9	-	84㎡	91	-	4	29.6	합계		260	40	21	100.0		-	321		
	건립규모		기 준	세대수	비율(%)																																																																										
	합 계		계획세대수의 15% 이상 (법 제54조에 따른 세대수 제외)	40세대	100.0																																																																										
	40㎡ 이하			21세대	52.5																																																																										
	40㎡ 초과 ~ 50㎡ 이하			-	-																																																																										
	50㎡ 초과 ~ 60㎡ 이하			19세대	47.5																																																																										
	구 분	전용면적 (㎡)	세대수(세대)			비율(%)		비고																																																																							
			분양	재개발 의무임대	국민주택규모 주택																																																																										
	60㎡이하	39㎡	24	21	15	18.7	51.1	-																																																																							
		59㎡	83	19	2	32.4																																																																									
60㎡초과~ 85㎡이하	74㎡	62	-	-	19.3	48.9	-																																																																								
	84㎡	91	-	4	29.6																																																																										
합계		260	40	21	100.0		-																																																																								
		321																																																																													
심의완화사항	◦ 용도지역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허용용적률 10% 완화(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등 인센티브 적용)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불광로2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 진흥로15길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								
기타 사항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중앙부 폭 6m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불광로2길, 진흥로15길변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 계획	구역면적 (㎡)	대지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신설 정비기반 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		
			소 계	토 지 (도로, 공영주차장)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공영주차장)			소 계	토지지분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13,145.1	12,302.9	1,659.54	1,361.34	298.2	54.8	247.2	-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순부담률 : 10.3%(구역면적 대비) ◦ 순부담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 1,659.54㎡ - 54.8㎡ - 247.2㎡ = 1,357.54㎡									
신설 정비기반시설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면적	◦ 도로 = 842.2㎡ ◦ 공영주차장 토지지분 면적 = (공공시설 연면적 ÷ 전체 연면적) × 대지면적 = (2,340 ÷ 55,454.26) × 12,302.9 = 519.14㎡								
		건축물 (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공영주차장 환산부지 면적 = 설치비용(원/㎡) × 시설 연면적(㎡) / 부지가액(원/㎡) = 1,022,848 × 10/11(부가세 제외) × 2,340 / 7,296,640 = 298.20㎡							
	설치비용		1,022,848원/㎡	▷ 2023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지하층) 적용 (지하층 구조형식RC 4.8% 가산)						
	시설 연면적		2,340㎡	▷ 지하 2,340㎡						
	부지가액		7,296,640원/㎡	▷ 구역 내 토지 평균공시지가(3,648,320원/㎡, 2023년 기준) × 2						
	기준용적률	◦ 190% (제2종일반주거지역)								
허용용적률	◦ 200%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10%) = 190% + 10%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 200%									

구 분	산 정 내 용	
상한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circ 227.33\%$ $- \text{상한용적률(정비계획 용적률)} = \text{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alpha \text{ 토지} \times \text{가중치}) + (0.7 \times \alpha \text{ 건축물})]$ $= 200\% \times [1 + (1.3 \times 0.08989 \times 1.018) + (0.7 \times 0.02530)] = 227.33\%$	
	$\circ \text{가중치} = \text{공공시설 등 부지 용적률} / \text{사업부지 용적률} = 203.6\% / 200\% = 1.018$ $\circ \alpha = \text{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순부담 면적)} / \text{공공시설 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alpha \text{ 토지} = \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면적}$ $= (1,357.54 - 298.2) / (12,302.9 - 519.14) = 0.08989$ $- \alpha \text{ 건축물} = \text{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면적}$ $= 298.2 / (12,302.9 - 519.14) = 0.02530$	
법적 상한용적률	$\circ$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건축계획 249.91%)	향후 서울시 건축 심의에서 최종 결정

※ 순부담 산정 시 제외되는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및 '대지내 용도폐지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은 구역 내 국·공유지 중 '무상양도 대상'이 아닌 국유지 및 지목상 대지'를 제외한 면적임

※ 공공시설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22.10.)' 등 관련 기준에 따름

※ 국공유지 무상양도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관리청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최초 고시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상양도 대상 및 면적의 증감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 필요

① 기준용적률	항 목		인센티브	적용여부	③ 허용용적률 (①+②)
190%	공공 보행통로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설정) □ 기준용적률×(조정면적/대지면적)×a ※a=1이하	10%	적용	200%
	열린단지	단지 외곽개방, 담장 미설치, 연도형 상가 등 열린단지로 조성 □ 개방공간, 열린 단지 조성기준 준수 (위원회가 인정시)	5%	-	
	공개공지	지역주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 등으로 설치 □ 기준 : 기준용적률×[조정면적(의무면적제외)/대지면적]×a ※a=1이하	5%	적용	
	돌봄시설	지역에 필요한 놀이·돌봄시설 설치 및 제공 (무상임대) □ 기준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5%	-	
	방재안전	화재·소방·피난 안전 등 공동주택 시설성능 개선 □ 기준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적용	5%	-	
	지역기반시설 설정비	사업구역 주변 환경정비(도로, 공원, 통학로 등/주택단지와 직접 관련된 시설) □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a ※a=1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 (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5%	-	
	지역특화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10%	-	
② 인센티브 적용 계			10%		최대 10% 이내

다.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건설 계획

계획기준	◦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 또는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와 주택 전체 세대수 산정 시, 초과용적률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 세대수 제외			
산출근거	◦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건설 계획 : 40세대 - 전체 연면적 10% 이상 = (지상층 전체 연면적 - 초과용적률(22.58%) 연면적 - 지상상가 연면적) × 10% = (30,746.69㎡ - 2,777.99㎡ - 1,100.00㎡) × 10% = 26,868.7㎡ × 10% = 2,686.87㎡ < 계획면적 : 2,703.11㎡ (10.08%)			
건립규모	세대수	면적(공급면적)	전체비율	임대주택비율
합 계	40세대	2,703.11㎡	12.5%	100.0%
40㎡이하	21세대	1,146.28㎡	6.6%	52.5%
40㎡초과~50㎡이하	-	-	-	-
50㎡초과~60㎡이하	19세대	1,556.83㎡	5.9%	47.5%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계획 기준		-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				
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		◦ 249.91% 이하 (향후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상한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 227.33%				
국민주택규모 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 $249.91\% - 227.33\% = 22.58\%$				
	증가된 용적률의 50%	◦ $22.58\% \times 0.5 = 11.29\%$ ◦ $12,302.9\text{m}^2(\text{대지면적}) \times 11.29\% = 1,389.0\text{m}^2$				
	의무 연면적	◦ 1,389.0㎡ 이상				
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 계획 (향후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	비고
		39.76㎡	54.58㎡	15	818.70㎡	확지
		59.98㎡	81.94㎡	2	163.88㎡	
		84.99㎡	114.20㎡	4	456.80㎡	
		합 계		21	1,439.44㎡	≥ 1,389.0㎡

※ 법적상한용적률 달성 국민임대주택건설은 획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

9.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대상지 주위의 주요 조망축에서의 경관이 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방지를 위하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계획	
환경보전	◦ 자연환경: 빗물의 지하 침투율이 최대가 되도록 조경 면적 최대 반영 - 주변단지와 도로 Level에 맞게 계획 - 녹지면적 증가, 지구 내 녹지공간조성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 생활환경: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한 계획 - 청정연료(LNG) 사용,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시행 후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포장 면적의 축소 ◦ 도시계획시행 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 장비 분산투입, 작업장 내 차속 제한,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투입, 야간작업 지양	
재난방지	◦ 지반 붕괴를 유발하거나 유수 기능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절성토의 규제 ◦ 집중 호우를 대비하여 우·오수관로 개량 및 설치계획을 수립 ◦ 공원의 녹음시설을 통한 수해 예방 효과를 기대(우수의 침투 및 보수효과) ◦ 건축법 및 주택법의 방화, 소방, 피난 등의 설치 기준을 준수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름 평가 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 만족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 인접지반 침하 대책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을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 확인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수질 상태 확인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풍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 사항 없음	-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은평구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경관	Skyline 보전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계획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계획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지구 인근: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일조영향 예상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 수립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 강화	-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해당 사항 없음	-	-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10.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기 존	계 획	증	
신설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216	321	105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설 계 지 침
대상지 북측 불광초등학교 입지	- 안전펜스(보행자 방호울타리), 도로표지, 안전표지판 및 험프 등 설치 - 보도는 학생들의 안전 및 통학 시 집중되는 통행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구 분	설 계 지 침
아파트 주출입구	◦ 단지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 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하며, 출입구 개수는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 ◦ 자연 감시가 낮고 활동 인자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CCTV 설치 ◦ 출입구 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배치 ◦ 출입차단기 등 기계 장비를 통한 물리적 접근 통제 및 단지 상징물이나 게이트, 출입구 주변 영역적 패턴 적용을 통한 상징적 접근 통제 등 적용
아파트 주동 출입구	◦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 ◦ 각 주동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에는 출입자가 쉽게 관찰되도록 높이가 낮은 관목을 설치 ◦ 주동 출입문은 안전유리,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고 투명한 재질을 사용하여 내부 상황이 자연스럽게 파악되도록 함 ◦ 경비실이 없는 주동에서는 출입구에 자동방범키, CCTV, 자동출입문 등의 방범설비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방범설비 표지판(경고 문구)을 설치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변 공간에서 감시가 될 수 있는 밝고 개방된 공간에 배치 ◦ 단지 내 주 보행로와 연계하여 시설물을 설치, 이용 빈도를 높여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변 감시 능력 향상 유도 ◦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서,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통행이 많은 장소와 주동 출입구 주변 또는 각 주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배치
경비실	◦ 경비실은 감시가 필요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야 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경비실 주변 시설과 조경은 경비실 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시야를 차단하지 않도록 함 ◦ 경비실 위치는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주동출입구의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 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 경비실에 고립 지역에 대한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경비실이 없는 고립 또는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 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하며,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CCTV와 차량출입 차단기를 설치, 야간에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 설치 ◦ 차로에는 이동 방향과 경로 및 진출입구 등을 바닥에 반드시 표시하고 벽면, 천장 등에도 안내판을 설치 ◦ 지하주차장에는 자연채광과 시야확보가 용이하도록 썬크, 천창 등 설치를 권장하고, 주차구획은 기둥과 벽면은 가시권을 늘리고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glare-free) 조명으로 계획
조 경	◦ 단지 내 조경은 시야 확보가 가능하여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주거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건물과 나뭇가지가 1.5m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 ◦ 조명 주변에 식재하는 조경수는 빛을 가지지 않도록 계획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동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식재하는 조경수는 보행자의 시야가 이동하는 동선이 차단되지 않도록 수종을 선택하고 식재함
담 장	◦ 단지 경계부에 영역성 확보를 위하여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형 담장, 조경 등을 설치하여 자연감시와 가시성을 확보하고, 사각지대 또는 고립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단지 경계부를 시설물 담장 대신 관목이나 수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밀생하는 수종과 사계절 식생하는 수종을 선택하고, 내외부 관찰이 가능하도록 1m~1.5m 이내로 관리
공공보행 통로	◦ 사람의 출입에 대한 자연 감시가 가능하고 숨을 공간이 없도록 계획 ◦ 사각지대 형성을 방지하고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계획, 보행자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 충분한 시야 범위를 확보하여 이용자가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 ◦ 야간에도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을 위한 방법용 CCTV 등 설치 권장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	증) 13,145.1	13,145.1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결정내용	결정사유
①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A=13,145.1㎡	◦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계	13,145.1	-	13,145.1	100.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3,104.1	감) 13,104.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13,145.1	13,145.1	100.0	-
준주거지역	41.0	감) 41.0	-	-	-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불광동 600번지 일대	제2종일반 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 주거지역	13,104.1	◦ 지역 여건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
	불광동 276-5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41.0	◦ 구역내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92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위길	서울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
변경	중로	2	(1)	15	국지 도로	92 (92)	불광동 600-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덕바위길	서울시고시 제2001-29호 (2001.2.6)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285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호 (1969.1.18)	-
변경	소로	1	(1)	6~10	국지 도로	285 (173)	불광동 285-54	불광동 603-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3호 (1969.1.18)	-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및 임시도로 번호임

※ 소로 1-(1)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장기(안)에 따라 향후 구역 남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불광동 613-2)과 불광1동주민센터(불광동 613-1)가 정비될 경우, 진흥로까지 양방 2차로 일괄 확폭 고려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	중로2-(1)	◦ 변경 - B=12m, L=92m → B=15m, L=92m(92)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접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 도모 를 위해 도로 확폭
소로3-2	소로1-(1)	◦ 변경 - B=6m, L=285m → B=6~10m, L=285m(173)	◦ 진·출입로의 원활한 소통 및 장애 확장성을 고려 일부 구간 도로 확폭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①	주차장	불광동 600번지 일대	-	증) 2,340	2,340	-	입체적 결정

■ 주차장 입체적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구 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①	주차장	불광동 600번지 일대	층수(층)	-	지하1층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결정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수평투영면적(㎡)	-	증) 2,340	2,340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주차장	- 주차장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총수 : 지하1층 - 도시계획시설 연면적 = 2,340㎡ - 수평투영면적 = 2,340㎡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주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신설(60면)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면적(㎡)	획지			비고
			명칭	위치	면적(㎡)	
획지	획지	13,145.1	획지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12,302.9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가구	용도	비고
신설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단지 안의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의 시설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가구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 (공동주택용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명 칭	용 적 륜(%)				비 고	
		기 준	허 용	상 한			
				상 한	법적상한		
신설	획지 (공동주택 용지)	190%	200%	250%	250%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200%
							상한용적률 227.33%
							법적상한용적률 25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 분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비 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5%	$\circ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 \text{대지면적}) \times a$ $= 190\% \times (461.6\text{m}^2 / 12,302.9\text{m}^2) \times 1 = 7.13\%$	총 10%
	공개공지	5%	$\circ \text{기준용적률} \times (\text{조성면적 (의무면적제외)} / \text{대지면적}) \times a$ $= 190\% \times (412.3\text{m}^2 / 12,302.9\text{m}^2) \times 1 = 6.37\%$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 분	용적률완화		비 고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상한용적률)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법정상한용적률)	
신설	27.33%	22.58%	총 49.91%

■ 높이계획

구 분	지 역	높 이 기 준	비 고
신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80m 이하 (25층 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공시설(공영주차장)

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대지 경계부 도로변	$\circ \text{대지경계선으로부터 } 3, 5\text{m 후퇴}$	도면참고

라.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

1)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방향성	획지 (공동주택용지)	◦ 불광역자골목 통일로66길의 선형을 따라 단지 내 통경 구간을 확보하여,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열린 배치계획 수립 ◦ 특별건축구역 적용에 따른 인동거리 완화 등은 주거유형 다양화, 경관성, 일조, 프라이버시 등 주거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획지 (공동주택용지)	◦ 진흥로15길, 불광로2길 주변 가로활성화구간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권장)해, 활력있는 가로가 형성되도록 계획 ◦ 근생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단지 내 단차 발생구간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계획하고, 연도형으로 설치 권장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획지 (공동주택용지)	◦ 진흥로15길은 충분한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기존 상권의 기능 유지 및 활성화를 도모 ◦ 공공보행통로 시점부에 조성되는 공개공지는 불광역자골목과 연계해 상업·문화 이벤트 개최 및 지역주민과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 ◦ 지하 공용주차장과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지하에서 진출입 동선이 분리되도록 설계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물의 외부형태	획지 (공동주택용지)	◦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입면 디자인 다양화 계획
저층부외관	획지 (공동주택용지)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 고려한 외관 디자인 ◦ 1층 개구부 높이 통일 ◦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조화로운 저층부 디자인 계획
재료 및 색채	획지 (공동주택용지)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 ◦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일 경우 조화를 고려할 것 ◦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계획 디자인
진입구 처리	획지 (공동주택용지)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 ◦ 접근로는 유류폭 1.8m 이상으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함 ◦ 보행약자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 ◦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등을 고려한 특화 방안 제시

3) 경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개방감	남동에서 북서방향	◦ 단지 중앙부 개방감 확보를 위한 통경축 확보
조명계획	획지 (공동주택용지)	◦ 주변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보행통로 등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야간 조명 설치 계획 검토
스카이라인	획지 (공동주택용지)	◦ 북한산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입체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동의 높이는 다양화하여 계획 ◦ 북측 주동은 불광초등학교에 미치는 일조 영향 등 교육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하여 계획

마.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진흥로15길변 중앙부	◦ 서측 진흥로15길변 중앙부 ◦ 불광역자갈목과 연계하여 공개공지(광장) 조성	-
전면공지	대지경계부 도로변 3m, 5m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행 공간 확보(보도부속형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대상지 중앙부 폭 6m 이상	◦ 통일로66길 선형을 따라 불광로2길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6m 이상)를 조성	지역권 설정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비고
차량출입구	진흥로 15길 (소로 1-(1))	◦ 단지 내 차량 출입구로 진·출입 가능 (불광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최대한 이격)	-
소로1-(1)호선 도로 확장 정비예정	소로1-(1)호선	◦ 소로 1-(1)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장기(안)에 따라 향후 구역 남측 한국환경산업기술원(불광동 613-2)과 불광1동주민센터(불광동 613-1)가 정비될 경우, 진흥로까지 양방 2차로 일괄 확폭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	-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비오름	비오름보전 등급 향상	○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름 평가 제외로 조사됨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	-
생태 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보호	○	계획지구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식물은 분포치 않음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 보전	-	계획지구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방지	○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 만족	공사 시 저감대책 수립	-
지형·지질	지형변화 최소화	○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발생 사도처리 계획 수립 인접지반 침하 대책 수립	-
물순환, 수리·수문	생태면적률 30%	○	생태면적률 계획 확인 자연지반녹지율, 인공지반녹지 확인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증가 계획 수립	-
수질	수질 등급 유지 및 오염 최소화	○	수질 상태 확인 오염원 및 처리시설 현황 확인 공사시 토사유출 및 오수 발생 운영시 오수발생 및 비점오염물질 유출 영향 예상	수질 등급 유지 또는 오염 최소화도록 저감방안 수립	-
바람	바람길 확보	○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 고려하여 계획	-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	열섬효과 최소화 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	-
대기질 미세먼지	비산먼지 저감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 시 비산먼지 및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악취	악취공해 해결	-	해당 사항 없음	-	-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공사 시 및 운영 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확보	-
에너지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	○	계획 특성상 과다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됨	은평구 폐기물 처리 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	-
소음 및 진동	규제기준 만족	○	공사 시 소음·진동 영향 예상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
경관	Skyline 보전	○	고층 건물 입지에 의한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주변지역과 연계한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계획지구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휴식 및 여가공간 확보·계획	-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의 반영사항	비고
일조	일조 침해 최소화	○	계획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계획지구 인근: 준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일부 일조영향 예상	관련규정(건축법, 서울시 조례)을 준수한 건물 배치계획 수립	-
보행 친화공간	보행공간 계획 수립	○	보행자 위한 공간 확보 계획	공공보행통로 설치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결성 강화	-
전파장해	전파장해 영향 저감	-	해당 사항 없음	-	-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해당 사항 없음	-	-

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 단지 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외관, 마감, 생활환경(채광, 조망) 등을 동일(유사)하게 계획하고 적절한 비율로 혼합하여 특정 동·층 및 라인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도록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선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을 통해 선정하며, 조합원의 동·호수 선정 이전 또는 함께 추첨되도록 관리처분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 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
합 계	321	100.0	61	40	21	19.0	100.0	34.4
전용 39㎡	60	18.7	36	21	15	11.2	59.0	24.6
전용 59㎡	104	32.4	21	19	2	6.5	34.4	3.3
전용 74㎡	62	19.3	-	-	-	-	-	-
전용 84㎡	95	29.6	4	-	4	1.2	6.6	6.5

4. 기타사항

가. 향후 건축심의(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완료시까지 신속통합기획안을 준수할 것
 나. 정비계획 수립 도서 [별첨] 의견취취 및 관련부서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반영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반영할 것

다. 대상지 서측(불광동 276-5 등)을 포함하여 도로를 일체 정비할 것

Ⅲ. 2024년 제8차('24. 08. 23.)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 분	심의결과	심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고												
제8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사항	○ 명 칭 - 불광동 6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면적 : 13,145.1㎡) <table><tr><td>용도지역</td><td>상정(안)</td><td>수정가결</td></tr><tr><td>제2종일반주거지역</td><td>13,104.1㎡</td><td>13,145.1㎡</td></tr><tr><td>준주거지역</td><td>41.0㎡</td><td>-</td></tr><tr><td>합 계</td><td>13,145.1㎡</td><td>13,145.1㎡</td></tr></table>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27.33%, 법적상한 250% ○ 공공기여 : 1,357.54㎡(10.3%) - 토지 : 도로 842.20㎡, 공영주차장 지분 519.14㎡ - 건축물 환산 : 공영주차장 298.20㎡ ※ 2023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지하층) 적용 ○ 세대수 : 전체 321세대 (임대 61세대 포함) ※ 임대(공급면적 기준) : 재개발의무 40세대(2,703.11㎡), 국민임대 21세대(1,439.44㎡)	용도지역	상정(안)	수정가결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04.1㎡	13,145.1㎡	준주거지역	41.0㎡	-	합 계	13,145.1㎡	13,145.1㎡	▶ 작기 수정사항은 정비계획 결정내용에 반영하였음. - 명칭 : 불광8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용적률 : 기준 190%, 허용 200%, 상한 227.33%, 법적상한 250% - 공공기여 : 1,357.54㎡(10.3%) - 세대수: 전체 321세대 (임대 61세대 포함)	반영
	용도지역	상정(안)	수정가결													
제2종일반주거지역	13,104.1㎡	13,145.1㎡														
준주거지역	41.0㎡	-														
합 계	13,145.1㎡	13,145.1㎡														
조건 사항	○ 지구단위계획(안) 관련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필요 사항(건축배치계획 등) 등은 명확히 제시할 것 ○ 정비계획 결정도(안) 상 연도형 상가의 폭원 등은 삭제할 것	▶ 지구단위계획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 정비계획 결정도 상 연도형 상가의 폭원은 삭제하였음.	반영 반영													

IV. 관련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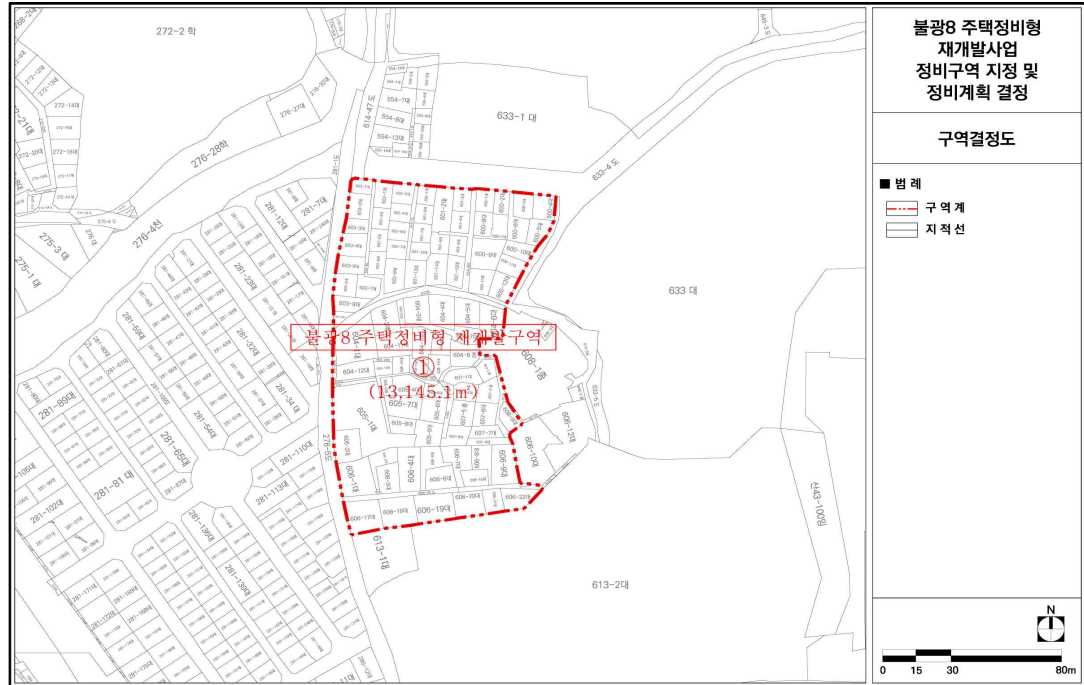
V.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서 : 생략

VI.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89),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02-351-7463)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서 등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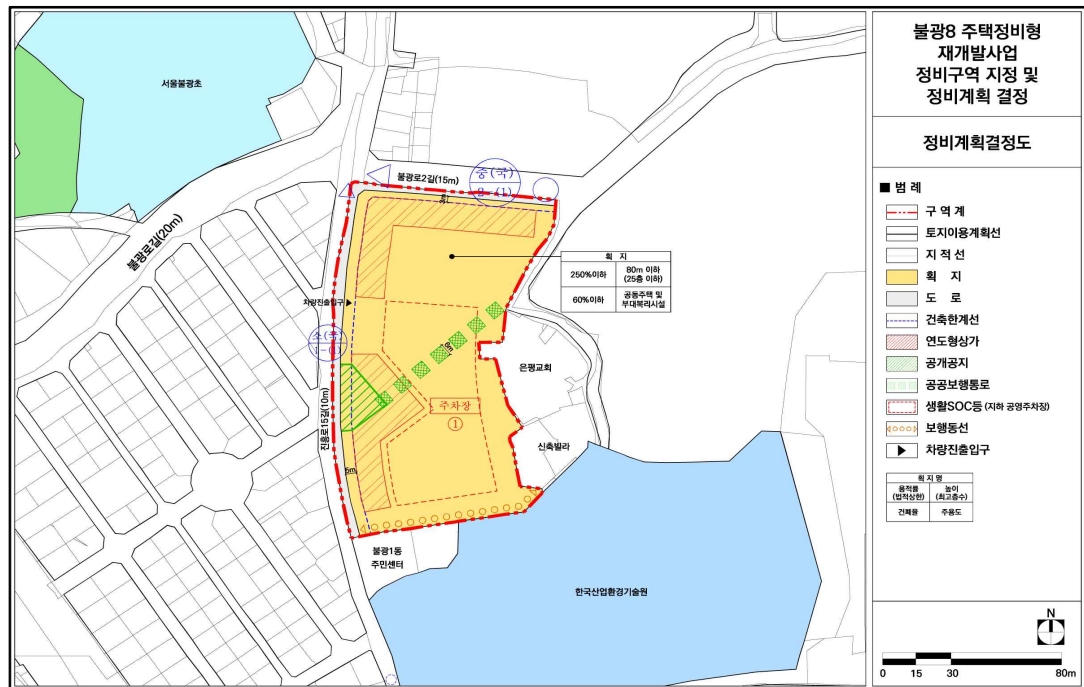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Ⅶ.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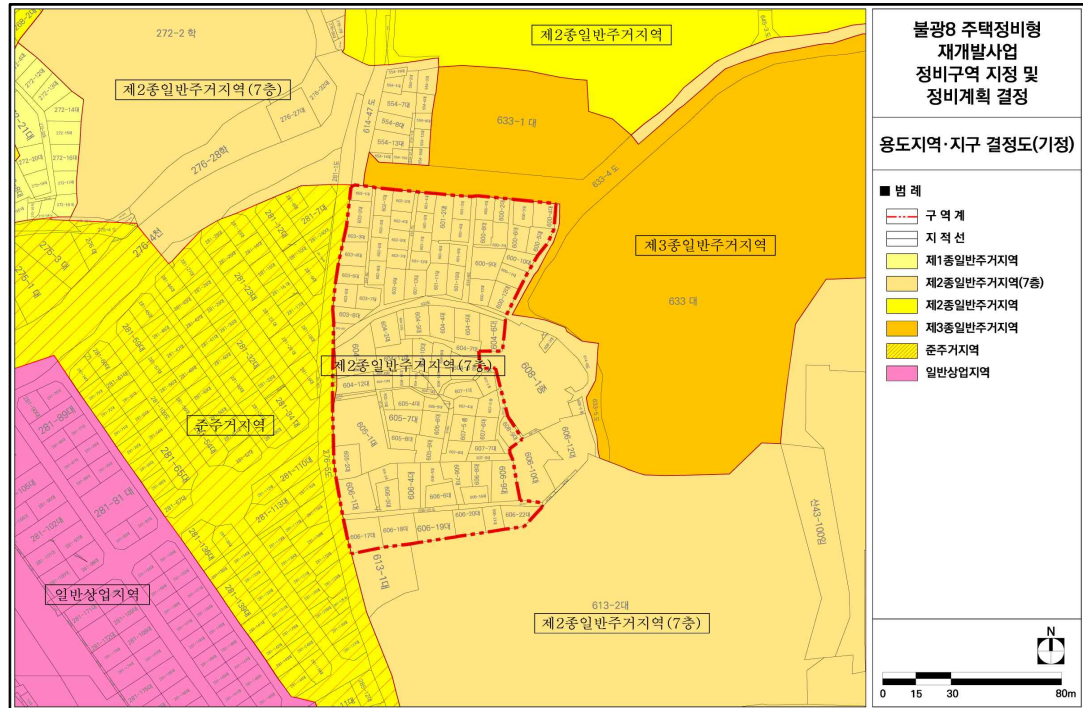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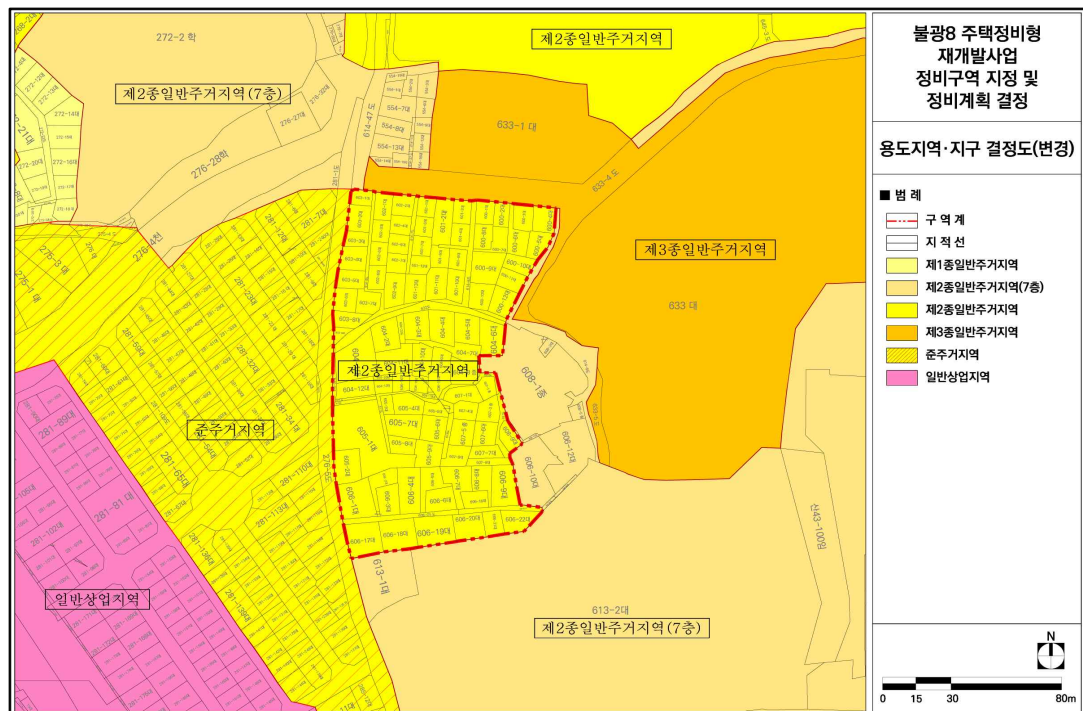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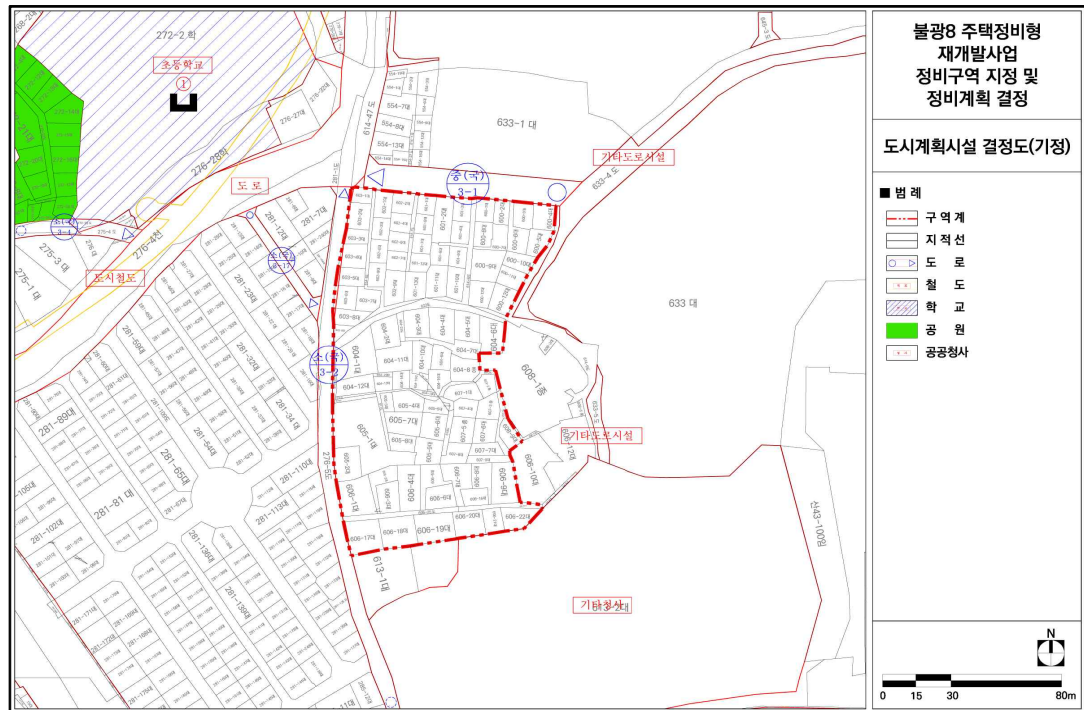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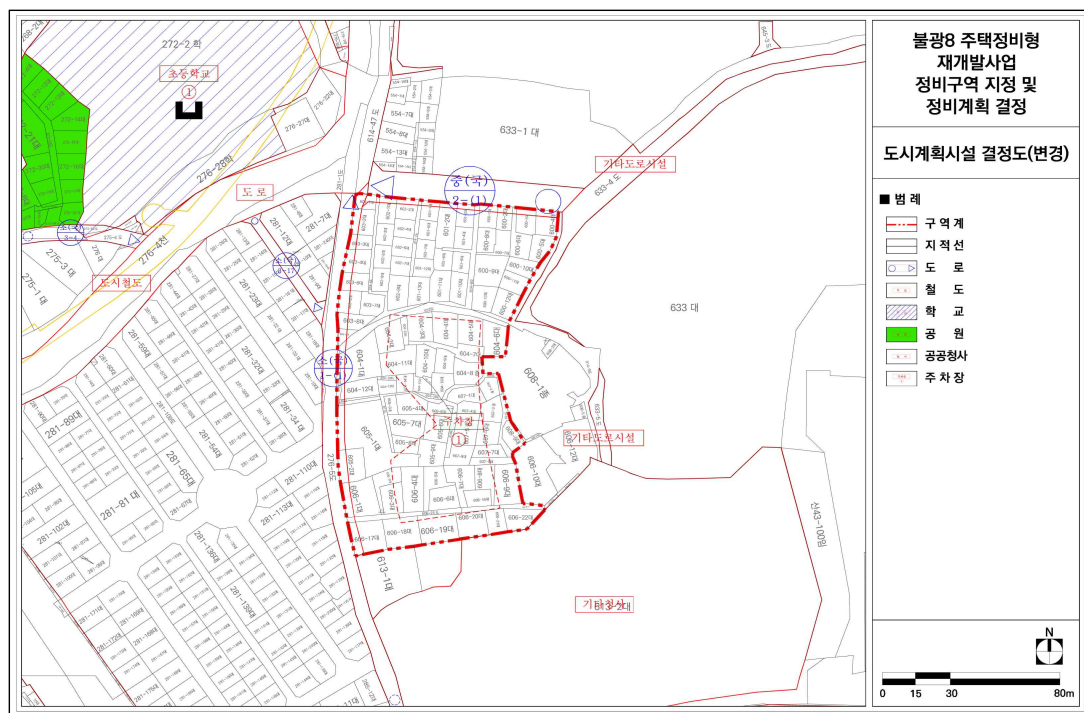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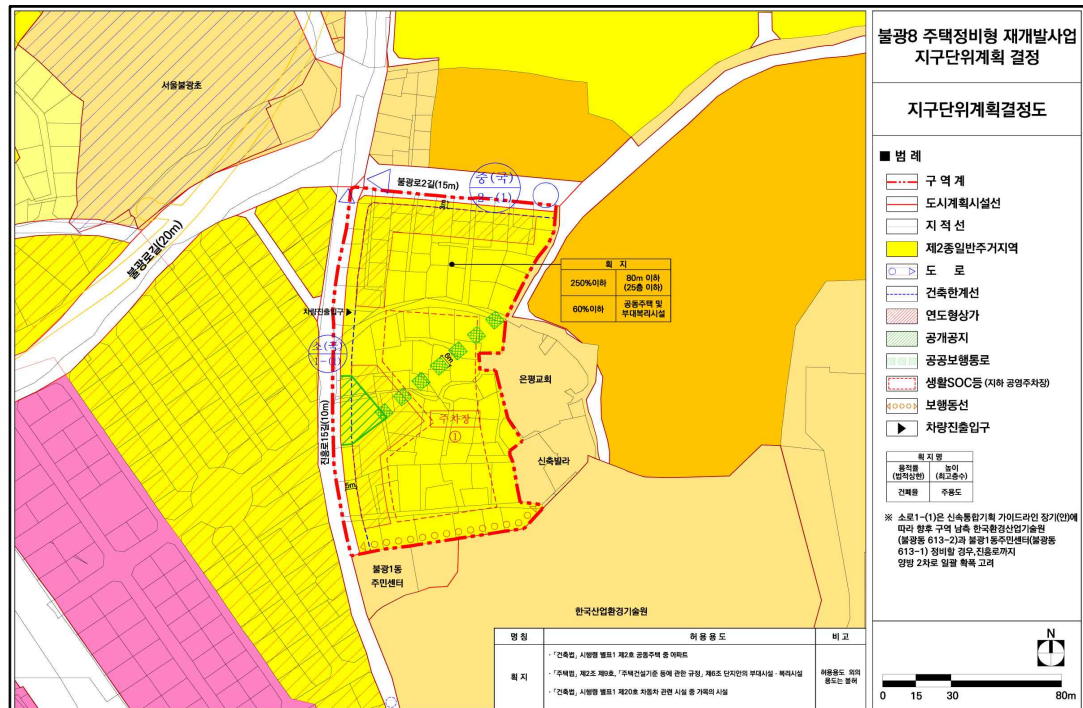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5호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수색6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중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8-59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6호(2019.01.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143호(2019.05.09.)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9-216호(2019.07.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282호(2019.08.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9-365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1호(2020.02.0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177호(2020.05.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0-528호(2020.12.10.)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4호(2021.02.04.)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

2021-101호(2021.02.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163호(2021.04.01.)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434호(2021.08.12.)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566호(2021.10.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1-661호(2021.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2-231호(2022.05.26.)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391호(2022.09.29.)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14호(2022.10.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2-475호(2022.12.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09호(2023.03.3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3-116호(2023.04.0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24-38호(2024.01.1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24-173호(2024.04.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1,135.8	-	791,135.8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합계		791,135.8	-	791,135.8	100.0	
주거 용지	소계	544,712.4	증) 542.0	545,254.4	69.0	
	공동주택	475,688.8	-	475,688.8	60.0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34,169.4	-	34,169.4	4.3	
	유치원	2,273.8	-	2,273.8	0.4	
	종교용지	6,873.6	-	6,873.6	0.9	
	존치	12,021.8	-	12,021.8	1.5	
	기타	-	증) 542.0	542.0	0.1	주택 및 근생용지
공공 시설 용지	소계	246,423.4	감) 542.0	245,881.4	31.0	
	도로	110,272.8	-	110,272.8	13.9	
	보행자도로	5,554.9	-	5,554.9	0.7	
	공원	35,370.3	-	35,370.3	4.5	
	녹지	23,017.8	-	23,017.8	2.9	
	광장	1,001.0	-	1,001.0	0.1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전소	542.0	감) 542.0	-	-	건축물내부 (지하)에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교	56,971.7	-	56,971.7	7.2	
	사회복지시설	4,292.5	-	4,292.5	0.5	
	도서관	3,801.8	-	3,801.8	0.5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경	변 경 후		
	문화시설	1,631.6	-	1,631.6	0.2	
	체육시설	(4,023.0)	-	(4,023.0)	-	복합용지내 복합화

※ 【 】 는 중복결정 또는 이중시설임

※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 수색6재정비촉진구역내 면적변경임

- 2) 인구주택수용계획 : 변경없음
- 3) 기반시설설치계획 : 변경없음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변경없음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변경없음
-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 변경없음
-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변경없음
- 12) 공공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 14) 기타계획 : 변경없음
-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 (1) 수색1~5,7~13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 (2)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변경)
 -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번지	65,977.0	-	65,977.0	-

(나) 정비계획 (변경)

①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5,977.0	－	65,977.0	100.0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18,203.0	－	18,203.0	27.6	
	도 로	15,323.0	－	15,323.0	23.2	
	공 원	1,502.0	－	1,502.0	2.3	
	광 장	1,001.0	－	1,001.0	1.5	
	학 교	377.0	－	377.0	0.6	
	소 계	47,774.0	－	47,774.0	72.4	
택지 (획지)	주택용지	43,777.6	－	43,777.6	66.4	공동주택
	6-1	14,308.0	－	14,308.0	21.7	
	6-2	13,726.6	－	13,726.6	20.8	
	6-3	15,743.0	－	15,743.0	23.9	
	6-4	2,152.4	－	2,152.4	3.3	종교시설
	6-5	667.0	－	667.0	1.0	유치원
	6-6	542.0	－	542.0	0.8	전기공급시설 → 주택 및 근생용지
	6-7	635.0	－	635.0	0.9	근린생활시설

②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③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수색6 재정비 촉진구역	65,977.0	계	47,774.0	수색동 115-5번지	298	-	-	298	-	
			6-1	13,308.0							
			6-2	13,726.6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정비계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6-3	15,743.0							
			6-4	2,152.4							
			6-5	667.0							
			6-6	542.0							
			6-7	635.0							

■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색6 재정비 촉진구역	65,977.0	소계	47,774.0	-					
			6-1	14,308.0	-	117,364.31	공동주택	50%이하 60%이하	268.1% 이하	19.9/30 (92m이하)
			6-2	13,726.6						
			6-3	15,743.0						
			6-4	2,152.4	-	-	종교용지	관련법규에 의함		
			6-5	667.0	-	-	유치원	관련법규에 의함		
			6-6	542.0	-	-	변전소	수색변소부지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6-7	635.0	-	-	근린생활시설	관련법규에 의함		
변경	수색6 재정비 촉진구역	65,977.0	소계	47,774.0	-					
			6-1	14,308.0	-	117,364.31	공동주택	50%이하 60%이하	268.1% 이하	19.9/30 (92m이하)
			6-2	13,726.6						
			6-3	15,743.0						
			6-4	2,152.4	-	-	종교용지	관련법규에 의함		
			6-5	667.0	-	-	유치원	관련법규에 의함		
			6-6	542.0	-	-	주택 및 근생용지	관련법규에 의함		
			6-7	635.0	-	-	근린생활시설	관련법규에 의함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연도형 상가 구성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변경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연도형 상가 구성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획지 6-6 적용)								

※ 단, 획지 6-6은 인접한 수색1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용지에서 매입 시에는 주된용도, 건폐율, 용적률, 평균층수/최고층수 등은 수색1존치관리 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함

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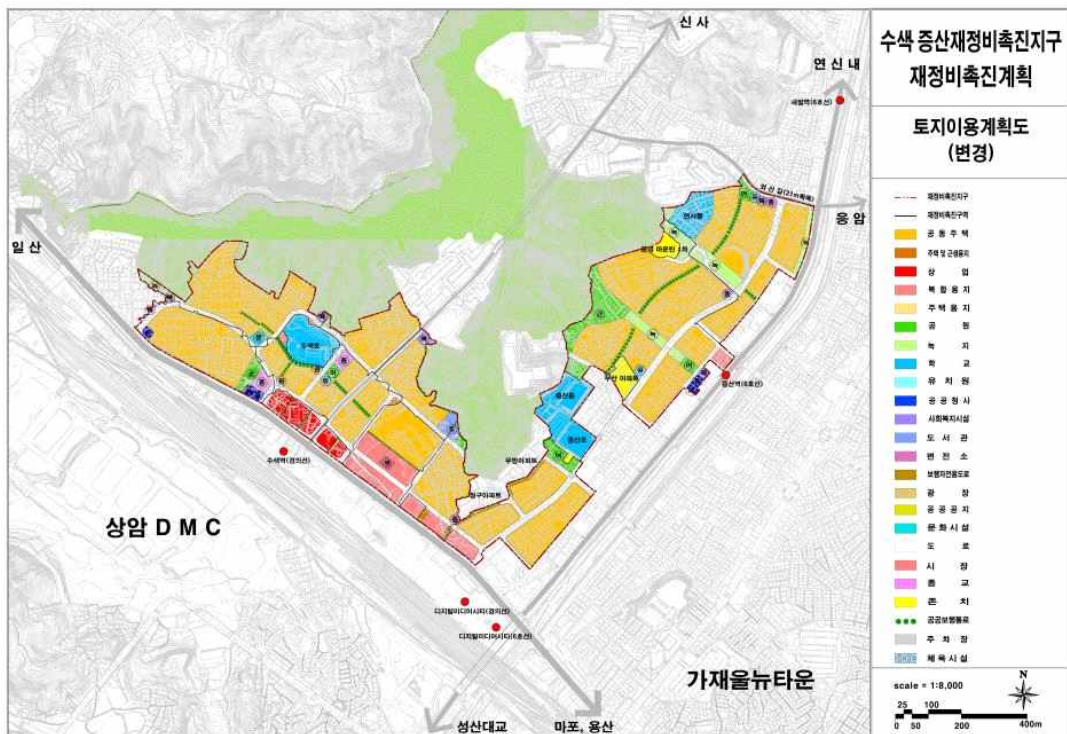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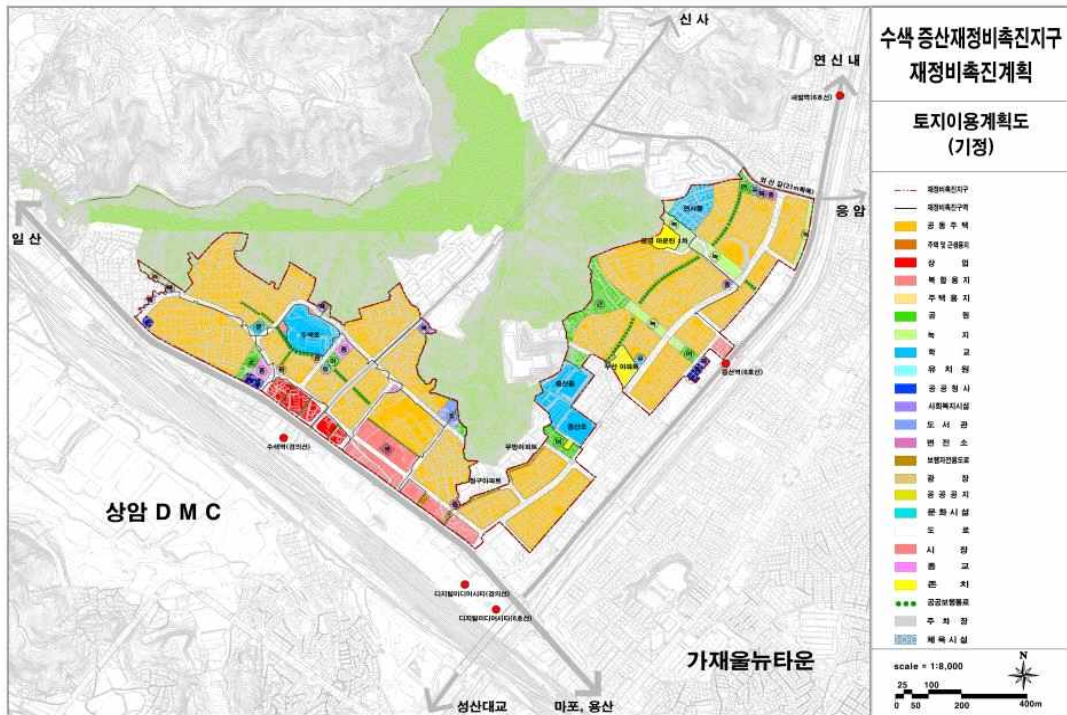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세부사항은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명시

사.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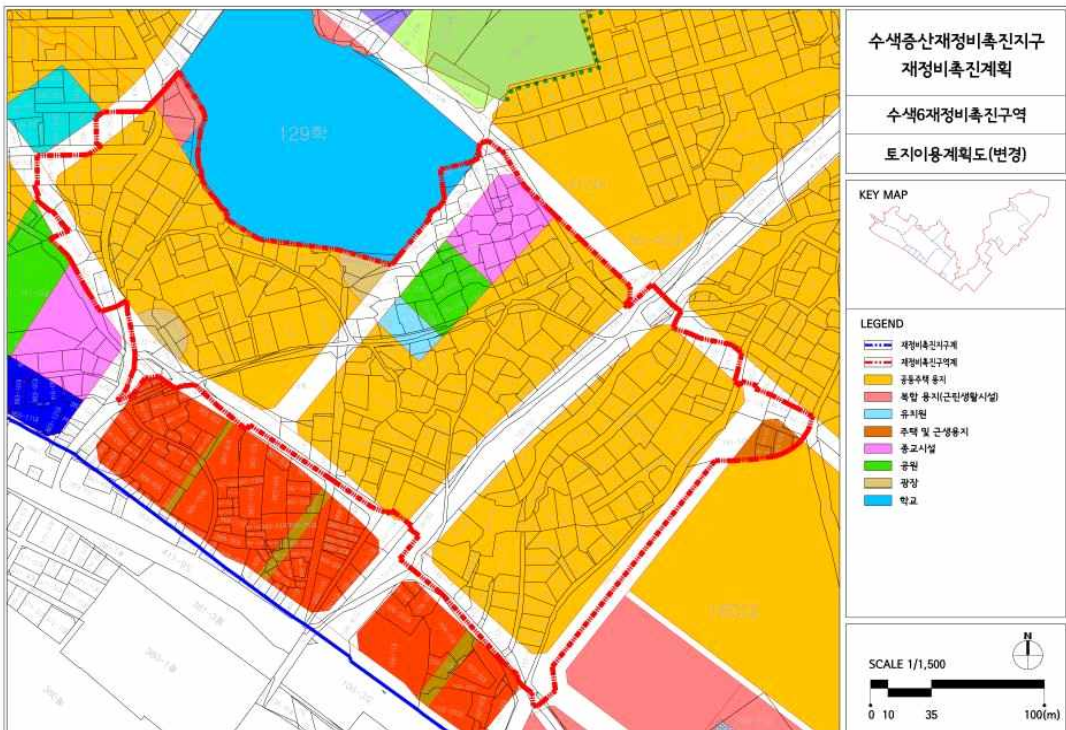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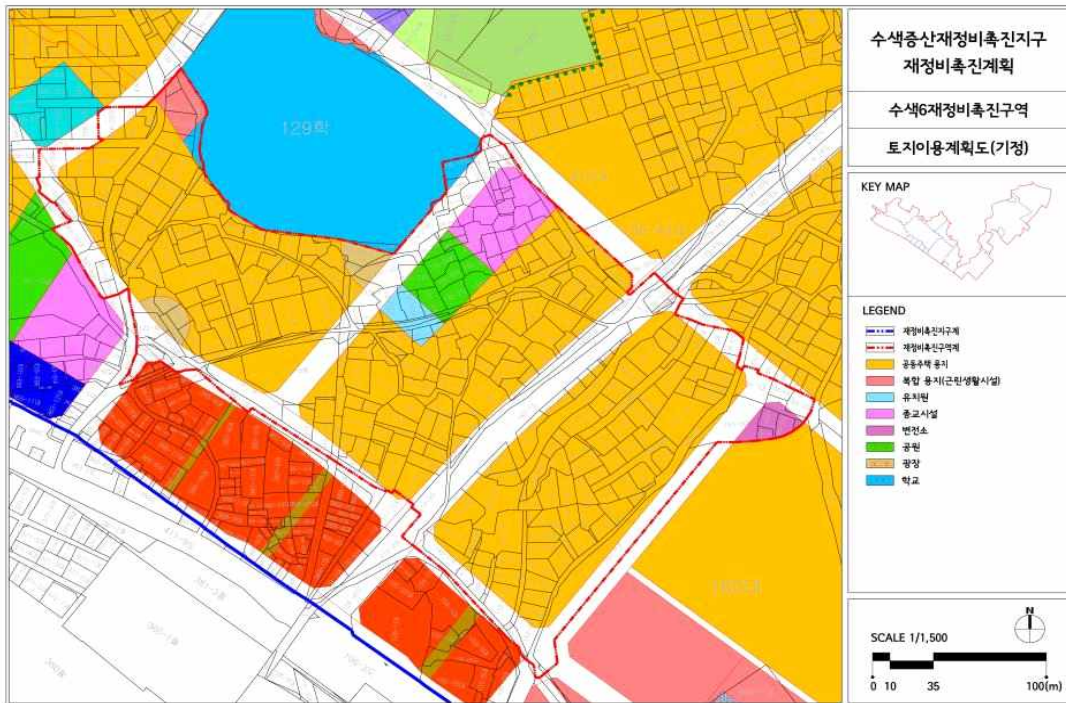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02-2133-7222) 및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8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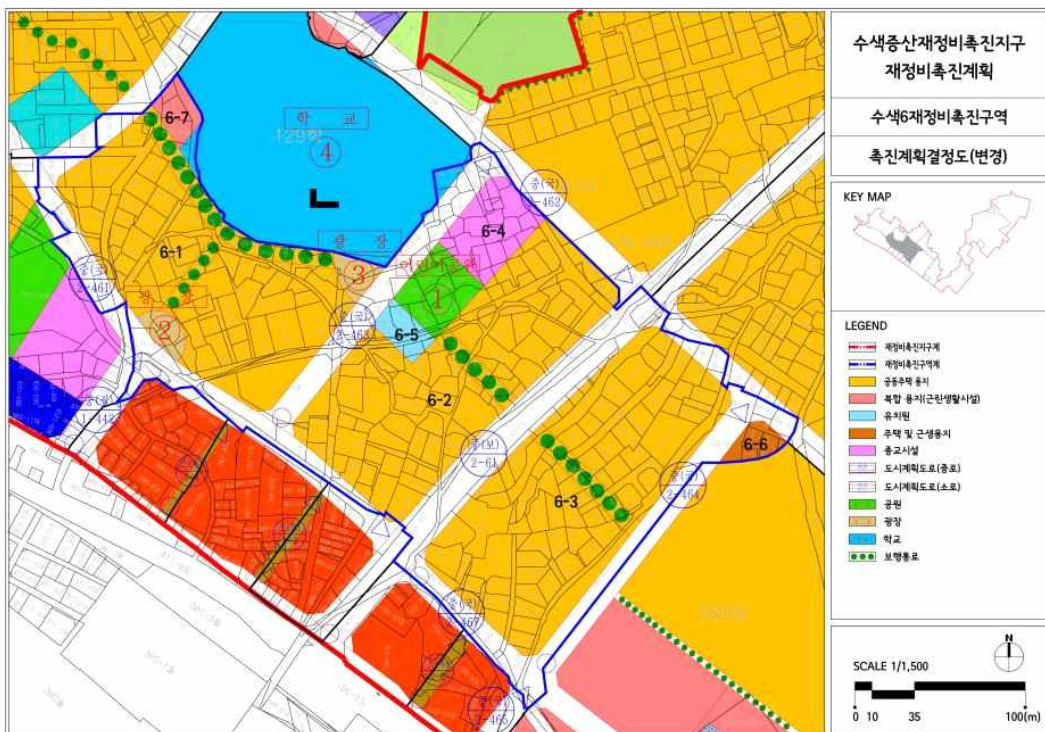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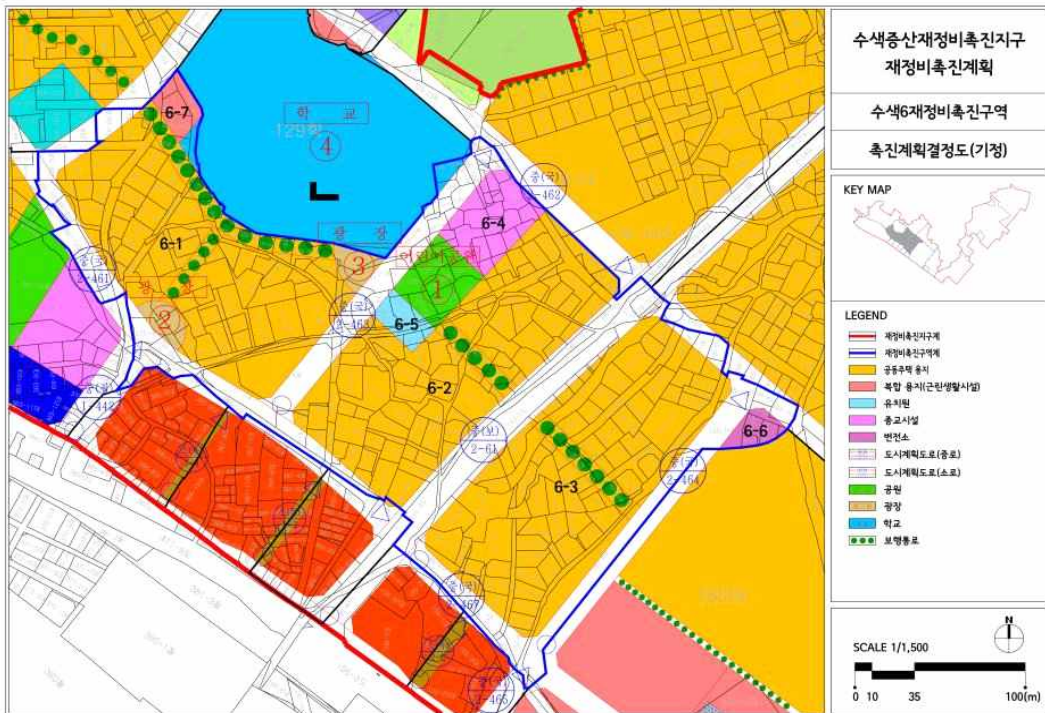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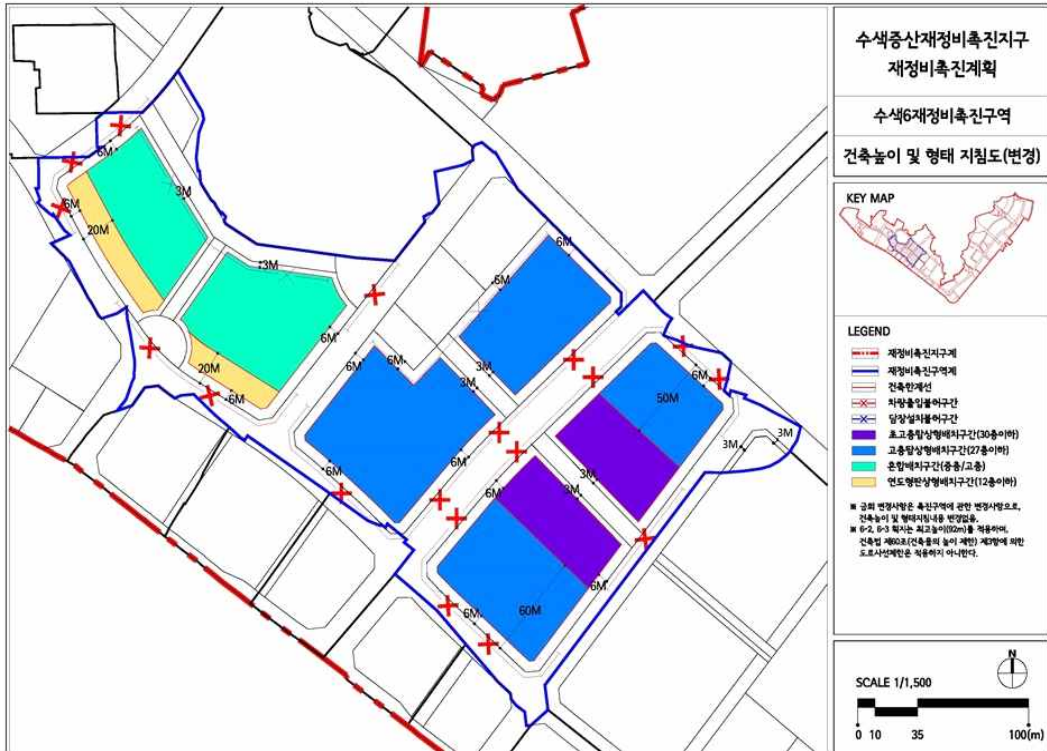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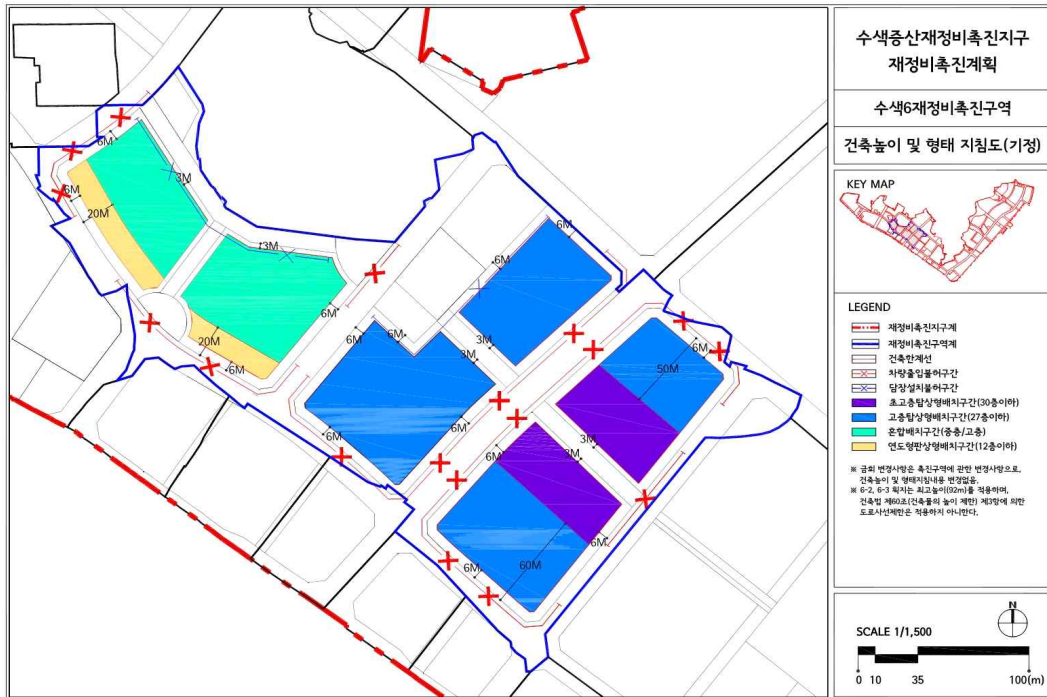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도]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결정도]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건축높이 및 형태 지침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6호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자 고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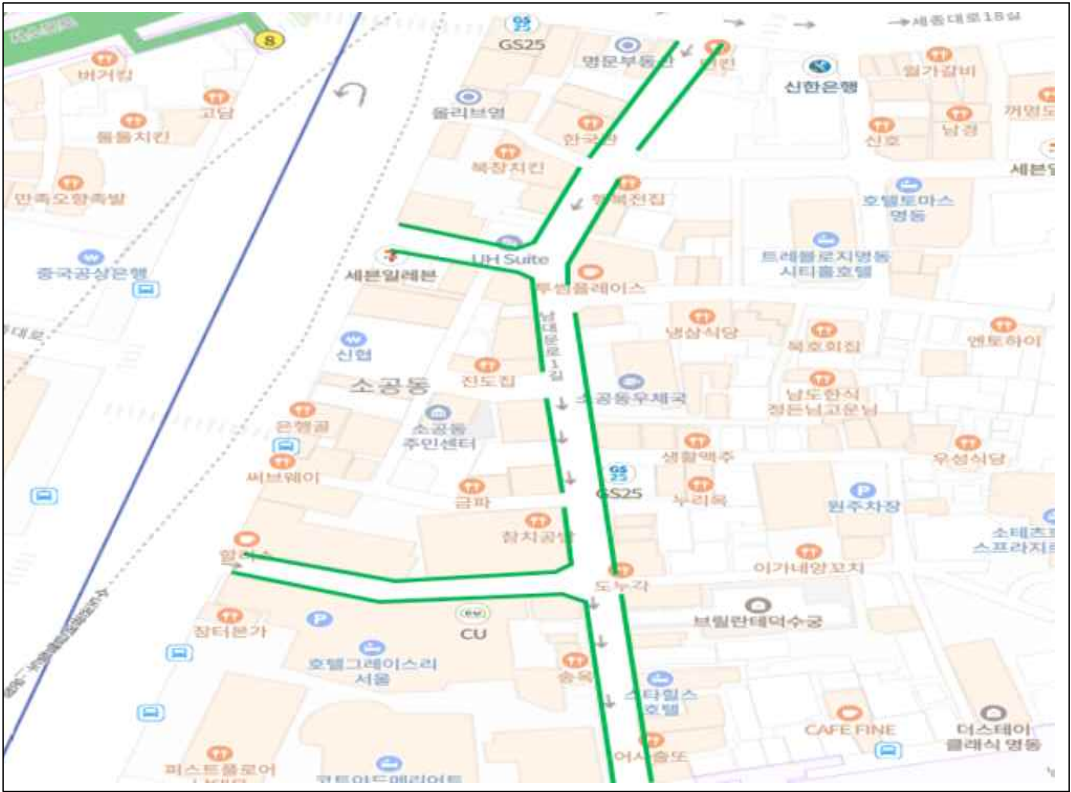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지정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중구	남대문로1길	4~9	809

2. 위치도

1) 남대문로1길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7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조성대상 : 보행자우선도로 1개소

연번	자치구	도로명	폭원(m)	연장(m)
1	중구	남대문로1길 일대	4~9	809

2. 조성계획 : 따로 붙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자전거과(☎02-2133-24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구 남대문로1길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1부

[붙임 1]

남대문로1길 일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계획

□ 사업개요 및 현황

- 사업위치 : 남대문로1길(연장 809m, 폭 4~9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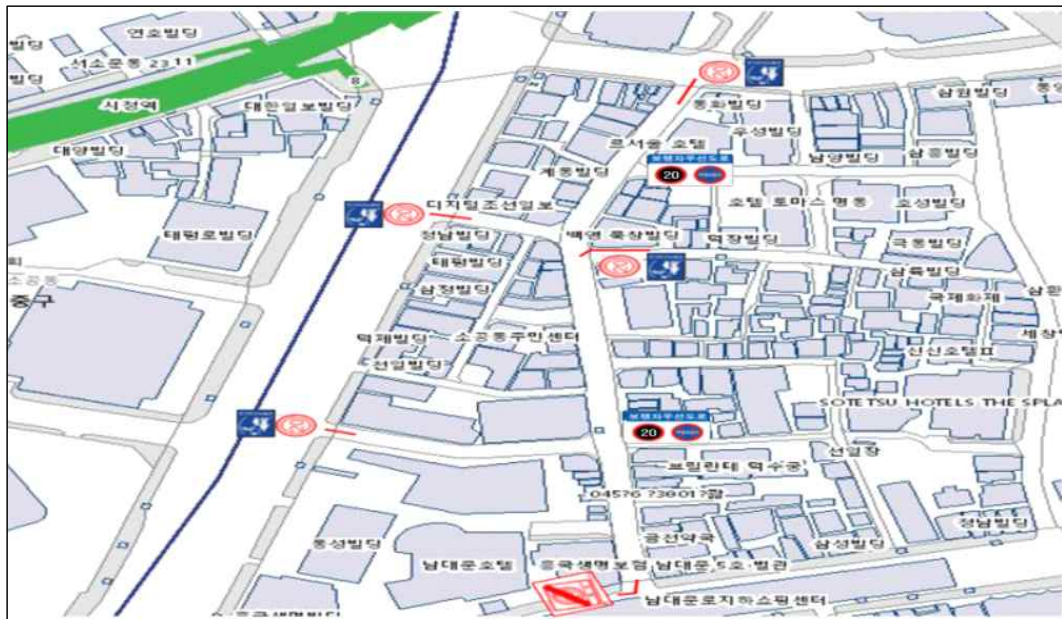
- 사업기간 : 2024.10.~2024.11.(1개월)
- 사업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노면 표시 및 자작식 표지 설치
 - LED 표지판 설치, LED 활주로형 도로 표지병 설치
- 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지 현황
 - 폭 4~9m의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되고 있음
 - 상업지역/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로 주말/출·퇴근 시간대에 보행량이 많음

□ 개선목표 및 범위

- (경제적 효과)보행량 증가로 인한 상권 활성화
- (만족도)안전성/편리성/쾌적성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
- (안전성 측면)차량 감속, 보행자 우선의 도로환경으로 보행안전 확보
- (편리성 측면)차량통행량 감소, 주·정차 차량 감소, 보행편의 확보
- (쾌적성 측면)가로미관 향상, 차량소음 감소

□ 설계안

- 설계내용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 보행자우선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신설
 - 속도 30 → 20 하향
- 설계도



- 시설협의 및 조치사항
 - 남대문경찰서
 - 협의내용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관련 검토 요청
 - 조치사항 : 협의 완료

- 소요예산 및 일정
 - 소요예산 : 70백만원
 - 보행자우선도로 안전표지 및 자차식 표지 구매 설치
 - 활주로형 도로표지병 구매 설치
 - 일정계획
 - ' 24. 10. : 조성계획 고시
 - ' 24. 11. : 착공 및 준공 처리 등.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8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연장 고시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2년 하반기 공모신청 대상지 중 관리계획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대상지

가. 명 칭 : 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관리계획 미수립지역

나. 위치 및 면적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	용산구	원효로4가 71 일원	24,962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2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17,743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3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37,287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4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88,040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5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90,102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6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85,165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7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51,621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8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90,243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9	마포구	중동 78 일원	70,515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권리산정기준일	비 고
10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96,903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1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96,165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2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38,627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3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24,064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4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31,783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5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원	90,992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6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55,521	' 22.10.27.	'22년 하반기 공모
17	구로구	교척동 241 일원	78,700		'22년 상반기 공모
			35,000	'22.06.23.	
			43,700	'22.09.22.	구역 확대

2. 권리산정기준일 : 사업구역별 개별 권리산정기준일 참조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득했을 경우 분양 대상으로 인정함)

1.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사유

- ###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투기 목적으로 행해지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분양사기 등 방지를 위하여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86호 (‘22.9.22.), 제2022-427호(’ 22.10.27.)에 따른 자동실효 기간에서 2년 연장)에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실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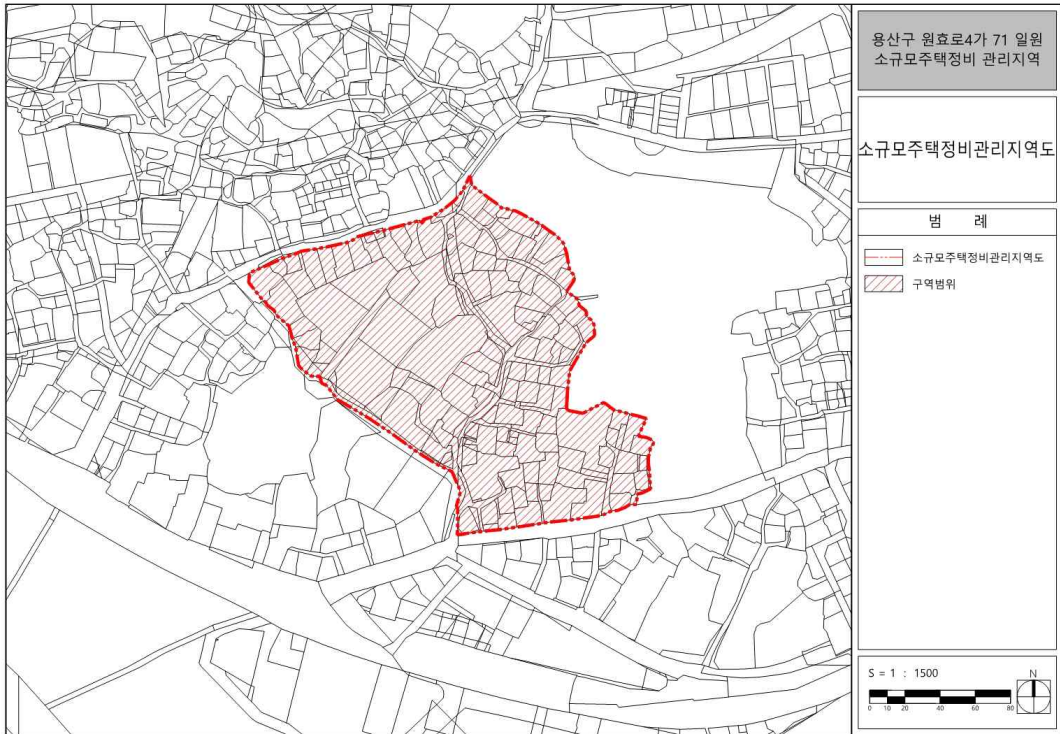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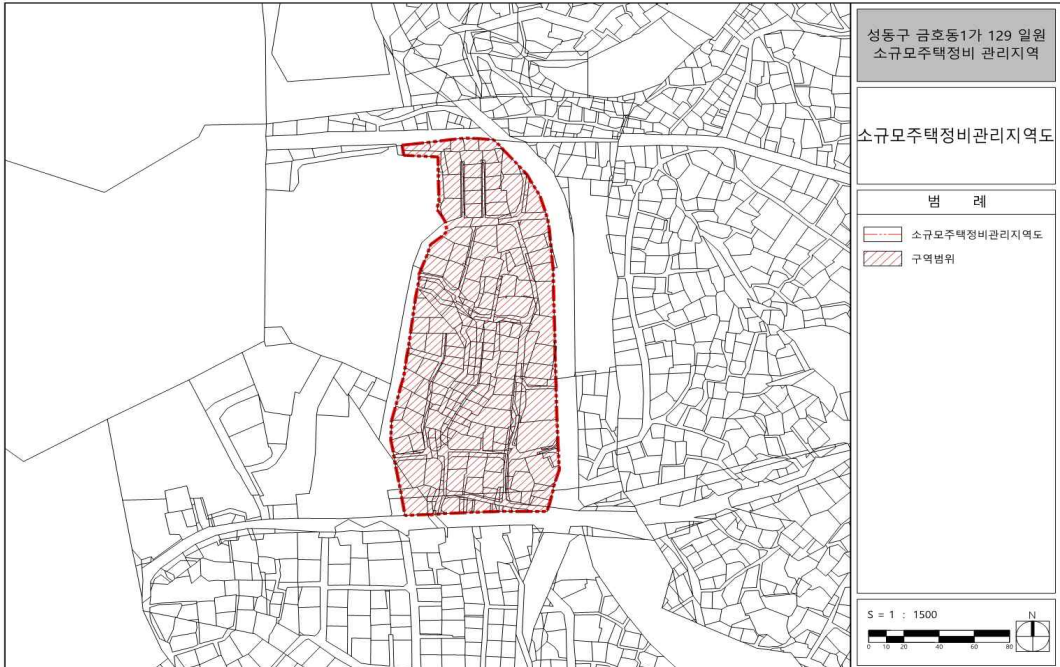
- 본 모아타운 대상지 권리산정기준일 고시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35~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지역 내 모아주택/모아타운 관련 사업추진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고시는 향후 추진될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추진 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만 정하되, 소유권 이전 및 건축허가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님
-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관계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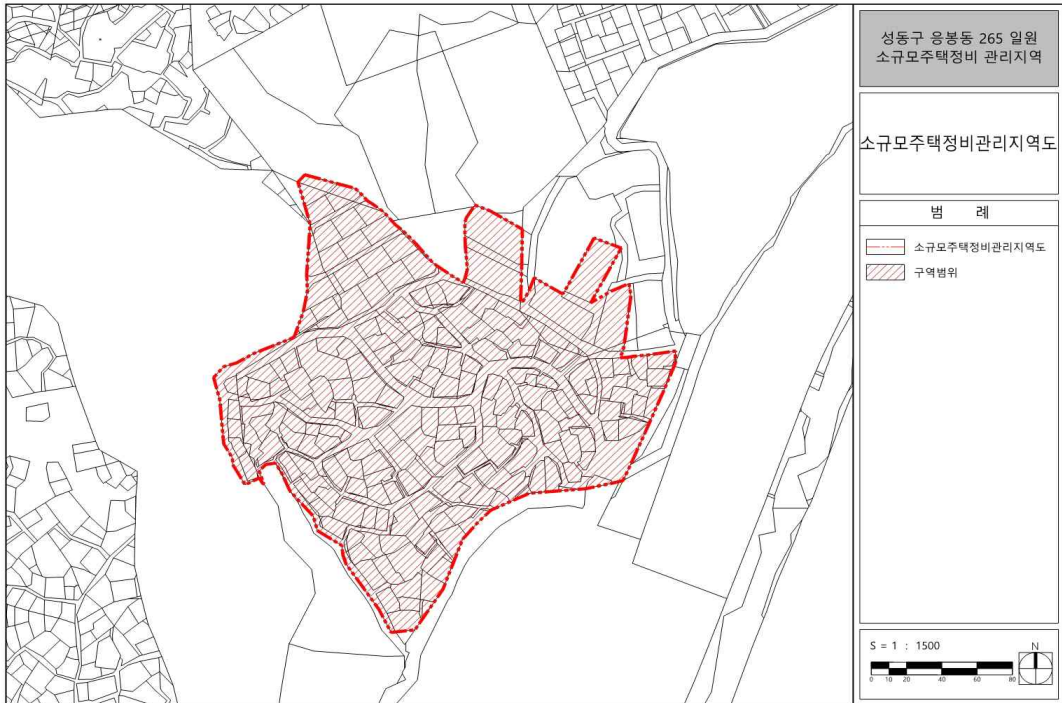
1. 용산구 원효로4가 71



2. 성동구 금호동1가 12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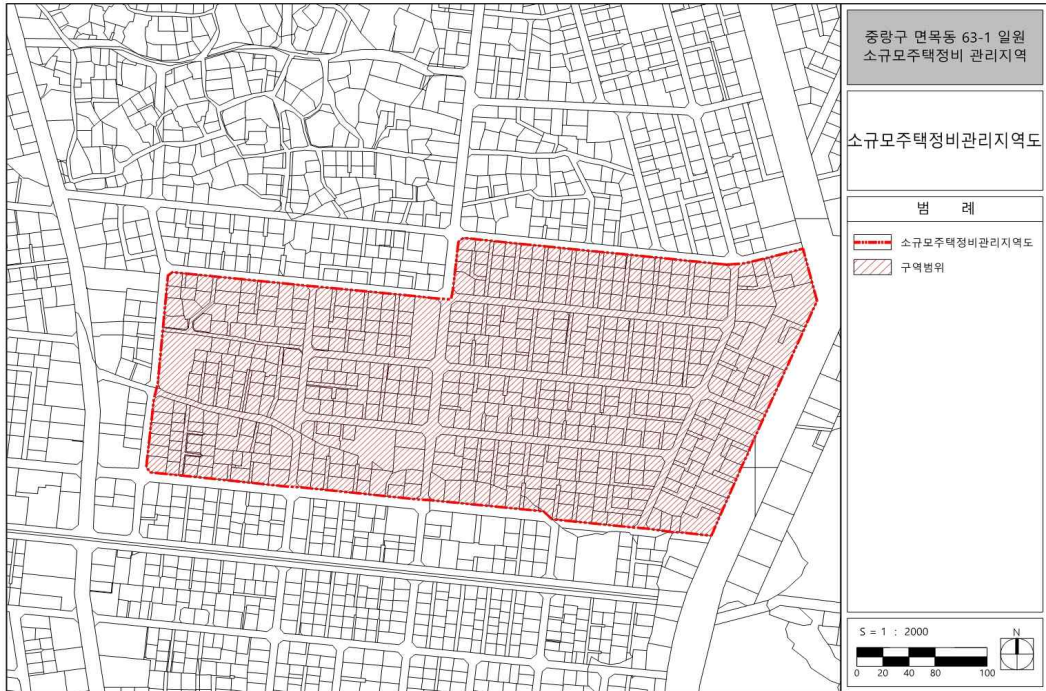
3.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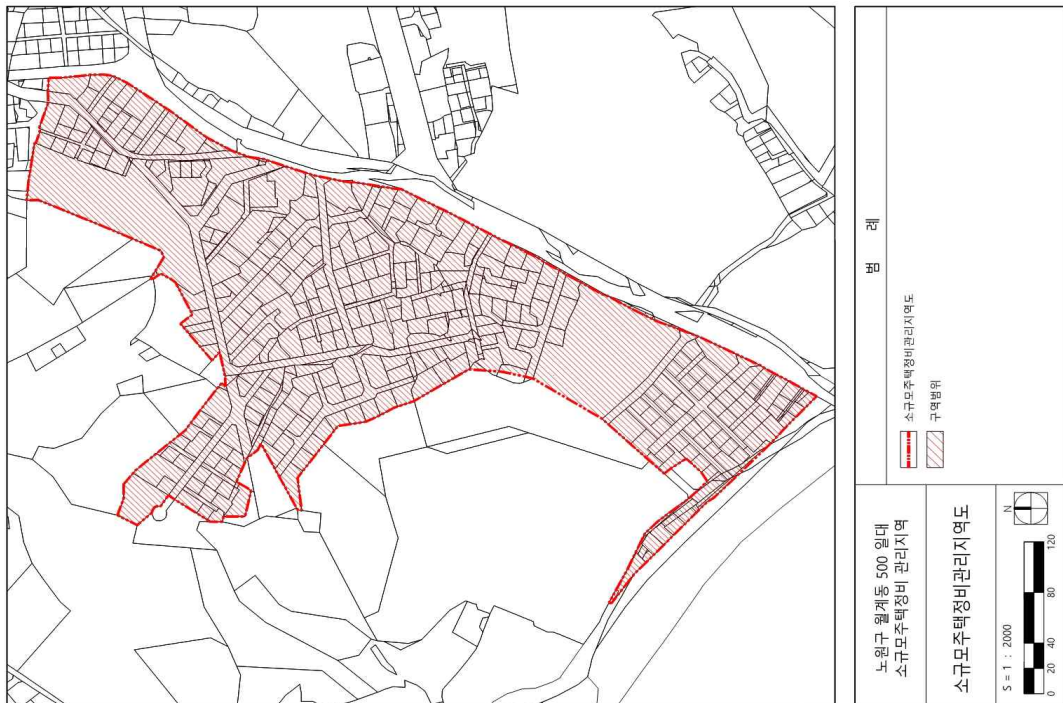
4. 중랑구 면목동 152-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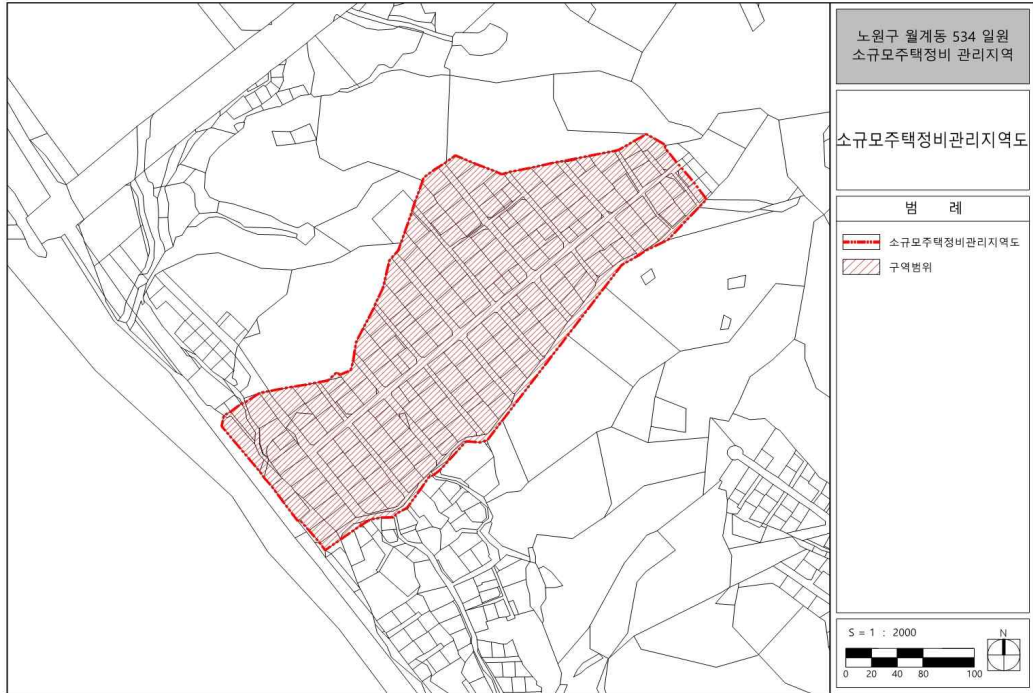
5. 중랑구 면목동 63-1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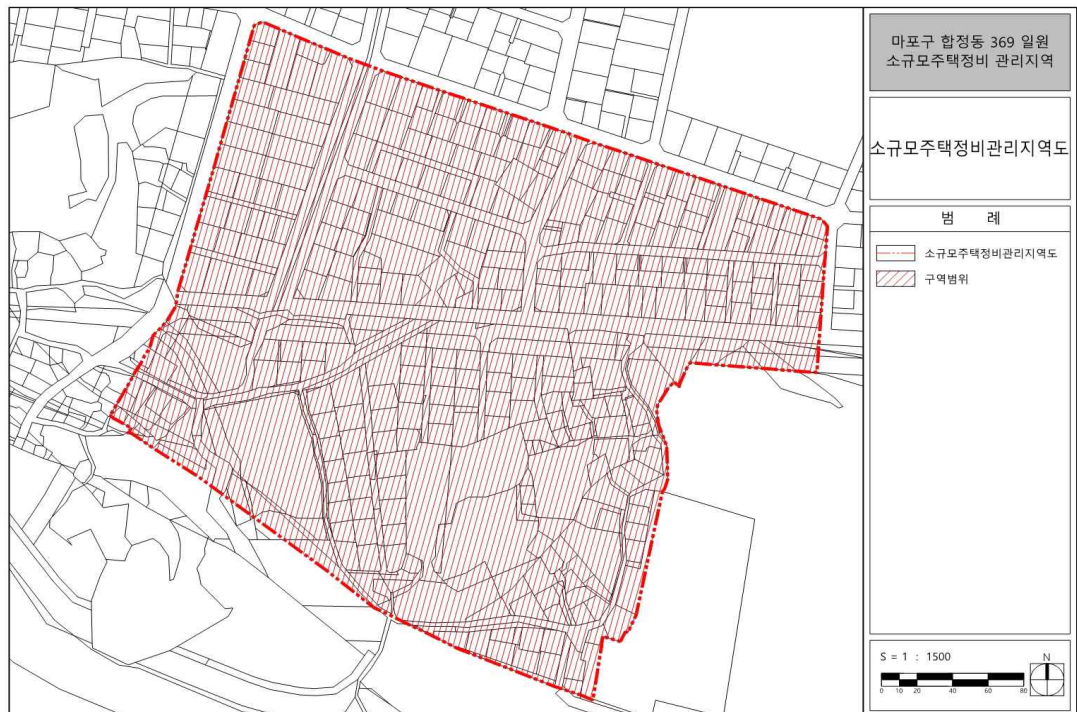
6. 노원구 월계동 500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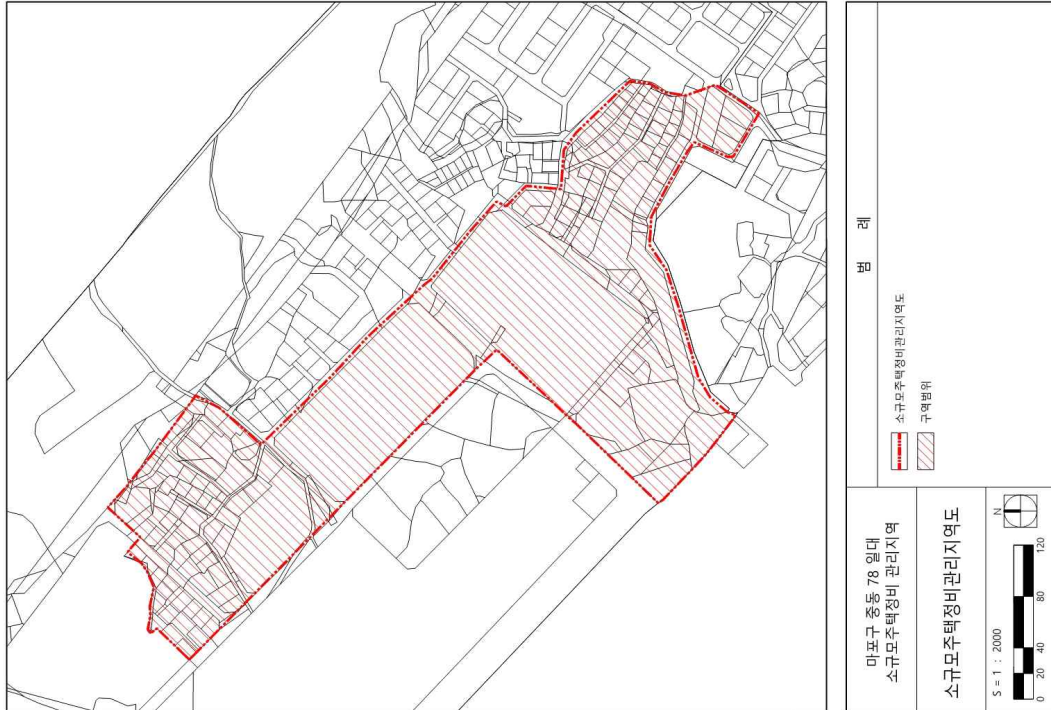
7. 노원구 월계동 534 일원



8. 마포구 합정동 369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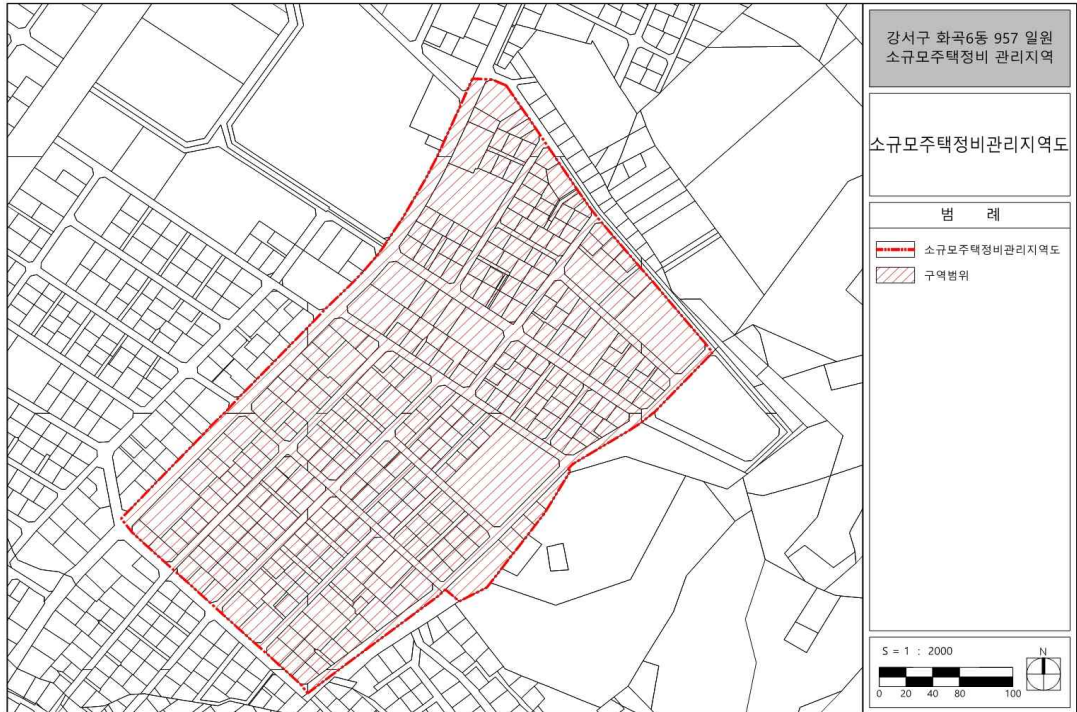
9. 마포구 중동 78 일원



10.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원



11. 강서구 화곡6동 957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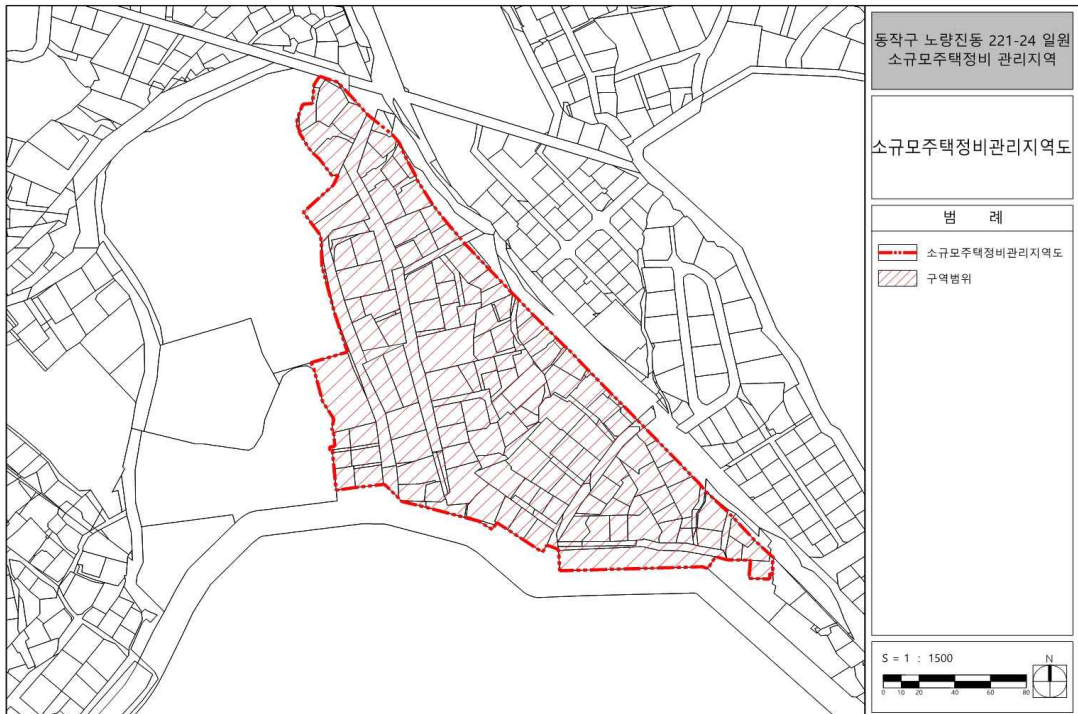
12. 구로구 개봉동 270-38 일원



13. 영등포구 대림3동 786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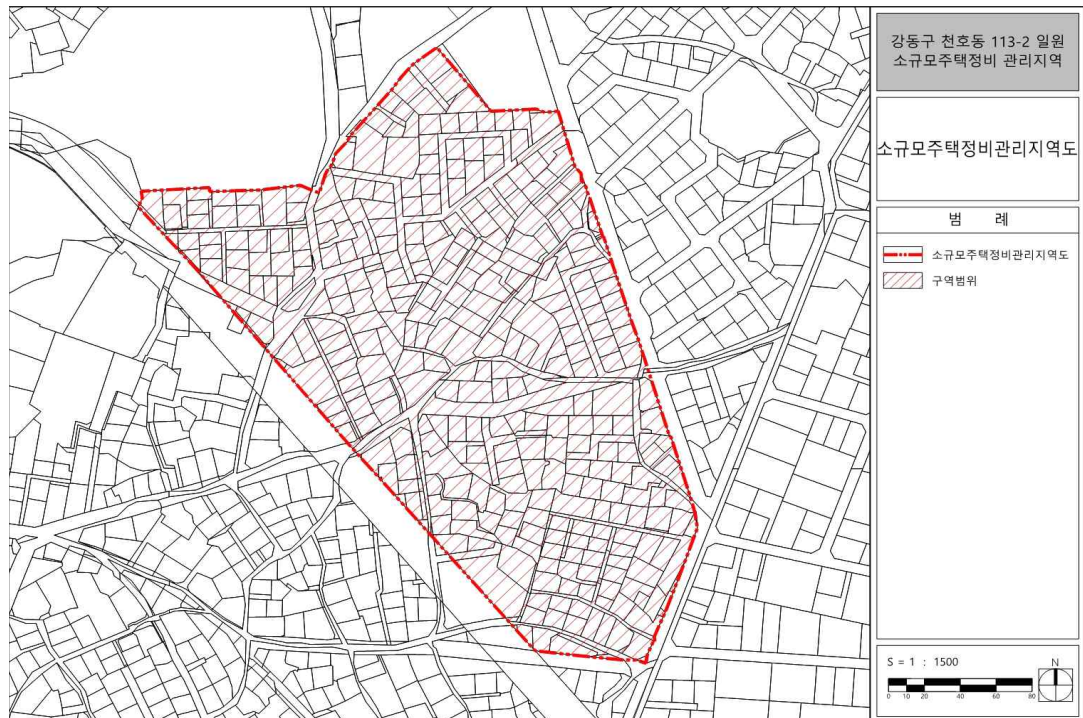
14.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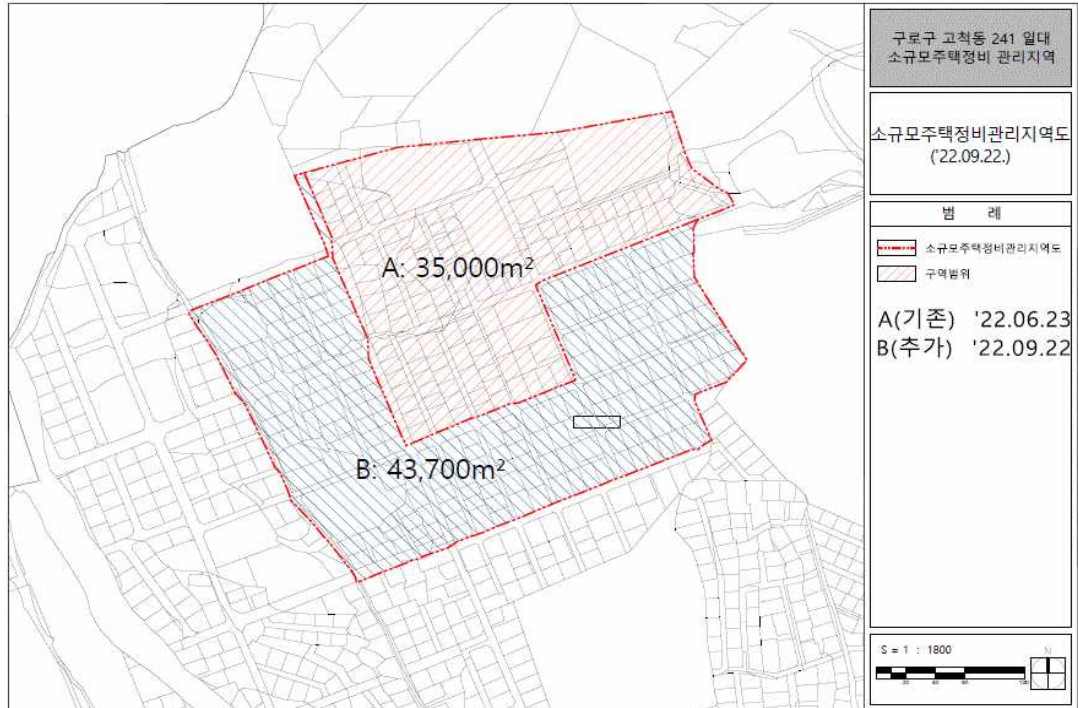
15. 강남구 일원동 619-641 일원



16. 강동구 천호동 113-2 일원



17.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89호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10호(2005.1.15.)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05호(2017.6.8.)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나들이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나들이근린공원 내 놀이터(뽕동산)를 화단으로 정비하여 공원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73-5번지 일대
3. 면 적 : 32,000㎡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02-2133-2067)
서울특별시 북부공원여가센터 조경지원과(☎.02-2289-4083)

나들이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중랑구 망우동 산 30-7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응답 (기)	건 축 물 (㎡)			공작물 응답 (기)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2,000.00	10,430.8	3동	256.90	249.70	6.00	3동	256.90	249.70	5.00	-
	5,596.00	5,596.00	-	-	-	-	-	-	-	-	-
기 단 시 설	3,922.00	3,922.00	-	-	-	-	-	-	-	-	-
	1,674.00	1,674.00	-	-	-	-	-	-	-	-	-
광 장	700.00	700.00	-	-	-	-	-	-	-	-	증308.0㎡
휴 양 시 설	144.00	144.00	-	-	-	5	-	-	-	5	-
운 동 시 설	793.5	793.5	-	-	-	-	-	-	-	-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기)	시설면적 (㎡)	건 축 물 (㎡)			공작물 (기)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동 (수)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964.60	964.60	2동	70.40	70.40	-	964.60	2동	70.40	70.40	-
편익시설	1289.5	1289.5	-	-	-	-	1289.5	-	-	-	-
유위시설	663.00	663.00	-	-	-	1	355.00	-	-	-	김/308.0㎡
관리시설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280.20	1동	186.50	179.30	-
녹지	21,569.2	-	-	-	-	-	21,569.2	-	-	-	-
시설률 (바탕 40%(이하))	10,430.80 ÷ 32,000.00 × 100 = 32.59%						10,430.80 ÷ 32,000.00 × 100 = 32.59%				
건폐율 (바탕 15%(이하))	256.90 ÷ 32,000.00 × 100 = 0.80%						256.90 ÷ 32,000.00 × 100 = 0.80%				

2. 시설조서

구분		변						전						경						비고	
		변			경			전			경			변			경				
														후			후				
시설명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 시설	합계			32,000.00	10,430.80	3동	256.90	249.70	6			32,000.00	10,430.80	3동	256.90	249.70	5				
	소계			5,596.00	5,596.00	-	-	-	-			5,596.00	5,596.00	-	-	-	-				
	도로			3,922.00	3,922.00	-	-	-	-			3,922.00	3,922.00	-	-	-	-				
	광장	가	전지역	1,674.00	1,674.00	-	-	-	-	가	전지역	1,674.00	1,674.00	-	-	-	-				
조경 시설	소계			700.00	700.00	-	-	-	-			700.00	700.00	-	-	-	-	증)308.0㎡			
	피크닉장	나		320.00	320.00	-	-	-	-	나		320.00	320.00	-	-	-	-				
	휴게데크	다		133.00	133.00	-	-	-	-	다		133.00	133.00	-	-	-	-				
	수로	라		247.00	247.00	-	-	-	-	라		247.00	247.00	-	-	-	-				
휴양 시설	화단			-	-	-	-	-	-	바		308.00	308.00	-	-	-	-	증)308.0㎡			
	목교	①	초화원사이	-	-	목재	-	-	-	①	초화원사이	-	-	목재	-	-	-				
	소계			144.00	144.00	-	-	-	5			144.00	144.00	-	-	-	5				
	휴게소	마	발맞사지주 변	144.00	144.00	-	-	-	-	마	발맞사지주 변	144.00	144.00	-	-	-	-				
유형 시설		마-1		(72.0)	-	-	-	-	-	마-1		(72.0)	-	-	-	-	-				
		마-2		(72.0)	-	-	-	-	-	마-2		(72.0)	-	-	-	-	-				
	파고라	②	전지역	-	-	목재	-	-	5	②	전지역	-	-	목재	-	-	-	5			
유형 시설	소계			663.00	663.00	-	-	-	1			663.00	355.00	-	-	-	-	증)308.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	연면적 (㎡)								바닥면적 (㎡)			연면적 (㎡)	
	놀이터	바		308.00	308.00	-	-	-	-	-	-	-	-	-	-	-	-	-	-	-	감308.00㎡
	뽕동산 ③			-	-	막구조	-	-	-	1			-	-	-	-	-	-	-	-	삭제
	채형의술 사			355.00	355.00	-	-	-	-	-	사			355.00	355.00	-	-	-	-	-	
	소계			793.50	793.50	-	-	-	-	-				793.50	793.50	-	-	-	-	-	
운동 시설	맨발건강원 아			627.00	627.00	-	-	-	-	-	아			627.00	627.00	-	-	-	-	-	
	베드민턴장 자			166.5	166.5	-	-	-	-	-	자			166.5	166.5	-	-	-	-	-	
교양 시설	소계			964.60	964.60	-	2동	70.40	70.40	-	-			964.60	964.60	-	2동	70.40	70.40	-	
	농가체험장 차			861.20	861.20	-	-	-	-	-	차			861.20	861.20	-	-	-	-	-	
	농가주택 2			71.20	71.20	-	1동	51.60	51.60	-	2			71.20	71.20	-	1동	51.60	51.60	-	
	외양간 3			32.20	32.20	-	1동	18.80	18.80	-	3			32.20	32.20	-	1동	18.80	18.80	-	
편익 시설	소계			1,289.50	1,289.50	-	-	-	-	-				1,289.50	1,289.50	-	-	-	-	-	
	주차장 카			1,289.50	1,289.50	-	-	-	-	-	카			1,289.50	1,289.50	-	-	-	-	-	
관리 시설	소계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관리사무소 타		운영센터 및 매점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타		운영센터 및 매점	280.20	280.20		1동	186.50	179.30	-	
녹지 및 기타			전지역	21,569.20							전지역		21,569.20								

3.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90.00	3,922.00				
변경	합 계				990.00	3,922.00				
당초		소 계			990.00	3,922.00				
변경					990.00	3,922.00				
당초	소로	(2)	(1)	8.0	285.00	2,280.00	진입도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변경		2	1	8.0	285.00	2,280.00	진입도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당초		(2)	(2)	8.0	50.00	400.00	연결로	소로2-1	북측경계	
변경		2	2	8.0	50.00	400.00	연결로	소로2-1	북측경계	
당초	산책로		1	2.0	73.00	146.00	산책로	소로2-1	동측경계	
변경			1	2.0	73.00	146.00	산책로	소로2-1	동측경계	
당초			2	1.2	86.00	104.00	산책로	휴게데크	맨발건강원 하부	
변경			2	1.2	86.00	104.00	산책로	휴게데크	맨발건강원 하부	
당초			3	2.0	17.00	34.00	연결로	입구광장	산책로-6	
변경			3	2.0	17.00	34.00	연결로	입구광장	산책로-6	
당초			4	2.0	30.00	60.0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변경			4	2.0	30.00	60.00	연결로	산책로-6	산책로-7	
당초			5	2.0	126.00	252.00	연결로	산책로-7	입구광장	
변경			5	2.0	126.00	252.00	연결로	산책로-7	입구광장	
당초			6	2.0	53.00	106.00	연결로	산책로-7	나들이마당	
변경			6	2.0	53.00	106.00	연결로	산책로-7	나들이마당	
당초			7	2.0	93.00	186.00	산책로	소로2-1	나들이마당	
변경			7	2.0	93.00	186.00	산책로	소로2-1	나들이마당	
당초			8	2.0	152.00	304.00	산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변경			8	2.0	152.00	304.00	산책로	북측경계	남측경계	
당초			9	2.0	25.00	50.0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8	
변경			9	2.0	25.00	50.0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8	



조성계획도 [변경후]

타이포그라피를 배우는 방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

연번	자치구	명 칭(예정)	위 치	면적(㎡)	비고
1	은평구	세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신사동 338-71번지 일대	14,889.7	

2. 권리기준산정일 : 2024. 10. 17.(목)

※ 당해 고시 게재일

3. 지정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02-2133-7071) 또는 아래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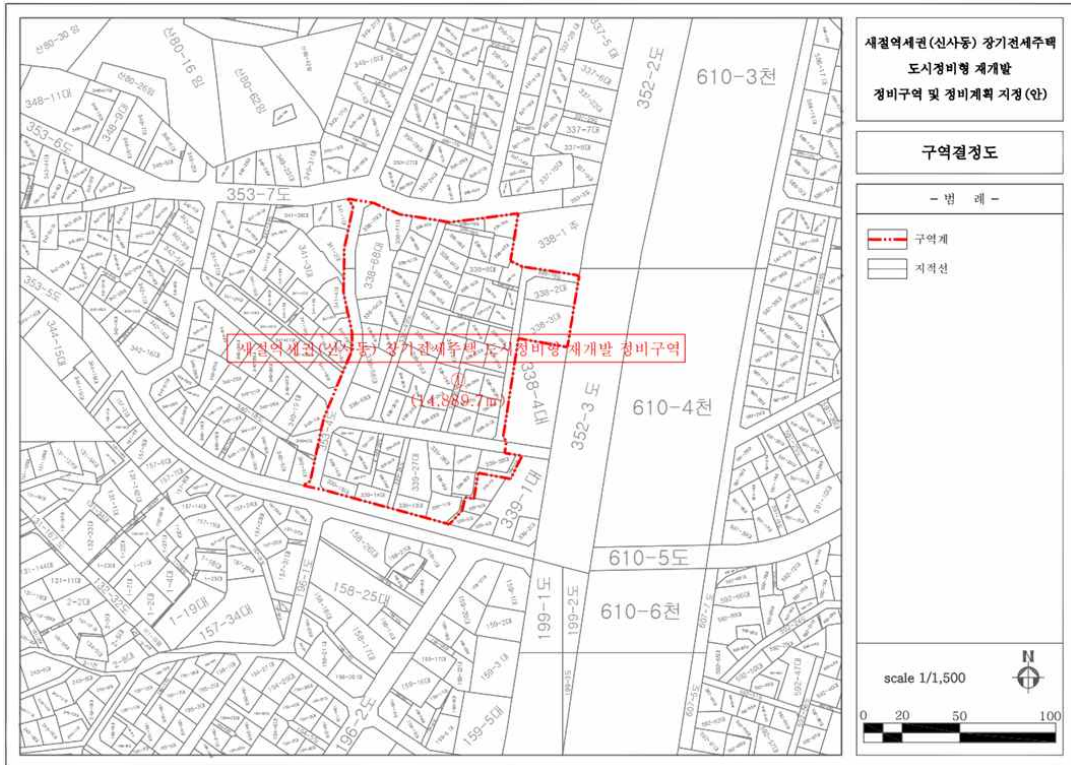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비고
은평구	정비사업신속추진단	02-351-7474	

※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투기방지대책」(‘23. 10. 26. 시행)에 따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을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공람공고한 날’로 따로 정함에 따라 고시함

※ 첨부된 관계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관계도면

○ 새절역세권(신사동)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5호(2023.11.16.)’로 고시한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37,319.8㎡	전체 : 129동 노후·불량 : 99동(76.7%)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쌍문동 494-22 번지 일대	31,303.0	증) 6,016.8	37,319.8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면적 : 37,319.8㎡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7,319.8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30,946.4	82.9	-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4,449.5	38.7	-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6,496.9	44.2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267.2	8.8	-
		-	도로	948.2	2.6	-
		-	공원	1,943.0	5.2	-
		-	공공공지	376.0	1.0	-
	사업가능 구역 외	소 계		3,106.2	8.3	-
		우이 천변	도로	3,106.2	8.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단위 : ㎡)

구분	합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도로	공원	공공공지
합계	34,213.6	30,946.40	3,267.20	948.20	1,943.00	376.00
1-1	14,975.2	14,449.5	525.7	525.7	-	-
1-2	19,238.4	16,496.9	2,741.5	422.5	1,943.0	376.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도로

• 도로 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8	20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1	78	20~23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기정	중로	2	98	15~18	보조 간선	2,775	쌍문동 대-38	우이동 중1-178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2	98	15~18	보조 간선	2,775	쌍문동 대-38	우이동 중1-178	일반	서고89호 (1972.7.6.)	-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07	쌍문동 505-5	쌍문동 490-1	일반	-	-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1,488	쌍문동 494-22	쌍문동 494-137	일반	서고89호 (1972.6.30.)	-
변경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1,488	쌍문동 494-22	쌍문동 494-137	일반	서고89호 (1972.6.30.)	-
폐지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17	쌍문동 495-56	쌍문동 497-16	일반	서고89호 (1972.7.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계획(안)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중로1-78	중로1-78	도로 변경	· 1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3m)
중로2-98	중로2-98	도로 변경	· 획지 조성에 따른 선형조정
-	소로2-A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소로3-204	소로3-204	도로 변경	· 획지 조성 및 도로신설에 따른 선형조정
소로3-31	-	도로 폐지	· 획지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나) 공원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소공원1	소공원	쌍문동 498-41번지 일대	-	증)1,943.0	1,943.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공원1	· 소공원 신규 설치 - 1,943.0㎡	우이천변 수변중심 공간 형성을 위해 공원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쌍문동 497-38번지 일대	-	증)376.0	376.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공공공지 계획	· 공공공지 신규 설치 - 376.0㎡	수변중심 공간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우이천로	•사업가능구역1-1, 1-2 : 우이천로에서 차량 진출입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모아주택 내 기존 통행 체계 유지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보행자 우선도로	삼양로154길 (소로3-204구간)	•우이천변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 (삼양로154길) 조성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4,213.6 (37,319.8)	433	507	-	-	-	-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14,975.2	146	153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6-8번지 일대	19,238.4	287	354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34,213.6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14,975.2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6-8번지 일대	19,238.4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 (제2종(7층)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사업 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종	150% 이하
		2종(7층)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3) 높이계획은 '24년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 24.8.23)' 에 따르며, 구체적인 높이계획은 사업시행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가)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 가능구역 외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통경축 확보구간	삼양로154길 (소로2-A)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폭20m) ●기존 삼양로154길 가로축 고려 ●북한산국립공원 및 쌍문근린공원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북한산 또는 도봉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1개소 이상 확보 ●사업시행구역별 계획한 통경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
건축한계선	가로변, 통경축확보 구간	●삼양로154길(소로2-A)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 적용(기타 구간 건축한계선 3m 적용) ●1-2구역 우이천변 공공공지 하부 건축한계선 18m 적용	-
주요조망가로	해등로변, 우이천변	●해등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15m 구간 높이 28m 적용 ●우이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9m 구간 높이 28m 적용	-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선 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전면공지 설정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 공지는 보도 연속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삼양로154길 (소로2-A)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기존 보행로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799	164	-	-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73	76	-	-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6-8번지 일대	426	88	-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9)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319.8	-	37,319.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55.2	-	2,555.2	6.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4,764.6	감) 30,946.4	3,818.2	1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증) 30,946.4	30,946.4	82.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 건축 구역	-	증) 34,213.6	34,213.6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37,319.8	100.0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30,929.8	82.9	
		1 사업가능구역 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0,929.8	82.9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3,283.8	8.8	
		- 도로	930.1	2.5	
		- 공원1	1,002.6	2.7	
		- 공원2	975.1	2.6	
		- 공공공지	376.0	1.0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사업가능 구역 외	소 계		3,106.2	8.3	
	우이 천변	도로	3,106.2	8.3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단위 : ㎡)

구분	합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도로	공원1	공원2	공공공지
1	34,213.6	30,929.8	3,283.8	930.1	1,002.6	975.1	376.0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도로

• 도로 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8	20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1	78	20~23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기정	중로	2	98	15~18	보조 간선	2,775	쌍문동 대-38	우이동 중1-178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2	98	15~18	보조 간선	2,775	쌍문동 대-38	우이동 중1-178	일반	서고89호 (1972.7.6.)	-
신설	소로	2	A	8	국지 도로	106	쌍문동 505-5	쌍문동 490-1	일반	-	-
기정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1,488	쌍문동 494-22	쌍문동 494-137	일반	서고89호 (1972.6.30.)	-
변경	소로	3	204	6	국지 도로	1,488	쌍문동 494-22	쌍문동 494-137	일반	서고89호 (1972.6.30.)	-
폐지	소로	3	31	6	국지 도로	117	쌍문동 495-56	쌍문동 497-16	일반	서고89호 (1972.7.6.)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계획(안)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중로1-78	중로1-78	도로 변경	· 1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3m)
중로2-98	중로2-98	도로 변경	· 획지 조성에 따른 선형조정
-	소로2-A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소로3-204	소로3-204	도로 변경	· 획지 조성 및 도로신설에 따른 선형조정
소로3-31	-	도로 폐지	· 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나) 공원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소공원1	소공원	쌍문동 494-26번지 일대	-	증)1,002.6	1,002.6	-	-
신설	②	소공원2	소공원	쌍문동 498-1번지 일대	-	증)975.1	975.1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공원1	· 소공원 신규 설치 - 1,002.6㎡	우이천변 수변중심 공간 형성을 위해 공원 신설
소공원2	· 소공원 신규 설치 - 975.1㎡	우이천변 수변중심 공간 형성을 위해 공원 신설

다) 공공공지

• 공공공지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공공지	공공공지	쌍문동 497-38번지 일대	-	증)376.0	376.0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공공지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공공공지 계획	공공공지 신규 설치 - 376.0㎡	수변중심 공간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우이천로	•우이천로에서 차량 진출입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모아주택 내 기존 통행 체계 유지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보행자 우선도로	삼양로154길 (소로3-204구간)	•우이천변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보행자 위주의 가로환경(삼양로154길) 조성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사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34,213.6 (37,319.8)	433	507	-	-	-	-
1	사업가능구역 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4,213.6	433	507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해당없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6)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 (제2종(7층)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사업 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종	150% 이하	
		2종(7층)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3) 높이계획은 '24년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 24.8.23)' 에 따르며, 구체적인 높이계획은 사업시행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7)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용도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가)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 가능구역 외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통경축 확보구간	삼양로154길 (소로2-A)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폭20m) •기존 삼양로154길 가로축 고려 •북한산국립공원 및 쌍문근린공원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북한산 또는 도봉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1개소 이상 확보 •사업시행구역별 계획한 통경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건축한계선	가로변, 통경축확보 구간	•삼양로154길(소로2-A)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 적용(기타 구간 건축한계선 3m 적용)	-
주요조망가로	해등로변, 우이천변	•해등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15m 구간 높이 28m 적용 •우이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9m 구간 높이 28m 적용	-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선 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전면공지 설정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 공지는 보도 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삼양로154길 (소로2-A)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기존 보행로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881	178	-	-
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881	178	-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7,319.8	-	37,319.8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2,555.2	-	2,555.2	6.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4,764.6	감) 30,929.8	3,834.8	10.3	-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증) 30,929.8	30,929.8	82.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 건축 구역	-	증) 34,213.6	34,213.6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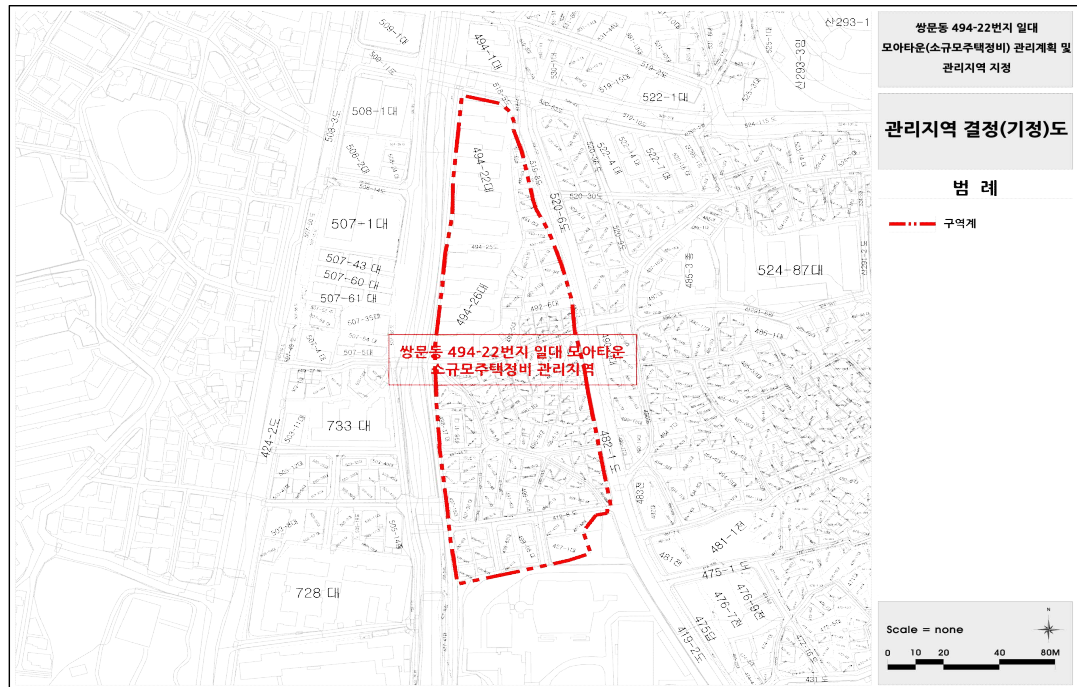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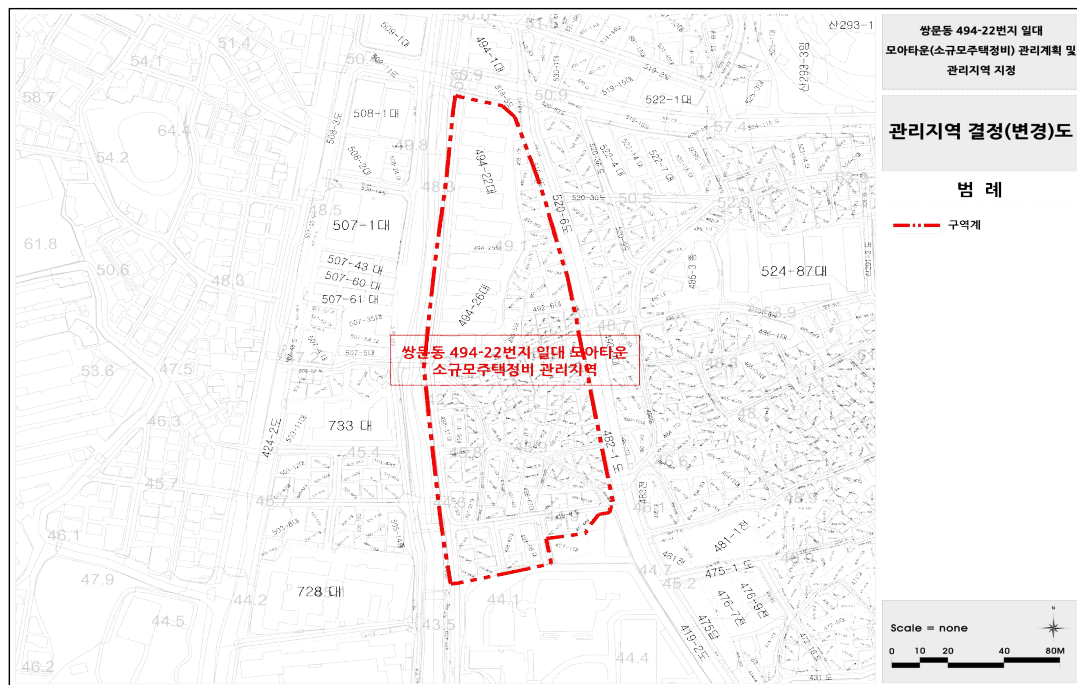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가. 관리지역 결정

■ 관리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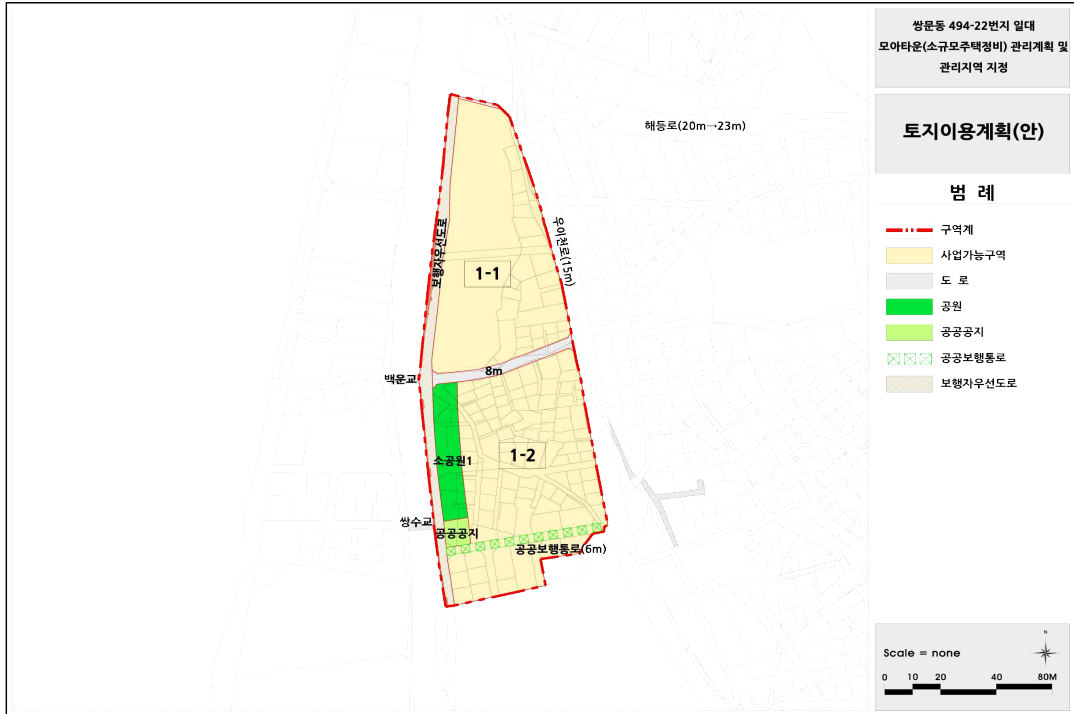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변경)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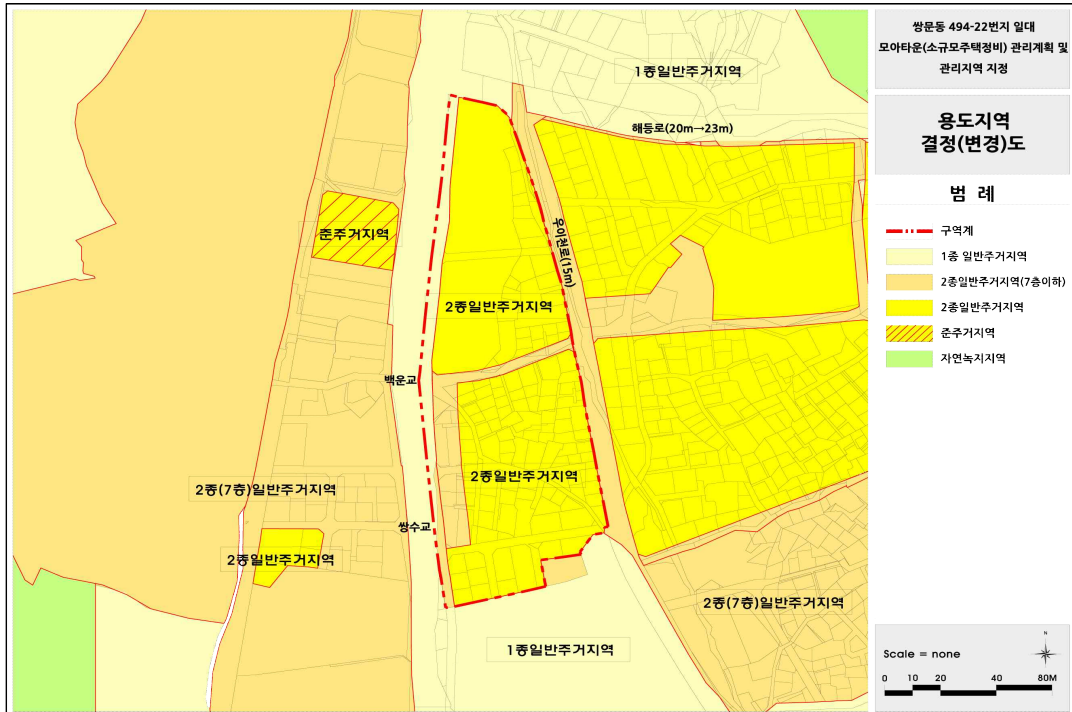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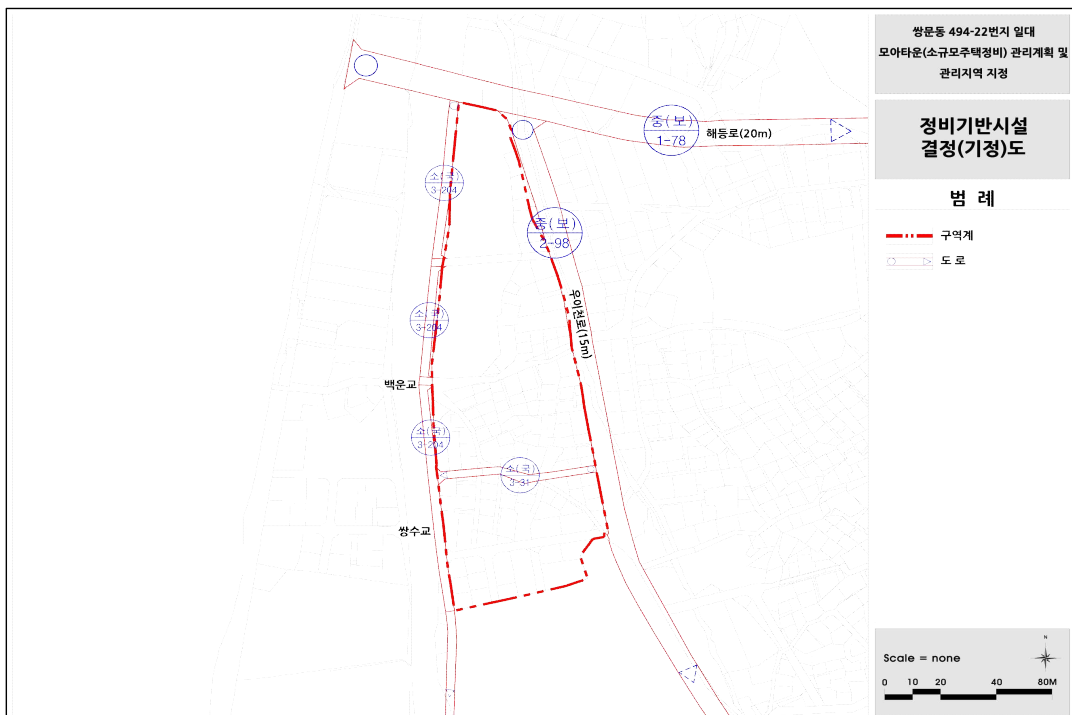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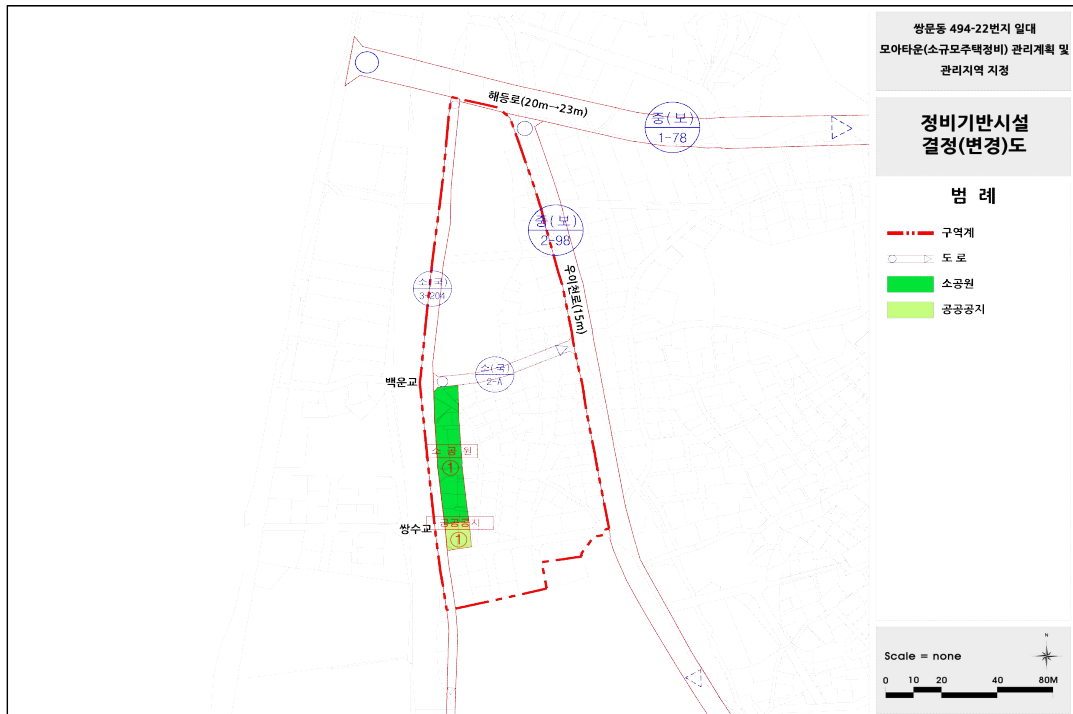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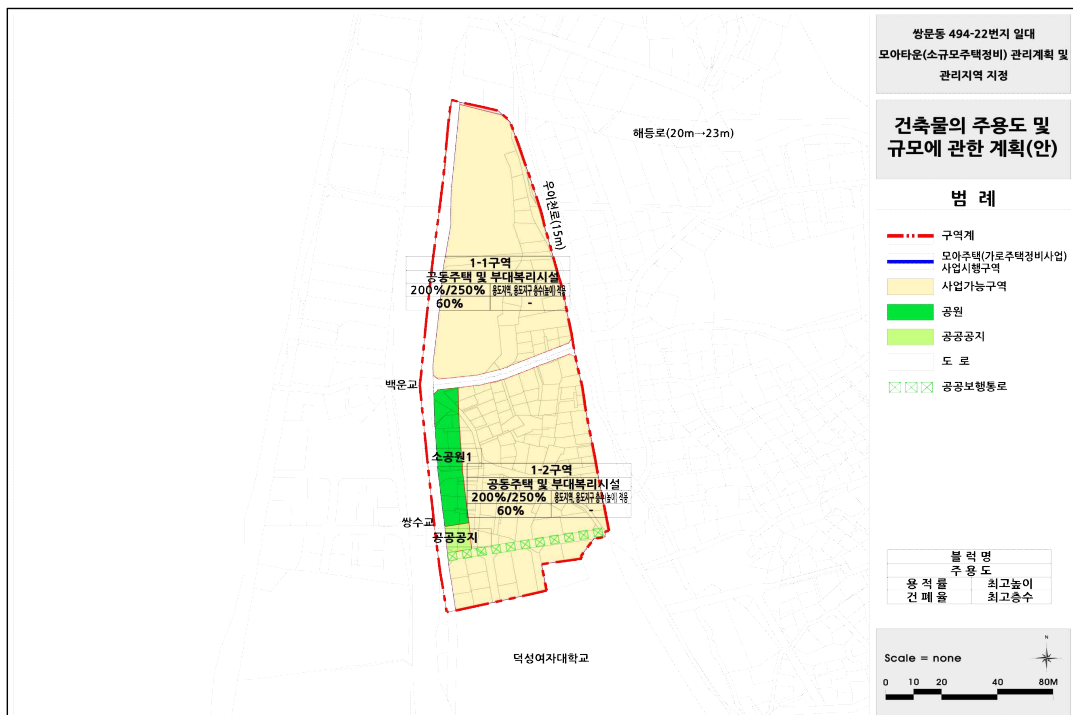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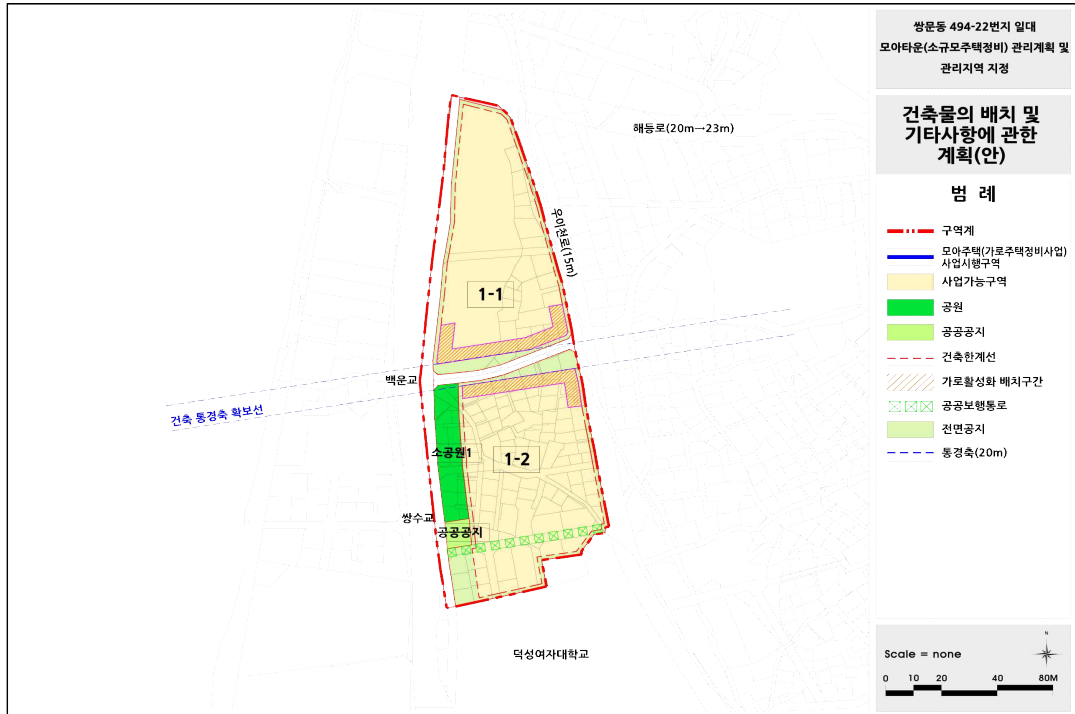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안)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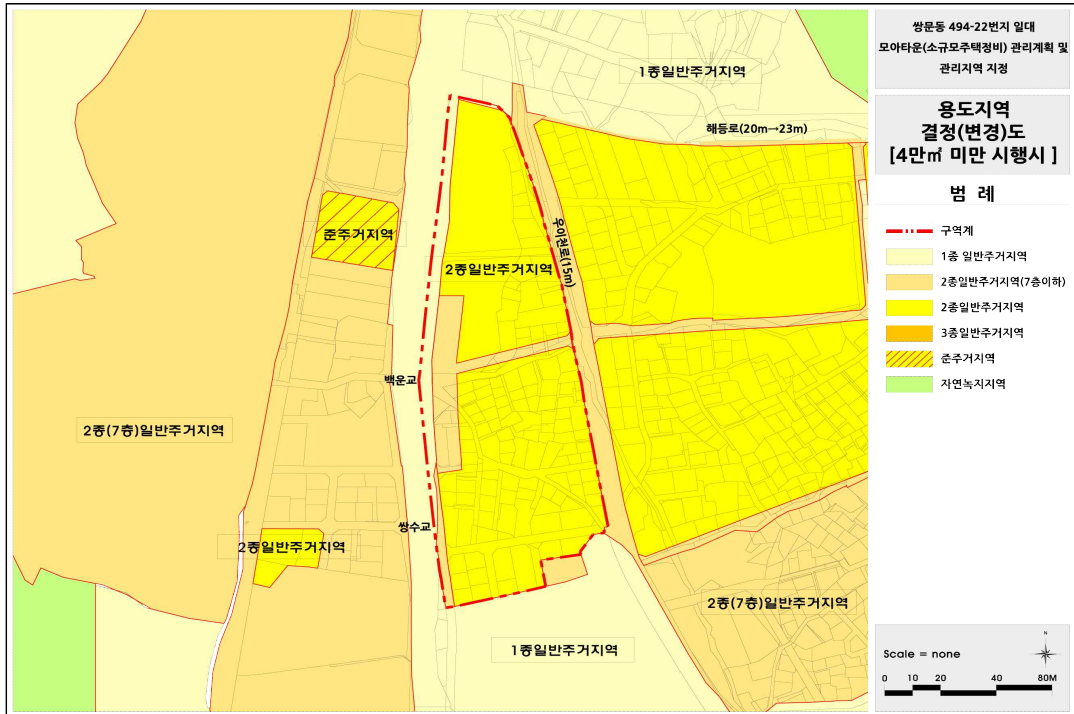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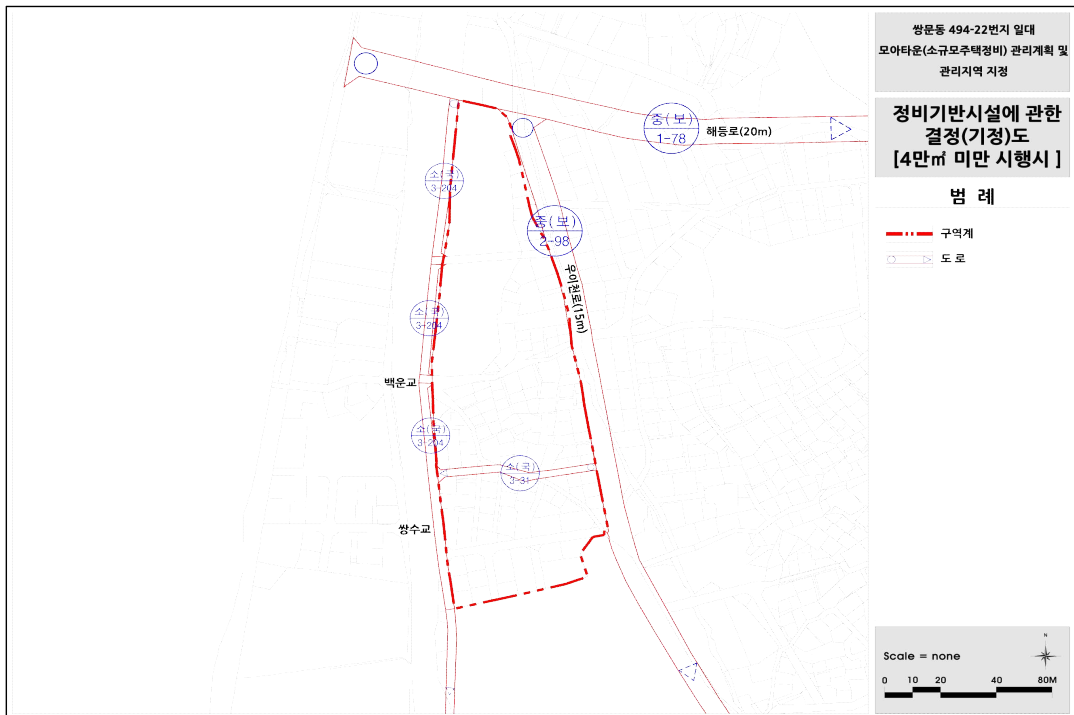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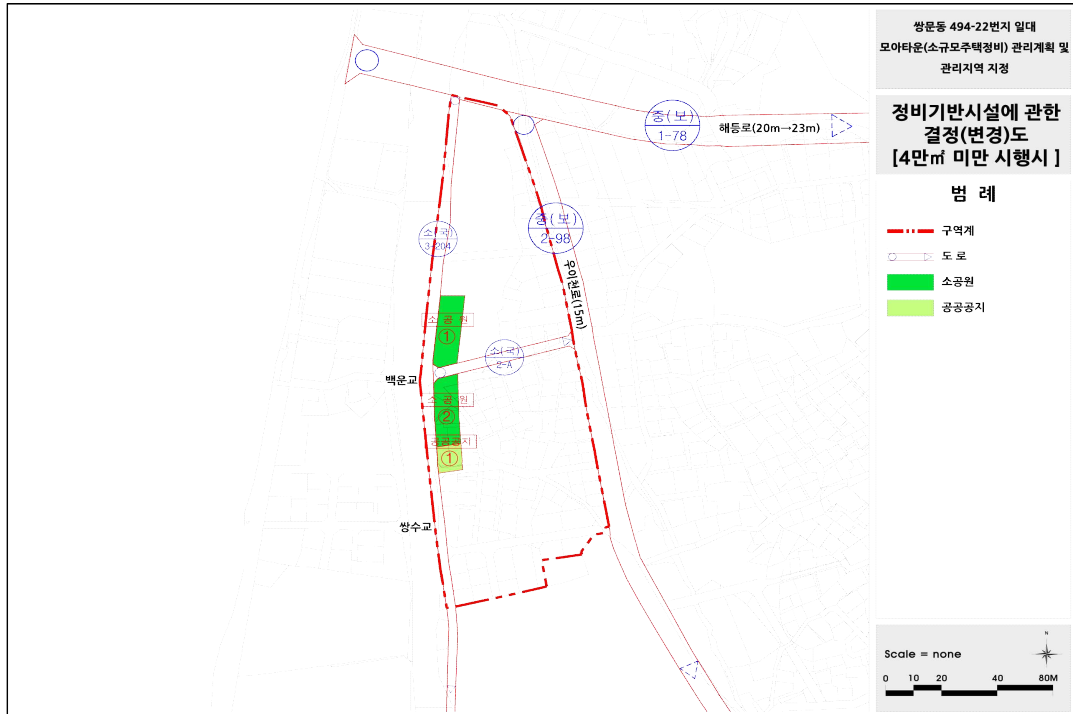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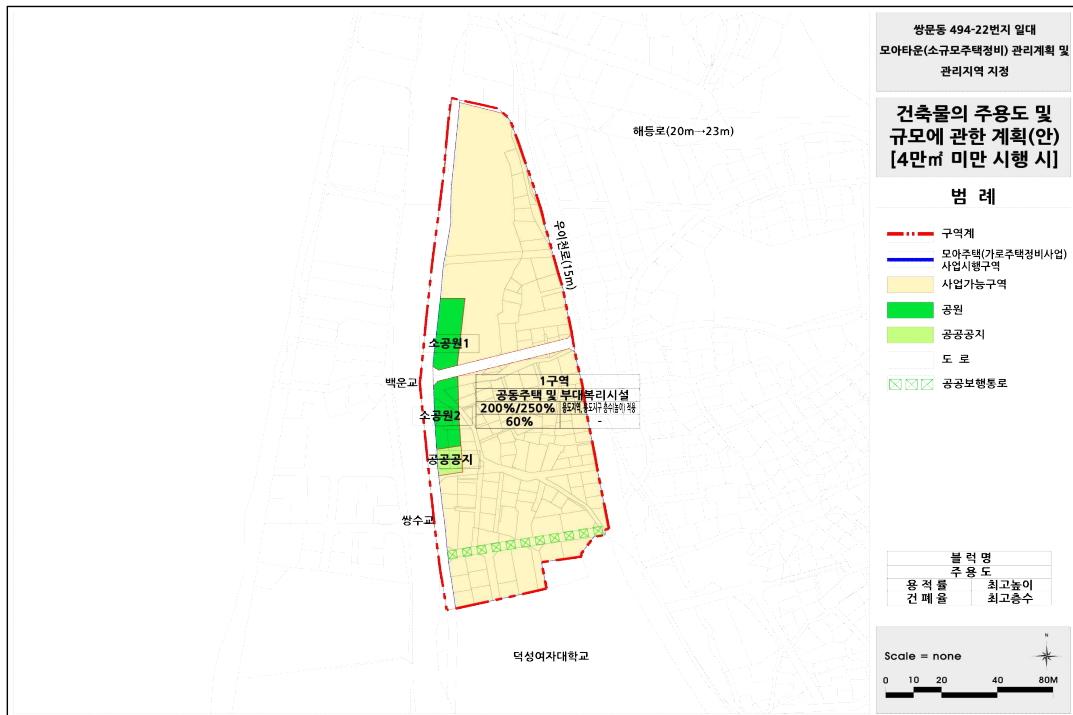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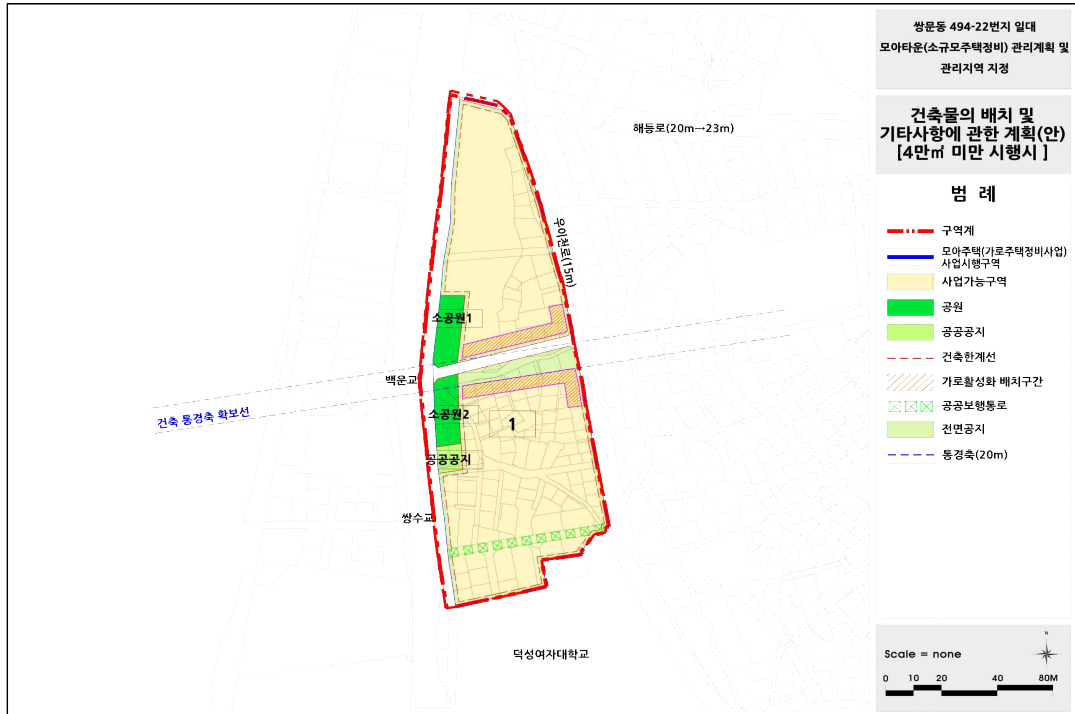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안)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96호(2023.11.16.)’ 로 고시한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 치	관리계획의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83,526.0㎡	전체 : 280동 노후·불량 : 233동(83.2%)	

다. 정비방향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 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1) 관리지역 결정 조서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82,630.0	증) 896.0	83,526.0	-

2) 관리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 시	명칭	결정 내용	결정 사유
-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위치 :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 면적 : 83,526.0㎡	노후·신축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계획적·효율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과 정비기반시설 등의 확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도모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83,526.0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73,058.9	87.5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2,837.9	15.4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7,645.1	21.1	-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929.9	16.7	-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3,638.7	16.3	-
		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15,007.3	18.0	-
	정비 기반 시설	소 계	7,557.1	9.0	-
		- 도로	6,047.4	7.2	-
		- 공원	1,509.7	1.8	-
	사업가능 구역 외	소 계	2,910.0	3.5	-
		준치 종교시설	1,782.0	2.1	-
		준치 주택용지	1,128.0	1.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단위 : m²)

구분	합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도로	공원
합계	80,616.0	73,058.9	7,557.1	6,047.4	1,509.7
2-1	15,185.2	12,837.9	2,347.3	837.6	1,509.7
2-2	19,016.4	17,645.1	1,371.3	1,371.3	-
2-3	15,884.2	13,929.9	1,954.3	1,954.3	-
2-4	14,684.9	13,638.7	1,046.2	1,046.2	-
2-5	15,845.3	15,007.3	838.0	838.0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도로

• 도로 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8	20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1	78	20~23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201	쌍문동 490	쌍문동 486-54	일반	-	-
신설	소로	2	C	6	국지 도로	133	쌍문동 486-81	쌍문동 524-13	일반	-	-
신설	소로	2	D	6	국지 도로	108	쌍문동 478-112	쌍문동 486-81	일반	-	-
신설	소로	3	A	4~7	국지 도로	256	쌍문동 490	쌍문동 478-112	일반	-	-
폐지	소로	3	36	6	국지 도로	50	쌍문동 522-1	쌍문동 524-19	일반	서고89호 (1972.7.6.)	-
폐지	소로	3	37	6	국지 도로	285	쌍문동 524-9	쌍문동 491	일반	서고89호 (1972.7.6.)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4	쌍문동 486-18	쌍문동 524-29	일반	서고185호 (1973.12.1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계획(안)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중로1-78	중로1-78	도로 변경	· 1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3m)
-	소로2-B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2-C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2-D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3-A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소로3-36	-	도로 폐지	· 획지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37	-	도로 폐지	· 획지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	-	도로 폐지	· 획지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나) 공원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②	소공원2	소공원	쌍문동 520-25번지 일대	-	증)1,509.7	1,509.7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공원2	· 소공원 신규 설치 - 1,509.7㎡	가로활성화 배치구간 활성화 및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신설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우이천로, 소로2-B 구간, 소로2-C 구간	•사업가능구역2-1, 2-2 : 우이천로에서 차량 진출입 •사업가능구역2-3, 2-4 : 2-3구역, 2-4구역 경계부 도로(소로2-B)를 통해 진출입 •사업가능구역2-5 : 2-3구역, 2-5구역 경계부 도로(소로2-C)를 통해 진출입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모아주택 내 기존 보행 체계 유지 및 녹지축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통경축(쌍문근린공원~우이천) 연계 및 대상지 내 남북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사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80,616.0 (83,526.0)	1,098	1,152	-	-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2-4번지 일대	15,185.2	213	270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19,016.4	278	286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15,884.2	259	226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번지 일대	14,684.9	154	164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8번지 일대	15,845.3	194	206	조합 (예정)	-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구분	위치	면적(㎡)	통합적용	완화적용
합계	-	64,770.7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2-4번지 일대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건축법」 제61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번지 일대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사업 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종	150% 이하
		2종(7층)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3) 높이계획은 '24년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 24.8.23)' 에 따르며, 구체적인 높이계획은 사업시행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가) 건축물의 용도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허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 가능구역 외	유형	• 공동주택 용지	-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통경축 확보구간	우이천로48길 (소로2-B), 획지내 (2-5구역)	•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폭20m) • 기존 우이천로48길 가로축 고려 • 북한산국립공원 및 쌍문근린공원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구분	내용		비고
	사업시행구역	- 북한산 또는 도봉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1개소 이상 확보 - 사업시행구역별 계획한 통경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건축한계선	가로변, 통경축 확보구간	우이천로48길(소로2-B), 획지 내(2-5구역)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 적용(기타 구간 건축한계선 3m 적용)	-
주요조망가로	해등로변	해등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15m 구간 높이 28m 적용	-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선 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통경축확보구간)	-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전면공지 설정 -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 공지는 보도 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우이천로48길(소로2-B)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통로	획지 내 (2-1구역, 2-2구역, 2-3구역, 2-4구역, 2-5구역)	2-1구역, 2-3구역 : 대상지 남북측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2-2구역, 2-4구역 : 대상지 남북측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2-5구역 : 통경축을 고려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
보차혼용통로	획지 내 (2-3구역, 2-4구역, 2-5구역)	2-3구역 : 개별 사업진행시 차량통행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2개소 지정 2-4구역 : 개별 사업진행시 차량통행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1개소 지정 2-5구역 : 개별 사업진행시 차량통행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1개소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35	371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2-4번지 일대	348	70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470	92	-	-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402	66	-	-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번지 일대	369	68	-	-
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8번지 일대	346	75	-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3,526.0	-	83,526.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195.6	감) 14,823.2	372.4	0.4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8,330.4	감) 58,235.7	10,094.7	12.1	-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증) 73,058.9	73,058.9	87.5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 건축 구역	-	증) 80,616.0	80,616.0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계			83,526.0	100.0	-
사업 가능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계	70,052.1	83.9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8,751.7	46.4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31,300.4	37.5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10,563.9	12.6	-
		- 도로	6,058.1	7.3	-
		- 공원	4,505.8	5.4	-
	사업가능 구역 외	소계	2,910.0	3.5	-
		존치 종교시설	1,782.0	2.1	-
		존치 주택용지	1,128.0	1.4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단위 : ㎡)

구분	합계	획지	정비기반시설		
			소계	도로	공원
합계	80,616.0	70,052.1	10,563.9	6,058.1	4,505.8
2-1	46,914.7	38,751.7	8,163.0	3,657.2	4,505.8
2-2	33,701.3	31,300.4	2,400.9	2,400.9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2) 정비기반시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가) 도로

• 도로 계획(안)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조성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8	20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서고89호 (1972.7.6.)	-
변경	중로	1	78	20~23	보조 간선	4,000	창동 대3-38	우이동 대3-57	일반		-
신설	소로	2	B	8	국지 도로	197	쌍문동 490	쌍문동 486-54	일반	-	-
신설	소로	2	C	6	국지 도로	132	쌍문동 486-81	쌍문동 524-13	일반	-	-
신설	소로	2	D	6	국지 도로	118	쌍문동 478-112	쌍문동 486-81	일반	-	-
신설	소로	3	A	4~7	국지 도로	256	쌍문동 490	쌍문동 478-112	일반	-	-
폐지	소로	3	36	6	국지 도로	50	쌍문동 522-1	쌍문동 524-19	일반	서고89호 (1972.7.6.)	-
폐지	소로	3	37	6	국지 도로	285	쌍문동 524-9	쌍문동 491	일반	서고89호 (1972.7.6.)	-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4	쌍문동 486-18	쌍문동 524-29	일반	서고185호 (1973.12.13.)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도로 계획(안)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중로1-78	중로1-78	도로 변경	· 1차선 확보를 위한 일부구간 폭원확장(3m)
-	소로2-B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2-C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2-D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	소로3-A	도로 신설	· 기존 미지정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결정 사유
소로3-36	-	도로 폐지	· 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37	-	도로 폐지	· 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3-1	-	도로 폐지	· 획지 조성에 따른 도로 폐지

나) 공원

• 공원 계획(안)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③	소공원3	소공원	쌍문동 486-77번지 일대	-	증)4,505.8	4,505.8	-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공원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소공원3	· 소공원 신규 설치 - 4,505.8㎡	통경축 및 쌍문근린공원과의 녹지공간 연계를 고려한 공원 신설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교통계획(안)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우이천로, 소로2-B구간, 소로2-C구간	·사업가능구역2-1, 2-2 : 우이천로에서 차량 주진출입, 계획도로(소로2-B 및 소로2-C)를 통해 부진 출입	-
공공보행통로	우이천로45길	·모아주택 내 기존 보행 체계 유지 및 녹지축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통경축(쌍문근린공원~우이천) 연계 및 대상지 내 남북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도면 표시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 업 계 획					비 고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 단계	최초 결정일	
합 계			80,616.0 (83,526.0)	1,098	1,152	-	-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46,914.7	666	702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33,701.3	432	450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

※ ()는 모아타운 전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해당없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6) 건폐율 ·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사업가능 구역	건폐율	60% 이하		공동주택 (제1종일반주거, 제2종(7층)일반주거→ 제2종일반주거)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상한 25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사업 가능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1종	150% 이하	
		2종(7층)	200% 이하	
	높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층수(높이) 적용		

1) 법 제48조 및 제43조의4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에는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용적률을 정할 수 있음

2) 모아주택사업 시행시 건축물의 규모(높이, 밀도 등)는 향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3) 높이계획은 '24년 제1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 결과(' 24.8.23)' 에 따르며, 구체적인 높이계획은 사업시행 시 결정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가) 건축물의 용도

구 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가능구역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사업 가능구역 외	유 형	●공동주택 용지	-
	허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해 토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불 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나)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구분	내용		비고
통경축 확보구간	우이천로48길 (소로2-B), 획지 내(2-5구역)	●건축물 배치 계획 시 통경축 확보(폭20m) ●기존 우이천로48길 가로축 고려 ●북한산국립공원 및 쌍문근린공원 경관 및 조망을 위한 배치 유도	-
	사업시행구역	●북한산 또는 도봉산 방향으로의 통경축 1개소 이상 확보 ●사업시행구역별 계획한 통경축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	-
건축한계선	가로변, 통경축확보구간	●우이천로48길(소로2-B), 획지 내(2-5구역)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 적용(기타 구간 건축한계선 3m 적용)	-
주요조망가로	해등로변	●해등로변 : 건축한계선 3m로부터 폭 15m 구간 높이 28m 적용	-

구분	내용		비고
전면공지	획지 내 (건축선 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통경축확보구간)	•건축한계선과 대지경계선 사이 전면공지 설정 •가로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전면 공지는 보도 부속형으로 조성	-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구간	우이천로48길 (소로2-B)	•가로활성화 시설 배치 - 커뮤니티 가로 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 배치 유도	-
공공보행통로	획지 내 (2-1구역, 2-2구역)	•2-1구역, 2-2구역 : 대상지 남북측 통행을 위한 공공보행통로(6m) 1개소 지정	-
보차혼용통로	획지 내 (2-1구역, 2-2구역)	•2-1구역 : 개별사업시 차량통행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2개소 지정 •2-2구역 : 개별사업시 차량통행을 고려한 보차혼용통로(6m) 1개소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97	315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1,094	143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903	172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3,526.0	-	83,526.0	100.0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195.6	감) 9,803.0	5,392.6	6.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8,330.4	감) 63,255.9	5,074.5	6.0	-
제2종일반주거지역	0.0	증) 73,058.9	73,058.9	87.5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도면 표시	면적(㎡)			계획내용	계획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특별 건축 구역	-	증) 80,616.0	80,616.0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지역환경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3.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략주택공급과(☎ 02-2133-8227) 및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가. 관리지역 결정

- 관리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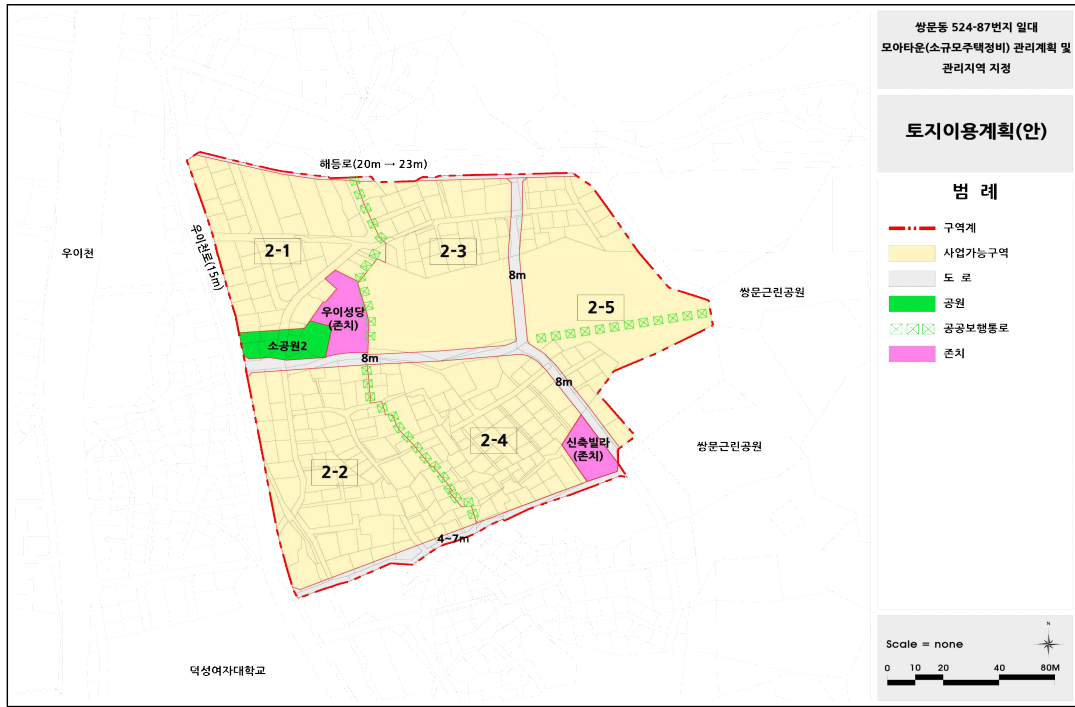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변경)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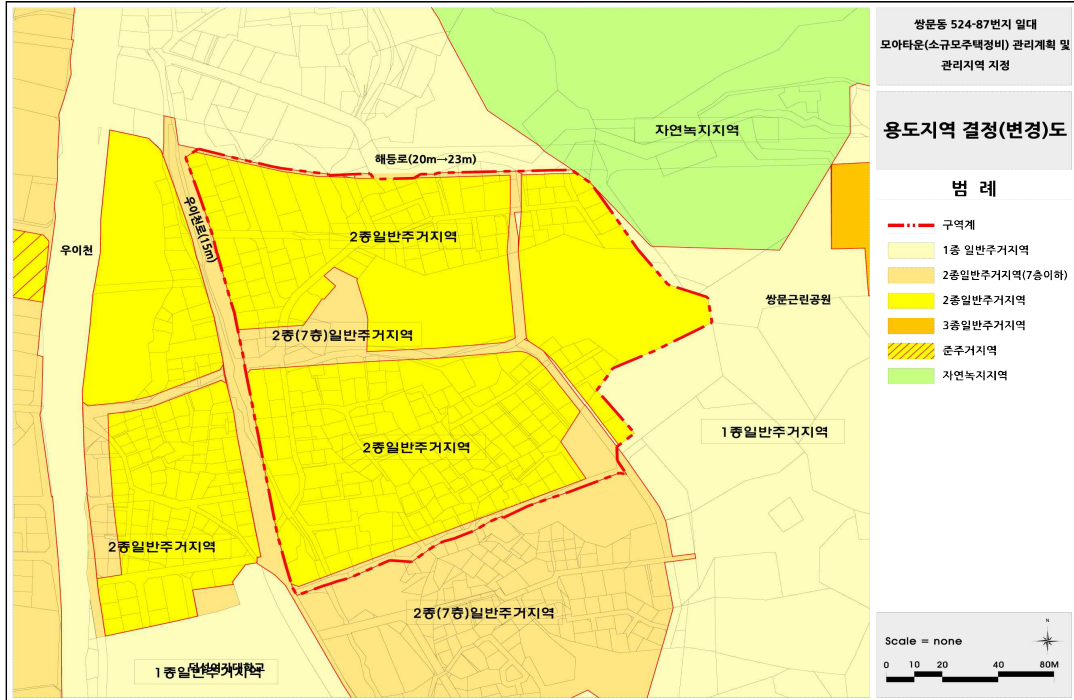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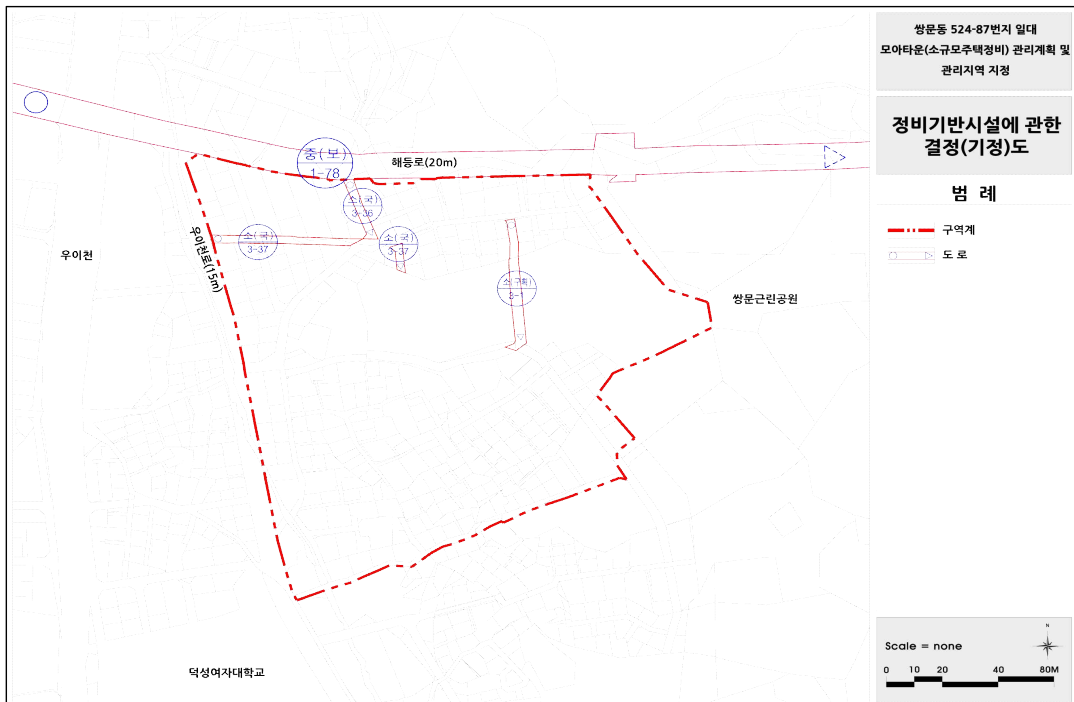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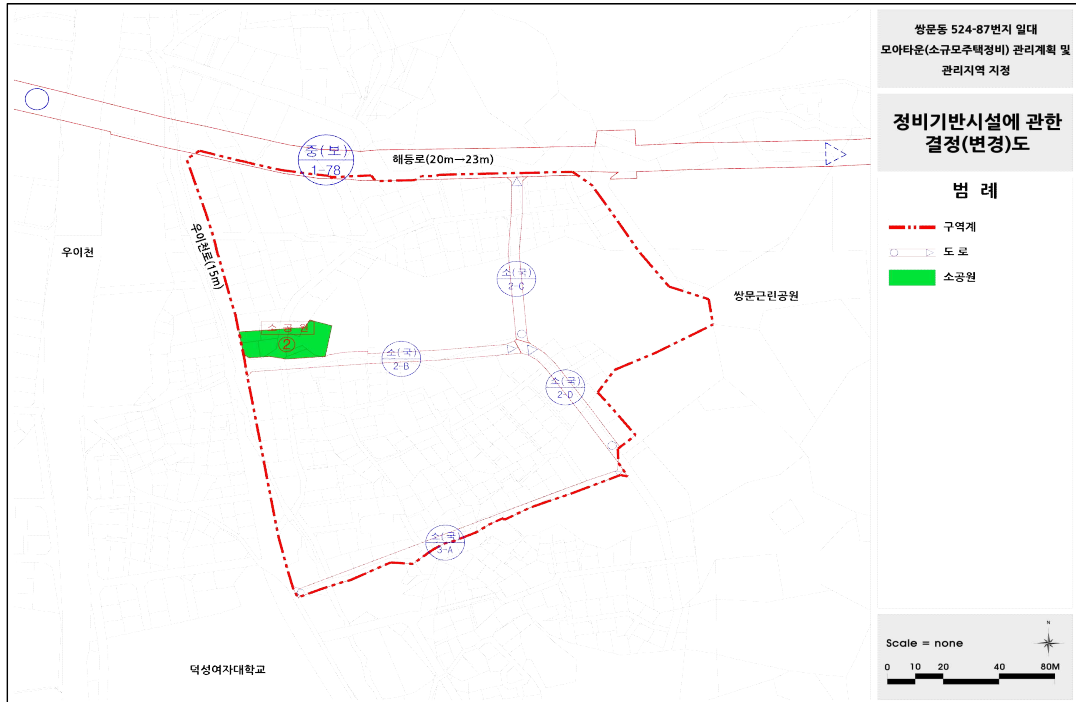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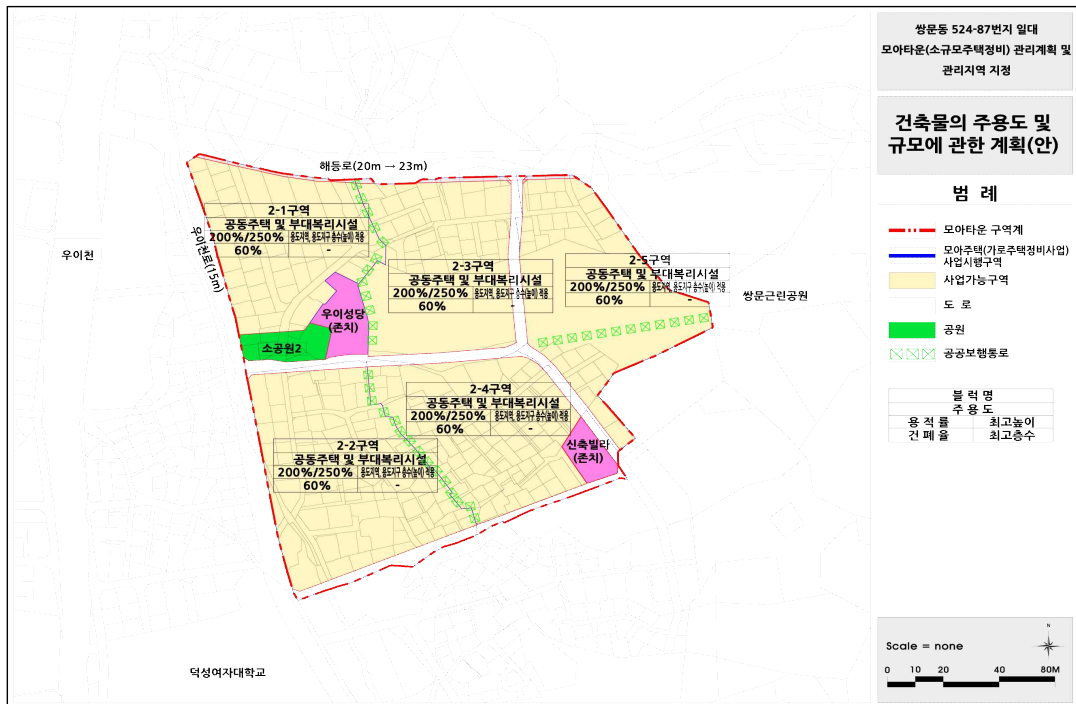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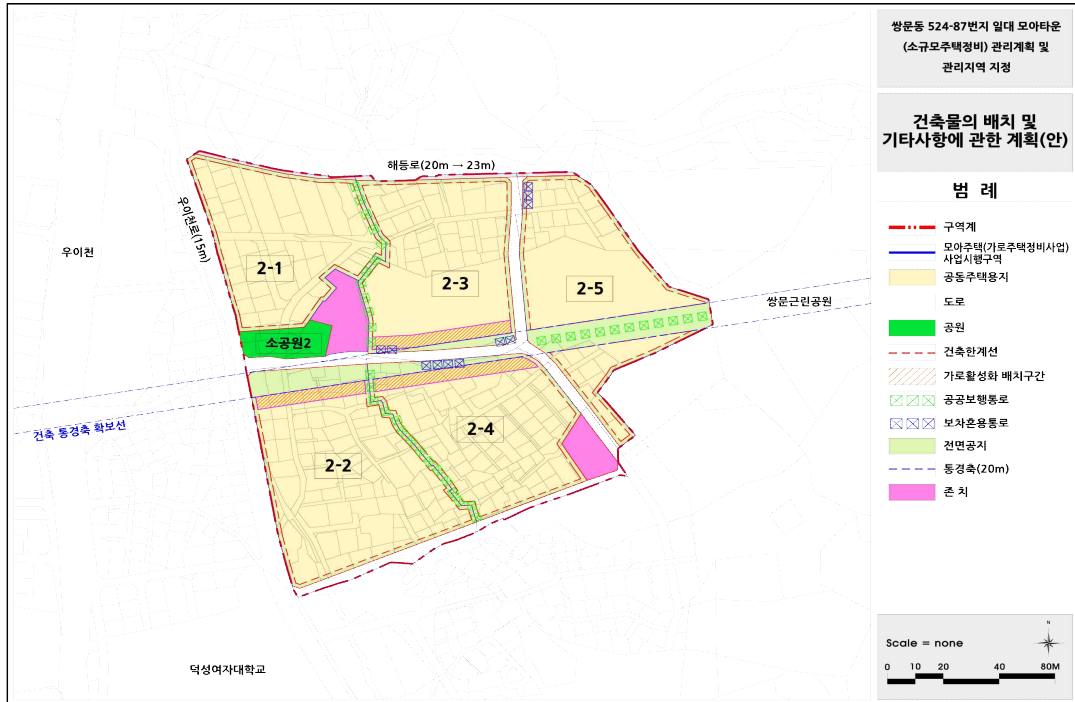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안)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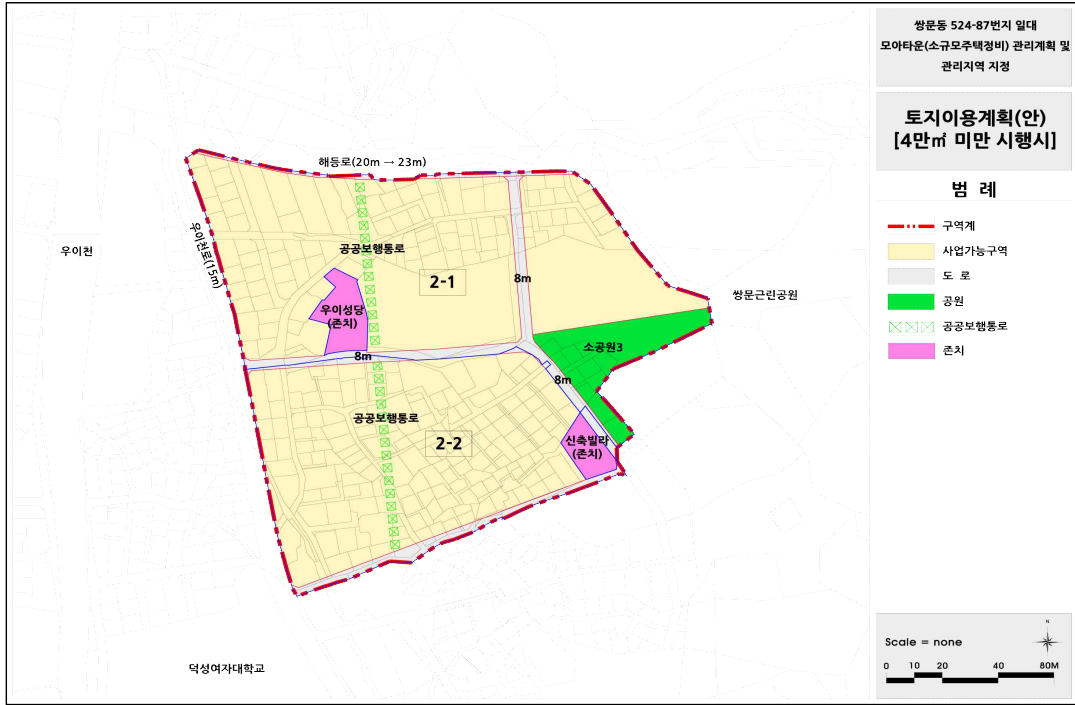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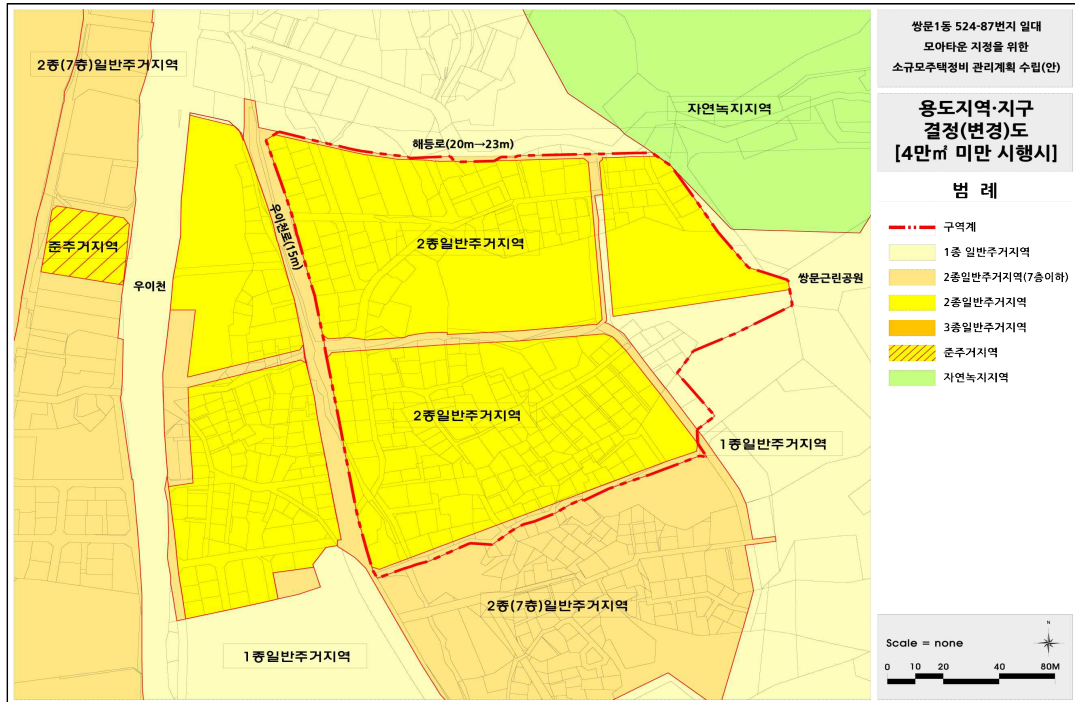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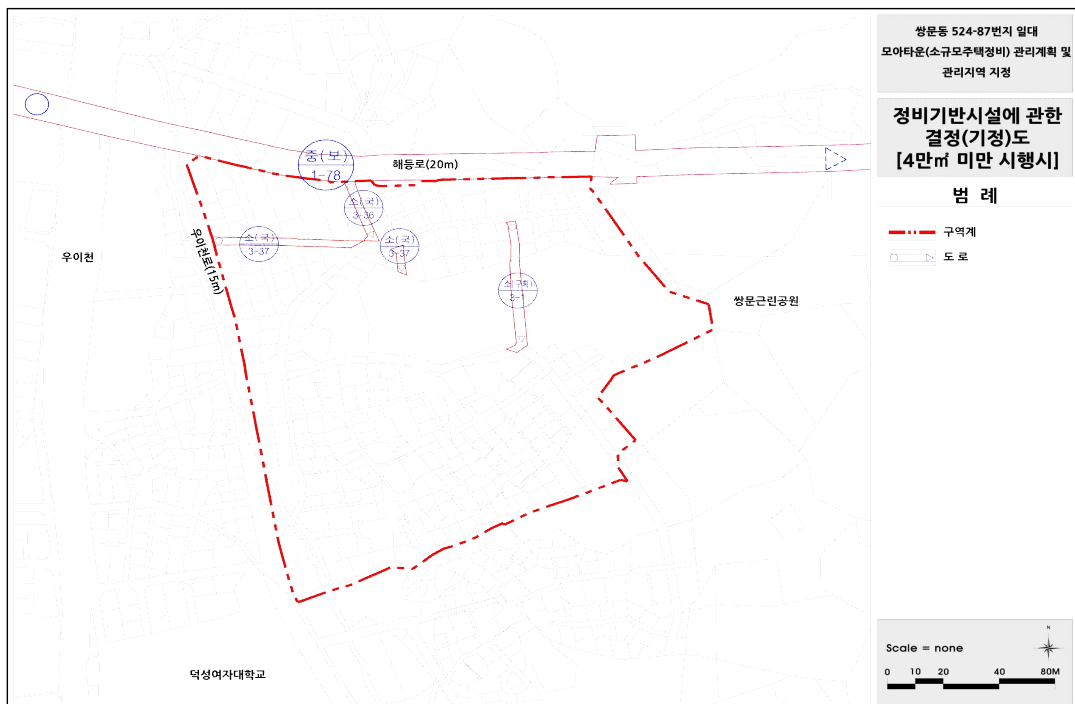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 (안)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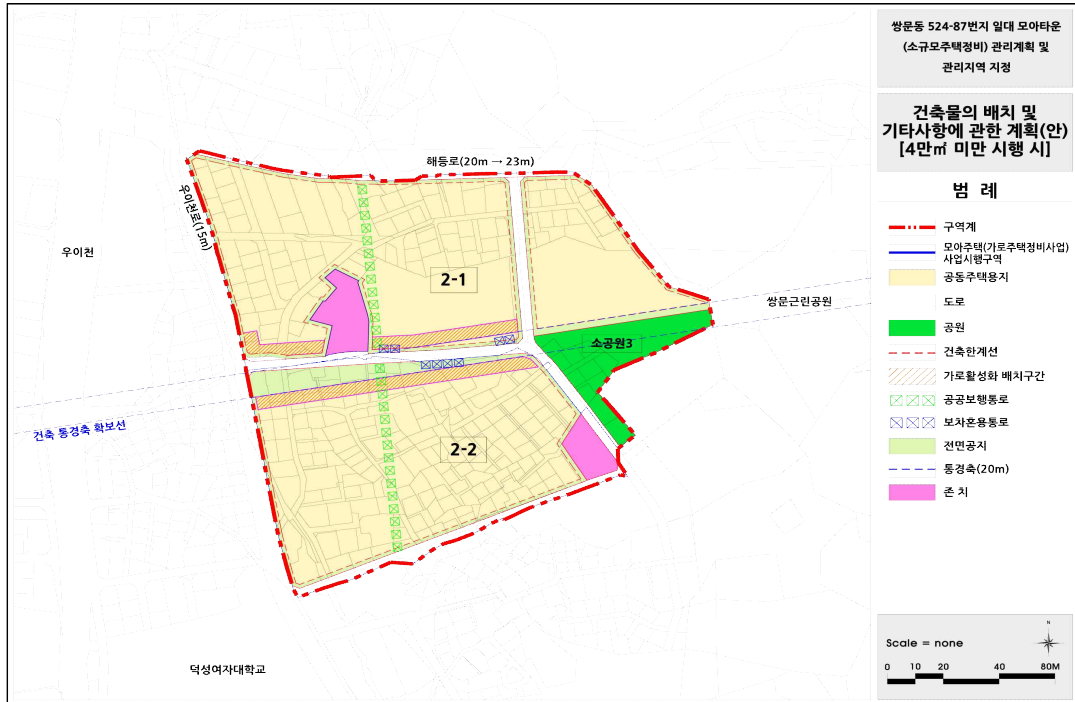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 (안)



■ 건축물 주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안)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안)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안)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3호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의 실효와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94(2020.09.24.)호로 결정된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에 대하여 3년동안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 의한 사업추진계획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위 실효 결정으로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은 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I.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실효 조서
1.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해제

구 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길음시장 시장정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	10,470	-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			

2.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 길음시장정비사업조합
3.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폐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정	총 계		10,470.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324.5	3.1	
	획 지	획 지	10,145.5	96.9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5. 건축물의 주용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 ·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결정 : 해제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높이)	연면적(㎡)	비고
기정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59.59% 이하	393.92% 이하	28층 이하 (최고높이 91m 이하)	77,909.63㎡ 이하 (매장면적 : 13,364.64㎡ 포함)	-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					

6.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 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하여 동법 제39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가 없을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승인은 효력을 상실함

II.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해제

구분	구역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길음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외 7필지	10,470	-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			

2.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3. 토지이용계획 : 폐지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총 계		10,470.0	100.0	-
	정비기반시설 등	도 로	324.5	3.1	
	획 지	획 지	10,145.5	96.9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폐지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획 지	획지1	10,470.0	100.0	-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해제

구 분			내 용		비 고
기정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 획지1		-
	건폐율		- 59.59% 이하		
	용적률		- 393.92% 이하		
	높이		- 28층 이하 (91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경계로부터 3,6,10m - 인접대지경계선 1.5m(판매시설), 3m(공동주택) ※ 건축한계선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에 따름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 신설 :2개소(817.62㎡) - 공개공지는 주요도로 또는 주 보행통로에 면하여 설치 ※ 적용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원		
전면공지		■ 신설 : 폭 4m(299.08㎡) -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도공간 활용 ※ 적용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535-8번지 일원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해제				

5.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 같은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해제

Ⅲ.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변경) 조서 :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환원	시장	소매시장	길음동 535-8번 일원	-	증) 4,840.7	4,840.7	서울시고시 제386호 ('85.6.18)	-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역지정 이전상태로 환원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1	55	35~38	보조간선 도로	3,550 {99}	해화동 광장	미아 사거리	일반 도로	-	건고시294호 (78.10.02)	{ } 구역내 도로연장
변경 (환원)	대로	1	55	35~36	보조간선 도로	3,550 {19}	해화동 광장	미아 사거리	일반 도로	-	건고시294호 (78.10.02)	
기정	소로	1	A	10	국지도로	77	길음동 535-8	길음동 877-181	일반 도로	-	-	관리계획도면 연장반영 구역내 구간 폭원2~5m 확장
변경 (환원)	소로	2	15	8	국지도로	70	길음동 535-8	길음동 877-255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992-210호	-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폐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입체적 결정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수직적 범위		
기정	공1	공공 청사	공공업무시설	성북구 길음동 535-8 번지 일원	마을 공동체 종합지원 센터	- 연면적 : 2,287.35㎡ 지하1층 327.52㎡ 지하2층 1,959.83㎡ (전용 : 1,517.21㎡)	■ 층수 : 지하1~2층 (지하주차장 10대포함)	서울시고시 제2020 -394호 ('20.9.24)	-
	공2	공공 청사	공공업무시설	성북구 길음동 535-8 번지 일원	스타트업 지원센터	- 연면적 : 2,286.36㎡ 지하1층 348.43㎡ 지하2층 1,937.93㎡ (전용 : 1,517.66㎡)	■ 층수 : 지하1~2층 (지하주차장 10대포함)		
변경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른 폐지								

3. 변경취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제2항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4항에 의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은 실효(폐지)되고,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는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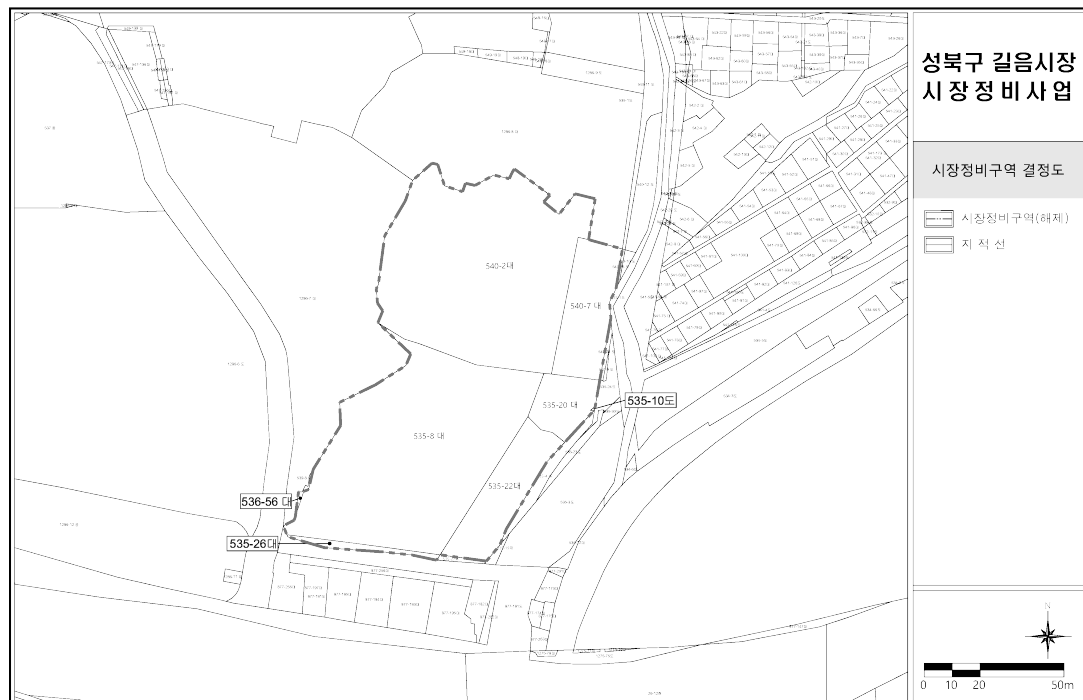
IV. 관련도면 : 따로붙임

1.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02-2133-8498)와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3)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2.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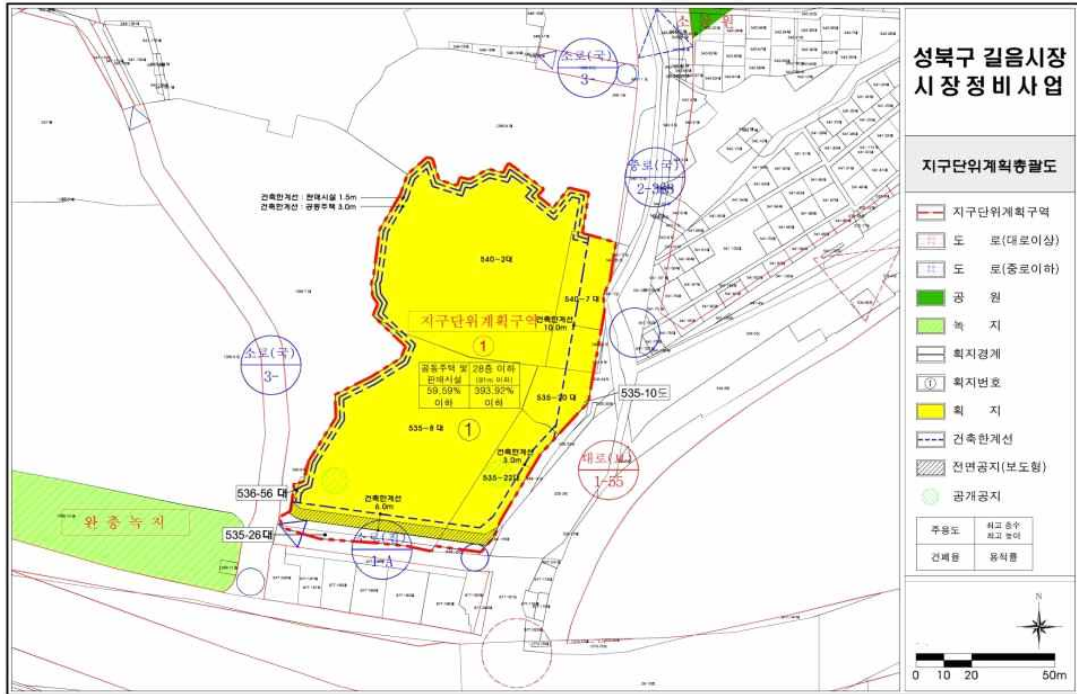
V. 기타사항

1. 위 시장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5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봄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 승인 효력 상실의 내용을 고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을 할 수 없음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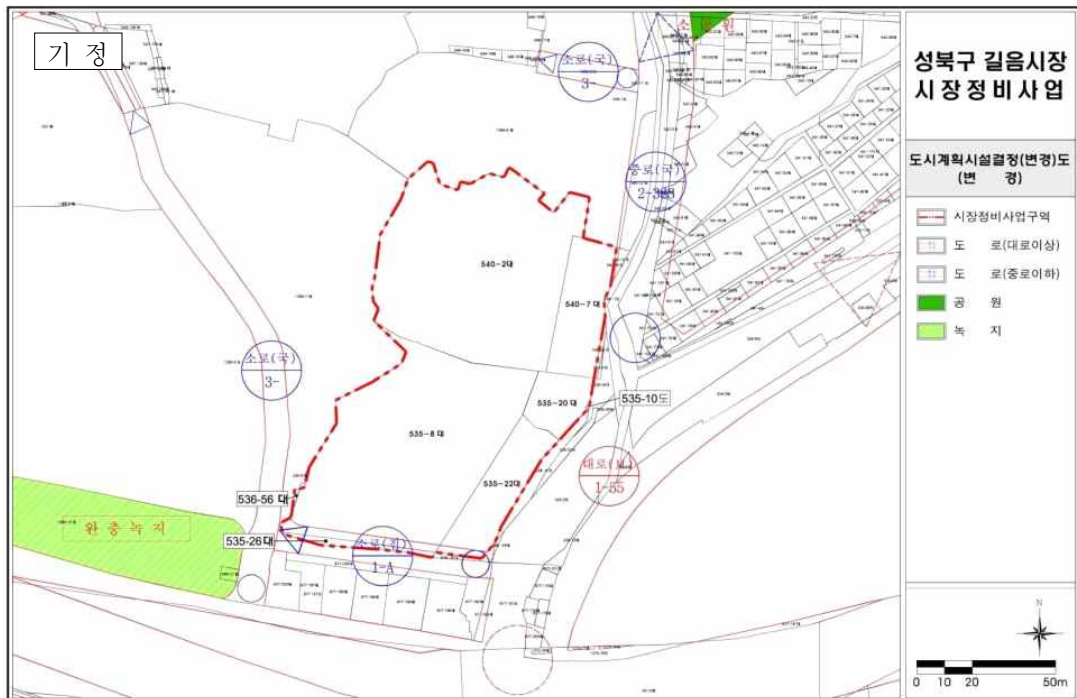
붙임. 길음시장정비사업 시장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실효)☐ 시장정비구역(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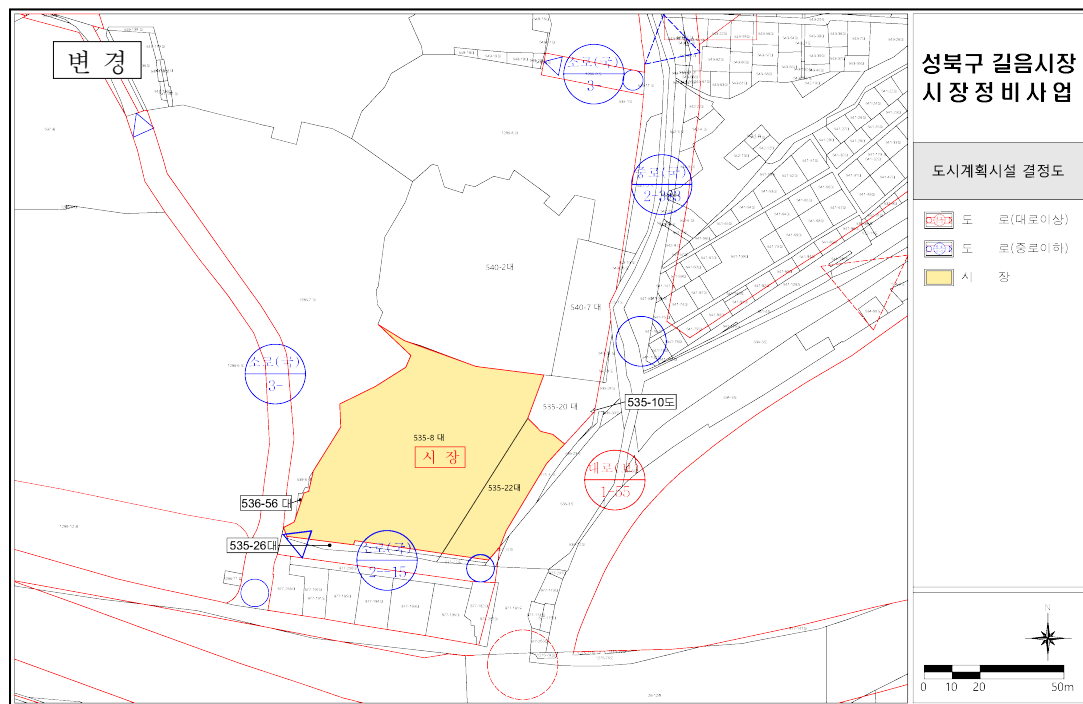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해제)



□ 도시계획시설(기정)



☐ 도시계획시설(시장, 도로) [변경(환원)]



☐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폐지)

지하1층

지하2층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4호

면목동 86-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18호(2022.12.22.)’로 고시한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2024.07.11.)’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변경)

가. 관리지역의 명칭 : 면목동 86-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96,993.59㎡	전체 : 440동 노후불량 : 371동(84.32%)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변경)

가. 관리지역의 지정

구분	관리지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안)	
신규	면목동 86-3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	97,000.59	감) 7.00	96,993.59	

○ 관리지역의 지정 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관리지역 면적	· 면목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면적 변경 : 97,000.59㎡ → 96,993.59㎡	· 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 저축 필지 (면목동 234-2번지) 제척으로 모아타운 관리지역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안)		
합 계				97,000.59	감)7.00	96,993.59	100.00	
시행 구역	공동 주택 용지	소 계		62,706.90	감)2,826.30	59,880.60	61.74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13,889.50	감)190.50	13,699.00	14.12	면목역 1구역 (조합설립인가)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9,975.90	감)163.60	15,930.90	16.42	면목역 2구역 (조합설립인가) (2·3구역통합)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	6,118.60				
		A3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10,550.80	감)1,368.40	16,772.20	17.29	면목역 4구역 (조합설립인가) (4·5구역통합)
			사업추진구역 5 (가로주택정비사업)	7,589.80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8,120.30	감)1,103.80	13,478.50	13.90	면목역 6구역 (조합설립인가) (6·7구역통합)
			사업추진구역 7 (가로주택정비사업)	6,462.00				
	정비 기반 시설	입체결정 도로		1,423.00	감)80.00	1,343.00	-	※ 함께 면적 미포함
		도로		12,837.39	증)679.50	13,516.89	13.94	
		공원(주차장)		1,005.00	-	1,005.00	1.04	중복결정
자율 정비 구역	대지	B1	주택용지 등	2,540.30	증)485.50	3,025.80	3.12	
		B2	주택용지 등	-	증)428.70	428.70	0.44	동원시장 주변 시행구역 제척
		C1	주택용지 등	2,369.80	-	2,369.80	2.44	
		C2	주택용지 등	-	증)1,313.10	1,313.10	1.35	동원시장 주변 시행구역 제척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안)		
		D1	주택용지 등	5,441.10	-	5,441.10	5.61	
		D2	주택용지 등	8,259.00	-	8,259.00	8.51	
	도로			1,058.90	감)87.50	971.40	1.00	
	주차장(정비기반시설)			782.20	-	782.20	0.81	

- ※ 시행구역 외에서 자율 정비구역으로 변경
 ※ 상기면적은 추후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토지이용계획	· 사업추진 구역 및 기반시설 결정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획지 및 기반시설 결정
	· 시행구역 내 변경 - 사업추진구역 1 : 13,889.50㎡→13,699.00㎡ - 사업추진구역 2·3 → 사업추진구역 2 - 사업추진구역 2 : 16,094.50㎡→15,930.90㎡ - 사업추진구역 4·5 → 사업추진구역 4 - 사업추진구역 4 : 18,140.60㎡→16,772.20㎡ - 사업추진구역 6·7 → 사업추진구역 7 - 사업추진구역 6 : 14,582.30㎡→13,478.50㎡ - 정비기반시설(도로) : 12,837.39㎡→13,516.89㎡ - 입체결경도로 : 1,423.00㎡→1,343.00㎡	- 면목역 2·3구역 → 2구역 조합 통합 - 면목역 4·5구역 → 4구역 조합 통합 - 면목역 6·7구역 → 6구역 조합 통합 - 동원시장 주변 사업추진구역에서 제척 - 관리지역 내에 기존 건축물 저축(면목동 1275, 1276) 및 노거수(면목동1248-1) 존치로 인한 정비기반시설(도로) 면적 변경 - 정비기반시설(도로) 확폭에 따른 변경
	· 자율 정비구역 - B1(주택용지 등) : 2,540.30㎡→3,025.8㎡ - B2(주택용지 등) : 428.70㎡ - C2(주택용지 등) : 1,313.10㎡ - 도로 : 1,058.90㎡ → 971.40㎡	- B1: 면목동 87-21 외 10필지 합필 및 면목동 87-5 시행구역(A4) 제척 - B2 : 면목동 86-23 외 3필지(동원시장) 시행구역(A4) 제척 - C2 : 면목동 100-9 외 9필지(동원시장) 시행구역(A3) 제척

다.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10	국지 도로	416	면목동 1269	면목동 87-1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467호 (1978.9.11.)	
변경	소로	1	1	10~14	국지 도로	416	면목동 1269	면목동 87-1	일반도로	-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0	면목동 1269	면목동 127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195	면목동 240	면목동 99-9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5	면목동 99-49	면목동 86-55	일반도로	-	서울특별시 고시 제518호 (2022.12.22.)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70	면목동 87-2	면목동 87-16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2	4~6	국지 도로	155	면목동 1274	면목동 97-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155	면목동 1274	면목동 97-3	일반도로	-		폭원 변경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55	면목동 100-30	면목동 100-3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4~6	국지 도로	103	면목동 100-30	면목동 100-32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113	면목동 86-10	면목동 86-25	보행자 우선	-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80	면목동 103-11	면목동 74-1	보행자 우선	-		기존 시장가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60	면목동 74-17	면목동 74-35	보행자 우선	-		기존 시장가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2-1	소로 1-1	· 도로 명칭 및 폭원 변경	- 노거수 존치 및 완화차선 확보에 따른 폭원 변경
소로 3-2	-	· 도로 폭원 변경	- 관리지역 내에 기존 건축물 저촉 및 교통 편의성 향상을 위 한 폭원 변경

2) 도로 입체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규모		비고
					당초	변경	
변경	소로 3-1	일반도로	면목동 87-2번지	길이	119m (전체 270m 중)	116m (전체 270m 중)	* 도시계획시설 - 도로(일반도로) : 750㎡ 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6m	6m	
				높이 (해발고도)	지표면 -1.2m ~ 지상부	지표면 -1.2m ~ 지상부	
변경	소로 3-5	보행자 우선도로	면목동 49-18 번지	길이	113m	99m (전체 113m 중)	* 도시계획시설 - 도로(보행자우선도로) : 593㎡ 입체결정 - 비도시계획시설 : 지하에 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폭	6m	6m	
				높이 (해발고도)	지표면 -1.2m ~ 지상부	지표면 -1.2m ~ 지상부	

※ 보행자 전용도로의 길이, 폭, 높이 면적은 구적 값으로 향후 측량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입체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로 3-1	· 입체결정 도로 길이 119m→ 116m 변경	- 소로1-1 확폭에 따른 입체결정 도로 길이 변경
소로 3-5	· 입체결정 도로 길이 113m→ 99m 변경	- 동원시장 접촉부 입체결정 도로 제척으로 길이 변경
소로 3-1	· 일반도로의 입체결정 : B=6m, L=116m, H=지표면-1.2m~지상부 · 공동주택 용지 중 750㎡를 지상의 일반도로로 입체결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결정으로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 및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 및 도로 개선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도로 입체결정
소로 3-5	· 보행자 우선도로의 입체결정 : B=6m, L=99m, H=지표면-1.2m~지상부 · 공동주택 용지 중 593㎡를 지상의 보행자 우선도로로 입체결정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현황	①	섬들	어린이 공원	면목동 86-3번지	1,005.0	-	1,005.0	서울특별시 고시 제141호 (1995.05.20.)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중복결정 - 지상: 공원 - 지하: 주차장
기정	①	섬들	어린이 공원	면목동 86-1번지 일원					
변경	①	섬들	어린이 공원	면목동 86-5번지 일원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변경사유
공원 계획	· 공원 위치 면목동 86-1번지 일원 → 면목동 86-5번지 일원으로 변경	- 동원시장 연계 및 지역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한 공원 위치 변경 - 사업추진구역 1 : 2 · 4 · 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공원 결정

4)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동원골목시장 공영주차장	면목동 74-33번지	782.2	-	782.2	중랑구 고시 제5호 (2002.02.19.)	기존시설 유지
폐지	③	면목 공영주차장	면목동 1262-1번지	273.0	감)273.0	-	중랑구 고시 제69호 (1997.12.12.)	폐지 및 모아주택 사업구역 내 편입
기정	③	주차장	면목동 86-1번지 일원	-	-	1,005.0	-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중복결정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변경	③	주차장	면목동 86-5번지 일원	1,005.0	-	1,005.0	-	도시계획시설 신설 및 중복결정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

○ 주차장 계획(안)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차장 계획	· 주차장 위치 면목동 86-1번지 일원 → 면목동 86-5번지 일원으로 변경	- 동원시장 연계 및 지역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한 주차장 위치 변경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주차장 결정

5) 도시계획시설(공원, 주차장) 중복결정(변경) 조서

－ 공원 중복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섬들	어린이 공원	면목동 86-1번지 일원	1,005.0	-	1,005.0	서울특별시 고시 제141호 (1995.05.20.)	주차장 중복결정 (1,005.00㎡)
변경	①	섬들	어린이 공원	면목동 86-5번지 일원					

－ 주차장 중복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③	주차장	면목동 86-1번지 일원	-	증)1,005.0	1,005.0	-	공원 중복결정 (1,005.00㎡)
변경	③	주차장	면목동 86-5번지 일원	1,005.0	-	1,005.0		

○ 도시계획시설(공원,주차장) 중복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 공원·주차장 위치 면목동 86-1번지 일원 → 면목동 86-5번지 일원으로 변경	- 동원시장 연계 및 지역주민 이용성 향상을 위한 중복결정시설 위치 변경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복결정

6)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변경)

○ 모아타운 내 추진되는 모아주택사업을 통해 주변 지역에 부족한 생활 편의 시설 확충

구분	시설유형	사유	비고
권장시설	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등	모아타운 내 부족한 시설을 고려하여 모아주택 사업시행구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조성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변경)

시설구분	도면표시	구역	위치	시설의 종류	면적(㎡)	비고
공동 이용 시설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계	736.32	
				문화센터	196.67	
				스터디 · 북카페	233.43	
				멀티미디어룸	95.68	
				어린이집	210.54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계	967.10	
				취미 · 북카페	268.91	
				실내체육센터	162.05	
				키즈카페	143.11	
				멀티미디어룸	62.74	
				어린이집	330.29	
	A3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번지 일대	계	688.18	
				공방 · 스터디카페	226.67	
				북카페	131.35	
				어린이집	330.16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19번지 일대	계	769.19	
				취미 · 스터디카페	192.49	
				문화교실	200.85	
				커뮤니티센터	165.53	
				어린이집	210.32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면적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단, 사업 시행 과정에서 공동이용시설 설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안)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사업추진구역 1(A1), 2(A2), 4(A3), 6(A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수립	- 사업추진구역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설치

라. 교통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상봉로, 상봉로15길(주가로), 면목로84가길, 면목로78길, 검재로49길, 상봉로15나길, 상봉로15가길	- 간선도로인 상봉로 변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 각각부 진출입 제한을 위해 상봉로15길, 면목로78길 등 일부 불허	
보행자 우선도로	상봉로15나길(소로3-5), 상봉로11길(소로3-6) 검재로(소로3-7)	- 사업추진구역 4 · 5 · 6 의 건축협정 및 입체결정을 통해 커뮤니티가로(상봉로15나길) 일부구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 기존 전통시장가로(상봉로11길, 검재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공공보행통로	면목로76길	- 사업추진구역 4 · 5 내 기존 가로체계 유지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계획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상봉로, 상봉로15길(주가로), 면목로84가길, 면목로78길, 검재로49길, 상봉로15나길, 상봉로15가길	- 간선도로인 상봉로 변으로 차량 진출입 불허 - 각각부 진출입 제한을 위해 상봉로15길, 면목로78길 등 일부 불허	
보행자 우선도로	상봉로15나길(소로3-5), 상봉로11길(소로3-6) 검재로(소로3-7)	- 사업추진구역 4 · 6의 건축협정 및 입체결정을 통해 커뮤니티가로(상봉로15나길) 일부구간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 기존 전통시장가로(상봉로11길, 검재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공공보행통로	사업추진구역 6	- 생활커뮤니티가로(면목로78길)와 연계한 사업시행구역 6 내 공공보행통로 계획	

○ 교통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교통계획	· 보행자 우선도로 : 사업추진구역 4 · 5 · 6 → 사업추진구역 4 · 6	- 면목역 4 · 5구역 → 4구역 조합 통합
	· 공공보행통로 위치 변경 : 면목로76길 → 사업추진구역 6	- 면목역 4 · 5구역 통합 및 생활커뮤니티가로 활성화 도모에 따른 변경
	· 차량 진출입로 설치 불허, 보행자 우선도로, 공공보행통로 지정	- 사업추진구역 1 · 2 · 4 · 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교통계획 결정

마. 거점사업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변경)

○ 기 정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사업추진현황					계획(안)	비 고	
				면적 (㎡)	토지등 소유자	기존 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최초 결정일		면적 (㎡)
합 계			53,820.17	819명	1,250호	-	-	-	62,706.90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8,775.32	120명	175호	조합	조합설립 인가	2022.08.18	13,889.50	
A2	1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8,965.98	148명	272호	조합	조합설립 인가	2022.03.29	9,975.90	
	2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6-114번지 일대	6,439.60	137명	187호	조합 (예정)	조합설립 추진 중	-	6,118.60	
A3	1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1번지 일대	8,630.37	118명	214호	조합	조합설립 인가	2022.06.27	10,550.80	
	2	사업추진구역 5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00-38번지 일대	7,040.95	115명	138호	조합	조합설립 인가	2022.07.05	7,589.80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19번지 일대	7,658.95	96명	164호	조합	조합설립 인가	2022.02.28	8,120.30	
A5		사업추진구역 7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7-64번지 일대	6,309.00	85명	100호	조합 (예정)	동의서 징구	-	6,462.00	

※ 사업추진현황은 조합설립인가 및 연변부어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구역계를 일부 조정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함

○ 변 경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위 치	사업추진현황						계획(안)	비 고
			면적 (㎡)	토지등 소유자	기준 호수	시행자	추진단계	변경인가 결정일	면적 (㎡)	
합 계			62,503.78	892명	1,472호	-	-	-	59,880.60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14,203.50	188명	310호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4.03.20	13,699.00	1구역 확대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16,946.50	292명	481호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4.03.25	15,930.90	2·3구역 통합
A3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1번지 일대	17,130.42	226명	370호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4.03.22	16,772.20	4·5구역 통합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60번지 일대	14,223.36	186명	311호	조합	조합설립 변경인가	2024.04.22	13,478.50	6·7구역 통합

※ 사업추진현황은 조합설립변경인가 기준으로 작성함. 다만,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구역계를 일부 조정한 추진계획(안)을 제시함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 사업추진구역의 사업 추진단계 변경	- 사업추진구역 1의 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바. 모아주택 통합계획(변경)

- 「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른 건축협정의 체결로 「건축법」 제77조의 13에 따른 특례 적용 계획
- 기정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13,889.50	-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4구역~7구역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4구역~7구역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A2	1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9,975.90			
	2 사업추진구역 3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6-114번지 일대	6,118.60			
A3	1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1번지 일대	10,550.80			
	2 사업추진구역 5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00-38번지 일대	7,589.80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19번지 일대	8,120.30			
A5	사업추진구역 7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7-64번지 일대	6,462.00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조합설립인가 및 연번부여 현황 면적과 상이하며,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구역계 조정(안)으로 제시함

○ 변경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13,699.00	- 공통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 4구역, 6구역 건축법 제53조 지하층, 주차장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 장 통합설치	- 공통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 적인 배치 및 건축 물 계획 - 4구역, 6구역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 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15,930.90			
A3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1번지 일대	16,772.20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60번지 일대	13,478.50			

※ 상기의 건축협정에 관한 특례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개별 사업시행구역 면적은 조합설립인가 및 연번부여 현황 면적과 상이하며, 효율적·체계적 정비를 위하여 구역계 조정(안)으로 제시함

○ 모아주택 통합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모아주택 통합계획	· 사업추진구역 1의 사업 추진단계 반영	- 사업추진구역 1의 구역 확대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 사업추진구역 2, 4, 6, 사업 추진단계 반영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 사업추진구역 1·2·4·6의 건축협정 체결	· 모아타운 통합 계획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사.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내용		비고
사업추진구역별 정비(안)	시행구역 내	건폐율	60% 이하	A1 ~ A4
			50% 이하	A5
		용적률	기준 200% 이하 / 법적 상한 250% 이하	A1 ~ A4
			기준 250% 이하 / 법적 상한 300% 이하	A5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1 ~ A5
	시행구역 외	건폐율	60% 이하	C1
			50% 이하	B1, D1, D2
		용적률	기준 200% 이하	C1
			기준 250% 이하	B1, D1, D2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1, C1, D1, D2
통합정비(안)	시행구역 내	건폐율	50% 이하	A1 ~ A5
		용적률	기준 250% 이하 / 법적 상한 300% 이하	A1 ~ A5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외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1 ~ A5
		건폐율	60% 이하	C1
			50% 이하	B1, D1, D2
		용적률	기준 200% 이하	C1
			기준 250% 이하	B1, D1, D2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1, C1, D1, D2

- ※ A1~5, B1, C1, D1~2는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 B1, C1, D1~2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 가능

○ 변경

구분		내용		비고
시행구역	건폐율	50% 이하		A1 ~ A4
	용적률	기준 250% 이하 법적 상한 300% 이하		A1 ~ A4
	높이	용도지역 층수 적용		A1 ~ A4
자율 정비구역	건폐율	60% 이하		B2, C1, C2
		50% 이하		B1, D1, D2
	용적률	기준 200% 이하		B2, C1, C2
		기준 250% 이하		B1, D1, D2
	높이	건축법 및 건축조례 허용높이		B1,B2,C1,C2,D1,D2

- ※ 시행구역 외를 자율 정비구역으로 명칭 변경
 ※ A1~4, B1~2, C1~2, D1~2는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 B1~2, C1~2, D1~2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할 것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 초과 가능

○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	· 시행구역의 밀도계획 : 사업추진구역별정비(안), 통합정비(안) → 통합정비(안) 변경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 및 건축협정을 통한 통합적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밀도에 관한 계획 결정
	· 시행구역 외 → 자율 정비구역 변경	- 시행구역 외 지역의 자율적 정비 유도
	· 자율 정비구역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에 B2, C2 지역 포함	- 시장조치로 사업추진구역에서 자율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B2, C2 지역 밀도 계획 수립

아.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구역 (1~7구역)	- 건축한계선 3m 적용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구역 3 사업추진구역 4 사업추진구역 5 사업추진구역 6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 시설 배치 유도
담장 미설치	사업추진구역 (1~7구역)	- 도로변 및 구역간 담장 미설치	

○ 변경

구 분	적용지역	계획 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사업추진구역 (1, 2, 4, 6구역)	- 건축한계선 3~5m 적용	- 가로 환경 및 보행 환경 개선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사업추진구역 1 사업추진구역 2 사업추진구역 4 사업추진구역 6	- 가로활성화시설 배치 - 가로활성화시설의 권장용도 · 「주택법」 제2조 13호, 14호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한 조례」 제44조 공동이용시설	- 커뮤니티 가로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공동이용 시설 배치 유도
담장 미설치	사업추진구역 (1, 2, 4, 6구역)	- 도로변 및 구역간 담장 미설치	

○ 건축물의 용도 : 관계법령에 따름

○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3m → 3 ~5m 변경	- 가로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폭원 계획 수립
	· 사업추진구역 2, 3 → 사업추진구역 2 · 사업추진구역 4, 5 → 사업추진구역 4 · 사업추진구역 6, 7 → 사업추진구역 6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 사업추진구역 1·2·4·6의 건축한계선, 가로활성화시설 배치구간, 담장미설치 구간 설정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 가로활성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간 결정

자.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변경)

○ 기정

구분		위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에정자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합 계		-	1,850	578	-	31.24%
A1	사업추진구역 1	면목동 236-6번지 일대	428	138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32.24%
A2	사업추진구역 2 · 3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488	157		32.17%
A3	사업추진구역 4 · 5	면목동 99-41번지 일대	521	171		32.82%
A4	사업추진구역 6	면목동 86-19번지 일대	236	76		32.20%
A5	사업추진구역 7	면목동 87-64번지 일대	177	36		20.34%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변경

- 공공임대주택 총 459세대 공급 예정

도면 표시 번호	구분	위치	전체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사업구역					
합 계		-	1,919	459	-	23.92%
A1	사업추진구역 1	면목동 236-6번지 일대	443	110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24.83%
A2	사업추진구역 2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520	128		24.62%
A3	사업추진구역 4	면목동 99-41번지 일대	533	133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24.95%
A4	사업추진구역 6	면목동 86-60번지 일대	423	88		20.80%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 세대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사업추진구역 2, 3 → 사업추진구역 2 · 사업추진구역 4, 5 → 사업추진구역 4 · 사업추진구역 6, 7 → 사업추진구역 6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
	·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 계획(안) 변경 - 사업추진구역 1 전체세대수 : 428 → 443세대 임대세대수 : 138 → 110세대 - 사업추진구역 2 전체세대수 : 488 → 520세대 임대세대수 : 157 → 128세대 - 사업추진구역 4 전체세대수 : 521 → 533세대 임대세대수 : 171 → 133세대 - 사업추진구역 6 전체세대수 : 413 → 423세대 임대세대수 : 112 → 88세대	· 사업추진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을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 수립

차.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1)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사업추진 구역별 정비(안)	합계	97,000.59	-	97,000.59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5.00	-	1,005.00	1.04	공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69,473.59	감) 64,284.00	5,225.59	5.39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64,248.00	64,248.00	66.23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522.00	-	26,522.00	27.34	
통합 정비(안)	합계	97,000.59	-	97,000.59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5.00	-	1,005.00	1.04	공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69,473.59	감) 63,621.59	5,852.00	6.03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522.00	증) 63,621.59	90,143.59	92.93	

※ 용도지역 사항은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 정비 시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현 황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7,000.59	97,000.59	감) 7.00	96,993.59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5.00	1,005.00	-	1,005.00	1.03	공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69,473.59	5,852.00	증) 9,634.29	15,486.29	15.97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522.00	90,143.59	감) 9,641.29	80,502.30	83.00	

※ 용도지역 사항은 사업시행구역 간 통합 정비 시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면목동 모아타운 관리지역 면적 변경 : 97,000.59㎡ → 96,993.59㎡	· 관리지역 내 기존 건축물 저축 필지 (면목동 234-2번지) 제척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사업추진구역별정비(안), 통합정비(안) → 통합정비(안) 변경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 및 건축협정을 통한 통합계획 수립에 따른 변경
	· 통합 정비(안) - 제2종(7층이하) : 5,852.00㎡ → 15,486.29㎡ - 제3종일반 : 90,143.59 → 80,502.30㎡	· 시장준치로 사업추진구역에서 자율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B2, C2 지역의 용도지역 반영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6,993.59	-	96,993.59	100.00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05.00	-	1,005.00	1.03	공원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69,466.59	감) 53,980.30	15,486.29	15.97	
제3종 일반주거지역	26,522.00	증) 53,980.30	80,502.30	83.00	

○ 용도지역의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사업추진구역 1(A1)·2(A2)·4(A3) 용도지역 변경 : 제2종(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추진구역 6(A4) 용도지역 변경 : 제2종(7층이하)·제3종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추진구역 2·3, 4·5, 6·7의 구역 통합 및 건축협정을 통한 통합계획 수립 - 사업추진구역 1·2·4·6의 사업시행계획 수립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 → 제3종일반)

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1)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사업추진구역 1 ~ 6	66,738.0	감) 3,606.0	63,132.0	

※ 상기 특별건축구역의 특례 사항 및 사유 등은 사업 시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시행시기가 동일할 경우 적용 가능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에 대한 사항

구분	배제 및 완화	비고
건축법	대지안의 조경(제42조),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대지안의 공지(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제61조) 등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의 배치(제10조), 기준척도(제13조), 비상급수시설(제35조), 난방설비 등(제37조) 등	
통합적용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에 지정(안) 면적 변경 : 66,738.0㎡ → 63,132㎡	· 사업추진구역 1(A1) · 2(A2) · 4(A4) · 6(A4), 정비기반시설(도로) 변경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면적 변경

2) 특별건축구역 지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특별건축구역	사업추진구역 1 ~ 6	-	증) 63,132.0	63,132.0	

○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계획

구분		위치	면적(㎡)	특례 사항	특례 적용 사유	비고
도면 표시 번호	사업구역					
A1	사업추진구역 1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236-6번지 일대	63,132㎡	- 공동사항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배제 - 4구역, 6구역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설치	- 공동사항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배치 및 건축물 계획 - 4구역, 6구역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설치	-
A2	사업추진구역 2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1251-4번지 일대				
A3	사업추진구역 4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99-41번지 일대				
A4	사업추진구역 6 (가로주택정비사업)	면목동 86-60번지 일대				

○ 특별건축구역 지정 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특별건축구역 지정	· 사업추진구역 1·2·4·6을 포함한 구역면적 63,132㎡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및 결정	- 사업추진구역 1(A1) · 2(A2) · 4(A4) · 6(A4)의 통합적 정비 계획 및 창의적인 건축물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건축 구역 지정
특별건축구역 특례 및 통합적용계획	· 사업추진구역 1·2·4·6의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및 배제	- 모아타운 내 경관 특화를 위한 창의적인 건축물의 배치 및 주동 계획 수립
	· 사업추진구역 4·6의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통합 설치	- 사업추진구역 4(A3) · 6(A4)의 쾌적한 가로환경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통합 설치

다. 자율 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신설)

○ 자율 정비구역은 모아타운 내 시행구역 외 지역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단독개발, 공동개발(건축협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함.

○ 사업 유형에 관한 사항

1) 건축협정에 따른 공동개발

구 분	내용	비고
건축협정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지역 또는 구역에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자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대상구역	· 면목동 86-3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4 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구 분	내용	비고
건축협정 체결 절차		-
건축협정 특례	· 「건축법」 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의 규정을 따름	-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개발

- 면목동 86-3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자율 정비구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가능함.

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비고
개념				-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개선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	-

구 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비고
대상구역	- [단독] 10호 미만 -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 - [단독호수/다세대/연립합산] 20채 미만	- [단독] 10호 이상 - [다세대, 연립] 20세대 이상 - [단독호수/다세대/연립합산] 20채 이상	- [단독] 제한없음 - [공동주택] 제한없음	-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60%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50%)			-
사업면적	제한없음	1만㎡ 미만 (※ 관리지역 2만㎡ 미만, 공공의 공동 또는 단독사업 시 4만㎡ 미만)	5천㎡ 미만	-
동의 요건	- 주민협의체: 100%동의 - 관리지역: 토지등소유자 상 및 토지면적 2/3이상	8/10이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협의체 토지 등소유자100%)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

※ 상기 기준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과의 연계 계획 (변경없음)

○ 해당없음

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모아타운의 면적을 100분의 5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간을 계획된 기간의 3년 이내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경우
- 관리계획을 법 제43조의3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을 완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계산착오·오기·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관련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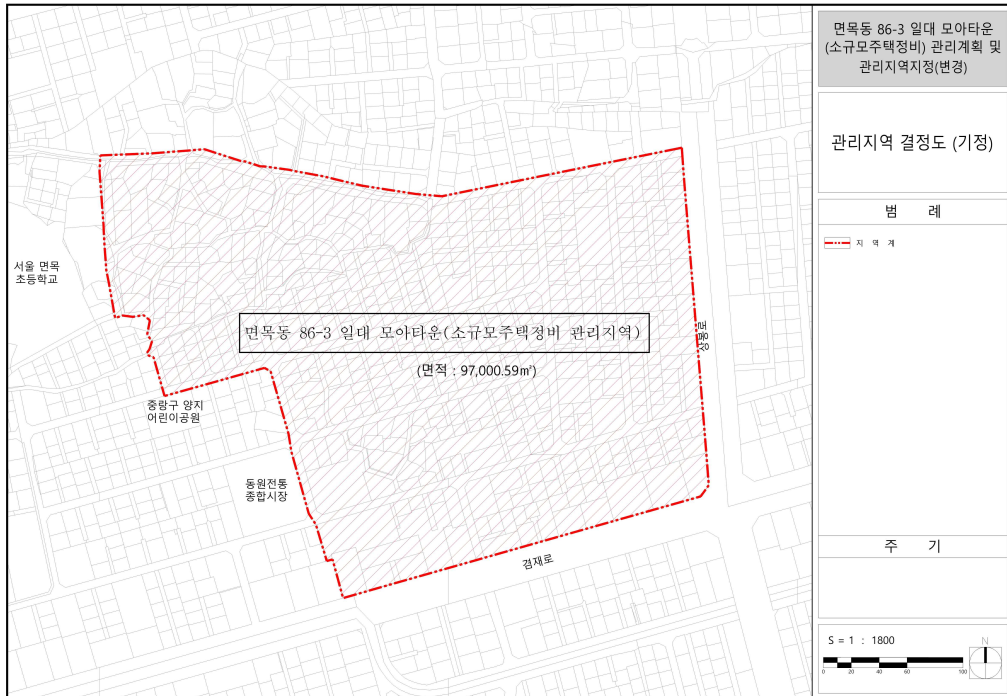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4.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전락주택공급과(☎ 02-2133-8235) 및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 02-2094-6922)에 비치·열람하고 있습니다.
-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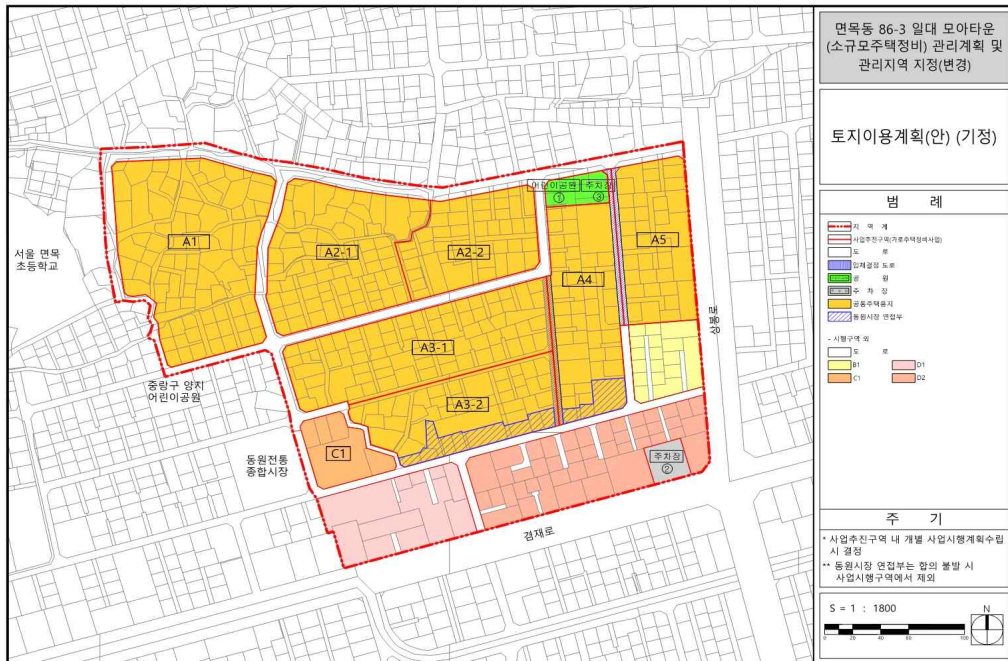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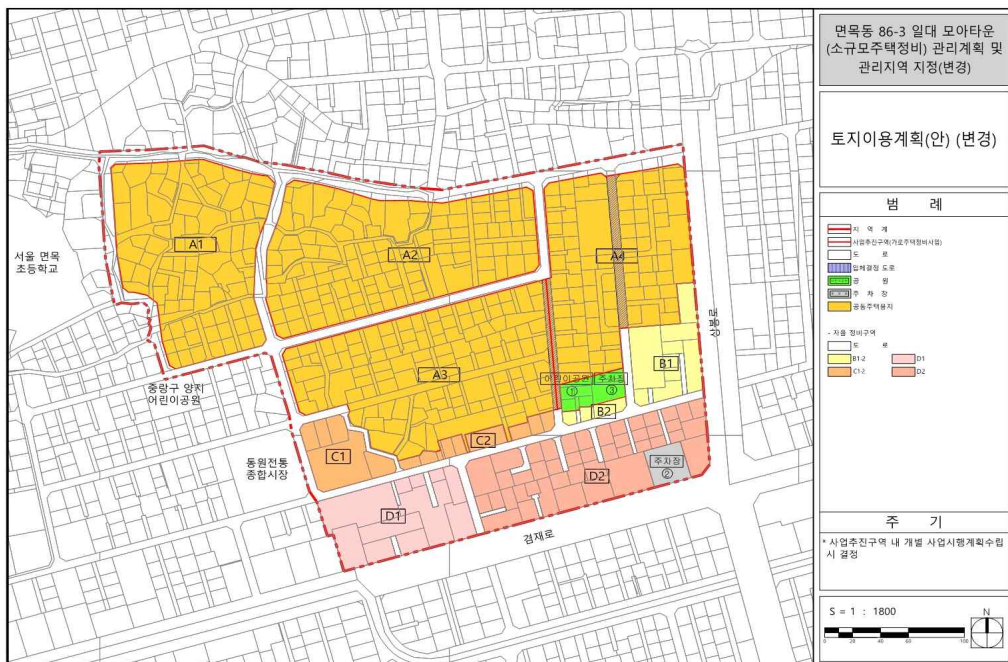
■ 관리지역 결정도 [변경(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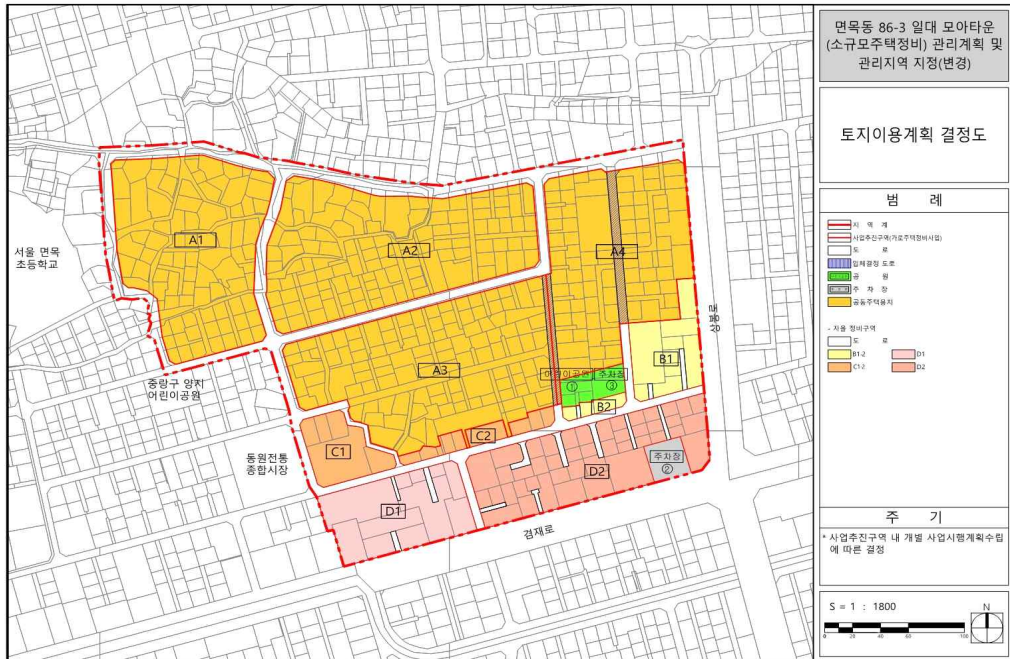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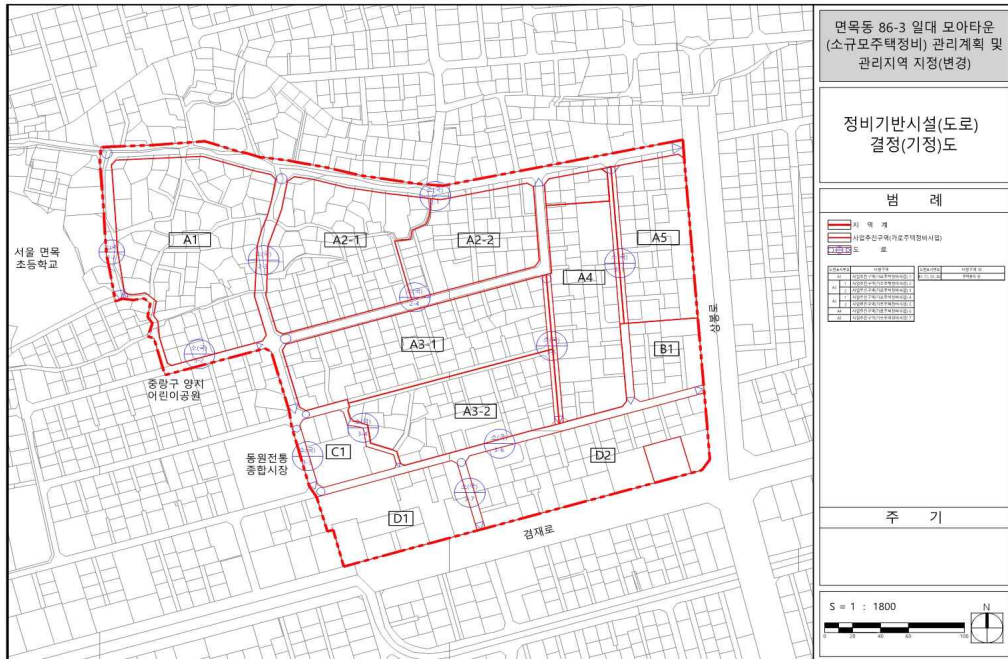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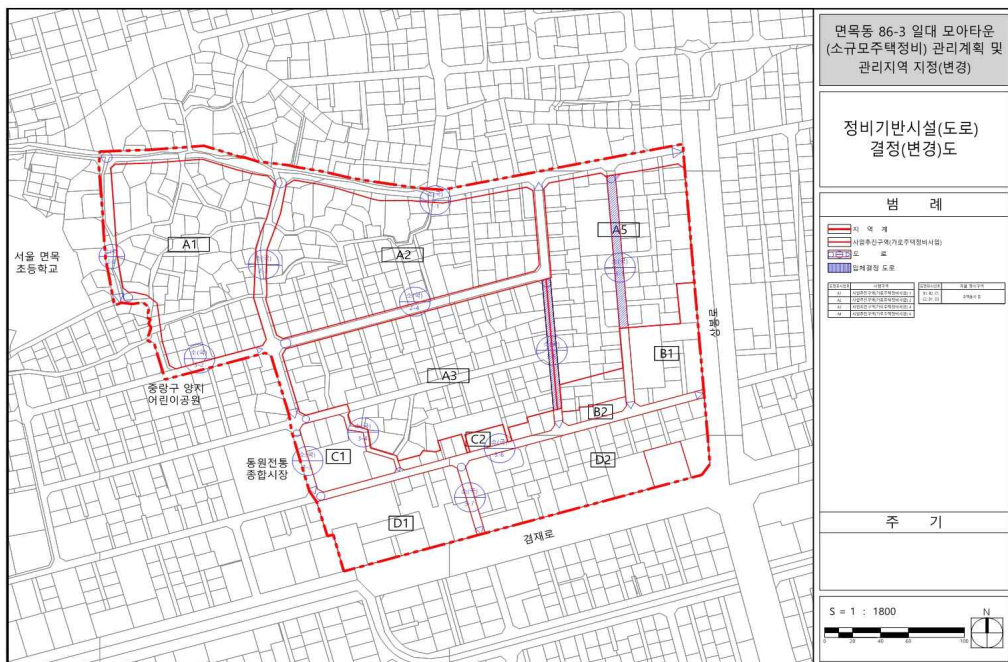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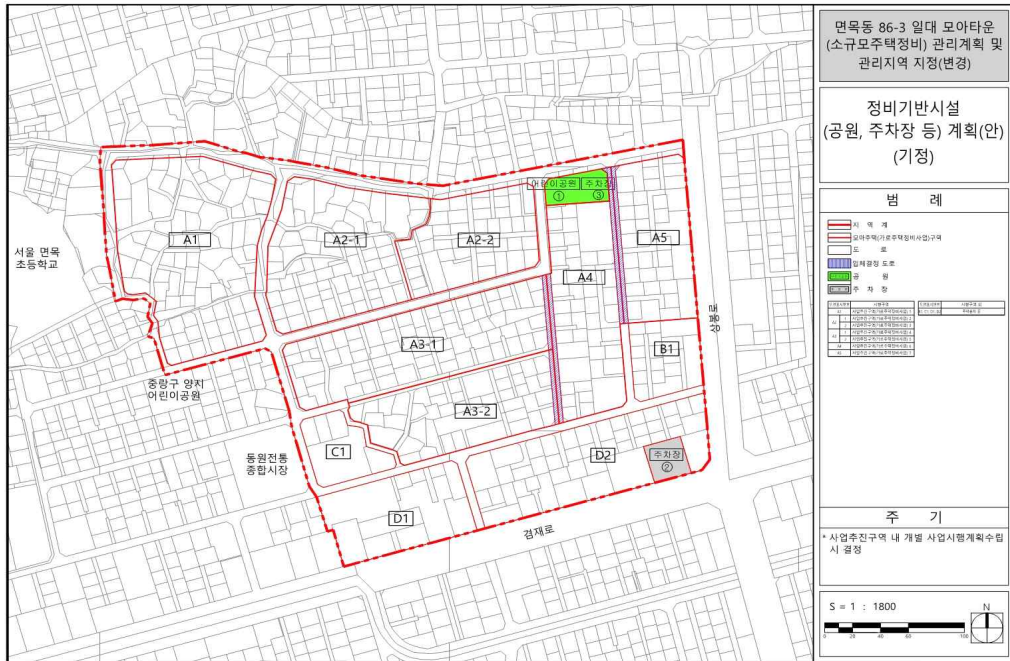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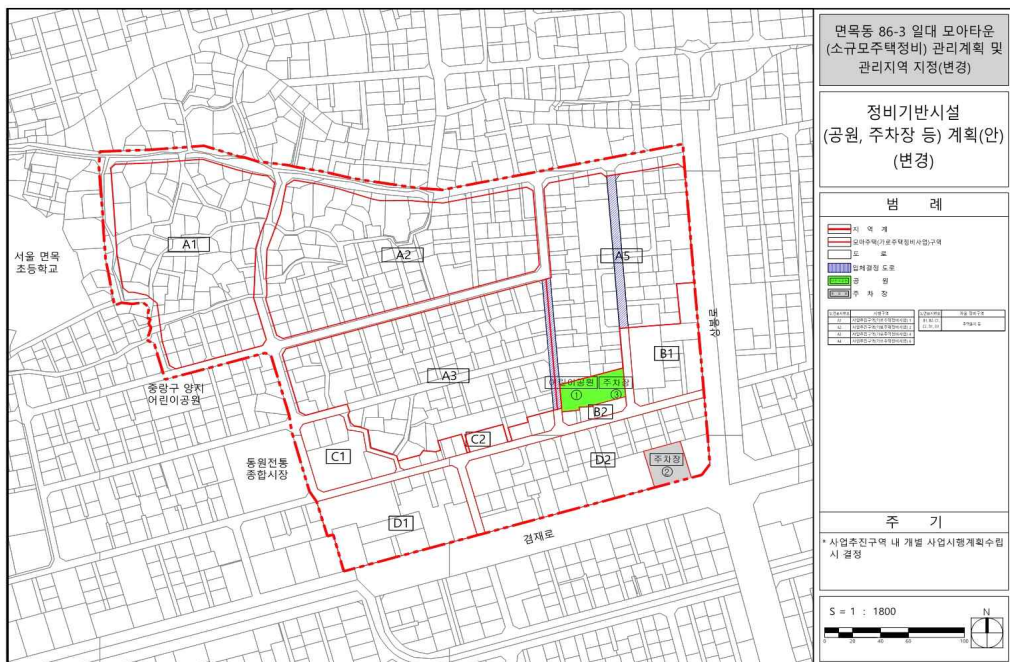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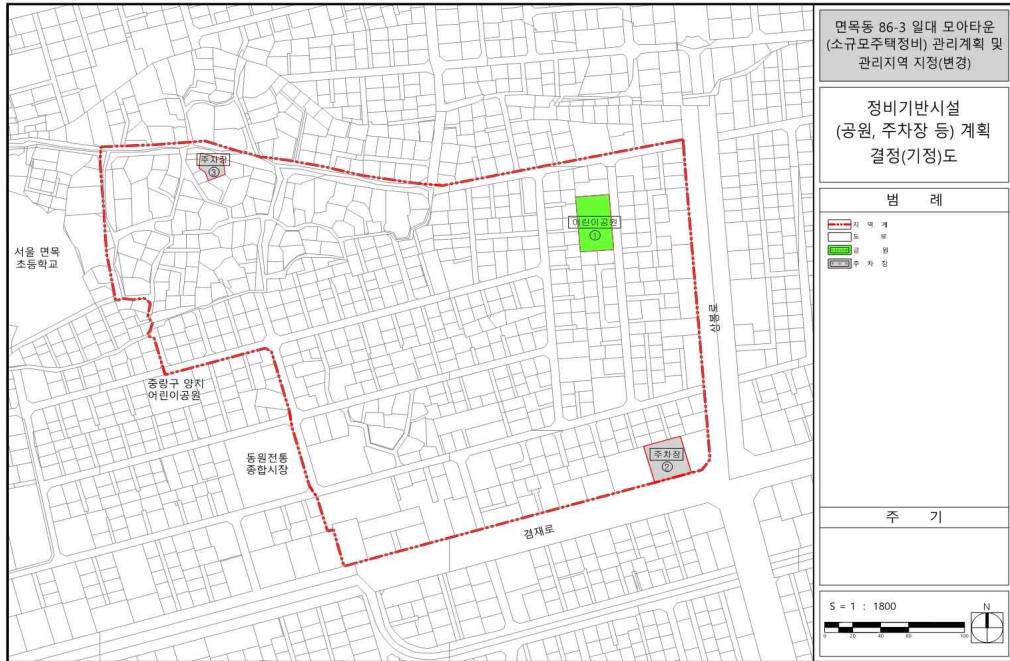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 계획(안)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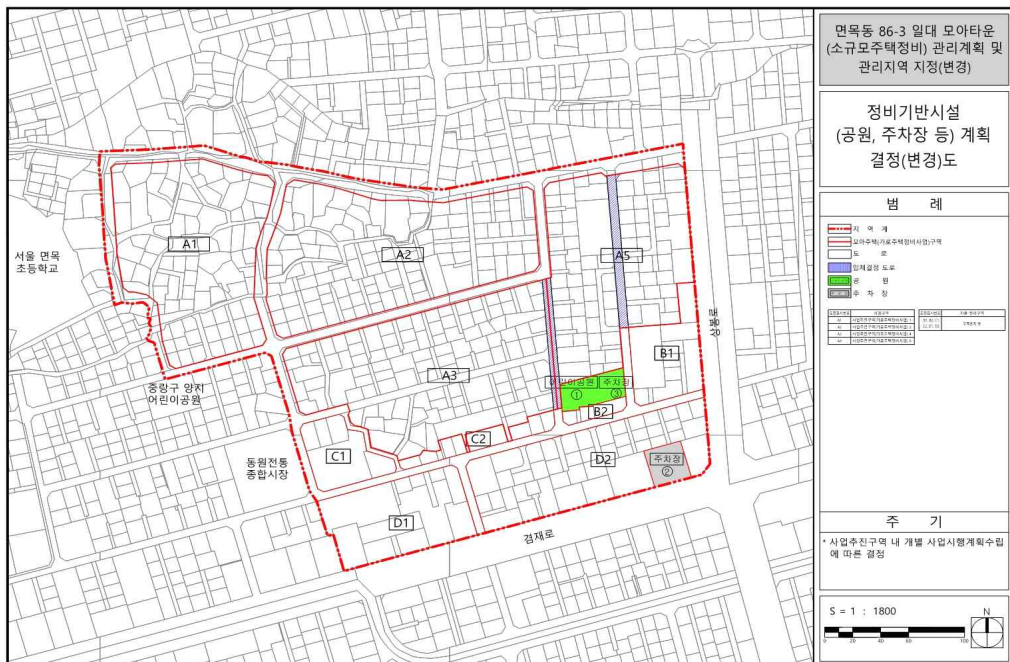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 계획(안)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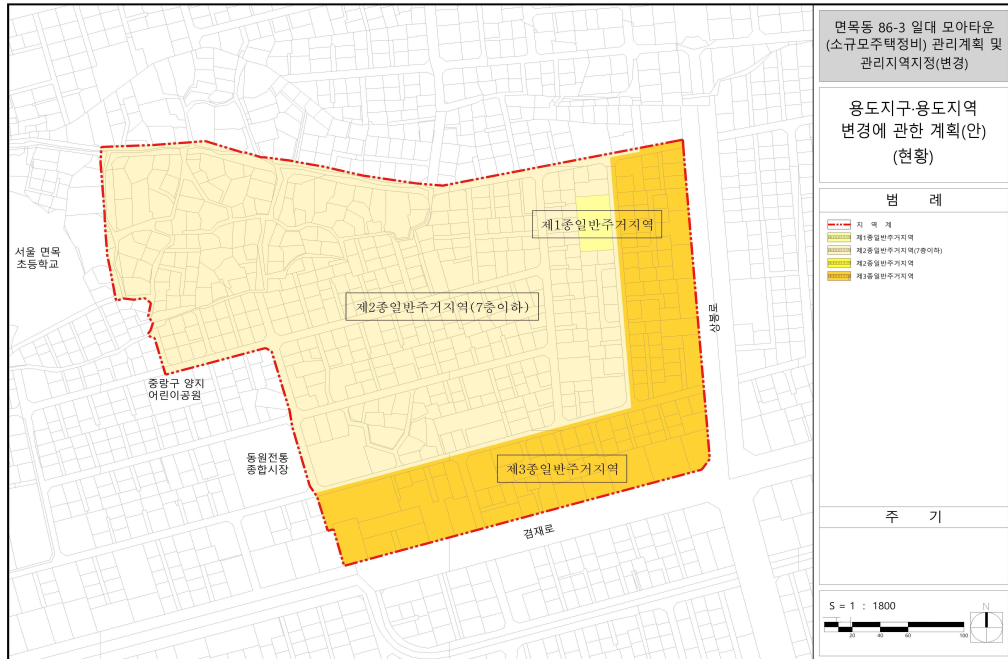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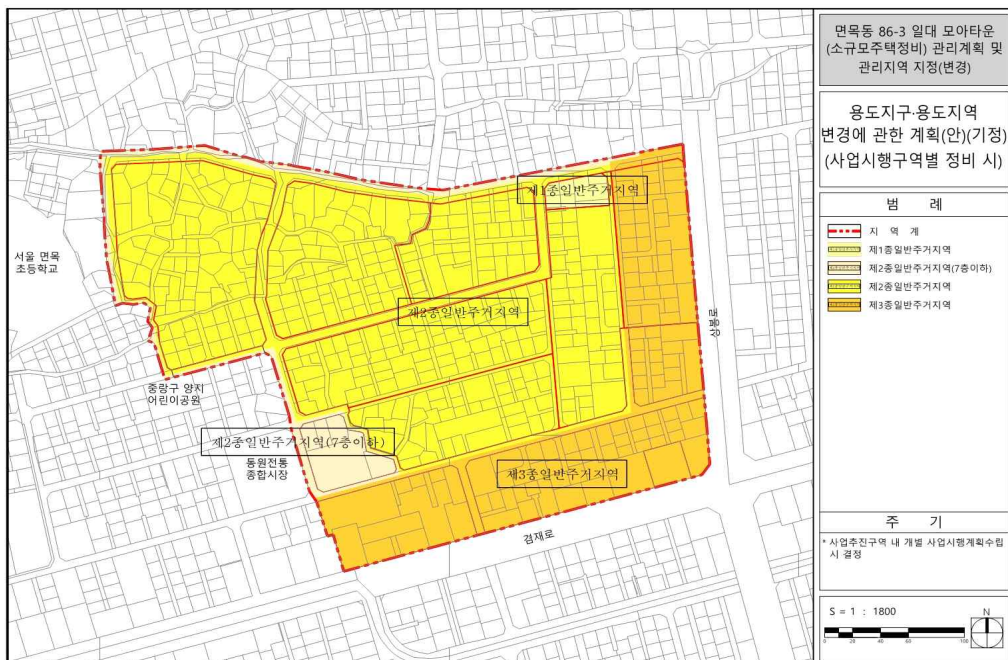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공원, 주차장 등)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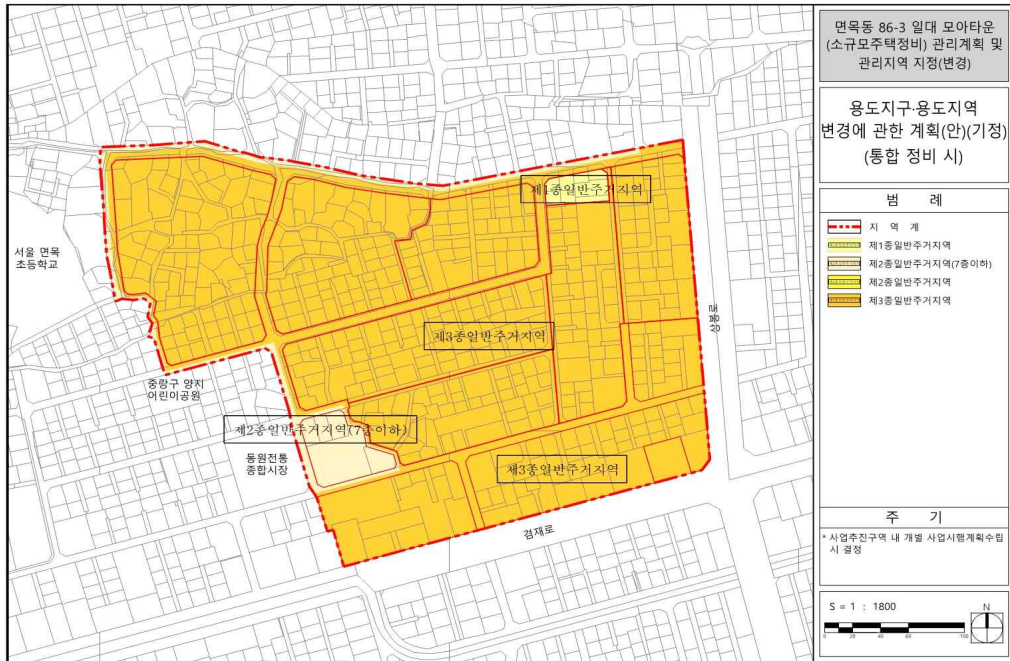
■ 용도지역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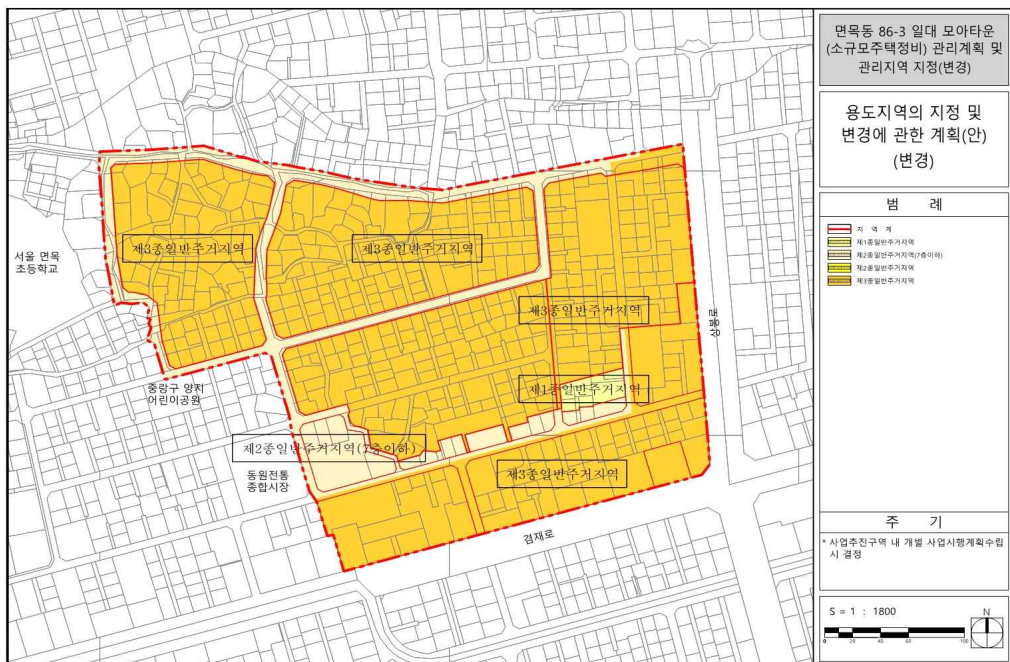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계획 [기정] _ 사업추진구역별 정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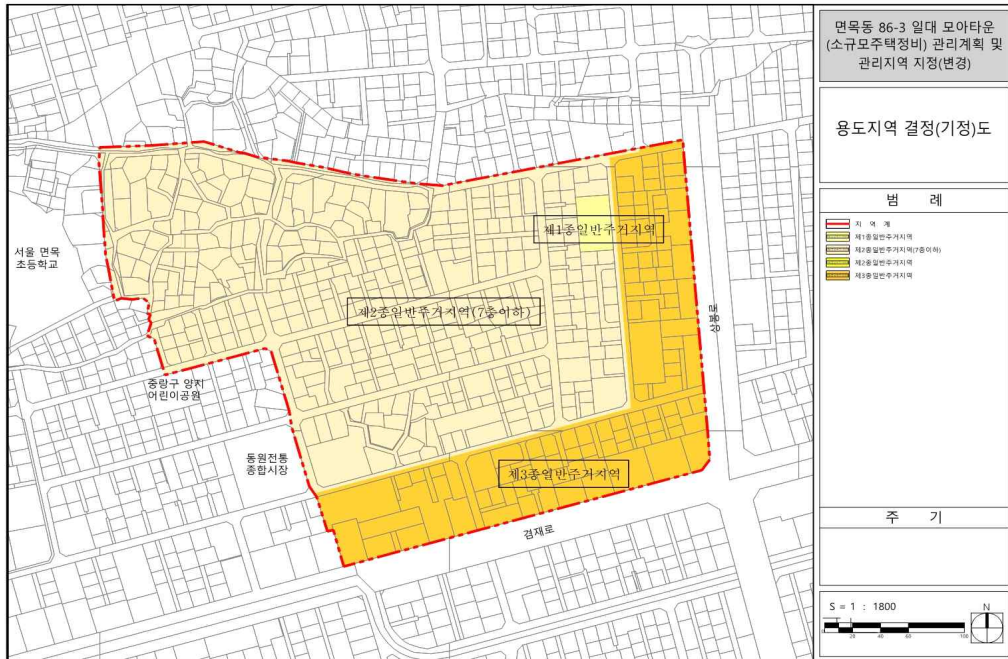
■ 용도지역 계획 [기정] _ 통합 정비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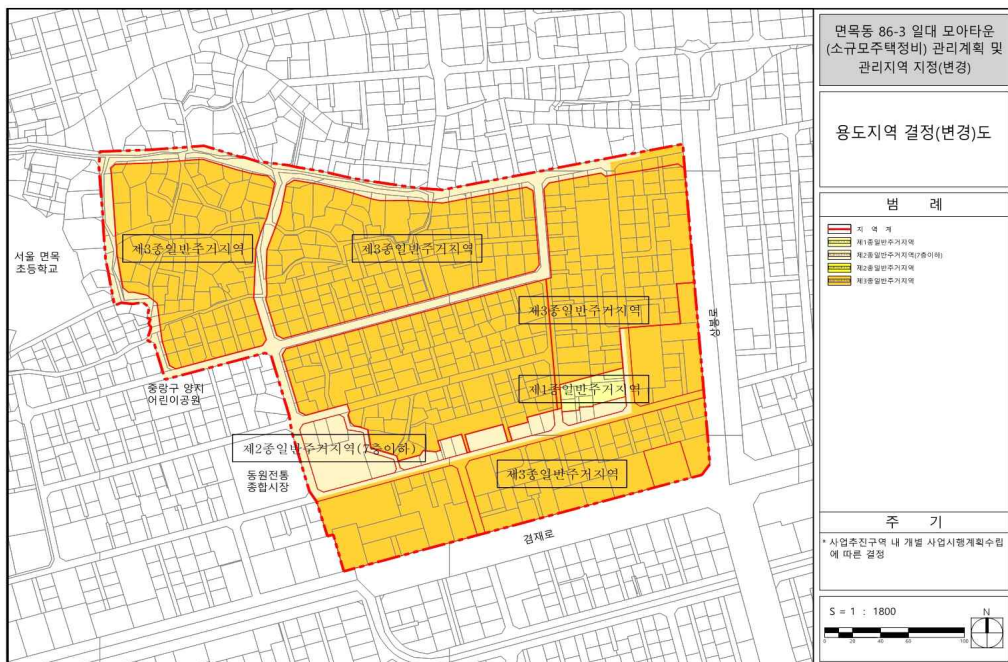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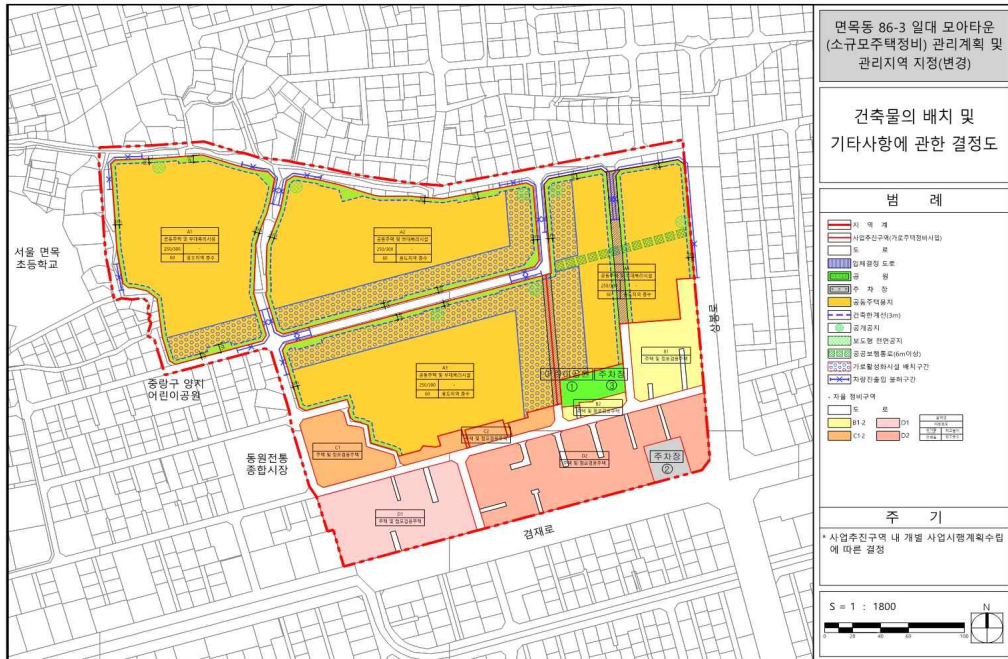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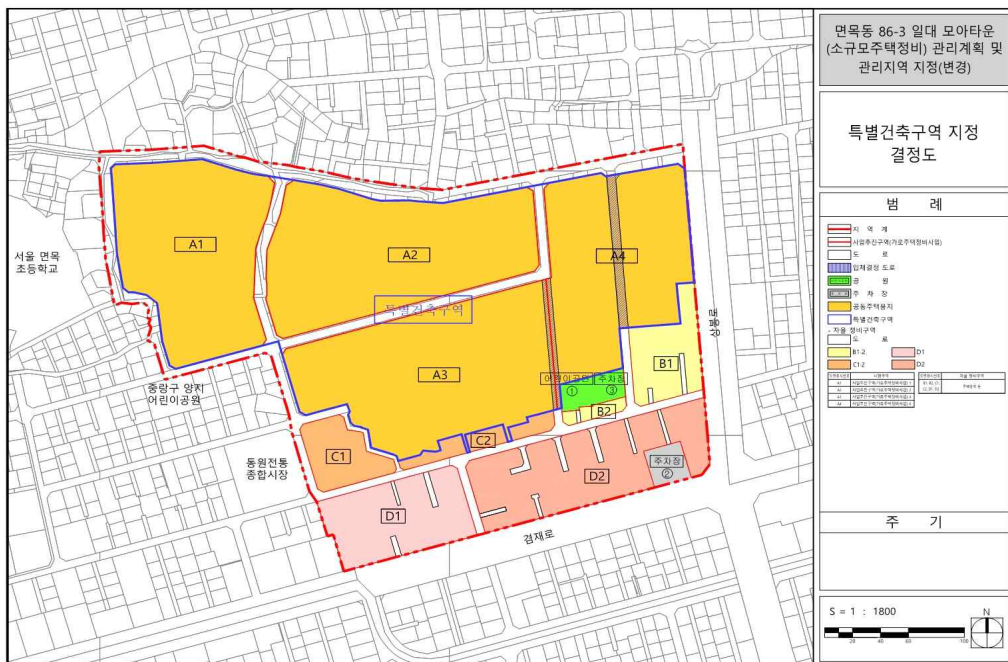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변경]



■ 건축물의 배치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도



■ 특별건축구역 지정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89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서를 소유자의 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통지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과 목	호 수	금 액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4길 27	상하수도요금	102, 103, 201, 202, 203, 302, 303, 304	2,523,130원

나. 압류내역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 건 소 유 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건물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14길 27	김용□	양천구 은행정로17길 21-5, 20□호(신정동, 더하우스 인)	2,523,130원	2024년 9월 23일
		정□우	강서구 까치산로14길 27, 지하층 0□호		

4.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98호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일대에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9.25.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열람기간 : 재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024. 10. 18. ~ 2024. 10. 31.)

나. 재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 (☎02-2133-8399), 영등포구 도시계획과 (☎02-2670-3533)

다. 재열람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여의도동 61-1,2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61-2	16,528	감) 16,528	-	기 실효
폐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일대	16,929	감) 16,929	-	폐지 후 편입
신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영등포구 여의도동 33 일대	-	증) 1,120,586	1,120,586	-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생략 (열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 게재된 도서 및 도면으로 갈음)

라.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마. 기타사항

- 세부내용, 도면 등의 자세한 사항은 재열람장소에 비치된 재열람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
- 본 재열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4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및 가산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및 재산압류 통지서를 체납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건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예고 및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자동차)
2.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30.(14일간)
3. 공시송달내용
 - 1) 체납자: 오○뜸(930207-1*****)
 - 2) 소재지번(사용본거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로 ***-*
 - 3) 처분원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위반
방염 미처리 실내장식물 변경(지상1층 벽, 칸막이, 주류 장식장 등)
 - 4) 체납액: 금3,396,000(과태료 3,000,000원, 가산금 396,000원)
* 기준일 2024. 10. 4.으로 실체 체납금액이 다를 수 있음.
 - 5) 압류재산: 자동차(16머****)
 - 6) 등기번호: 11004-0545-1218(재산압류통지서),e그린우편전송(독촉고지서)
 - 7) 송달불능사유: 수취인 불명
4. 지방세외수입 체납으로 인한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며,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며, 공고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통지서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02-6981-7823),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02-6981-789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5호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에 따라 사전 절차를 완료하고 변상금 부과 공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의 의해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 가. 변상금 부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나. 공 시 송 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부과대상	부과금액	점유면적	점유기간	송달주소	비고
이○선	40,030,410원 (요율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0-12 1층 (457.18㎡)	' 23.11.13.~ ' 24.8.20.	서울특별시 광진구 230-12 1층	폐문부재
				송O구 중O로 20 200-0503	폐문부재

○ 공고기간: 2024. 10. 17. ~ 2024. 10. 31. (14일간)

○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02-2133-237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7호

종합건설사업자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대표 이사 자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10. 15. ~ 2024. 10. 29.(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통지 기한	처분 근거
1	(주)동보건설산업 (고진경)	건축공사업 05-0755	강남구 선릉로86길 31, 929호 (대치동, 롯데골드로즈2차)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2	(주)위드원건설 (공준혁)	건축공사업 04-1113	강남구 논현로151길 48 , 202호 (신사동, 더페이퍼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3	(주)랜드앤아키 (정홍석)	건축공사업 01-4415	강북구 노해로8길 2, 2층 (수유동, 광덕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기술능력, 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기술인 증명,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의견제출 통지 기한	처분 근거
4	(주)로이넥스건설 (맹광진)	건축공사업 01-2539	강남구 영동대로 644, 제9층 제907호 (삼성동, 원일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5	(주)마루디자인건 설 (대표 황도순)	건축공사업 01-3644	강남구 테헤란로14길 40-4 3층 (역삼동, 에이치케이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기술인 증명,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6	(주)엔아이씨종합 건설 (박승중)	건축공사업 01-0987	강남구 도곡로63길 12, 지1층 비103호 (대치동)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7	(주)인우종합건설 (대표 장익수)	건축공사업 01-3946	강남구 강남대로114길 25, 201호 (논현동)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8	우덕산업개발(주) (김천보)	건축공사업 10-2044	강북구 도봉로 328, 905호 (변동, 가든타워빌딩)	2023년도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기술능력, 자본금) 「2023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에 결산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음	시정명령	2024.10.30. (수)	법 제81조 제9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129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09호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 예고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표석 신설 및 정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을 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유적 표석 설치 및 정비 계획

가. 표석 설치 및 정비 개요 : 신규 설치 3건, 정비 3건

연번	구분	표석명	신규 설치 및 정비 내용	토지 소유자	형태 및 규격(cm)
1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 설치지 : 종로구 경운동 2-2 인도 - 유적지 : 종로구 경운동 2	구유	형태 : 바닥형 규격 : 60×60×10 재질 : 화강석
2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 설치지 : 강남구 을현동 354 (방죽소공원 내) - 유적지 : 강남구 을현동 300-39	구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3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 설치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역삼 1동 주민센터 내) - 유적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구유	형태 : 스탠드형 규격 : 35×70×24.5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4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 표석 명칭 및 문안 수정, 위치 이전 - 현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86 - 이전 설치지 : 강남구 신사동 488-1	국유	형태 : 강남구 기본형 규격 : 105×71×50 재질 : 화강석
5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압구정 터	- 표석 문안 수정 - 현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456	사유	형태 : 판석형 규격 : 95×88×75 재질 : 화강석
6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청숫골 나루터	- 표석 문안 수정 - 현위치 : 강남구 청담동 107-1	사유	형태 : 강남구 기본형 규격 : 105×71×50 재질 : 화강석

나. 신규 설치 및 정비 사유

○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한성사범학교는 우리나라 소학교 교원양성 교육을 목적으로 1894년 9월 사범학교로 설립되어 1895년 4월 「한성사범학교 관제」가 제정되면서 한성사범학교로 이름을 바꿨음. 1907년 수송동에 교사를 신축하여 옮겼으며 1911년 국권 피탈 후, 일제의 조선교육령 발표와 함께 폐교됨. 사범학교의 설립은 우리나라 교원양성 교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표석 설치할 역사, 사회문화적 가치가 충분함

○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26일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 송파리(현재 송파구 송파동 일원) 송파장터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같은 날 저녁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수서리(현재 강남구 율현동 일원)로 이어진 것임. 이시중, 이재순 등 수서리 주민 100여 명은 대왕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며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한 후,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과 세금 등은 필요 없어진다고 호소하는 등 식민 수탈을 비판함.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는 송파리, 수서리 주민이 연합한 오늘날의 강남구 일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만세 운동으로 표석을 설치할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

○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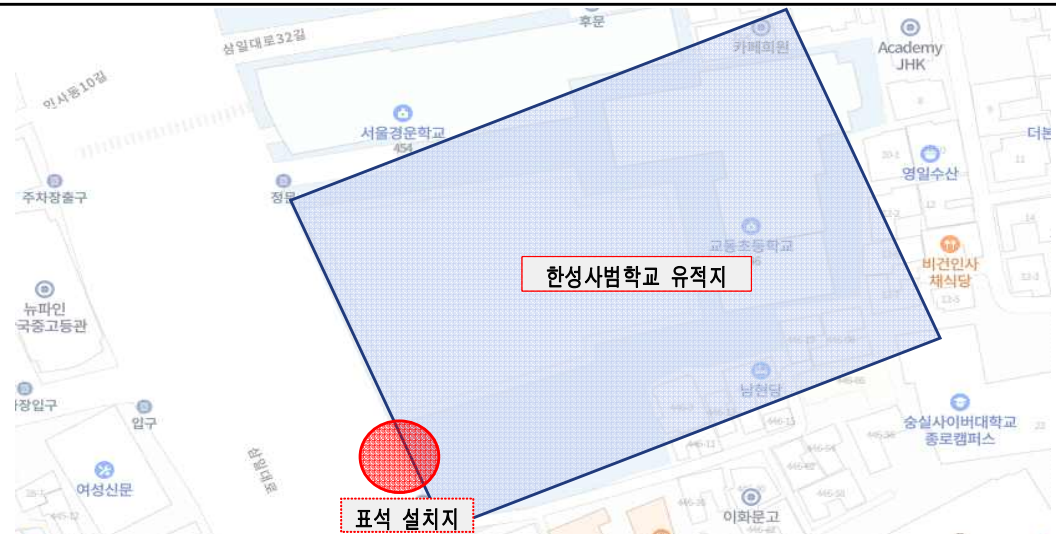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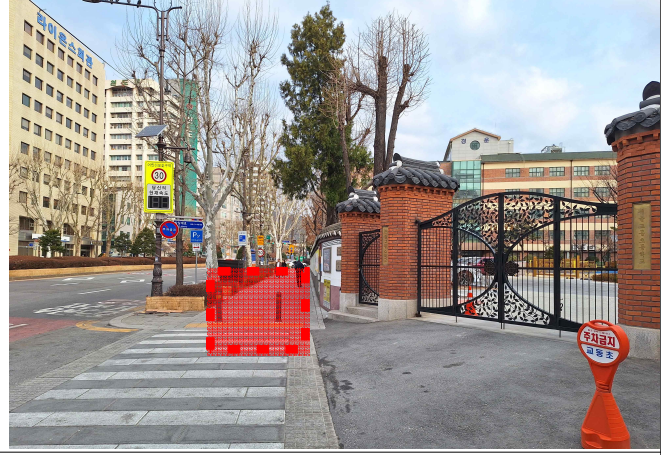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는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현재 강남구 역삼동 일원) 일대에서 주민이 전개한 3·1운동. 역삼리와 양재리 일대의 비옥한 농지는 본래 주민들의 터전이었으나, 토지 조사 사업 이후 국유지로 대거 편입되며 많은 주민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함. 이에 이중인(건국포장) 등 역삼리 주민 100여 명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횃불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쳤으며 이는 식민 수탈에 저항하고 독립 의지를 밝힌 만세 운동으로서 표석을 설치할 역사적 가치가 충분함

○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압구정 터〉, 〈청숫골 나루터〉

강남구에서는 강남구의 역사문화 가치 발굴 및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역사문화유적 표석을 설치·관리함. 이 가운데 〈사평 나루터〉, 〈압구정 터〉, 〈청숫골 나루터〉는 서울의 역사·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중요 유적이므로 그 가치와 유적 원위치 등을 재검토하여 서울시 역사문화유적 표석으로 정비·관리할 필요가 있음

다. 세부 설치 계획

1 [신규 설치] <한성사범학교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한성사범학교 漢城師範學校址 Hanseong Normal School Site
문 안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학교 교원 양성 기관인 사범학교와 그 부속 소학교가 있던 자리로, 1894년 9월 18일에 창설되었다. 이듬해에 관제가 제정되면서 한성사범학교가 되었으며, 1907년 교사를 따로 신축하여 학교를 수송동으로 옮겼다. 국권 피탈 직후인 1911년 11월에 폐지되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종로구 경운동 2-2 인도(구유지) ○ 유적지 : 종로구 경운동 2(현재 서울교동초등학교) ○ 형태 : 바닥형 ○ 규격 : 60(W)×60(H)×10(D)cm ○ 재질 : 씨블랙(화강석)	

② [신규 설치]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대왕면 3·1운동 만세시위지 大旺面三一運動萬歲示威址 March 1st Movement Site in Daewang-myeon
문 안	1919년 광주군 대왕면 3·1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이다. 3월 26일 저녁, 이시종, 이재순 등 수서리 주민 100여 명은 대왕면사무소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선독립신문」을 낭독한 후, 조선이 독립하면 부역과 세금 등은 필요 없어진다고 식민 수탈을 비판했다. 송파리, 수서리 주민이 연합한 대왕면 3·1운동은 오늘날의 강남구 일대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만세 운동이다.

설치 위치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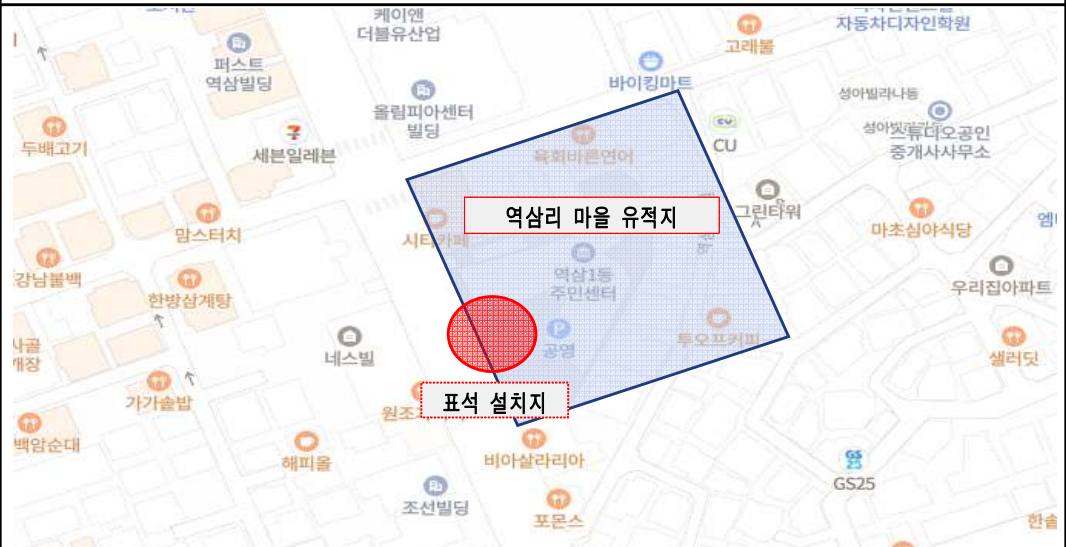
- 설치지 : 강남구 을현동 354(방죽소공원 내, 구유지)
- 유적지 : 강남구 을현동 300-39

- 형태 : 스탠드형
- 규격 : 35(W) × 70(H) × 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③ [신규 설치]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역삼리 3·1운동 만세시위지 驛三里三一運動萬歲示威址 March 1st Movement Site in Yeoksam-ri
문 안	1919년 광주군 연주면 역삼리 주민들이 3·1운동을 전개한 곳이다. 역삼리와 양재리 일대의 비옥한 농지는 본래 주민들의 터전이었으나, 토지 조사 사업 이후 국유지로 대거 편입되며 많은 주민이 경작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3월 28일 이종인 등 역삼리 주민 100여 명은 마을 뒷산으로 올라가 햇불을 밝히며 독립 만세를 외쳤다. 역삼리 3·1운동은 식민 수탈에 저항하고 독립 의지를 밝힌 만세 운동이었다.

설치 위치 및 형태



- 설치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역삼1동 주민센터 내, 구유지)
- 유적지 : 강남구 역삼동 829-20

- 형태 : 스탠드형
- 규격 : 35(W)×70(H)
×24.5(D)cm
- 재질 : 스테인레스 스틸

④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사평 나루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 칭	수정 전	새말 나루터
	수정 후	사평 나루터 沙平渡址 Sapyeong Quay Site
문 안	수정 전	조선 시대에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새말(新村)로 불리던 이곳은 한남동 한강 나루터와 이어지는 나루터가 있던 곳으로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며, 말죽거리 판교를 지나 남부 지방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임.
	수정 후	사평 나루는 강남구 신사동에서 한강을 건너 용산구 한남동과 오가도록 이어주던 나루이다. 조선 시대에는 한양과 충청도, 경상도를 잇던 영남대로(嶺南大路)의 일부였으며, 15대 장사의 하나인 사평장(沙平場)과 숙박 시설인 사평원(沙平院)이 설치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은 교통의 요지였다. 1969년 한남대교가 개통되면서 나루의 기능을 잃었다.
이 전 설 치 위 치		
	현재 위치 : 강남구 압구정동 386 이전 설치지 : 강남구 신사동 488-1(국유지)	

⑤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압구정 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압구정터 狎鷗亭址
	수정 후	압구정 터 狎鷗亭址 Apgujeong Pavilion Site
문안	수정 전	조선조 세조(世祖)때부터 성종(成宗)때까지 영의정을 지낸 權臣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號를 따서 지은 狎鷗亭이라는 정자가 있던 명소.
	수정 후	압구정은 조선 시대 권신인 한명회(韓明澮, 1415~1487)가 한강 변에 세운 정자이다. 한양 근교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많은 문인과 중국 사신이 이곳을 구경하고 한강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경치가 빼어나 압구정을 묘사한 문학 작품과 그림이 많이 남아 있으며, 강남구 압구정동 동명의 유래가 되었다.

⑥ [강남구 설치 표석 정비] <청숫골 나루터> 표석

구 분		내 용
명칭	수정 전	청숫골 나루터
	수정 후	청숫골 나루터 淸潭渡址 Cheongsutgol Quay Site
문안	수정 전	조선시대 이후 영동개발 이전까지 한강을 따라 강원도로 오고 가는 배가 쉬었다 가는 나루터로 청숫골 사람들의 고기잡이 배를 띄우는 선착장 역할도 하였던 곳이며, 농산물을 강북으로 수송할 때도 이용하였던 곳임.
	수정 후	청숫골 나루는 청담동과 독섬 사이의 한강을 건너던 나루로, 청담동에 있어 청담 나루로도 불렸다. 조선 시대에는 도성에서 봉은사(奉恩寺)를 오가는 유람객과 참배객이 많이 이용했으며, 강남 개발 전에는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일대에서 재배한 채소를 이곳에서 배에 실어 서울 시내로 날랐다. 1973년 영동대교가 개통되면서 나루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가. 제출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① 전화 : (02) 2133-2621

② 우편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한국프레스센터) 4층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라.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표식 설치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13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가. 변상금 부과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변상금의 부과)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비고
주식회사 에스〇〇	- 무단점유재산: 서울특별시 성수동1가 656-726 - 점유기간: 2021. 12. 03. ~ 2023. 12. 31. - 점유면적 및 요율: 3.0㎡, 5% - 사전통지 내역: 890,400원	경기도 0인시 0지구 0암로 150, 700호-나00(0전동, 건000)	폐문부재로 인한 고지서 미도달
		서울특별시 0동구 00동1가 650-1100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2024. 10. 17.~2024. 10. 31. (게시일로부터 15일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14호
지명경쟁 입찰 참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법적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송달내용 : 공유재산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
- 매각대상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252
- 공시송달기간 : 2024. 10. 17.~2024. 10. 31.
- 공시송달 대상자 (연접토지 소유자)

대 상 자	주 소	소유 필지
서 ○ 석	서울시 성0구 돈암동 10-1 삼성아파트 101동 500호	홍은동 10-100
염 ○ 민	서울시 서00구 홍은00로9나길 55-0, 2층	홍은동 10-200
김 ○ 란	서울시 서00구 홍은00로9나길 55-0	홍은동 10-200(공유)
이 ○ 성	서울시 서00구 10-207 다 102호	홍은동 10-200(공유)
김 ○ 란	서울시 서00구 홍은00로9가길 30(홍은동)	홍은동 10-200(공유)
김 ○ 자	서울시 서00구 홍은동 10-200 다 102호	홍은동 10-200(공유)
민 ○ 순	서울시 서00구 홍은동 10-200태0연립 다동 200호	홍은동 10-200(공유)
이 ○ 성	경기도 광0시 텃골길00번길 20, 100동 400호	홍은동 10-200(공유)
정 ○ 심	전라남도 진0군 진0읍 동0리 709-10	홍은동 10-200(공유)
김 ○ 동	서울시 서00구 홍은00로9나길 50-0 다동 200호	홍은동 10-200(공유)

※ 공시송달자 주소는 현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소임.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제6항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주소를 기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송달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341) 문의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www.onbid.co.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19호

승강기사업자 행정처분(부품안전인증 취소) 공고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승강기사업자에 대하여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부품안전인증 취소)을 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행정처분 내역

연번	업체명 (대표자)	승강기안전부품명 (모델명)	위반내용 (관련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1	쥬미주하이텍 (이호연)	과속역행방지장치 (MJES-490-14)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법제16조제1항제5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24.10.7.)
2	쥬미주하이텍 (이호연)	과속역행방지장치 (MJES190_G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음 (법제16조제1항제5호)	부품안전인증 취소 (' 24.10.7.)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2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폐문부재, 이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도로교통법 제161조, 및 시행령 제88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채○배 등 731명
 4.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
 - 공고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시중은행, 농협, 전국 우체국 및 전국 편의점(세븐일레븐, GS25, CU, 바이더웨이), 무인수납기 (은행 및 각 구청) 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용카드(삼성, 현대, 우리BC, 롯데, 외환)납부는 편의점 및 무인 수납기에서만 가능합니다.
 5. 이의제기 안내
 - 이의제기는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터넷 검색창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서울특별시청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팩스(02-2133-4904) 및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단속자료 확인 사이트 : 서울특별시 교통위반단속조치(<http://cartax.seoul.go.kr>)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주차계획과 과태료과징팀(☎ 02-2133-4570~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부과)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	163로12**	송*수	전라북도 전주시	2024-04-06 08: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2	162하88**	조*범	서울특별시	2024-04-15 18:3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	105하41**	A*O*A*R*Y*S*E*H*M *D*	서울특별시	2024-04-30 07: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	101하72**	S*N*A*	경기도 용인시	2024-05-03 07:57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	714호76**	임*현	경상북도 안동시	2024-05-04 09: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60000
6	63부45**	이*	서울특별시	2024-05-08 08:38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7	43보58**	이*영	서울특별시	2024-05-11 16:47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8	122하27**	김*연	서울특별시	2024-05-16 18:1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9	169하70**	조*이*산*(*)	서울특별시	2024-05-21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0	149하48**	전*홍	경기도 성남시	2024-05-22 17:57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	16노79**	김*남	서울특별시	2024-05-23 18:30	아차산지하차도~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	69하47**	이*일	서울특별시	2024-05-23 20:1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3	248더64**	강*주	부산광역시	2024-05-24 15:5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4	251노83**	양*섭	경기도 고양시	2024-05-24 17:05	서대문역교차로~독립문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5	21어36**	주*식	경기도 파주시	2024-05-26 11:25	아차산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6	15모44**	이*숙	경기도 군포시	2024-05-29 08:43	경부고속도로 상행 반포IC부근	전용차로 위반	50000
17	125호71**	오*준	부산광역시	2024-05-29 09:1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	104호71**	이*욱	인천광역시	2024-05-29 17: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9	105하41**	A*O*A*R*Y*S*E*H*M *D*	서울특별시	2024-05-30 07:3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0	37호44**	이*범	서울특별시	2024-05-30 17: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	224수64**	장*정	서울특별시	2024-05-30 17:4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	197호61**	이*민	인천광역시	2024-05-30 17:5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3	156하27**	김*정	경상북도 안동시	2024-05-30 18: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4	220호27**	조*민	서울특별시	2024-05-31 09:21	서울 종로구 종로5가 458-2	전용차로 위반	50000
25	38호23**	김*준	인천광역시	2024-05-31 12:55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	서울70자30**	주*희*제*엠*틴	서울특별시	2024-06-01 12:59	서교사거리~홍대입구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60000
27	206우55**	(*)*광*사	서울특별시	2024-06-01 16:16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8	169호16**	전*관	경기도 광주시	2024-06-02 06:5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9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6-03 10: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	38호23**	김*준	인천광역시	2024-06-03 11:3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	40하10**	박*영	경기도 수원시	2024-06-03 17:1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	105하30**	정*기	서울특별시	2024-06-03 18:18	올림픽로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3	104호71**	이*욱	인천광역시	2024-06-04 10:0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4	40하10**	박*영	경기도 수원시	2024-06-04 10:1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	175호71**	황*문	서울특별시	2024-06-04 19:1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	23가58**	진*산*주*희*	충청북도 진천군	2024-06-04 19:3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7	125호93**	주*희*윤*	부산광역시	2024-06-04 21:4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8	34호83**	안*섭	서울특별시	2024-06-05 09:4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	40하10**	박*영	경기도 수원시	2024-06-05 12: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	101호85**	이*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05 13:4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	147하11**	이*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6-05 15:2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42	101하29**	윤*길	서울특별시	2024-06-05 17:44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	196호11**	트*이*페*인*내*널*식* 사	서울특별시	2024-06-06 15:3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44	160하96**	백*영	경기도 안산시	2024-06-07 08:35	공릉동 삼육예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5	161호29**	L*M*N*N*N	경기도 수원시	2024-06-07 12: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	161호29**	L*M*N*N*N	경기도 수원시	2024-06-07 13:4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7	161호29**	L*M*N*N*N	경기도 수원시	2024-06-07 13: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8	161호29**	L*M*N*N*N	경기도 수원시	2024-06-07 13:5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	33루25**	주*회*코*스*	서울특별시	2024-06-07 1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0	191허18**	김*현	인천광역시	2024-06-08 18:1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1	140호39**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4-06-10 13: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2	07마17**	김*영	경기도 고양시	2024-06-10 14:28	연신내역교차로~구산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3	159하39**	김*경	서울특별시	2024-06-10 20:4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4	105하41**	A*O*A*R*Y*S*E*H*M *D*	서울특별시	2024-06-11 07:1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5	197호53**	주*회*2*엘*퍼*	서울특별시	2024-06-11 15:1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6	42두05**	B*Y*N*X*N	경기도 용인시	2024-06-11 15:21	한남IC~잠원IC	전용차로 위반	50000
57	140호39**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4-06-11 17: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8	106어72**	유*회*새*건*	전라북도 원주군	2024-06-11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9	136너46**	신*기*주*회*	서울특별시	2024-06-12 09: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0	27로78**	심*하	서울특별시	2024-06-12 18:36	천호대교~천호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61	156호48**	(*)*앤*홀*스	서울특별시	2024-06-12 18:3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2	249러52**	최*호	서울특별시	2024-06-13 04:33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3	31두21**	유*찬	경기도 고양시	2024-06-13 07:38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64	192하81**	주*회*나*랩*	서울특별시	2024-06-13 07:59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5	172하15**	K*M*I*Y*K	서울특별시	2024-06-13 09: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	172하15**	K*M*I*Y*K	서울특별시	2024-06-13 09:4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7	22저93**	주*회*을*	서울특별시	2024-06-13 10:45	천호대교~천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68	172하15**	K*M*I*Y*K	서울특별시	2024-06-13 14: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9	172하15**	K*M*I*Y*K	서울특별시	2024-06-13 14:51	서초ic~반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70	127우78**	신*철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6-13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	63버69**	주*회*엘*스	경기도 수원시	2024-06-13 18:52	서초IC~양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72	160호27**	플*잉*그*식*사	서울특별시	2024-06-14 04:2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73	52다60**	지*파*로*주*회*	서울특별시	2024-06-14 07:31	북정역~장지교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4	59조11**	문*호	서울특별시	2024-06-14 08:2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5	서울31아37**	김*완	서울특별시	2024-06-14 08: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4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6	55저45**	한*모	서울특별시	2024-06-14 08: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7	225조77**	정*진	세종특별자치시	2024-06-14 08: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8	57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6-14 09: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79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6-14 09: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80	210노28**	민*록	서울특별시	2024-06-14 10:2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1	210노28**	민*록	서울특별시	2024-06-14 10:2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2	96우01**	주*회*니*바*오	경기도 하남시	2024-06-14 11: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3	140호39**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4-06-14 12: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4	126로60**	최*순	경기도 용인시	2024-06-14 14:0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5	126로60**	최*순	경기도 용인시	2024-06-14 14: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6	서울35아13**	이*용	서울특별시	2024-06-14 15:04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 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87	109호31**	문*성	서울특별시	2024-06-14 15:4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88	130누11**	L*H*G*A*U*E*B*T*O *B*O	인천광역시	2024-06-14 16:17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89	19모87**	유*영	서울특별시	2024-06-14 16:58	교보타워사거리~논현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90	294머15**	이*호	경기도 하남시	2024-06-14 17:1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91	107모62**	(*)*국*엠	서울특별시	2024-06-14 17:1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2	46도61**	G*O*이*G	서울특별시	2024-06-14 17: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93	69마81**	B*Y*I*Z*E*B*K*O*J* N*A*O*이*U*L*	서울특별시	2024-06-14 17:22	공릉동 삼육예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94	293나12**	이*선	서울특별시	2024-06-14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95	20하95**	함*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14 17: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96	115가18**	주*회*다*	경기도 수원시	2024-06-14 18:00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97	20러07**	임*옥	경기도 부천시	2024-06-14 18:0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98	55부27**	(*)*.*해*광	경상북도 포항시	2024-06-14 19:2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99	11조39**	(*)*맥*디*스*	서울특별시	2024-06-14 19:28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0	242도57**	N*N*H*N*A*	경기도 부천시	2024-06-14 20:05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01	68우11**	에*앤*설*(*)	서울특별시	2024-06-14 20:1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02	197호13**	최*근	서울특별시	2024-06-15 08:03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3	197호13**	최*근	서울특별시	2024-06-15 08: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4	53루29**	성*모	서울특별시	2024-06-15 08:0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5	53루29**	성*모	서울특별시	2024-06-15 08:0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6	97보85**	문*환	경기도 광주시	2024-06-15 09:33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07	109호29**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4-06-15 09:5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8	109호31**	문*성	서울특별시	2024-06-15 11:2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09	109호31**	문*성	서울특별시	2024-06-15 11:2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0	49어60**	최*림	서울특별시	2024-06-15 14:07	논현역교차로~신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11	03서73**	주*회*플*토	서울특별시	2024-06-15 14:24	논현역~반포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12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6-15 15:1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3	55로06**	공*례	충청남도 아산시	2024-06-15 16:4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14	352러52**	주*회*에*지*레*즈	서울특별시	2024-06-15 17:4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5	46수37**	P*A*T*이*이*N	경상북도 경산시	2024-06-15 23:40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6	136거65**	김*정	전라남도 순천시	2024-06-16 17:1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17	342더72**	강*성	서울특별시	2024-06-17 06:38	의주로 염천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8	41하06**	주*회*이*앤*씨	서울특별시	2024-06-17 08:2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19	11가31**	정*문	서울특별시	2024-06-17 08: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20	352소24**	남*현	서울특별시	2024-06-17 09:06	하계5.6단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21	57리32**	김*육	경기도 부천시	2024-06-17 09:2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	전용차로 위반	50000
122	33더28**	채*배	서울특별시	2024-06-17 10:1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23	342뉴74**	하*퍼*페*스*스*식*사	서울특별시	2024-06-17 12:4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24	351뉴58**	(*대한노인회동대문구지 회(이도영)	서울특별시	2024-06-17 12:5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125	서울84사56**	서*길	서울특별시	2024-06-17 15:0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11	전용차로 위반	60000
126	43모82**	석*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17 15:0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27	09루64**	조*진	서울특별시	2024-06-17 15:36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9	전용차로 위반	50000
128	59소53**	(*)*복*씨*오	서울특별시	2024-06-17 17:1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29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6-17 17: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0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6-17 17: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31	서울48더15**	엠*이*테*놀*지*주*	서울특별시	2024-06-17 17: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2	82라53**	김*대	경기도 하남시	2024-06-17 17:5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3	50다01**	주*희*인*빌*퍼*	서울특별시	2024-06-17 17:5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34	35두01**	(*)*이*이*컴*니	경기도 김포시	2024-06-17 17:5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35	17마01**	정*영	경기도 안양시	2024-06-17 17:57	시흥사거리~박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36	26로18**	김*영	서울특별시	2024-06-17 18: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37	82로11**	최*연	경기도 안산시	2024-06-17 18:16	올림픽회관교차로~올림픽대교남 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38	18고42**	조*희	인천광역시	2024-06-17 18:2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39	105하41**	A*O*A*R*Y*S*E*H*M *D*	서울특별시	2024-06-18 07:27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40	49나26**	강*금	경기도 성남시	2024-06-18 0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1	148하96**	부*워*게*주*희*	부산광역시	2024-06-18 08:11	종합운동장역~삼성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42	60소76**	구*임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18 08:3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43	42리28**	윤*원	서울특별시	2024-06-18 09:1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44	94고03**	김*호	서울특별시	2024-06-18 09:17	등촌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145	32마05**	주*희*선*엠*워	서울특별시	2024-06-18 09:23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46	24보52**	글*벌*합*영*주*(C*C* *.L*D*)	서울특별시	2024-06-18 09: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47	109호29**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4-06-18 10: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8	109호29**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4-06-18 10:3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49	115리53**	주*희*드*독*심*양*터	서울특별시	2024-06-18 11: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0	153고56**	김*진	경기도 고양시	2024-06-18 13:31	남현동 남대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1	서울32사46**	고*규	서울특별시	2024-06-18 14:5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2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6-18 15: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3	21도20**	(*)*자*갤*리*	서울특별시	2024-06-18 16:0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154	228호17**	이*주	서울특별시	2024-06-18 16:11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5	166무31**	주*희*우*록*엔*테*먼*	서울특별시	2024-06-18 16:1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56	13고15**	임*준	경기도 안산시	2024-06-18 16:54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57	127가59**	(*)*스*림*리*(*)*r*m *K*r*a*o*,*t*,*	서울특별시	2024-06-18 1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8	157호99**	주*희*진*씨*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18 17: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59	47라37**	배*희	경기도 고양시	2024-06-18 17:4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0	56누49**	임*준	서울특별시	2024-06-18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1	253모71**	주*희*정*개*하*징	서울특별시	2024-06-18 18:0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62	144노11**	한*국	충청북도 청주시	2024-06-18 18:1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63	29오52**	이*희	경기도 수원시	2024-06-18 18: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4	40노04**	전*훈	서울특별시	2024-06-18 18:26	구산역교차로~연신내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65	366부99**	금*디*인*축*주*	경기도 고양시	2024-06-18 19: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66	98누18**	최*겸	서울특별시	2024-06-18 19: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6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67	006다71**	박*진	인천광역시	2024-06-19 07:43	한화손해보험빌딩~하이투자증권 본사	전용차로 위반	60000
168	서울91자55**	이*량	서울특별시	2024-06-19 08:1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69	92로51**	정*웅	서울특별시	2024-06-19 08:47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70	806마63**	문*식	서울특별시	2024-06-19 08:48	내곡IC~염곡IC	전용차로 위반	50000
171	63보30**	김*춘	경기도 광주시	2024-06-19 09:2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2	59조11**	문*호	서울특별시	2024-06-19 09:41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3	172저61**	주*기	서울특별시	2024-06-19 10:1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4	33나04**	이*화	서울특별시	2024-06-19 11:0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5	317누66**	L*X*A*O*G	경기도 안산시	2024-06-19 14:3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76	05무03**	V*D*Y*J*U	경기도 양주시	2024-06-19 15: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177	10로87**	정*경	서울특별시	2024-06-19 15:38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178	146호66**	권*대	경기도 수원시	2024-06-19 16:32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79	11머67**	송*원	서울특별시	2024-06-19 16:49	현대백화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80	서울70자30**	주*희*제*엠*틴	서울특별시	2024-06-19 16:52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60000
181	서울36바14**	여*훈	서울특별시	2024-06-19 17:01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2	160하90**	(*)*국*제*브*	서울특별시	2024-06-19 17:05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3	157호60**	라*캐*(*)	경기도 군포시	2024-06-19 17:10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184	185여40**	주*희*덴*규*	서울특별시	2024-06-19 17: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85	127가59**	(*)*스*림*리*(*)*r*m *K*f*a*O*,*t*,*	서울특별시	2024-06-19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6	220우87**	설*욱	서울특별시	2024-06-19 17:44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 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187	60거56**	조*욱	경기도 용인시	2024-06-19 17:5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8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6-19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89	19구63**	민*인	서울특별시	2024-06-19 18:2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0	37루39**	김*규	경상남도 창원시	2024-06-19 19:5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191	인천30바75**	조*호	인천광역시	2024-06-19 20:0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2	서울32사64**	이*기	서울특별시	2024-06-19 20: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193	09보79**	주*희*로*트*리*	경기도 가평군	2024-06-19 20:3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194	22마79**	박*훈	인천광역시	2024-06-19 20:37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5	19더56**	K*R*O*O*R*Z*M*R* D*U*T*M*V*C*	충청남도 아산시	2024-06-20 01: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196	31두21**	유*찬	경기도 고양시	2024-06-20 07:43	은평뉴타운10단지~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197	183무96**	(*)*플*리*앤*	충청남도 아산시	2024-06-20 08:0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198	28나76**	윤*선	서울특별시	2024-06-20 09:4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199	26소28**	정*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0 11:0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00	140하41**	T*N*D*Y*N*	서울특별시	2024-06-20 11:29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01	27라36**	최*진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20 11:3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2	81마68**	김*오	경기도 안양시	2024-06-20 13:0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03	144로77**	윤*필	서울특별시	2024-06-20 14: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04	322우61**	심*수	서울특별시	2024-06-20 15: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5	01머14**	주*희*예*이*씨	경상북도 영천시	2024-06-20 15:4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06	389저52**	(*)*원*엔*	부산광역시	2024-06-20 16: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7	08루25**	주*희*해*건*	경기도 부천시	2024-06-20 16:2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8	59도35**	주*희*우*철*산*	광주광역시	2024-06-20 17: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09	805조91**	윤*석	경기도 군포시	2024-06-20 17:2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0	48마97**	허*미	서울특별시	2024-06-20 17:3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1	서울영등포자34**	이*천	서울특별시	2024-06-20 17:4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한강현 대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40000
212	서울강남가91**	조*필	서울특별시	2024-06-20 17:45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한강현 대아파트앞)	전용차로 위반	4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13	165호82**	임*	서울특별시	2024-06-20 17:5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4	66라84**	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0 18: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15	09나42**	권*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0 18:42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16	85오32**	주*회*아*엠*이*스	서울특별시	2024-06-20 19:02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17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 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6-20 1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18	316다16**	G*N*H*Y*G*H*D*R* H*L*U*	서울특별시	2024-06-21 03:57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19	13모86**	I*S*P*V*A*Y*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6-21 09:0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20	56마33**	케*인*내*널*식*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1 09:26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4-1	전용차로 위반	50000
221	서울88바12**	조*준	서울특별시	2024-06-21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22	803더63**	김*이	경기도 안양시	2024-06-21 09: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23	160허77**	박*	인천광역시	2024-06-21 09:43	상계동 미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24	53라28**	(*)*원*함*설	경기도 고양시	2024-06-21 13:06	화랑대역~삼육대	전용차로 위반	50000
225	282도71**	주*회*브*인*쳐*	경기도 성남시	2024-06-21 15: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6	107수73**	남*우	서울특별시	2024-06-21 15: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27	289저27**	오*복	서울특별시	2024-06-21 17:2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28	153허57**	(*)*이*지	서울특별시	2024-06-21 17:28	흑석역~한강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29	168고57**	김*애	경기도 용인시	2024-06-21 17:28	공릉동 삼육대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30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4-06-21 17:3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1	152하37**	진*네*워*주*회*	경기도 성남시	2024-06-21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2	서울36바22**	이*홍	서울특별시	2024-06-21 17:4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3	09너03**	주*회*리*글*별	서울특별시	2024-06-21 17: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4	53모17**	김*민	서울특별시	2024-06-21 17: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5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6-21 18:0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36	120버87**	홍*연	서울특별시	2024-06-21 18:2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37	서울32사64**	이*기	서울특별시	2024-06-21 19: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38	경기81바56**	주*희*글*별*운	경기도 포천시	2024-06-21 19:54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39	46어82**	이*일	대구광역시	2024-06-21 20:2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40	843수83**	주*희*한*푸*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2024-06-21 20: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241	227러61**	A*T*N*S*T*E*G*N*U *G*	경상북도 영천시	2024-06-21 22:56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242	30도34**	주*희*조*	경상남도 통영시	2024-06-22 10:2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43	서울31아30**	김*배	경기도 고양시	2024-06-22 12:19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선동초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44	169오48**	A*N*T*L*A	경기도 평택시	2024-06-22 12:4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5	169오48**	A*N*T*L*A	경기도 평택시	2024-06-22 12:5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6	26무08**	양*진	서울특별시	2024-06-22 17:3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247	138러69**	김*경	인천광역시	2024-06-22 20: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8	138러69**	김*경	인천광역시	2024-06-22 20:2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49	16가50**	안*철	서울특별시	2024-06-23 02:2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50	136거65**	김*정	전라남도 순천시	2024-06-23 09: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1	26도37**	C*지*H*O	서울특별시	2024-06-23 11:56	영등포고가차도~영등포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252	56루56**	A*I*O*O*I*M*K*K*M *V*C*	경상북도 고령군	2024-06-23 14:3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3	56루56**	A*I*O*O*I*M*K*K*M *V*C*	경상북도 고령군	2024-06-23 14:3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4	312수31**	꿈*랑*료*지*희*협*조*	경기도 안성시	2024-06-23 16: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5	312수31**	꿈*랑*료*지*희*협*조*	경기도 안성시	2024-06-23 16:21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56	153루33**	우*근	서울특별시	2024-06-23 22:15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57	269구29**	W*N*J*A*	경기도 수원시	2024-06-24 05:36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58	158주75**	박*재	경기도 하남시	2024-06-24 08:36	강동구청역~풍납현대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259	33나36**	(*)*티*	서울특별시	2024-06-24 09:07	서초IC~양재IC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60	17노04**	이*경	경기도 김포시	2024-06-24 09:08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전용차로 위반	50000
261	37우84**	N*K*L*E*A*E*S*N*R	경기도 안성시	2024-06-24 09: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2	48주94**	주*희*배*데*레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24 09:46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63	234수23**	한*희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06-24 11: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64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6-24 17:3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5	257머30**	이*원	서울특별시	2024-06-24 17:4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6	212거25**	김*진	경기도 양주시	2024-06-24 17: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7	경기84바87**	이*욱	서울특별시	2024-06-24 18: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68	25마40**	강*식	경기도 파주시	2024-06-24 19:5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69	364러35**	이*현	경기도 시흥시	2024-06-24 20:42	공릉동 삼육예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0	48러56**	윤*남	경기도 이천시	2024-06-25 07:2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1	48러56**	윤*남	경기도 이천시	2024-06-25 07: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2	48러56**	윤*남	경기도 이천시	2024-06-25 07:2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3	94로17**	정*수	경기도 하남시	2024-06-25 09:08	상계동 미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74	48주94**	주*희*배*데*레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25 09:3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75	28어25**	주*희*피*쉬	대전광역시	2024-06-25 10:5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6	14너55**	C*U*G*A*G*O*	서울특별시	2024-06-25 11: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277	09모02**	권*빈	서울특별시	2024-06-25 13:07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78	51저52**	N*U*E*V*E*T*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25 13: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79	51저52**	N*U*E*V*E*T*N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25 13: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80	207너46**	한*문	서울특별시	2024-06-25 14:51	은천삼거리~봉천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81	81소76**	김*영	서울특별시	2024-06-25 16:15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46-6	전용차로 위반	50000
282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6-25 17:4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3	60거56**	조*욱	경기도 용인시	2024-06-25 17:4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4	54누72**	임*득	서울특별시	2024-06-25 18:09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285	96더19**	(*)*레*지*마*	서울특별시	2024-06-25 19:29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86	55나71**	김*상	서울특별시	2024-06-25 19:4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7	15서37**	최*용	서울특별시	2024-06-25 1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288	284어79**	김*현	서울특별시	2024-06-25 20:0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89	33가06**	김*순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25 20: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290	65우05**	주*회*제*스*자*립	서울특별시	2024-06-25 20:5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291	20하27**	이*숙	서울특별시	2024-06-25 22:5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292	64라53**	(*)*이*	서울특별시	2024-06-26 08:32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3	64라53**	(*)*이*	서울특별시	2024-06-26 08:3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294	81도77**	에*스*설*전*주*	경기도 오산시	2024-06-26 09:3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5	75부98**	정*주	서울특별시	2024-06-26 09:50	동일로(노원역->용화여고)	전용차로 위반	60000
296	105부10**	전*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6 10:20	천호대로 천호대교~천호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297	221호11**	(*)*창*류*통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6 11: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298	245어87**	송*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6 12: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299	210주83**	전*일	인천광역시	2024-06-26 13:59	성수대교남단교차로~압구정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00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6-26 16: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1	83너84**	(*)*렌*리*일	서울특별시	2024-06-26 16:1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2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6-26 17:0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03	113나70**	J*N*O*G*A*	서울특별시	2024-06-26 17: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4	330로75**	J*N*O*G*이*G	경기도 시흥시	2024-06-26 17:22	구로디지털단지역~대림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05	34우99**	김*석	충청북도 충주시	2024-06-26 17: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06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6-26 17: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07	153허51**	권*정	경기도 파주시	2024-06-26 17:4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08	경기87바79**	김*덕	경기도 고양시	2024-06-26 18:27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09	서울32아49**	최*창	서울특별시	2024-06-26 19: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0	398머96**	최*연	경기도 양주시	2024-06-26 19:5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1	86나74**	주*희*스*트*흠	서울특별시	2024-06-26 20:27	공릉동 목예원(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12	92저25**	유*순	서울특별시	2024-06-26 20: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13	41머57**	이*구	인천광역시	2024-06-27 0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14	96머45**	주*희*영*건*	경기도 고양시	2024-06-27 07: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15	148머54**	이*환	경기도 고양시	2024-06-27 07:54	통일로 SK엘피지충전소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316	104무30**	로*홍*스*식*사	서울특별시	2024-06-27 08:35	개화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17	13노54**	이*정	서울특별시	2024-06-27 09:11	몽촌토성역~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18	299우77**	주*희*요*아	서울특별시	2024-06-27 09:23	개화교~개화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319	서울89저23**	신*진	서울특별시	2024-06-27 09:33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20	40로07**	H*R*A*S*O*	광주광역시	2024-06-27 10: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21	10루52**	오*열	경기도 성남시	2024-06-27 10:21	한양아파트앞사거리~성수대교남단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22	141서66**	주*희*파*하*	인천광역시	2024-06-27 10:5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3	141서66**	주*희*파*하*	인천광역시	2024-06-27 10:59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4	28주39**	강*빈	인천광역시	2024-06-27 12:2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25	140호39**	(*)*이*스*퍼*이*	서울특별시	2024-06-27 13: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6	85보03**	김*민	경기도 군포시	2024-06-27 14:2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27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6-27 16: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8	34보19**	Z*A*G*U*J*	부산광역시	2024-06-27 17:1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29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6-27 17: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0	148누59**	최*원	서울특별시	2024-06-27 17:5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1	362너68**	(*)*앤*스	서울특별시	2024-06-27 17:5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32	66라84**	정*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7 18:2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33	14우95**	민*화	서울특별시	2024-06-27 19:0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334	85로15**	(*)*던*빙	경기도 파주시	2024-06-27 19: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35	14보90**	왕*철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6-27 20:3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6	22두59**	김*마	경기도 동두천시	2024-06-27 20:3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7	51도01**	J*M*A*D*R*Z*L*A*G *L	서울특별시	2024-06-27 20: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38	22라72**	이*현	경기도 시흥시	2024-06-28 08:2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39	서울31아56**	유*중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8 08:36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몽촌토성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40	814수63**	김*응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28 09: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1	81소46**	이*호	경기도 파주시	2024-06-28 09: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2	59소53**	(*)*복*씨*오	서울특별시	2024-06-28 09:2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343	42모87**	조*연	충청남도 천안시	2024-06-28 09: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4	30우53**	(*)*이*더*유	서울특별시	2024-06-28 09:39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메이플라워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45	23디55**	김*은	서울특별시	2024-06-28 09:4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46	306라77**	최*훈	경기도 김포시	2024-06-28 09: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47	363다81**	권*민	경기도 안산시	2024-06-28 11:2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48	34조63**	하*필	충청북도 괴산군	2024-06-28 11:4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49	서울성동자39**	김*철	인천광역시	2024-06-28 11:56	동묘앞교차로~동대문역	전용차로 위반	40000
350	65구25**	하*호	충청남도 당진시	2024-06-28 13: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1	101오30**	주*희*세*푸*	경기도 시흥시	2024-06-28 15:0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2	서울72바99**	서*전*버*협*조*	서울특별시	2024-06-28 15:41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60000
353	32고49**	주*희*선*물*	경기도 고양시	2024-06-28 16:07	압구정역~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54	369라61**	신*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6-28 16:1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55	10머22**	오*주	경기도 성남시	2024-06-28 16:4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56	45구86**	문*선	서울특별시	2024-06-28 17: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57	10버74**	김*슬	서울특별시	2024-06-28 17:17	공릉동 삼육예코팜센터(구리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358	46부05**	신*철	서울특별시	2024-06-28 17:35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59	23너50**	전*일	서울특별시	2024-06-28 17:41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0	76다68**	(*)*정*업	서울특별시	2024-06-28 17:42	현대백화점~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60000
361	320고38**	주*희*미*홀*스	서울특별시	2024-06-28 17:4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2	서울80배11**	이*철	서울특별시	2024-06-28 18:14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3	822더91**	사*법*실*사*행*나*	서울특별시	2024-06-28 18: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4	15보82**	조*숙	경기도 고양시	2024-06-28 19: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65	28저33**	강*봉	서울특별시	2024-06-28 19:19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66	57러47**	조*현	경기도 광주시	2024-06-28 19:2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7	57러47**	조*현	경기도 광주시	2024-06-28 19:2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68	30서83**	김*정	충청북도 진천군	2024-06-28 19:2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69	64너37**	황*태	인천광역시	2024-06-28 20: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0	191소34**	이*봉	경기도 구리시	2024-06-28 20:2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1	서울80배25**	한*택*업*동*합	서울특별시	2024-06-28 20: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72	충남82아12**	류*승	충청남도 보령시	2024-06-28 21:0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3	13보69**	박*근	경기도 광명시	2024-06-29 02:30	개봉동 우리은행 교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74	280서66**	심*승	인천광역시	2024-06-29 07:58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75	47고14**	최*수	서울특별시	2024-06-29 10:11	아차산역~광나루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76	37어38**	이*열	경기도 화성시	2024-06-29 11:5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77	37구38**	X*N*I*G*O*G	경기도 안산시	2024-06-29 16:4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378	37구38**	X*N*I*G*O*G	경기도 안산시	2024-06-29 16: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79	30수83**	신*호	경기도 광주시	2024-06-29 16:5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380	55부49**	Y*N*A*I*N	경기도 파주시	2024-06-29 18: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1	84여26**	양*원	경기도 의정부시	2024-06-29 19: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382	11하86**	주*회*나*렌*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4-06-29 22: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383	160보28**	P*A*R*N*H*	경기도 부천시	2024-06-29 22:27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384	27노65**	최*률	인천광역시	2024-06-30 07:4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385	305수88**	임*환	경기도 김포시	2024-06-30 10:5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6	72부53**	김*호	경기도 하남시	2024-06-30 16:1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60000
387	경기84바90**	서*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1 07:2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88	225거31**	투*씨*아*주*회*	서울특별시	2024-07-01 07:2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89	225거31**	투*씨*아*주*회*	서울특별시	2024-07-01 0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0	225거31**	투*씨*아*주*회*	서울특별시	2024-07-01 07: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391	97노78**	장*주	서울특별시	2024-07-01 07:32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392	157하26**	원*선	서울특별시	2024-07-01 07:3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3	18다78**	박*진	서울특별시	2024-07-01 07:4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4	140마50**	(*)*제*알*딩*	서울특별시	2024-07-01 07:43	대치역~도곡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395	31다58**	Z*N*Y*N*A*	경기도 화성시	2024-07-01 07:5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396	50수27**	(*)*앤*이*노*이*	서울특별시	2024-07-01 08:0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97	246보54**	주*회*세*퍼*트*프*	세종특별자치시	2024-07-01 0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398	11무74**	이*현	경상북도 안동시	2024-07-01 08:5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399	58누89**	강*정	경기도 고양시	2024-07-01 08:58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0	20나16**	강*권	서울특별시	2024-07-01 09:35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1	33모71**	오*희	인천광역시	2024-07-01 09: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02	127가67**	이*수	경기도 용인시	2024-07-01 09:57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03	48오76**	전*수	울산광역시	2024-07-01 10:3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04	36도76**	강*일	경기도 수원시	2024-07-01 12:10	남현동 남대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5	236부10**	김*훈	인천광역시	2024-07-01 13:0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6	179뉴59**	김*영	서울특별시	2024-07-01 15: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07	804조82**	주*희*에*스*동	경기도 고양시	2024-07-01 15:2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비비 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408	13무95**	M*H*O*D*O*A*E*A* M*D*D*M*S*A*	충청남도 홍성군	2024-07-01 15:5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09	90로99**	박*철	경기도 성남시	2024-07-01 15:5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10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7-01 17:1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1	109머73**	김*영	서울특별시	2024-07-01 17: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2	04더18**	김*희	경기도 안산시	2024-07-01 17:4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13	34주56**	박*민	서울특별시	2024-07-01 18: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4	183거58**	진*화	서울특별시	2024-07-01 19: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15	380너68**	박*아	인천광역시	2024-07-01 19: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16	87버22**	주*희*에*치*사	서울특별시	2024-07-01 19:2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17	37로66**	연*한	충청북도 청주시	2024-07-01 19:34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18	서울91자12**	백*원	경기도 시흥시	2024-07-01 19:4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19	65서79**	허*현	경기도 화성시	2024-07-01 20:09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20	40무05**	김*호	서울특별시	2024-07-01 20:2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21	13부75**	한*석	경기도 김포시	2024-07-01 20:26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22	서울31자44**	박*훈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1 20:3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23	33도24**	채*희	서울특별시	2024-07-02 07:38	육사야구장~삼육예코팜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424	109하71**	추*경	서울특별시	2024-07-02 07:42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25	13거87**	주*희*세*브*리	서울특별시	2024-07-02 08: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26	312가65**	전*현	서울특별시	2024-07-02 09: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27	28거90**	김*정	경기도 김포시	2024-07-02 09:15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28	서울31자32**	황*홍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2 09:24	몽촌토성역~잠실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29	서울36바18**	김*민	경기도 광주시	2024-07-02 09:34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30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7-02 10:1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1	67보09**	이*섭	경기도 광주시	2024-07-02 10:16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2	338러35**	주*희*더*유*리*	경기도 고양시	2024-07-02 10:2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33	144조12**	윤*용	서울특별시	2024-07-02 11:28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34	353우20**	주*희*뉴*이	광주광역시	2024-07-02 12: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5	353우20**	주*희*뉴*이	광주광역시	2024-07-02 12:03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36	290러92**	김*구	대전광역시	2024-07-02 12:40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37	19버86**	박*관	경상북도 문경시	2024-07-02 13:2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38	80가92**	음*형	경기도 파주시	2024-07-02 14:06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439	381루25**	티*스*코*레*션*식*사	서울특별시	2024-07-02 14: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0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7-02 16:5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41	39루14**	박*균	서울특별시	2024-07-02 17:1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2	135로85**	N*D*이*R*이	인천광역시	2024-07-02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43	52저99**	변*건	서울특별시	2024-07-02 18:3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44	20버04**	박*선	부산광역시	2024-07-02 19:22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5	19두99**	유*석	경기도 동두천시	2024-07-02 19:22	상계동 미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46	13가39**	이*철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2 20:0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47	45마97**	(*)*서*교*	경기도 시흥시	2024-07-02 20:2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48	11고70**	안*익	서울특별시	2024-07-02 23:2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49	서울31바87**	현*범	경기도 성남시	2024-07-03 07:15	박석고개교차로~은평성모병원사 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50	37두68**	최*찬	서울특별시	2024-07-03 08:3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51	서울31자41**	김*준	경기도 광주시	2024-07-03 08:5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2	59부25**	W*N*W*N*Z*N*	서울특별시	2024-07-03 09:1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3	59두34**	(*)*스*코*아	경기도 고양시	2024-07-03 09:14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4	59두34**	(*)*스*코*아	경기도 고양시	2024-07-03 09:15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5	87다93**	허*남	서울특별시	2024-07-03 09:3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56	63모29**	박*난	경기도 용인시	2024-07-03 09:50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57	96우06**	유*형	충청북도 충주시	2024-07-03 11:10	남현동 남대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58	141모87**	윤*용	경기도 평택시	2024-07-03 13:4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59	63모29**	박*난	경기도 용인시	2024-07-03 13:58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0	93고49**	J*N*H*N*H*O	경기도 안산시	2024-07-03 16:5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1	43모82**	석*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3 18:0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462	366구86**	K*A*A*O*H*L*M*E*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03 18: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63	233너27**	이*선	서울특별시	2024-07-03 18:4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64	52저99**	변*건	서울특별시	2024-07-03 18:5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465	63더88**	윤*경	경기도 성남시	2024-07-03 19:14	종합운동장사거리~잠실새내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466	06거77**	젠*스*크*로*코*아*식*사	서울특별시	2024-07-03 19:20	남현동 남대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67	63가82**	이*아	서울특별시	2024-07-03 19: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68	86다47**	이*욱	경기도 양주시	2024-07-03 20:1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69	서울89자97**	박*권	서울특별시	2024-07-03 20:1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0	서울31사43**	박*형	서울특별시	2024-07-04 01: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71	45두52**	박*승	서울특별시	2024-07-04 07:56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472	43도94**	한*선	경기도 성남시	2024-07-04 08:00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473	62너80**	(*)*안	부산광역시	2024-07-04 08:17	운동장사거리~삼성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74	58부58**	박*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4 08:3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75	11수35**	이*현	경기도 안산시	2024-07-04 0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76	63우90**	서*호	대구광역시	2024-07-04 08:5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77	205여96**	박*남	서울특별시	2024-07-04 11:05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78	253모71**	주*희*정*개*하*징	서울특별시	2024-07-04 14:30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479	20누65**	박*규	대전광역시	2024-07-04 14:49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0	366나20**	신*만	경상남도 거제시	2024-07-04 15:09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481	88로18**	서*도	인천광역시	2024-07-04 15:53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482	109보52**	주*희*루*스*설*코*아	경기도 안산시	2024-07-04 16:0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3	37구38**	X*N*I*G*O*G	경기도 안산시	2024-07-04 16:47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4	37구38**	X*N*I*G*O*G	경기도 안산시	2024-07-04 16:4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5	363구86**	김*정	경기도 성남시	2024-07-04 17:10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6	363구86**	김*정	경기도 성남시	2024-07-04 17:1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7	391나36**	(*)*타*널	서울특별시	2024-07-04 17: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488	167도88**	Z*E*G*A*Y*E	경기도 하남시	2024-07-04 17:2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89	167도88**	Z*E*G*A*Y*E	경기도 하남시	2024-07-04 17:30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0	48나38**	한*희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4 17: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91	68주30**	오*훈	서울특별시	2024-07-04 18: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92	17며09**	노*화	서울특별시	2024-07-04 18: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493	134수97**	김*상	서울특별시	2024-07-04 19:10	광화문교차로~경복궁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494	35서13**	위*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4-07-04 20:29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495	경기88자15**	기*도	경기도 오산시	2024-07-05 07:16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96	190허67**	주*재	인천광역시	2024-07-05 08:2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497	13거87**	주*희*세*브*리	서울특별시	2024-07-05 08:4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498	297로10**	김*숙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05 09:4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499	경기파주바60**	박*훈	경기도 파주시	2024-07-05 15:44	종각역~종로2가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0000
500	149호57**	손*희	서울특별시	2024-07-05 18:2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01	21모06**	전*호	경기도 고양시	2024-07-05 19: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02	96마45**	김*신	경기도 고양시	2024-07-05 19:17	동산육교~구파발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03	288러19**	문*필	경기도 안산시	2024-07-05 20:3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04	109하13**	이*산	서울특별시	2024-07-07 13: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05	서울35바31**	김*희	서울특별시	2024-07-07 19:24	진관동 구파발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06	경기87사15**	고*홍	경기도 고양시	2024-07-08 08:2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07	46소08**	류*수	경기도 부천시	2024-07-08 08:34	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08	305부91**	조*선	충청북도 청주시	2024-07-08 12:5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09	55더25**	김*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07-08 13:37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10	55더25**	김*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4-07-08 13:41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11	경기14도76**	정*훈	경기도 의왕시	2024-07-08 17:2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60000
512	73나74**	천*희	서울특별시	2024-07-08 17:3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60000
513	66누18**	방*숙	서울특별시	2024-07-08 18:5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14	97어05**	농*희*법*삼*능*산*주*	경기도 포천시	2024-07-09 08:45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515	02고66**	남*술	서울특별시	2024-07-09 09: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16	37모97**	이*숙	경기도 양주시	2024-07-09 10:05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17	56나15**	문*정	경기도 성남시	2024-07-09 12:1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518	106호84**	김*년	경상북도 영주시	2024-07-09 13:4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19	20로66**	엄*옥	서울특별시	2024-07-09 16: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7	전용차로 위반	50000
520	36서68**	김*석	서울특별시	2024-07-09 18: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21	89소15**	손*조	서울특별시	2024-07-09 19:3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22	14보69**	이*경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09 19:4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3	53주29**	유*애	서울특별시	2024-07-09 19:5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4	02부29**	우*은	서울특별시	2024-07-10 08:38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25	719가22**	송*화	경기도 김포시	2024-07-10 08:42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60000
526	19우88**	김*상	서울특별시	2024-07-10 08:4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7	39소42**	유*해	경기도 구리시	2024-07-10 09:03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28	67라51**	티*이*홀*스*주*	서울특별시	2024-07-10 13: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29	392도87**	박*록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10 14:2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0	278거80**	윤*정	경기도 용인시	2024-07-10 15:51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전용차로 위반	50000
531	35부09**	김*용	전라남도 순천시	2024-07-10 16:5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2	55서68**	이*규	서울특별시	2024-07-10 17: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33	29하51**	김*원	서울특별시	2024-07-10 17:5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34	817구42**	주*회*에*겸*니	경상남도 창원시	2024-07-10 18:3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35	100무94**	김*희	서울특별시	2024-07-10 19:0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36	21노23**	갈*민	서울특별시	2024-07-10 19:1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37	88도32**	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4-07-10 19:23	성산2교사거리~마포구청역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38	223로10**	유*룡	세종특별자치시	2024-07-10 20:25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39	307소16**	박*서	전라남도 나주시	2024-07-11 08: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40	113저36**	양*평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1 08:5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41	96구77**	조*현	경기도 성남시	2024-07-11 09:4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42	13라66**	최*석	경기도 양주시	2024-07-11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3	인천87배11**	정*희	인천광역시	2024-07-11 13:01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544	24노66**	노*철	서울특별시	2024-07-11 13:35	은평뉴타운CNG충전소~은평지문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45	163하27**	송*원	서울특별시	2024-07-11 15: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6	01하20**	오*현	서울특별시	2024-07-11 17: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47	392다49**	강*진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11 17:3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48	26머53**	정*화	서울특별시	2024-07-11 19:43	국립현충원교차로~혹석역	전용차로 위반	50000
549	385마32**	김*연	인천광역시	2024-07-11 20:2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50	194호73**	이*영	경기도 고양시	2024-07-11 20:26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51	02노83**	엄*원	서울특별시	2024-07-11 20:3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52	331우61**	이*원	경기도 용인시	2024-07-12 07:00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53	02부29**	우*은	서울특별시	2024-07-12 08:43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554	55고45**	이*형	서울특별시	2024-07-12 09: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55	24호57**	강*원	경기도 화성시	2024-07-12 11:45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556	195하16**	김*구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12 12:11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57	72가30**	정*운	서울특별시	2024-07-12 16:20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85-14	전용차로 위반	60000
558	195호25**	권*학	서울특별시	2024-07-12 16: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59	68주30**	오*훈	서울특별시	2024-07-12 17:31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0	46루08**	최*영	서울특별시	2024-07-12 17:40	올림픽회관교차로~성내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61	28너38**	정*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12 17:4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62	369라60**	양*록	경기도 이천시	2024-07-12 18:21	담터지하차도~삼육에코팜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563	39소42**	유*해	경기도 구리시	2024-07-12 18: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64	16나15**	이*현	경기도 포천시	2024-07-12 18: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65	경기48바55**	전*훈	경기도 구리시	2024-07-12 19: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566	서울32아45**	조*열	서울특별시	2024-07-12 19:30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7	04주57**	전*억	충청남도 천안시	2024-07-12 20:40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68	23하33**	(*)*나*츠	경기도 여주시	2024-07-13 23:35	중화동 종량역 인근 메디렌드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569	13라01**	정*주	서울특별시	2024-07-14 17:4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70	서울중량타88**	이*성	서울특별시	2024-07-15 08:17	신설동역교차로~동묘앞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40000
571	126고80**	김*민	서울특별시	2024-07-15 12:51	제기동역~경동시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72	48오78**	박*석	경기도 광주시	2024-07-15 18:18	말미사거리~금천구청입구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3	21로33**	김*석	경기도 부천시	2024-07-15 18: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4	343조26**	김*욱	서울특별시	2024-07-15 20:0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75	65모61**	박*숙	서울특별시	2024-07-15 20: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76	15루42**	지*경	서울특별시	2024-07-15 20:4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7	35라53**	신*철	경기도 성남시	2024-07-16 10:16	강남소방서	전용차로 위반	50000
578	28나58**	W*L*S*A*H*R*J*S*P *	경기도 평택시	2024-07-16 10:2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79	835모25**	백*혜	경기도 고양시	2024-07-16 14:5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0	116도23**	정*우	서울특별시	2024-07-16 16:49	압구정역교차로~현대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581	49마64**	주*희*대*콘*리*산*개*	경기도 화성시	2024-07-16 18: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2	145로77**	권*돈	서울특별시	2024-07-16 20: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83	05도04**	권*춘	서울특별시	2024-07-16 20:2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4	132주76**	제*영	서울특별시	2024-07-16 20:24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85	311오13**	전*지	서울특별시	2024-07-16 20: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586	64가78**	강*호	서울특별시	2024-07-16 22:3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587	15우11**	유*심	서울특별시	2024-07-17 07:4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88	경기14모87**	최*학	경기도 용인시	2024-07-17 09:3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60000
589	67어16**	이*호	서울특별시	2024-07-17 09:42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590	서울32아34**	김*열	서울특별시	2024-07-17 11:36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591	191허72**	반*권*팅*식*사	전라남도 여수시	2024-07-17 16:5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592	69러96**	(*)*산*지*어*	서울특별시	2024-07-17 18:01	올림픽대교남단교차로~송파구청 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3	826고96**	신*욱	경기도 시흥시	2024-07-17 18:03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594	22노09**	배*종	서울특별시	2024-07-17 18:0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5	58누27**	전*준	서울특별시	2024-07-17 19:34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6	367오37**	남*정	경기도 광주시	2024-07-17 20: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597	133하69**	임*석	서울특별시	2024-07-18 08: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598	123두95**	이*한	세종특별자치시	2024-07-18 08:3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599	145호17**	박*욱	부산광역시	2024-07-18 09: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00	57고47**	이*호	서울특별시	2024-07-18 09:2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01	148마34**	안*수	서울특별시	2024-07-18 09:25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602	222저76**	팜*프영	경기도 화성시	2024-07-18 10:4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03	162로35**	전*연	서울특별시	2024-07-18 18:4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04	26러42**	한*현	서울특별시	2024-07-18 20:4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05	45너57**	홍*정	서울특별시	2024-07-18 21:01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06	서울32자65**	우*근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19 03:46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07	32거93**	오*민	서울특별시	2024-07-19 08:39	성산2교~성산1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08	65도77**	이*희	인천광역시	2024-07-19 09:3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09	15저97**	권*훈	인천광역시	2024-07-19 09:3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10	93도37**	박*규	충청북도 증평군	2024-07-19 13: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1	177하67**	주*희*와*애*치*통	서울특별시	2024-07-19 15: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12	381더56**	박*혜	서울특별시	2024-07-19 16:18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13	66루76**	양*열	전라남도 담양군	2024-07-19 17:1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14	196호97**	전*영	서울특별시	2024-07-19 17:19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15	50루84**	박*주	서울특별시	2024-07-19 17:28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16	68주30**	오*훈	서울특별시	2024-07-19 17:28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17	28부22**	최*준	서울특별시	2024-07-19 18:1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618	46두25**	안*석	인천광역시	2024-07-19 20: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19	64다20**	이*혁	경기도 화성시	2024-07-19 22:37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20	28누07**	김*식	서울특별시	2024-07-20 07:1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1	815두92**	홍*모	서울특별시	2024-07-20 13:58	연희ic~ 연세대학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22	399도47**	도*정	서울특별시	2024-07-20 15:2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23	93고22**	권*중	서울특별시	2024-07-20 17:14	금천우체국교차로~독산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624	11로97**	김*욱	서울특별시	2024-07-20 19:4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5	46도59**	박*아	경기도 고양시	2024-07-21 10:06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626	63로01**	Z*E*G*I*U*	충청북도 청주시	2024-07-21 13:23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7	서울32자19**	김*순	서울특별시	2024-07-22 02:47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28	11조41**	전*균	경기도 화성시	2024-07-22 08:0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29	24구11**	김*영	서울특별시	2024-07-22 09:11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0	107부68**	정*범	서울특별시	2024-07-22 09:2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31	14소64**	빈*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22 10:36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32	14소64**	빈*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7-22 10:3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33	273무13**	황*현	대전광역시	2024-07-22 11:2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34	경기45바56**	박*번	경기도 고양시	2024-07-22 16:57	안국동사거리~경복궁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35	경기84배17**	김*균	경기도 고양시	2024-07-22 16:57	열린송원복지광장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636	43러77**	강*수	경기도 고양시	2024-07-22 17:03	개화지하차도부근	전용차로 위반	50000
637	172허22**	황*란	인천광역시	2024-07-22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38	113조19**	김*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07-22 17:1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39	145주91**	양*현	서울특별시	2024-07-22 17:3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0	36라61**	오*수	서울특별시	2024-07-22 19:07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1	103가74**	이*임	경기도 화성시	2024-07-22 20:1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2	68더66**	이*석	서울특별시	2024-07-23 07:24	영등포역 교차로~영등포고가차도	전용차로 위반	50000
643	821여21**	송*연	서울특별시	2024-07-23 09:22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전용차로 위반	50000
644	356우12**	G*O*U*	경기도 수원시	2024-07-23 14:4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45	10저31**	정*섭	서울특별시	2024-07-23 18:07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46	36루05**	박*희	경기도 부천시	2024-07-23 18:27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전용차로 위반	50000
647	05러74**	정*나	경기도 포천시	2024-07-23 18:5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48	38서73**	강*복	경기도 고양시	2024-07-23 19:10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49	92다11**	전*희	서울특별시	2024-07-23 20:0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0	62머33**	원*용	경기도 광주시	2024-07-24 07:5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1	200무64**	이*식	경기도 고양시	2024-07-24 11:0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52	312라60**	박*수	서울특별시	2024-07-24 17:0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3	137노53**	조*성	경기도 의정부시	2024-07-24 17: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4	160로19**	정*승	경기도 파주시	2024-07-24 18:19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655	01조07**	윤*영	인천광역시	2024-07-24 18: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56	36마53**	정*상	서울특별시	2024-07-24 18:4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57	16다43**	박*영	경기도 하남시	2024-07-25 08:5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58	170하92**	주*희*스*트*팻	서울특별시	2024-07-25 09:39	잠실동 송파 YMCA체육관	전용차로 위반	50000
659	63조71**	조*원	서울특별시	2024-07-25 10: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0	22오98**	김*숙	서울특별시	2024-07-25 11:04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1	245마99**	조*근	경기도 용인시	2024-07-25 17:4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62	21고20**	성*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4-07-25 18:00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3	21고20**	성*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2024-07-25 18:0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64	87조39**	이*보	서울특별시	2024-07-25 18:06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65	65보57**	장*영	서울특별시	2024-07-25 19:27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66	32무73**	김*숙	경기도 고양시	2024-07-25 19:4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667	103무38**	김*지	인천광역시	2024-07-25 20:3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68	96너97**	박*희	서울특별시	2024-07-26 15:5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전용차로 위반	50000
669	164가32**	방*성	서울특별시	2024-07-26 16:02	압구정역교차로~가로수길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70	270너43**	김*선	인천광역시	2024-07-26 17:3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71	223부91**	주*희*로*나*푸*앤*비*	경기도 하남시	2024-07-26 18:03	성내교~올림픽대교남단	전용차로 위반	50000
672	25어50**	장*도	경기도 성남시	2024-07-26 18:5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3	49너72**	윤*섭	서울특별시	2024-07-26 20:4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4	19저97**	정*선	경상북도 상주시	2024-07-27 15:23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75	11조64**	전*철	경기도 수원시	2024-07-28 03:3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76	23로44**	김*룡	대전광역시	2024-07-28 14:55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77	80조55**	김*희	서울특별시	2024-07-28 16:43	서울 강북구 오희로 171 (번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78	28누75**	윤*원	서울특별시	2024-07-28 18:0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79	246마32**	손*우	서울특별시	2024-07-29 04:1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전용차로 위반	50000
680	95두41**	조*우	경기도 광주시	2024-07-29 07:33	대치역~도곡역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81	25무80**	이*민	서울특별시	2024-07-29 0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82	07다21**	김*주	충청남도 아산시	2024-07-29 09:25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3	24라61**	전*리	경기도 가평군	2024-07-29 09:4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84	인천83바25**	나*주	인천광역시	2024-07-29 13:51	중화동 중랑역 인근 메디렌즈산부인과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685	803더95**	김*호	경기도 용인시	2024-07-29 14:15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86	190더74**	우*(*)	인천광역시	2024-07-29 17:18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7	41도71**	라*랑	서울특별시	2024-07-29 19:2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88	126다67**	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024-07-29 2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689	45머83**	(*)*트*에*매*지*트	서울특별시	2024-07-29 21:5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690	16다43**	박*영	경기도 하남시	2024-07-30 08: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91	67뉴74**	김*안	충청남도 홍성군	2024-07-30 08:44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692	13나93**	장*룡	경기도 용인시	2024-07-30 17:5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93	35라32**	김*배	경기도 고양시	2024-07-30 18:5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94	64보75**	문*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2024-07-30 19:17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95	68머70**	이*직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30 19:1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96	177라61**	이*호	서울특별시	2024-07-31 08:3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697	124두56**	이*은	서울특별시	2024-07-31 08:59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698	82머20**	주*희*더*라*드*설	대전광역시	2024-07-31 09:4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699	서울32아24**	김*훈	서울특별시	2024-07-31 12:07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사거리	전용차로 위반	50000
700	02서63**	홍*람	경기도 김포시	2024-07-31 13:0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01	90저53**	김*호	경기도 성남시	2024-07-31 13:5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2	60주10**	김*국	서울특별시	2024-07-31 17:31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3	63보29**	윤*주	서울특별시	2024-07-31 17:5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04	332로75**	조*원	경기도 성남시	2024-07-31 18:13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전용차로 위반	50000
705	28저33**	강*봉	서울특별시	2024-07-31 18:30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6	02부58**	권*원	경기도 남양주시	2024-07-31 20:31	공릉동 문정왕후릉(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연번	차량 소유주			위반내역			처분내역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위반내용	
707	185다82**	주*희*아*비*터	서울특별시	2024-07-31 23:42	방배동 남대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08	314너19**	최*인	경기도 안산시	2024-08-01 07:4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09	314너19**	최*인	경기도 안산시	2024-08-01 07:4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10	276고22**	박*엽	서울특별시	2024-08-01 09:04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11	137무48**	오*석	서울특별시	2024-08-01 10:13	잠원동 현대해미리아파트	전용차로 위반	50000
712	서울32사74**	유*진	서울특별시	2024-08-01 14:58	강남소방서앞	전용차로 위반	50000
713	15조94**	윤*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4-08-01 16:09	고척동 구로성심병원 버스정류소(시내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14	217소99**	한*희	경기도 성남시	2024-08-01 16:4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전용차로 위반	50000
715	257버27**	임*미	서울특별시	2024-08-01 17:28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716	251노42**	이*은	서울특별시	2024-08-01 17:28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7	251노42**	이*은	서울특별시	2024-08-01 17:29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18	서울31자57**	하*호	서울특별시	2024-08-01 17:46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전용차로 위반	50000
719	57누62**	최*숙	서울특별시	2024-08-01 18:44	상계동 상계백병원	전용차로 위반	50000
720	366저11**	강*희	서울특별시	2024-08-01 19:2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21	305구29**	유*훈	경기도 고양시	2024-08-02 07:3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전용차로 위반	50000
722	152모16**	김*옥	경기도 용인시	2024-08-02 09:16	서초동 서초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3	152모16**	김*옥	경기도 용인시	2024-08-02 09: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4	61루42**	이*철	서울특별시	2024-08-02 09:29	월계동 월계주민체육센터	전용차로 위반	50000
725	152모16**	김*옥	경기도 용인시	2024-08-02 12:41	서초동 서초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6	152모16**	김*옥	경기도 용인시	2024-08-02 12:42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7	62모11**	김*균	전라남도 무안군	2024-08-02 20:1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8	62모11**	김*균	전라남도 무안군	2024-08-02 20:20	양재동 양재IC 하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29	05너91**	장*원	서울특별시	2024-08-03 16:32	양재동 양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30	05너91**	장*원	서울특별시	2024-08-03 16:34	서초동 반포IC 상행	전용차로 위반	50000
731	46버08**	백*슬	인천광역시	2024-08-03 16:43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전용차로 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3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시송달 공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4. 10. 17. ~ 2024. 10. 31.(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차량번호는 마스킹 처리.

당사자	명칭(성명)	임*식		
	차량번호	서울84*5813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 *동 1005호(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위반내역 - 기간 2023.7.5.~2024.7.31. / 부정수급건 142건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1,215,60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9월 27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 등기번호 : 1091863858057 • 반송사유 : 폐문부재

당사자	명칭(성명)	김*순	
	차량번호	서울81*5369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2길 *3 (면목동)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위반내역 - 기간 2023.10.24.~2024.8.27. / 부정수급건 61건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317,49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10월 11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 등기번호 : 1091863860524 • 반송사유 : 주소불명

당사자	명칭(성명)	이*준	
	차량번호	서울80*8877	
	주 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4*~18 (목동)	
처분의 원인이되는 사실		☐ 위반사항 -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처분근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 제28조제1항제6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 위반내역 - 기간 2023.3.5.~2024.7.31. / 부정수급건 135건	
처분하고자하는 내역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 (1,322,300원)	
당초제출기간	2024년 10월 11일(금) 까지		등기우편송달내역 • 등기번호 : 1091863860525 • 반송사유 : 주소불명

3. 처분근거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31일(목) 18:00 까지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13층
물류정책과 (팩스번호 02-768-8943)
- 담당자 : 신용현(02-2133-4097) globalhunter@seoul.go.kr

5. 유의사항

- 귀하께서는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명칭)	차량번호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및 조정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0.12km²)
○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합 계			127,677.1	신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64-11일대	82,172.5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중랑구	중화동 309-39일대	45,504.6	

- 지정기간: 2024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12월 25일까지

- ☐ 허가구역 조정 대상지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2개소(0.27km²)
○ 대상지역

대상지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160,393.0	169,069.0	증 8,676.0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107,564.2	106,514.4	감) 1,049.8

- 지정기간(변경없음)
- (관악구 신림동) 2024년 1월 4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 (송파구 마천동) 2024년 1월 2일부터 2025년 1월 1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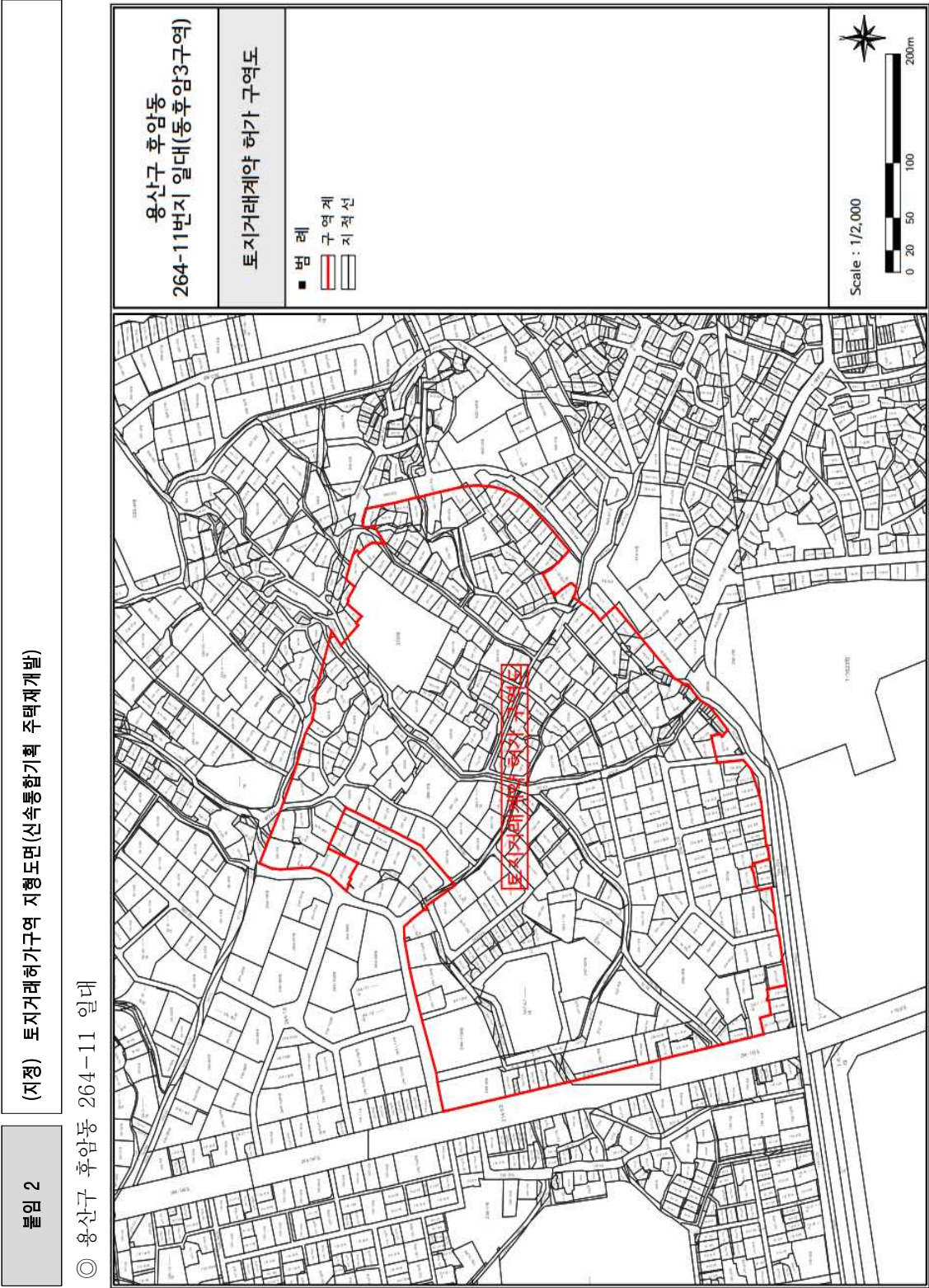
※ 신규 및 조성 대상지역에 동일하게 적용

☐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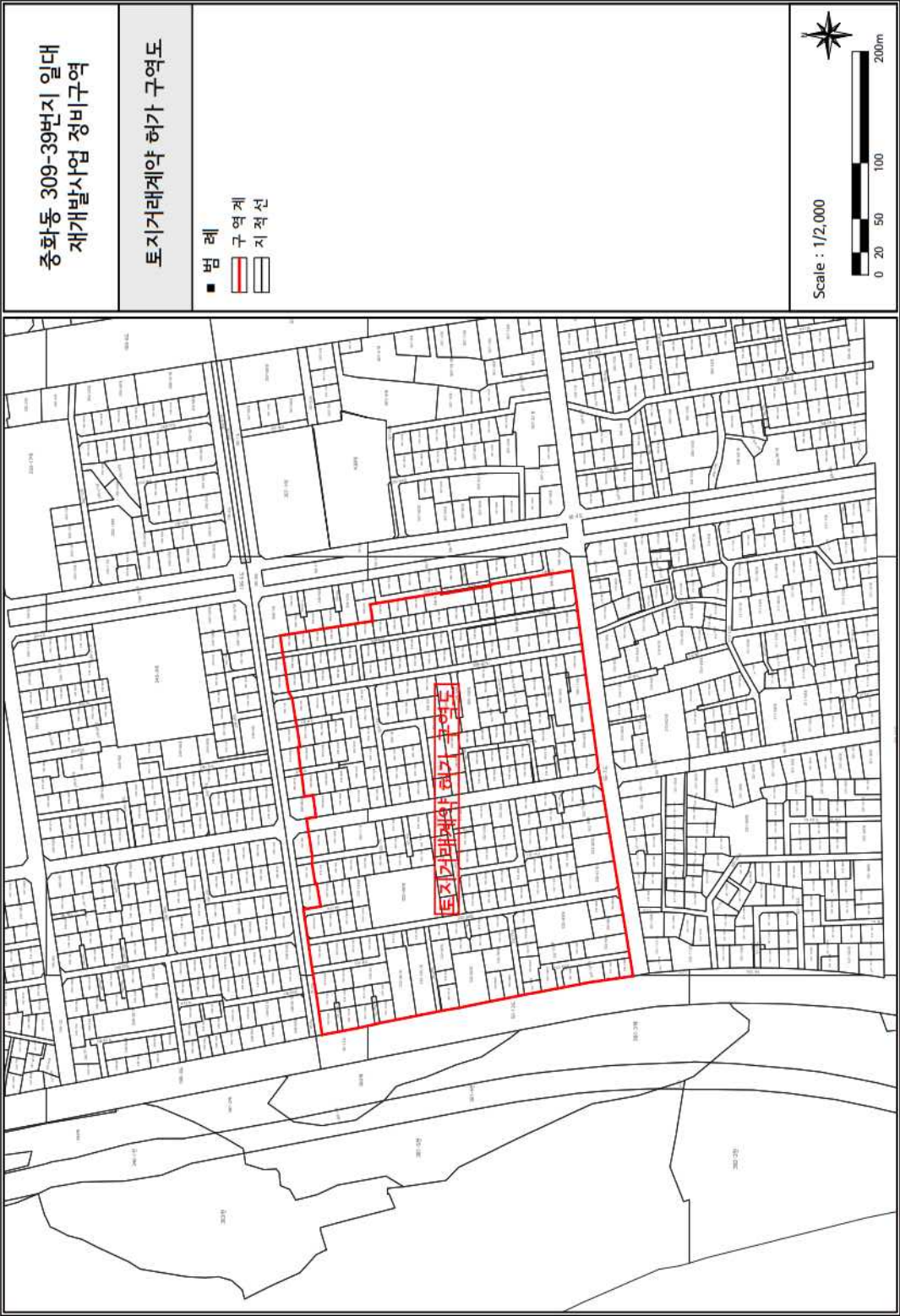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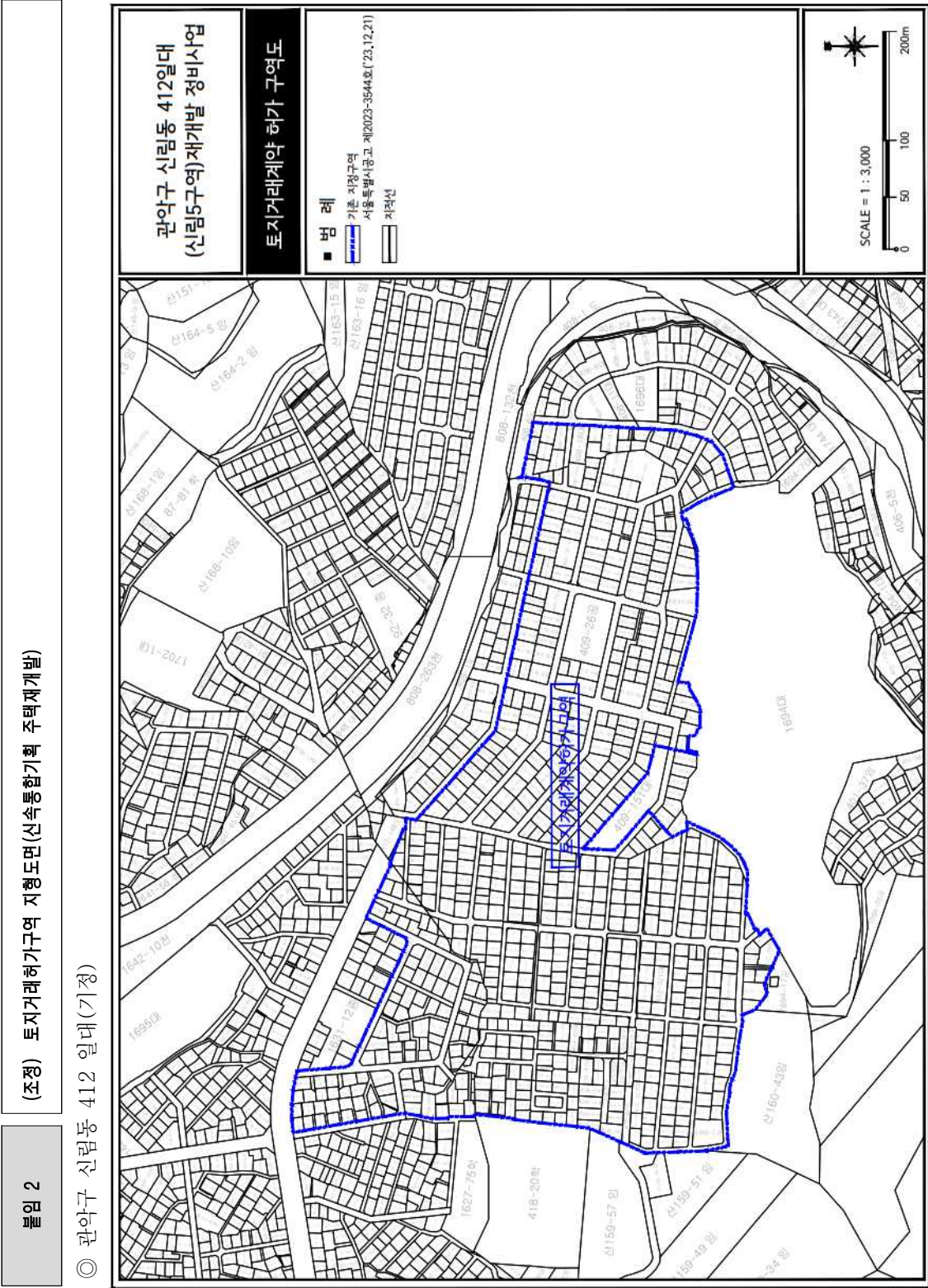
☐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붙임2 참조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를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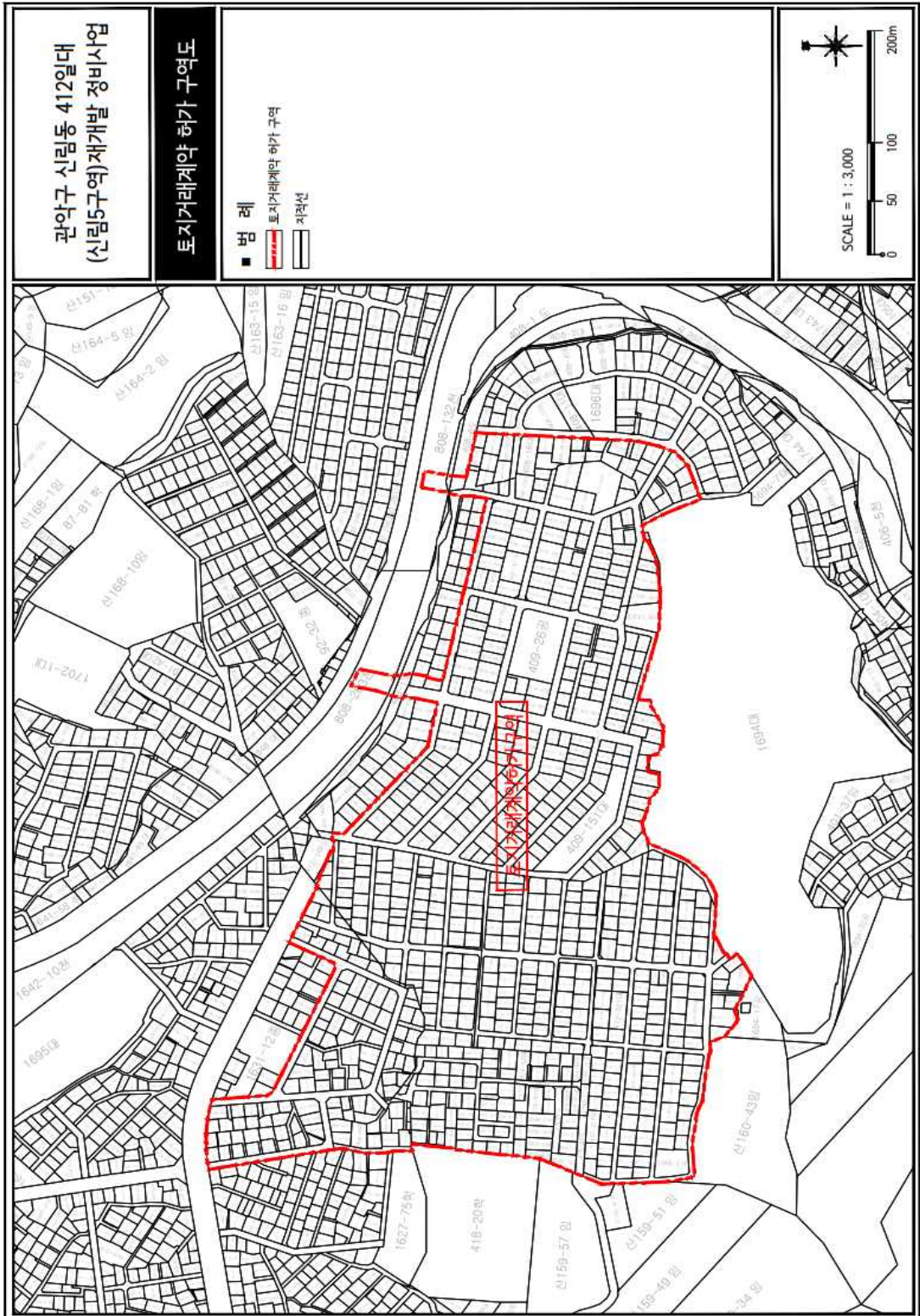


◎ 중랑구 중화동 309-39 일대





© 관악구 신림동 412 일대 (변경)



마천5
재정비축진계획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도(기정)

 범례 (LEGEND)
 구역계(기정)
 지적선

 $S = 1:3,000$
$$z \quad \begin{array}{|c|} \hline \square \\ \hline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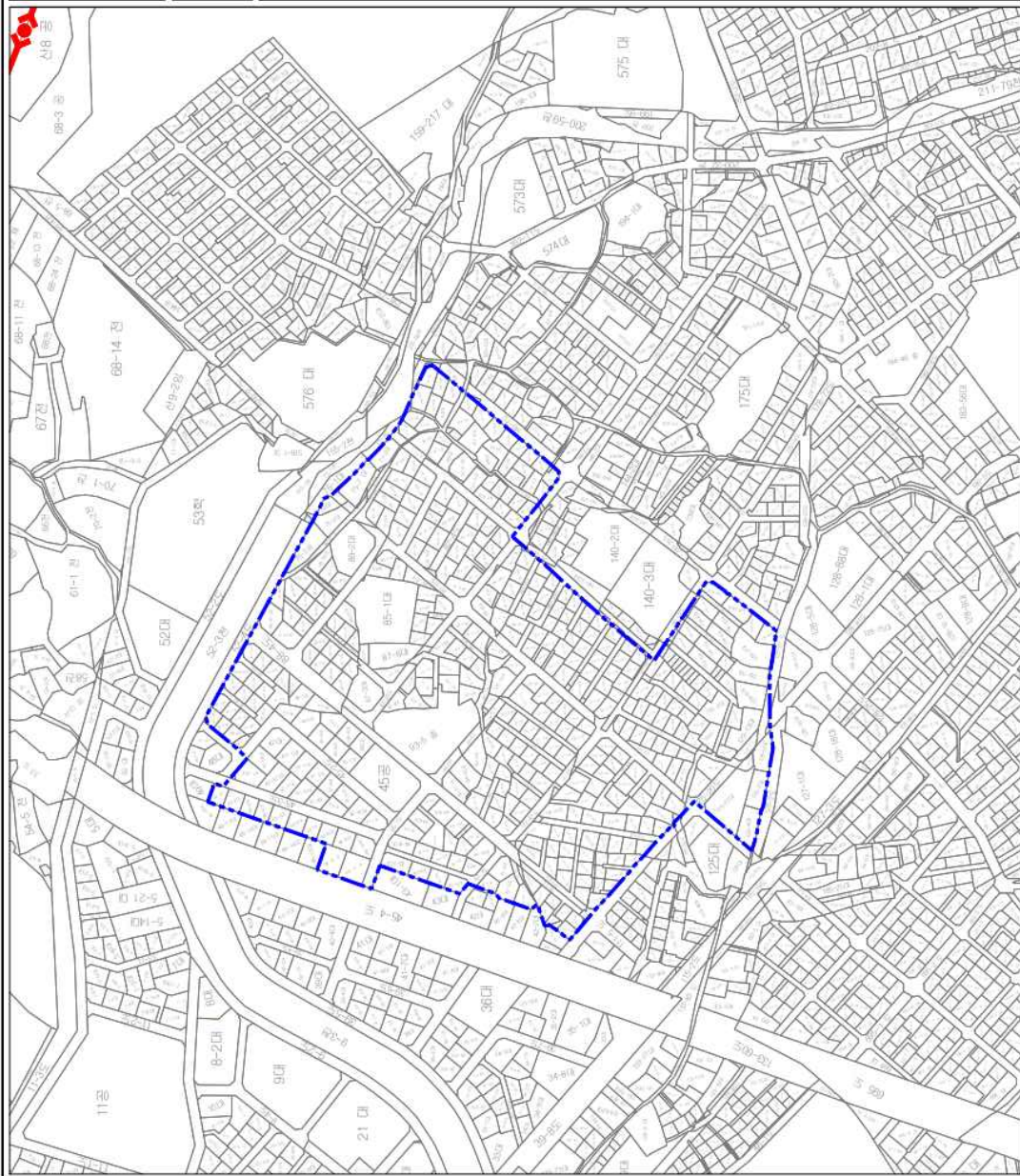
200m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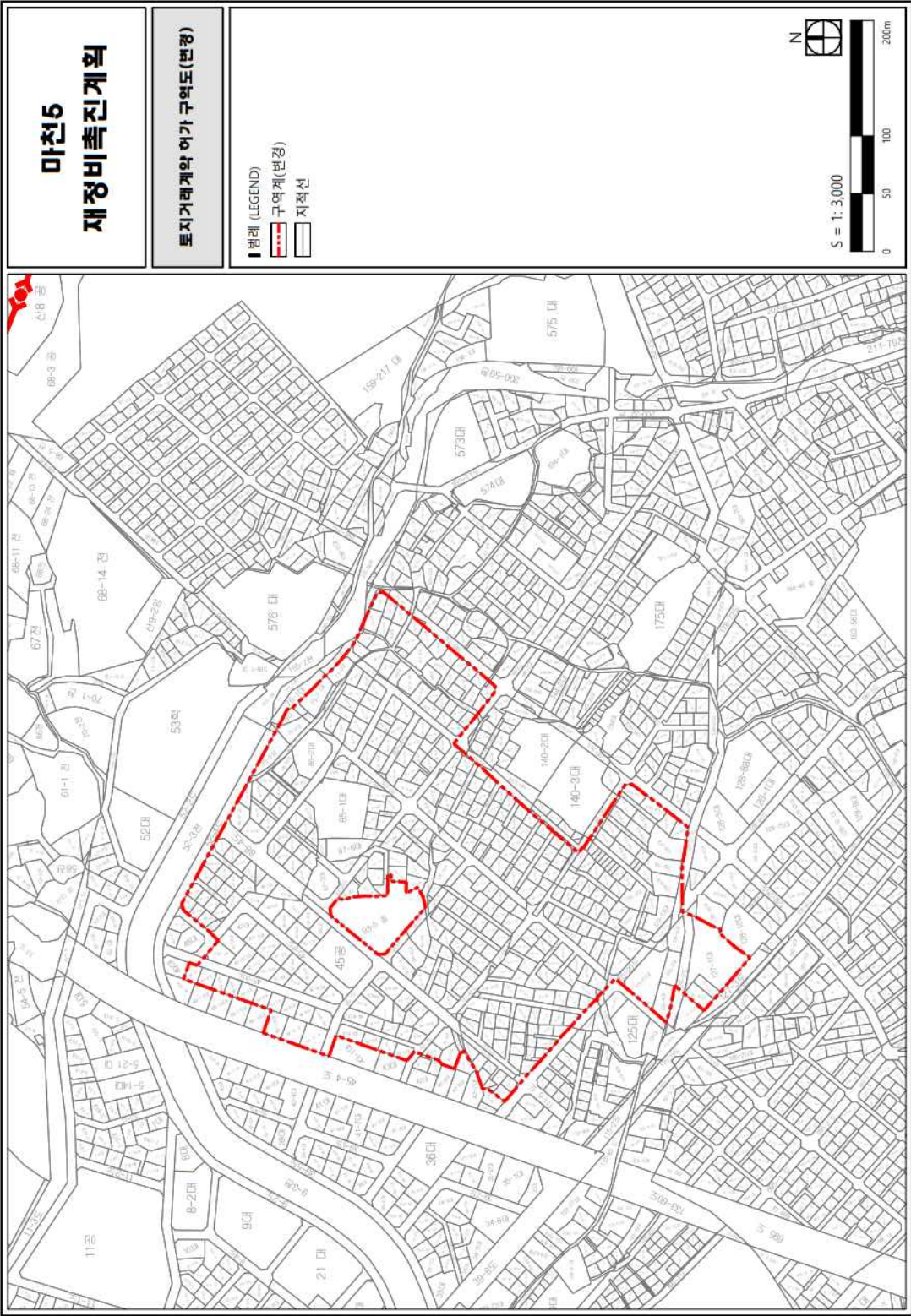
5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2101, 2102, 2103, 2104, 2105, 2106, 2107, 2108, 2109, 2110, 2111, 2112, 2113, 2114, 2115, 2116, 2117, 2118, 2119, 2120, 2121, 2122, 2123, 2124, 2125, 2126, 2127, 2128, 2129, 2130, 2131,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2147, 2148, 2149, 2150, 2151, 2152, 2153, 2154, 2155, 2156, 2157, 2158, 2159, 2160, 2161,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2177, 2178, 2179, 2180, 2181, 2182, 2183, 2184, 2185, 2186, 2187, 2188, 2189, 2190, 2191, 2192, 2193, 2194, 2195, 2196, 2197, 2198, 2199, 2200, 2201, 2202, 2203, 2204, 2205, 2206, 2207, 2208, 2209, 2210, 2211, 2212, 2213, 2214, 2215, 2216, 2217, 2218, 2219, 2220, 2221, 2222, 2223, 2224, 2225, 2226, 2227, 2228, 2229, 2230, 2231, 2232, 2233, 2234, 2235, 2236, 2237, 2238, 2239, 2240, 2241, 2242, 2243, 2244, 2245, 2246, 2247, 2248, 2249, 2250, 2251, 2252, 2253, 2254, 2255, 2256, 2257, 2258, 2259, 2260, 2261, 2262, 2263, 2264, 2265, 2266, 2267, 2268, 2269, 2270, 2271, 2272, 2273, 2274, 2275, 2276, 2277, 2278, 2279, 2280, 2281, 2282, 2283, 2284, 2285, 2286, 2287, 2288, 2289, 2290, 2291, 2292, 2293, 2294, 2295, 2296, 2297, 2298, 2299, 2300,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2316, 2317, 2318, 2319, 2320, 2321, 2322, 2323, 2324, 2325,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2336, 2337, 2338, 2339, 2340, 2341, 2342, 2343, 2344, 2345, 2346, 2347, 2348, 2349, 2350, 2351, 2352, 2353, 2354, 2355, 2356, 2357, 2358, 2359, 2360, 2361, 2362, 2363, 2364, 2365, 2366, 2367, 2368, 2369, 2370,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2392, 2393, 2394, 2395, 2396, 2397, 2398, 2399, 2400,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2408, 2409, 2410,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2437, 2438, 2439, 2440, 2441, 2442, 2443, 2444, 2445, 2446, 2447, 2448, 2449, 2450, 2451, 2452, 2453, 2454, 2455, 2456, 2457, 2458, 2459, 2460, 2461, 2462, 2463, 2464, 2465, 2466, 2467, 2468, 2469,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2490, 2491, 2492, 2493, 2494, 2495, 2496, 2497, 2498, 2499, 2500,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 2521, 2522, 2523, 2524, 2525, 2526,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2537, 2538, 2539,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2559, 2560, 2561, 2562, 2563, 2564, 2565, 2566, 2567, 2568, 2569, 2570, 2571, 2572, 2573, 2574, 2575, 2576, 2577, 2578, 2579, 2580, 2581, 2582, 2583, 2584, 2585, 2586, 2587, 2588, 2589, 2590, 2591, 2592, 2593, 2594, 2595, 2596, 2597, 2598, 2599, 2600, 2601, 2602, 2603, 2604, 2605, 2606, 2607, 2608, 2609, 2610, 2611, 2612, 2613, 2614, 2615, 2616, 2617, 2618, 2619, 2620, 2621, 2622, 2623,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2641, 2642, 2643, 2644, 2645, 2646, 2647, 2648, 2649, 2650, 2651, 2652, 2653, 2654, 2655, 2656, 2657, 2658, 2659, 2660, 2661, 2662, 2663, 2664, 2665, 2666, 2667, 2668, 2669, 2670, 2671, 2672, 2673, 2674, 2675, 2676, 2677, 2678, 2679, 26

©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기정)



◎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변경)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27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인셀덤 글로벌점	서울 후 제2897호	박수운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80, 115동 1101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소재지 ('24.10.1.)	인천시 연수구 송도문화로28번길 28, 106동 4305호(송도동, 송도글로벌 캠퍼스푸르지오)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80, 115동 1101호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2	퀵즈	서울 후 제2675호	황경숙	서울시 중구 마장로 113, 10층 1002호(황학동, 청계아델리아2차)	폐업 ('24.10.7)		
3	인셀덤 보페 나르샤	서울 후 제2059호	김순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30, 101동 406호(도곡동, 도곡쌍용에가아파트)	폐업 ('24.9.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83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235호(1977.12.3.)로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6.29.)로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02호(1977.4.11.)로 도시계획시설(학교:등촌중학교) 결정된 학교시설에 대한 결정(변경) 및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 학교시설 현황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대학의 입지특성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72호(2024.1.11.)로 열람공고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 2024.9.4.)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재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2, fax : 2133-0739)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안) 사항

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7,441.0	-	17,441.0	100.0	용도지역의 면적 변경 없는 범위에서 사업부지 내 용도지역 위치 변경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53.7	-	16,253.7	93.2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7.3	-	1,187.3	6.8	

2.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0	자연경관지구(대방지구)	강서구 화곡동 일대	163,500	증) 3,880	167,380	' 77.12.3. (건고 제235호)	

3. 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봉제산 도시자연공원구역	강서구 화곡동 산208 일대	강서구 화곡동 산204 일대	545,735.9	증) 29.0	545,764.9	' 20.6.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	

4.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도면 표시 번호	구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학교	대학 (강서대학교)	합계			-	증) 39,117.0	39,117.0	-	-
			①	1캠퍼스	강서구 화곡동 953-1 일대	-	증) 21,676.0	21,676.0	-	-
			②	2캠퍼스	강서구 등촌동 산36-4 일대	-	증) 17,441.0	17,441.0	-	-
변경	학교	중학교 (등촌중)	③	-	강서구 등촌동 534-9 일대	41,544.0	감) 26,328.5	15,215.8	' 77.4.11. (서고 제102호)	-

②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분		명칭	연번	면적 (㎡)	비 고
1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①	7,010	하당관, 채서관
			②	9,377	kou카페, 홀튼관, 라커관, 알렌관, 파수리관, 휴게시설(신축)
			소계	16,387	-
	유지	외부활동구역	③	3,707	대운동장
			소계	3,707	-
	보존	녹지보존구역	④	1,582	봉제산녹지대
			소계	1,582	-
	합계			21,676	-
2캠퍼스	관리	일반관리구역	⑤	6,177	산·관·학협력관(연합기숙사 포함)(신축)
			소계	6,177	-
	보존	녹지보존구역	⑥	1,257	공향로변녹지대
			⑦	10,007 (9,214)	등마루녹지대
			소계	11,264	-
	합계			17,441	-
총계			39,117	-	

※ 제2캠퍼스 7구역(9,214㎡)은 비오톱1등급지(793㎡)를 제외한 면적임

2. 밀도계획(건폐율)

캠퍼스		구 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건폐율	사용건폐율	관리건폐율	비 고
강서 대학교	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7,638.4	60.0%	34.2%	3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4,037.6	30.0%	14.7%	20.0%	-
		소계	21,676	40.6%	21.6%	25.3%	
	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3,247.3	60.0%	27.2%	35.0%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3,006.4 (12,213.4)	30.0%	8.2%	1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7.3	50.0%	-	-	-
		소계	17,441	37.28%	11.3%	17.8%	-

※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12,213.4㎡)는 비오톱1등급지(793㎡)를 제외한 면적임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건폐율 구분

3. 밀도계획(용적률)

캠퍼스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조례용적률	사용용적률	관리용적률	비고
강서 대학교	1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21,676.0	150.0%	64.48%	85.96%	—
	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16,253.7 (15,460.7)	150.0%	71.63%	75.84%	—
		제3종일반주거지역	1,187.3	250.0%	—	—	—
		소계	17,441	157.1%	66.58%	70.80%	—

※ 제2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경관지구(15,460.7㎡)는 비오톱1등급지(793㎡)를 제외한 면적임

※ 「국토계획법」 제84조 규정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는 대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용도지역별 관리용적률 구분

4. 구역별 밀도계획

1) 용적률계획

캠퍼스	구분	구역면적 (㎡)	용적률(%)				비 고
			조례	사용	이전	관리	
1 캠퍼스	①	7,010	150.0	70.6	-	100.0	-
	②	9,377	150.0	96.5	-	120.0	-
	③	3,707	150.0	-	-	10.0	-
	④	1,582	150.0	-	-	-	-
2 캠퍼스	⑤	6,177	164.3	179.5	+25.7	190.0	◦ 7구역에서 1,590㎡ 용적 이전 받음
	⑥	1,257	173.1	-	-	-	-
	⑦	10,007 (9,214)	150.0	-	-17.3	-	◦ 5구역으로 1,590㎡ 용적 이전함

※ 제2캠퍼스 7구역(9,214㎡)은 비오톱1등급지(793㎡)를 제외한 면적임

2) 높이계획

구분	구역	건축가능 높이(m)	비 고
1 캠퍼스	①	◦ 지표로부터 12m(3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자연경관지구
	②	◦ 지표로부터 28m(7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자연경관지구(일부)
	③	◦ 지표로부터 5m(1층 이하)	외부활동구역
	④	-	녹지보존구역
2 캠퍼스	⑤	◦ 지표로부터 28m(7층 이하)	일반관리구역, 자연경관지구(일부)
	⑥	-	녹지보존구역
	⑦	-	녹지보존구역

5. 건축물 조서

구역		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연면적(㎡)	층수		비 고
							지하	지상	
1 캠퍼스	①구역	1	하딩관	1,520.45	4,645.11	4,287.37	1	3	현황
		2	채서관	330.58	661.16	661.16	-	2	현황
		소계		1,851.03	5,306.27	4,948.53	-	-	-
	②구역	3	kcu카페	213.85	213.85	213.85	-	1	현황
		4	홀튼관	1,037.62	5,898.42	4,755.72	1	5	현황
		5	라커관	333.03	1,078.40	976.17	1	3	현황
		6	파수리관	404.63	1,604.57	1,154.49	1	3	현황
		7	알렌관	591.69	2,807.29	1,703.58	2	3	현황
		8	휴게시설	244.80	244.80	244.80	-	1	신축
		소계		2,825.62	11,847.33	9,048.61	-	-	-
		계		4,676.65	17,153.60	13,997.14	-	-	-
2 캠퍼스	⑤구역	9	산관학협력관 (연합기숙사 포함)	1,880.15	21,609.39	11,085.03	4	7	신축
		소계		1,880.15	21,609.39	11,085.03	-	-	-
합계				6,556.80	38,762.99	25,082.17	-	-	

라.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 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4-350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개정이유

- 가. 조직개편 및 회계업무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조항 내용 정비
- 나. 회계관리에 관한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 법령·지침 제·개정사항 반영
- 다. K-에듀파인 도입에 따라 각 조항 내용 및 별지 서식 현행화 추진

2. 주요내용

- 가. 조직개편, 에듀파인 도입 등의 회계업무 환경변화를 반영한 개정
 - 1) 직속기관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근거 마련(안 제26조)
 - － 학교회계전출금 교부 권한을 직속기관(도서관, 평생학습관 제외)으로 확대
 - 2)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 사무 정비(안 제80조)
 - －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서류로 채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 제한문구 삭제(안 제164조)
 - － 재정보증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상한액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
 - 4) 교육지원청 예·결산세부지침 수립 업무 감축(안 제10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 － 교육장의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결산 세부기준 별도 수립 내용 삭제
 - 5) 지급명령서를 전자전송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안 제76조)
 - － 전자자금이체(EFT),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자금을 이체 할 경우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송부할 수 있다는 단서 추가
 - 6) 회계 증빙서류의 전자적 보관 근거 신설(안 제158조제3항)

- 전자정보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증빙서류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신설

나. 상위법령·지침 재·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 1) 이월예산 인용 법 조항 및 업무처리 기한 변경(안 제27조)
 - 인용 법 조항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을 「제50조」로 변경
 - 이월예산 제출기한 및 확정기한 변경
 - 2) 예산의 이체 내용 추가(안 제30조)
 - 예산의 전용·이용 외에 이체에 관한 내용 추가
 - 3) 대가 지급 시 계좌입금 원칙의 예외사유 구체화(안 제72조제4항)
 - 예외사유를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정비
 - 4)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적용 규정 변경(안 제72조제5항)
 -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요령」 폐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 5) 지급명령서 발행 시 청구서 미첨부 사유 변경(안 제77조제1항)
 -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직무수행경비’로 변경하고, ‘복리후생비’는 삭제
 - 6) 회계문서의 날인 인정 범위 확대 및 조항 통합(안 제144조 및 제146조)
 - 회계문서의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146조를 제144조에 통합하면서 제146조는 삭제
 - 7) 출납계산서 제출기한 구체적 명시(안 제149조제1항 및 제150조)
 - 일상경비출납계산서 및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제출기한을 명시
 - 8) 회계 근거 규정의 명칭 변경에 따른 수정(안 제169조)
 -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 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 제2항으로 변경
- 다.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용어 및 별지 서식 현행화를 위한 개정
- 1)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장치 정의 변경(안 제3조)
 -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K-edufine)’으로 변경
 - 2) 별지 서식 현행화에 따라 조항 내용 중 서식 명칭 변경
 - 세출예산월별배정(집합·지출)계획서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안 제21조 및 제66조)
 -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 →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안 제25조)
 - 세입금납입독촉장 → 독촉장(안 제58조)
 -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 → (계좌·현금)지급명령(안 제76조 및 제83조)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안 제150조)
 - 3) K-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별지 서식 현행화
 - 서식 삭제: 제2호 서식, 제94호 서식
 - 서식 신설: 제24호의1 서식

- 서식 수정: 제1호 서식, 제3호 서식,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7호 서식, 제27호의2 서식, 제29호의2 서식, 제37호 서식, 제38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6호 서식, 제47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5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8호 서식, 제61호 서식, 제63호 서식, 제64호 서식, 제65호 서식, 제68호 서식, 제69호 서식, 제70호 서식, 제74호 서식, 제75호 서식, 제76호 서식, 제81호 서식, 제82호 서식, 제85호의1 서식, 제89호 서식, 제90호 서식, 제91호 서식, 제96호 서식, 제97호 서식, 제99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방법

-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교육청 (담당부서: 교육재정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 2가)
 - 연락처 : 전화 02-399-9629, FAX 02-6973-9945
 - 이메일 : kimo120@sen.go.kr

라.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행정정보-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붙임 1. (입법안)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붙임 1	입법안
------	-----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을 “차세대 지방교육행·재정통합 시스템(K-edufine)”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지침을 정하고”를 “예산편성지침을”로, “알려야”를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세부사업별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별설명자료”를 “사업별설명자료”로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을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세출예산배정계획요구서”를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 장에 의한 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교육시설관리본부의”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을 “「지방재정법」 제50조”로,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5일 이내

에”를 “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심사하여”를 “종합·심사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할 때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세출예산이체요구서(별지 제24호의1 서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용을”을 “전용·이체를”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결산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를 “결산기준을”로, “알려야 한다”를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을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세입금납입독촉장”을 “독촉장”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교육시설관리본부”를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으로, “세출 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로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2조제4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요령」”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집행기준」”으로 한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제76조 중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를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자금이체(EFT)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 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제7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5. 직무수행경비

제80조제1항 본문 중 “인감과”를 “것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한다.

제83조 중 “지급명령서(집합·송금·통상·대체)”를 “(계좌·현금)지급명령”으로 한다.

제118조제2항 중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제고조서”를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제액조서”로, “현금 및 예금현제고 조서”를 “현금및예금현제액조서”로 한다.

제144조의 제목 “(증빙서류의 원본주의)”를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 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46조를 삭제한다.

제149조제1항 중 “예금잔고금증명을 붙여”를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회계연도가 지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로,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1개월”을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로 한다.

제1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증빙·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4조 중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를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로 한다.

제169조 중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6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0호 서식, 제12호 서식, 제18호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1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제27호의2 서식, 제29호의2 서식, 제37호 서식, 제38호 서식, 제45호 서식, 제46호 서식, 제47호 서식, 제49호 서식, 제53호 서식, 제55호 서식, 제57호 서식, 제58호 서식, 제61호 서식, 제63호 서식, 제64호 서식, 제65호 서식, 제68호 서식, 제69호 서식, 제70호 서식, 제74호 서식, 제75호 서식, 제76호 서식, 제81호 서식, 제82조 서식, 제85호의1 서식, 제89호 서식, 제90호 서식, 제9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4호 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96호 서식, 제97호 서식, 제9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제입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단위: 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세출 (단위: 천원)

재원배분 기관 (기관명)	재원배분 기관 (부서명)	세부 사업	사업 항목 1	사업 항목 2	사업 항목 3	사업 항목 4	원가 통계목	예산 요구액	산출 기초 (단위: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별 설명자료

(세입)

1. 세입과목명

(장)	(관)
(조직) 부서명 (팀명)	(담당자)

I.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본예산 (A-B)	최종예산 (A-C)
계					

II. 세부설명

1. 근거

○

2. 내용

○

- 내용

·

- 예산액 : 천원

· 산출항목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기재 =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기재 = 천원

3.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Y-3	Y-2	Y-1	비고
계				

○ 전년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수납액	수납예정액	계	비고
계				

(세출)

사업항목1(세세부사업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직) 부서명(팀명)	(담당자)	

I. 예산 총괄

1. 사업별

(단위 : 천원)

구분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예산 (C)	본예산 (A-B)	추경예산 (A-C)	
계						
사업항목 2 또는 3						

2. 재원별

(단위 : 천원)

일반 재원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자체전입금	기타 지원금	계

II. 사업설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근거

○

3. 사업내용

○

- 소요예산 : 천원

세출목명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	천원

4.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이월 (c)	불용액 (a-b-c)	비고
Y-3					
Y-2					
Y-1					

○ 전년도 추진현황

-

5. 당해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 추진일정

-

6. 사전절차 이행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1)	이월 등 증감액 (2)	예산현액 (3)= (1)±(2)	징 수 결 정 액 (4)	수 납 액 (5)	불납 결손액 (6)	미 수납액 (7)=(4)- (5)-(6)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누계 (8)=(5)-(3)
장	관	항	목								

(주) : 순계표는 회계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지방채조서

(단위 : 천원)

지방 교육 채구 분	기간		이 율 (%)	기 채 선	기 채 액 (A)	기 상 환 액 (B)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환 계획액			금 후 상 환 계 획 액 (E)	기 채 사 유
	기 채 연 도	상 환 완 료 예 정 년 도					상환계획			상환액							
							원 금	이 자	계	원 금 (C)	이 자	계	원 금 (D)	이 자	계		

(※) 1.지방채의 구분은 ①지방채증권, ②차관, ③예금은행차입금, ④기타차입금
2.기채액(A)=기상환액(B)+전년도상환(C)+당해연도상환계획액(D)+금후상환계획액(E)

[별지 제9호 서식]

채무부담행위 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사업명	채무부담 행 위 액	상환계획				사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사 업			○ ○ 년	○ ○ 년	○ ○ 년	○ ○ 년	

[별지 제10호 서식]

계 속 비 사 업 조 서

(단위 : 천원)

기관 (부서)명	과목			사업명	사업비 총액	전전년도 이전			전 년 도			계 획 액			비고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 액	지출 액	지출 잔액	예산 액	지출 액	지출 잔액	당해 년도	○○ 년도	○○ 년도	

※ 주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 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일별집행지출계획서

기관(부서)명 (단위 : 천원)

단위과제카드	세부사업	목	예산액	구분		합계		유보액		1월		2월		...		12월	
						배정계획	지출계획	배정계획	지출계획	배정계획	지출계획	배정계획	지출계획	배정계획	지출계획	배정계획	지출계획
				전년도	비율												
					금액												
				당연연도	비율												
					금액												

[별지 제18호 서식]

세 출 예 산 배 정 요 구 서

회계연도: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사업						예산액	배정 요구액		유보액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기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	목별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배정 계획	지출 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

회계연도:

작성일자 :

분야 -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과제 카드		세부사업		담당자	
---------------	--	------	--	------	--	------------	--	------	--	-----	--

1. 배정변경 요구내역

(단위 : 원)

예산구분	목	예산액	구분	합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유보액
					1월	2월	3월	소계	4월	5월	6월	소계	7월	8월	9월	소계	10월	11월	12월	소계	
			변경																		
			기정																		
			종감																		

[별지 제21호 서식]

학교교부(보조)계획서

분야		부문		소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		사업항목		요구일자	

1. 교부사업명:
2. 학교별교부계획

(단위 : 원)

설립 구분	학교명	기교부 계획금액	금회교부 계획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별지 제24호의1 서식]

제출예산이체요구서

기관(부서)명 :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단위 업무	예산 액	지 출 액	예산 잔액	이 체 액	이체 사유	이체(증)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부서명	단위 업무

※ 주 : 사유란에는 예산이체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징수결의서(제38조 관련)

징수결의서(징수결의)				징수결의 번호			
				담 당		검토	결재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고지서번호 (전자납부번호)		제 호	
장				관			
항				항			
목					금액	W	
원가통계 비목		금액	일금 W	공급가액		W	
				부가세액		W	
납부자		주 소 성 명(상호)					
제 목							
내 용							
회계 결의번호							
행번	계정 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제27호의2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50조 관련)

징수결의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징수결의 번호			
				담 당		검토	결재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징수부등기		년 월 일		과오납 반환일자		년 월 일	
관련문서							
장				관			항
목					금 액		W
원가 통계 비목		금액	일금(-) 원정 -W	공급가액		W	
				부가세액		W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채권자		계좌번호 성 명(상호)					
제 목							
내 용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1							
2							
3							
4							

[별지 제29호의2 서식]

납입고지서		
학 번		
성 명		
일금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37호 서식]

수입 일 계 표

담당			

○○○○년도교육비특별회계 ○○○○년도 ○○월 ○○일

[illegible]

[별지 제38호 서식]

제 호		○○○○. ○○. ○○	
독촉장			
수신 ○○○		발신 서울특별시교육청	
납입금액			
연도	○○○○		
납부기한	○○○○년 ○○년 ○○일		
비고			

[별지 제45호 서식]

지출원인행위부(사용장부)

회계연도 : (년월: ~)
정책: 단위: 세부: 목: (단위: 원)

일자	적요	채권자	부서	예산			원인행위액			잔액	
				현액 (1)	배정액 (2)	재배정액 (3)	교부액	지금액	계 (4)	예산 대비 (1)-(4)	배정대비 (2)+(3)-(4)
전월이월											
월 계											
누 계											

(주) 1.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이체·이용,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한다.

[별지 제46호 서식]

				() 지출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청구일자		
계약일자				부문		발의일자		
원인행위부등기				정책사업		지출부등기		
준공/납품일자				단위사업		지출결의번호		
검수일자				세부사업		지급명령번호		
예산구분				단위과제카드		지출구분		
예산부서				목		공급가액		
계약/품의번호				세목		부가세액		
원인행위번호				원가목		합계금액		
적 요				채 권 자		소득세		
				채권자명 (실거래처)		주민세		
				사업자번호		기여금		
				주민번호		건강보험		
				주소		채권압류		
기타공제								
원인행위액				예금주		공제합계		
기지출액				지급계좌		채권자지급액		
금회지출액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지급액		
지출잔액								

[별지 제47호 서식]

				과목 경정결의서					
담당자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당 초						경 정			
발의일자				예산구분				발의일자	
지출부등기				예산부서				지출부등기	
지출결의번호				유형				지출결의번호	
변경차수				원인행위번호				변경차수	
지급명령번호				원인행위액				지급명령번호	
분야				지출액				분야	
부분				경정사유				부분	
정책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			
목						목			
세목						세목			
원가통계목						원가통계목			
행번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1									
2									
3									
4									
합계									

[별지 제49호 서식]

(계좌·현금)지급명령

결 재	지출원	금고

년도 회계

(단위: 원)

연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구분	입금 유형	채 권 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별지 제53호 서식]

				()반납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발의일자	
원인행위부등기				부문		지출부등기	
예산구분				정책사업		지출결의번호	
예산부서				단위사업		변경차수	
원인행위번호				세부사업		지급명령번호	
변경차수				단위업무		반납금액	
당초 원인행위일				목		당초지출일자	
				세목		당초명령번호	
				원가목			
적요				반납자			
				채권자명 (실거래처)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순번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별지 제55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종류	계좌번호	운용 일자	적요	예치	해지	잔액	이자 수입	예치 일자	만기 일자	예치 일수	비고
	소계										
	합계										

[별지 제57호 서식]

세입세출의현금 출납부

년월일	종목	제목	채권자	수입액(1)	지급액(2)	잔액(1)-(2)	결의 번호	비고
누 계								
기 간 계								
총 누 계								

[별지 제58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일자	원가통계 비목	적요	납부자 (채권자) 성명	수납요청 금 액	수납 금액 (1)	미수입액	반환 금액 (2)	잔액 (1-2)	(최초) 발생 일자
누 계									
기 간 계									
총 누 계									

[별지 제61호 서식]

현금출납부

일 자	제 목	채 주	수 입 액	지 출 액	잔 액

[별지 제63호 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종 별	현 금	예 금	적 요	계	비 고

[별지 제64호 서식]

세 입 세 출 원 장(금고용)

(앞)

년 월 일	세 입			자 금 배정액 (2)	세 출				잔액 (1)-(2) -(3)=(4)
	수입	과오납 반환액	차액 (1)		지급액	반납액	과 목 경정액	차액 (3)	

(뒤)

자 금 운 용			비 고
예 금 등 (5)	환 입 (6)	공금잔액 (4)-(5)+(6)	
			※차입, 정기예금 등

[별지 제65호 서식]

제입금내역장(금고용)

○○ 징수관

년 월 일	적 요	증서번호	납부자성명	금 액	누 계

[별지 제68호 서식]

세출금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번호	채권자	직급	총금	집합총금	소계	자금배정	합계

[별지 제69호 서식]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예 치				해 지				잔액 (1)-(2)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통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별지 제7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년 월 일	적 요	채권자	수입(1)	지급(2)	잔고(1)-(2)

[별지 제74호 서식]

세입월계표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 일부

전월계 (1)	본월계 (2)	금고과오납금반환 (3)	누계 (1)+(2)-(3)

위와 같이 보고함.

2015

징수관 귀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5호 서식]

세 출 일 계 표
년도 월분

회 계 명	자금배정		세 출(2)							자금 잔액 (1)-(2)
	이번달 배정액	배정누계 (1)	지난달 세출 누계 (a)	이번달 지급명령 (d)			반납 액 (e)	과목 경정 (f)	이번달 세출누계 (a)+(d)-(e)	
				지급액 (b)	미지급액 (c)	지급 명령 누계 (b) + (c)				

공금예금잔액	
--------	--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지출원 귀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도 월분

구 분	전일잔액			금일입금		금일지급		금일 잔액		
	정기예금	현금보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현금보관	합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지출증빙서

<표지>

20 년도

년 월 (기)분

지 출 증 빙 서

금액 ₩

전 책 중 책

지주 장

관서명

[별지 제82호 서식]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원 부

경정요구서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경정결의번호 :

구분	경정전	경정후
회계연도		
납입기관		
기관코드		
징수관		
세입과목		
세입코드		
금액		
원수납 일자		
경정일자		
비 고		
년 월 일		
담당자	수입금 출납원	징수관
		결재

구분	경정전	경정후
회계연도		
납입기관		
기관코드		
징수관		
세입과목		
세입코드		
금액		
원수납 일자		
경정일자		
비 고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인)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구분	경정전	경정후
회계연도		
납입기관		
기관코드		
징수관		
세입과목		
세입코드		
금액		
원수납 일자		
경정일자		
비 고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인) 징수관 귀하		

[별지 제85호의1 서식]

일 상 경 비 출 납 계 산 서

회계연도 (년월 : -)
부 서 : (단위 : 원)

수 령 액 (A)				사업명	지 금 액 (B)				잔액 (A-B)
전기말계 (1)	본기 분 (2)	본기분 반납 (3)	누계 (1+2-3)		전기 말계 (4)	본기 분 (5)	본기분 반납 (6)	누계 (4+5-6)	

[별지 제89호 서식]

총괄채권관리부

채권 관리 관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상환액			잔 액			비 고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 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별지 제90호 서식]

채 권 관 리 부

회계연월:
(단위: 원)

종 별	채무자		채 권 발 생					부 과 연 도	독 촉	상 환			기 타 소 멸	잔액			비 고
	성명	주소	사 유	납 기	발생 년월일	원 금	이 율			원 금	이 자	계		원 금	이 자	계	

[별지 제91호 서식]

지출부(지출원용)

회계연도 :

정책:

단위:

세부 :

목 :

(단위:원)

일자	적요	채권자	부서	예 산			지 출 액			잔 액	
				현액 (1)	배정액 (2)	재배정액 (3)	교부액	지급액	계 (4)	예산대비 (1)-(4)	배정대비 (2)+(3) -(4)
월 계											
누 계											

[별지 제96호 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종별	채무자 주 소	담보 책임자 주 소	발 생					소 멸			비고
			채권액		사유	납입기한	발생 년월일	상환액	상환일자	기타소멸	
			원금	이자							

[별지 제97호 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단위:원)

종별	전년도이월액			금회발생액			금회소멸액			잔 액			비고
	이행 기한 도래액	이행 기한 미도래 액	계	이행 기한 도래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이행 기한 도래액	이행 기한 미도래액	계	

[별지 제99호 서식]

				조정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재무관	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담당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발의일자	
계약일자				부문		지출부등기	
원인행위부등기				정책사업		당초 원인행위액	
예산구분				단위사업		기원인행위 조정액	
예산부서				세부사업		금회조정액	
원인행위번호				단위과제카드			
변경차수				목			
당초원인행위일				세목		조정후 원인행위액	
				원가목			
적 요				채권자			
				채권자명 (실거래처)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예금주			
				지급계좌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생략)	제3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 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u>지방교육행·제정통합시스템</u> <u>(Edufine)</u>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G2B),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OnBid), 교육기관 전 자조달시스템 (S2B),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Eat) 을 말한다.	9. ----- -----, -----, <u>차세대 지방교육행·제정통합</u> <u>시스템 (K-edufine)</u> , ----- ----- ----- ----- ----- -----.
10. ~ 11. (생략)	10.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예산의 편성지침) ① (생략)	제10조(예산의 편성지침)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장은 교육감이 정한 <u>예산</u> <u>편성지침에 따라 그에 속하는</u> <u>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세부</u> <u>지침을 정하고</u>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에게 <u>알려야</u> 한다.	② ----- <u>예산</u> <u>편성지침을</u> ----- ----- <u>알리고</u> , <u>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에 대한</u> <u>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u>
제11조(예산요구서) ① ~ ② (생략)	제11조(예산요구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예산요구서	③ -----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사업별집계표(별지 제2호 서식), 사업별설명자료(별지 제3호 서식)

2. ~ 4. (생략)

④ (생략)

제21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19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그에 속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재정과장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세출)예산월별징수(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세입예산

-----.

1. 사업별설명자료-----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산배정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 -----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② -----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③ -----

월별징수종합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
획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
되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
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
계획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
에는 사전에 교육재정과장의 합
의를 받아야 한다.

④ (생략)

제25조(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제21조에 따라 통
지받은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
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출예산
배정계획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
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은
교육장에게 변경요구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생략)

제26조(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

① 교육감과 교육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의 장

----- 세출
예산월별집행지출 계획서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변경)

① -----

-----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

① ----- 직속기관
(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 -----

은 학교별로 전출금의 교부기준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전출 및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본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각 과장은 제1항의 교부 기준에 의하여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을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로 알리고, 당해 예산 범위 안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학교회계전출금(보조금)교부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로서 예산을 교부한다. 다만, 교육시설관리본부의 학교예산 교부 범위는 시설사업 관련 사업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정한다.

③ (생략)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이월예산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다만, 학교간 격차 해소 및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직속기관(도서관, 평생학습관 제외)의 장애 의한 학교예산의 전출 및 보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

<단서 삭제>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지방재정법」 제50조 ----
--- 이월, 사고이월은 회계연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

경우에는 출납폐쇄기한 종료 후 5일 이내에 사고(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예산담당관은 이를 종합·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 ① 각 과장, 교육장 및 제1관서의 직속기관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기관(부서)과 본청의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종합·심사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0일 이내에 -----

-----.

제30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

-----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요구서(별지 제24호 서식) 또는 세출예산이체요구서(별지 제24호의1 서식) -----
-----.

② -----

----- 전용·이체를 -----

-----.

제34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략)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결산기준에 따라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교육지원청의 각 과장과 제2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58조(독촉) ① 징수관은 납입기한이 지나도 세입금을 내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세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38호 서식)을 납입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66조(자금의 교부) ① 본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시설관리본부의 각 과장은 세출예산월별배정(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2호 서식)의 범위 안에서 자금의 배정을 각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7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③ (생략)

④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

제34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장은 제1항의 결산기준을

알리고,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독촉) ① -----

- 독촉장 -----

② (현행과 같음)

제66조(자금의 교부) ① -----

----- 직속기관(평생학습관, 도서관 제외) -----
-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
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
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⑤ 신용카드에 사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
행 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관리요령」에 따른다.

⑥ (생략)

제76조(지급명령서) 지출원과 일상
경비출납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
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
(집합·송금·통상·대체)(별지 제4
9호 서식)를 사용한다.

-----, 다만 아
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⑤ -----
--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
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

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지급명령서) -----

----- (계좌·현금)
지급명령 -----
-----.

<단서 신설>

제77조(지급명령서의 발행요건)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려 하
는 때에는 채주별(인건비중 다수
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경비 및 집
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제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
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6. ~ 7. (생 략)

8. 복리후생비

② ~ ④ (생 략)

제80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인감
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
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의 사유로 다른 인감으
로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채주를

다만, 전자자금이체(EFT) 방식
또는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
육금고)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를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다.

제77조(지급명령서의 발행요건) ①

1. ~ 4. (현행과 같음)

5. 직무수행경비

6. ~ 7.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0조(채주의 영수인) ① -----

----- 것과

② -----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83조(일상경비의 예탁과 지급)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이를 예치하고, 지급시 지급명령서 (집합·송금·통상·대체)(별지 제49호 서식)를 발행한다.

제118조(인계의 절차) ① (생략)

② 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고조서(별지 제63호 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현재고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적은 후 인계·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출납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44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 ③ (생략)

<신 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일상경비의 예탁과 지급)

----- (계좌·현금)

지급명령-----

제118조(인계의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예금잔액증명을 붙인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③ (현행과 같음)

제144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회계문서 상의 날인과 제1항에 따른 날인은 본인의 무인, 서명, 전자서명 등으로 같음할 수

<신 설>

제146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제80조제4항에 의한 지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채주의 영수인은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 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있다.

⑤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관리에 대하여는 행정전자 서명의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인전자서명의 경우 「전자서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삭 제>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에 따른다.

제 149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
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
지 제85호 서식, 별지 제85호의1
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 150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연도가 지
난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
서(별지 제86호 서식, 별지 제86호
의1 서식)에 예금잔고증명을
붙여 1개월 이내에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생략)

<신 설>

제 149조(출납계산서) ① -----

----- 예금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

-----.

② (현행과 같음)

제 150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

----- 세입·세출외현

금출납계산서-----

----- 예금잔액증

명을 붙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

제 158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

서 보관하되 전자적정보처리시스

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

으로 증빙·보관할 수 있다. 이 경

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64 조 (재정보증 한도액) 영 제 56 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 169 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 4 조 제 2 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 1 호 서식]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장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가원부사업

사업 항목 1	사업 항목 2	사업 항목 3	사업 항목 4	사업 항목 5	원가 통계목	예산 요구액 (천원)	산출 기초	전년도 예산액 (천원)	비교 증감

제 164 조 (재정보증 한도액) -----

----- 해당 회계
관계공무원의 회계관직, 책임범
위 및 업무성질 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상으로 -----.

제 169 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

----- 「정부유가증권취
급규칙」 제 4 조 제 2 항 -----
-----.

[별지 제 1 호 서식]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세입 (단위: 천원)

장	관	항	목	원가통계 비목	예산 요구액	산출기초 (단위: 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예 산 요 구 서

세출 (단위: 천원)

재원 배분 기관	재원 배분 기관	세부 사업	사업 항목 1	사업 항목 2	사업 항목 3	사업 항목 4	원가 통계 목	예산 요구액	산출 기초 (단위: 원)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	--	--	--	--	--	--	--	--	--

[별지 제2호 서식]

세 부 사 업 별 집 계 표

연번	세부 사업명	전년도 예산액	당해연도 예산액	소관별 재원배분			
				본청	교육 지원청	직속 기관	계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별 설 명 자 료

주 관 과 (관련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	-------	------

1. 사업의 목적
○
2. 사업의 근거
○
3. 예산편성 내역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계획	20 년도 실적	
		본 예산	본 예산	추경예산
1레벨	물 량			
	예산액			
1레벨	물 량			
	예산액			
계				

4. 세부 추진계획

- 가. 1레벨 : ~천원
-
-
-
-
- 나. 1레벨 : ~천원

(가관청)	(관청명)													
-------	-------	--	--	--	--	--	--	--	--	--	--	--	--	--

<삭제>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별 설 명 자 료

(제입)

1. 세입과목명

(장)	(관)
(조직) 부서명 (팀명)	(담당자)

I.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당해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A)	본예산 (B)	최종 예산 (C)	본예산 (A-B)	최종 예산 (A-C)
계					

II. 세부설명

1. 근거

○

2. 내용

○

- 내용

·

- 예산액 : 천원

· 산출항목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기재 =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기재 = 천원

3.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Y-3	Y-2	Y-1	비고
-----	-----	-----	-----	----

○
-
○
-
※ 예산서 :

구 분	Y-3	Y-2	Y-1	비고
계				

○ 전년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납액	수납예정액	계	비고
계				

(세출)

사업항목1(세세부사업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조직) 부서명(팀명)	(담당자)	

I. 예산 총괄

1. 사업별

(단위 : 천원)

구분	당해 년도	전년도		전년 대비 증감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
	본예산 (A)	본예산 (B)	추경 예산 (C)	본예산 (A-B)	추경 예산 (A-C)	
계						
사업항목 2 또는 3						

2. 재원별

(단위 : 천원)

일반 재원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자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계

II. 사업설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 사업근거

○

3. 사업내용

○

-

- 소요예산 : 천원

* 세출목명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 천원
- 주요 예산 내용	산출내역	= 천원

4.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불용액 (a-b-c)	비고
Y-3					
Y-2					
Y-1					

○ 전년도 추진현황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

(단위 : 천원)

과 장	목 관	항 목	예 산 액 (1)	이 월 등 증 감 액 (2)	예산 현액 (3)= (1)±(2)	정 수 결 정 액 (4)	수 납 액 (5)	불 납 결 산 액 (6)	미 수 납 액 (7)=(4)- (5)-(6)	비고

(주) : 순계표는 회계기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지방채조서

(단위 : 천원)

지 방 채 구 분	기간 기 채 년 도	이 월 등 증 감 액 (2)	기 재 액 (A)	기 상 환 액 (B)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 환 계획액	금 상 환 계 획 액 (E)	후 기 채 사 유
					상환계획	상환계획			
					원 이 계 금 (C) 자	원 이 계 금 (D) 자			

(※) 1.지방채의 구분은 ①지방채증권, ②자관, ③예금은행차입금, ④기타차입금
2.기재액(A)=기상환액(B)+전년도상환(C)+당해연도상환계획액(D)+
금후상환계획액(E)

[별지 제9호 서식]

채무부담행위액조서

(단위 : 원)

소관	사업명	채무부담 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 조건	채무부담 승인일자	비고

5. 당해년도 추진방향 및 추진일정

○ 추진방향

○ 추진일정

6. 사전절차 이행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결산총(순)계표

(단위 : 천원)

과 장	목 관	항 목	예 산 액 (1)	이 월 등 증 감 액 (2)	예산 현액 (3)= (1)±(2)	정 수 결 정 액 (4)	수 납 액 (5)	불 납 결 산 액 (6)	미 수 납 액 (7)=(4)- (5)-(6)	예산현액과 수납액과의 차액 누계 (8)=(5)-(3)

(주) : 순계표는 회계기간 전·출입금을 제외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8호 서식]

○○○○년도 지방채조서

(단위 : 천원)

지 방 채 구 분	기간 기 채 년 도	이 월 등 증 감 액 (2)	기 재 액 (A)	기 상 환 액 (B)	전년도상환		당해연도상 환 계획액	금 상 환 계 획 액 (E)	후 기 채 사 유
					상환계획	상환액			
					원 이 계 금 (C) 자	원 이 계 금 (D) 자			

(※) 1.지방채의 구분은 ①지방채증권, ②자관, ③예금은행차입금, ④기타차입금
2.기재액(A)=기상환액(B)+전년도상환(C)+당해연도상환계획액(D)+
금후상환계획액(E)

[별지 제9호 서식]

채무부담행위조서

(단위 : 천원)

과 목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사업명	채무부담 행위액	상환계획				사유
						○○년	○○년	○○년	○○년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illegible]

※ 주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
입하고 당해 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기관(부서)명

(단위 : 천원)

[illegible]

[별지 제18호 서식]

세출예산배정요구서

기관(부서)명

(단위 : 원)

[illegible]

[별지 제10호 서식]

계속비사업조서

(단위 : 천원)

[illegible]

※ 주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
입하고 당해 연도 이후분은 계획액만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지출계획서

기관(부서)명

(단위 : 천원)

[illegible]

[별지 제18호 서식]

세출예산배정요구서

분 야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세 부 사 업	예 산 액	분기(월)별 집행계획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회계연도: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사업				배정 요구액	유보액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기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배정 계획	배정 계획	배정 계획	배정 계획	배정 계획

[별지 제20호 서식]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

기관(부서)명 (단위 : 천원)

과 목		구분	예산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유보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기배정액(A)												
			변경요구액(B)												
			증감액(B-A)												

[별지 제20호 서식]

세출예산배정변경요구서

회계연도: 작성일자 :

분야 부문	정책 사업	단위 사업	단위 과제 카드	세부 사업	담당 자
----------	----------	----------	----------------	----------	---------

1. 배정변경 요구내역 (단위 : 원)

예산구분	예산액	회계연도	제1분기		제2분기		제3분기		제4분기		유보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변경									
		기정									
		증감									

[별지 제21호 서식]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

받는곳(학교명) :
()년도 학교회계전출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학교교부(보조)계획서

분야	부문	소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	사업항목	요구일자

과 목				교부액 (단위: 천원)	예산교부계획												
정책 구분	단위 구분	세부 구분	세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합 계																	

<신설>

[별지 제27호 서식]

징수결의서(제38조 관련)

1. 교부자업명:
2. 학교별교부계획

(단위 : 원)

설립 구분	학교명	기교부 계획금액	금회교부 계획금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별지 제24호의1 서식]

세출예산이체요구서

기관(부서)명 :

(단위: 천원)

예산과목				단위 업무	예산 액	지출 액	예산 잔액	이체 액	이체 사유	이체(중)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목							부서명	단위 업무

※ 주 : 사유란에는 예산이체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징수결의서(제38조 관련)

정수결의서(정수결의)		정수결의 번호					
		담	당	수입금 출납원	정수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정수부등기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고지서 번호	제	호	
장 목	관			항			
원가 통계 비목				금액	₩		
				공급가액	₩		
	금액	일금	₩	부가세액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제 목							
적 요							
(산출근거)							
회계 결의번호							
행번	계정 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제27의2호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50조 관련)

(정수결의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정수결의 번호						
		담	당	수입금 출납원	정수관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정수부등기	년	월	일	과오납 반환일자		년	월	일
장 목	관			항				
원가 통계 비목				금액	₩			
	금액	일금(-)	원정	공급 가액	₩			
			-₩	부가 세액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채 주		계좌번호 성명(상호)						
제 목								
적 요								
(산출근거)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1								
2								
3								
4								

[별지 제29의2호 서식]

정수결의서(정수결의)		정수결의 번호					
		담	당	검토	결재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정수부등기	년	월	일	납입기한	년	월	일
고지서발행	년	월	일	고지서번호 (전자납부번호)	제	호	
장 목	관			항			
원가 통계 비목				금액	₩		
				공급가액	₩		
	금액	일금	₩	부가세액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제 목							
내 용							
회계 결의번호							
행번	계정 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별지 제27호의2 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제50조 관련)

(정수결의서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정수결의 번호						
		담	당	검토	결재			
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년	월	일
정수부등기	년	월	일	과오납 반환일자		년	월	일
관련문서								
장 목	관			항				
원가 통계 비목				금액	₩			
	금액	일금(-)	원정	공급 가액	₩			
			-₩	부가 세액	₩			
납부자		주소 성명(상호)						
채권자		계좌번호 성명(상호)						
제 목								
내 용								
회계결의번호								
행번	계정과목코드	계정 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1								
2								
3								
4								

[별지 제29호의2 서식]

납입고지서(CMS용)		
학 번		
성 명		
일금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37호 서식]

[illegible]

[별지 제38호 서식]

납입고지서		
학 번		
성 명		
일금 원정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년 월 일까지 위의 금액을 해당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학 교 장		

[별지 제37호 서식]

수 입 일 계 표						
				담당		
○○○○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년도 ○○월 ○○일						
과 장		목 항 목		적요	금액	영수필 통지수 매 수
장	관	항	목			
합계						

[별지 제38호 서식]

() 지출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담당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청구일자			
원안행위부등기				부문		발의일자			
계좌입자				정책사업		지출부등기			
준공/납품일자				단위사업		지출결의번호			
경수일자				세부사업		지급명령번호			
예산구분				단위업무		지출구분			
예산부서				목		공급이력			
계약/품의번호				세목		부가세액			
원안행위번호				원가목		합계금액			
적요				재주		소득세			
				수령인명		주인내			
				사업자번호		기여금			
				생년월일		건강보험			
				주소		채권압류			
						기타공제			
원안행위액				예금주		공제합계			
기지출액				지급계좌		채권자지급액			
금회지출액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지급액			
지출잔액									

[별지 제47호 서식]

				과 목 경 정 결 의 서					
담당자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당 초				경 정					
발의일자				예산구분				발의일자	
지출부등기				예산부서				지출부등기	
지출결의번호				유형				지출결의번호	
변경자수				원안행위번호				변경자수	
지급명령번호				원안행위액				지급명령번호	
분야				지출액				분야	
부문				경정사유				부문	
정책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단위업무								단위업무	
목								목	
세목								세목	
원가통계목								원가통계목	
행번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1									
2									
3									
4									
합계									

[별지 제49호 서식]

지급명령서(통상, 송금, 집합, 대체)

지급명령번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권번
호

() 지출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담당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청구일자			
계좌입자				부문		발의일자			
원안행위부등기				정책사업		지출부등기			
준공/납품일자				단위사업		지출결의번호			
경수일자				세부사업		지급명령번호			
예산구분				단위과제카드		지출구분			
예산부서				목		공급이력			
계약/품의번호				세목		부가세액			
원안행위번호				원가목		합계금액			
적요				재권자		소득세			
				채권자명 (상가제세)		주인내			
				사업자번호		기여금			
				주민번호		건강보험			
				주소		채권압류			
						기타공제			
원안행위액				예금주		공제합계			
기지출액				지급계좌		채권자지급액			
금회지출액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지급액			
지출잔액									

[별지 제47호 서식]

과목경정결의서									
담당자				20 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당 초							경 정		
발의일자				예산구분				발의일자	
지출부등기				예산부서				지출부등기	
지출결의번호				유형				지출결의번호	
변경자수				원안행위번호				변경자수	
지급명령번호				원안행위액				지급명령번호	
분야				지출액				분야	
부문				경정사유			부문		
정책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카드		
목							목		
세목						세목			
원가통계목						원가통계목			
행번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1									
2									
3									
4									
합계									

[별지 제49호 서식]

(계좌·현금)지급명령

(통상,송금,집합,대체) 지 급 원 부

금 액	
발 행 년 월 일	
채 주	
계 좌 번 호	
적 요	

지급명령번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권번호
호

(통상,송금,집합,대체) 지 급 통 지

채주 : 계좌번호 :

일금	
----	--

W
 위의 금액을 채주에게 지급하였음
 년 월 일
 ○○○○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원 귀하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지급명령번호 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금권번호
호

(통상,송금,집합,대체) 지 급 명 령

채주 : 계좌번호 :

일금

위의 금액을 지급명령명세서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교육비특별회계 지출원 귀하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별지 제53호 서식]

				() 반납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원안부등기				부분	발의일자		
예산구분				정확사업	지출부등기		
예산부서				단위사업	지출결의번호		
원안행위번호				세부사업	변경차수		
변경차수				단위업무	지급명령번호		
당초 원안행위일				목	반납금액		
				세목	당초지출일자		
				원가목	당초명령번호		
직				반			
요				납			
				자			
				반납사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행번	계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별지 제55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결	지출원	금고
재		

년도 회계

(단위: 원)

연 번	지급 명령 번호	명령 구분	입금 유형	채 권 자	입금계좌		지급액	비고
					금융 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합 계								

상기와 같이 발행하오니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일

[별지 제53호 서식]

				() 반납결의서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발의일자	
원안취득등기				부문	지출부등기	
예산구분				장래사업	지출결의번호	
예산부서				단위사업	변경차수	
원인행위번호				세부사업	지급명령번호	
변경차수				단위업무	반납금액	
당초 원인행위일				목	당초지출일자	
				세목	당초명령번호	
				원가목		
직				요		
				반		
				납		
				자		
				재권자명 (실거래처)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순번	제정과목명	차변금액	대변금액	거래처명		

[별지 제55호 서식]

자금운용기록부

금융상품 종류	계좌번호	운용일자	적요	지불 (신금)	환입 (해지)	잔액	이자 수입
	초계						
	합계						

[별지 제5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년월일	과목	적요	제주	수업액(1)	지급액(2)	잔액(1)-(2)	결의 번호	비고
누	계							
기	간 계							
총	누 계							

[별지 제58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일자	적요	납입자 (채주) 성명	취급의뢰금액	수입 (1)	미수입액	지급 (2)	잔 액 (1-2)
누	계						
기 간 계							
총 누 계							

[별지 제61호 서식]

현금출납부

[illegible]

[별지 제57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년월일	종목	제목	채권자	수입액(1)	지급액(2)	잔액(1)-(2)	결의 번호	비고
누 계								
기 간 계								
총 누 계								

[별지 제58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용)

[illegible]

[별지 제61호 서식]

현금출납부

[illegible]

[별지 제63호 서식]

현금및예금현재고조서

[illegible]

[별지 제64호 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아)

[illegible]

(뒤)

[illegible]

[별지 제63호 서식]

현금및예금현재액조서

[illegible]

[별지 제64호 서식]

세입세출원장(금고용)

(알)

[illegible]

(뒤)

자 금 운 용			비 고
예 금 등 (5)	환 입 (6)	공금잔액 (4)-(5)+(6)	
			※차입, 정기예금 등

자 금 운 용			비 고
예 금 등 (5)	환 입 (6)	공금잔액 (4)-(5)+(6)	
			*차입, 정기예금 등

[별지 제65호 서식]

세입금내역장(금고용)

징수관별

년 월 일	세입과목	소 관	납입자 성명	금 액	누 계

[별지 제68호 서식]

세출금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번호	채주	직급	송금	집합 송금	소계	자금 배정	합계

[별지 제69호 서식]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지 불			환 입			잔액 (1)-(2)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차입 또는 대여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차입 또는 대여	

[별지 제65호 서식]

세입금내역장(금고용)

○○ 징수관

년 월 일	적 요	증서 번호	납부자 성명	금 액	누 계

[별지 제68호 서식]

세출금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번호	채권자	직급	송금	집합 송금	소계	자금 배정	합계

[별지 제69호 서식]

자금운용내역장(금고용)

년 월 일	적요	예 지			해 지			잔액 (1)-(2)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차입 또는 대여	정 기 예 금	통 지 예 금	차입 또는 대여	

[별지 제7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년 월 일	적 요	채주	수입(1)	지급(2)	잔고(1)-(2)

[별지 제74호 서식]

세 입 월 계 표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가관망 년 월분

전월계 (1)	본월계 (2)	금고과오납금반환 (3)	누계 (1)+(2)-(3)

상기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5호 서식]

세 출 월 계 표

가관별	전월계 (1)	금월지출			지급명령중 미지급액 (6)	누계 (1)+(5)+ (6)	비고
		지출액 (2)	반납액 (3)	경정액 (4)	차액 (2)-(3) ±(4)=(5)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지출원 귀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 (인)

[별지 제70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금고용)

년 월 일	적 요	채권자	수입(1)	지급(2)	잔고(1)-(2)

[별지 제74호 서식]

세 입 월 계 표

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년 월분

전월계 (1)	본월계 (2)	금고과오납금반환 (3)	누계 (1)+(2)-(3)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징수관 귀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5호 서식]

세 출 월 계 표
년도 월분

자금배정			세 출(2)					자금잔액 (1)-(2)
회계명	이변달 배정액	배정 누계 (1)	지난달 세출 누계 (a)	이번달 지급명령 세출 누계 (d)	지급 액 (b)	미지 급액 (c)	지급명령 누계 (b)+(c)	

공금예금잔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지출원 귀하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금고

[별지 제7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구 분	전일잔액	금일입금		금일지급		금일 잔액	비 고
		건수	금액	건 수	금 액		
합 계							
부 기	금일잔액		정기예금		실현금잔액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금고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지출증빙서

<표지>

20 년도
 년 월 (기)분

지 출 증 빙 서

금액 ₩ _____
전 책 중 책
지주 장

관 서 명 ○○○교육(지원)팀

[별지 제82호 서식]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별지 제76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도 월분

구 분	전일잔액			금일입금		금일지급		금일 잔액		
	정기예금	현금보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정기예금	현금보관	합계
합 계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81호 서식]

지출증빙서

<표지>

20 년도
 년 월 (기)분

지 출 증 빙 서

금액 ₩ _____ 1
전 책 중 책
지주 장

관서명 _____

[별지 제82호 서식]

세 입 금 경 정 요 구 서

원 부 경정결의번호				경정요구서 경정결의번호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원 부 경정결의번호				경정요구서 경정결의번호				경정통지서 경정결의번호											
호 :				호 :				호 :				호 :				호 :				호 :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구분	경정 전	경정 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납입기관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기관코드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과목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세입코드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완납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경정일자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비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시기 바람	담당자	수인 담당자	징수관	결재	위와 같이 경정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년 ○월 ○일 징수관: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년 ○월 ○일 징수관: (인)					○○○○년 ○월 ○일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금고 귀하		

[별지 제85호의1 서식]

[별지 제85호의1 서식]

[illegible]

[별지 제89호 서식]

총괄채권관리부

[illegible]

[별지 제90호 서식]

채 권 관 리 부

[illegible]

[별지 제91호 서식]

지출부(지출원용)

회계연도 :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 (단위:원)

일자	직요	채주	부시	예 산			지 출 액		잔 액	
				현액 (1)	배정 액 (2)	재배 정액 (3)	교 부 액	지 급 액	계 (4)	예산대비 (1)-(2)
월 계										
누 계										

[별지 제89호 서식]

총괄채권관리부

[illegible]

[별지 제90호 서식]

채 권 관 리 부

회계연월:

(단위: 원)

[illegible]

[별지 제91호 서식]

지출부(지출원용)

회계연도 :

정책: 단위: 세부 : 목 : (단위:원)

일 자	적 요	채 권 자	부 서	예 산			지 출 액		잔 액	
				현액 (1)	배정 액 (2)	재배 정액 (3)	교 부 액	지 급 액	계 (4)	예산대비 (1)-(4)
월 계										
누 계										

[별지 제94호 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경리관
지출원 검용)

회계연도 :

부문 정책 단위 세부 목 (단위:원)

일 자	적 요	채 주	부 서	예 산			지출액		잔 액	
				현 액 (1)	배 정 액 (2)	재 배 정 액 (3)	교 부 액	지 급 액 계 (4)	예산대비 (1) - (2)	배정대비 (2)+(3) -(4)
월 계										
누 계										

(주) 자출원인 행위와 지출을 각각 행하시다 독립된 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96호 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illegible]

[별지 제97호 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illegible]

<삭제>

[별지 제96호 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illegible]

[별지 제97호 서식]

채 권 현 재 액 보 고 서

(단위:원)

[illegible]

[별지 제99호 서식]

				조정결의서			
				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발의일자		분야		발의일자			
원인행위부등기		부문		지출부등기			
계약일자		정책사업		당초 원인행위액			
예산구분		단위사업		기원인행위 조정액			
예산부서		세부사업		금회조정액			
원인행위번호		단위업무					
예산부서		목					
변경차수		세목					
당초원인행위일		원가목					
적 요		채 주					
		수령인명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예금주					
		지급계좌					

[별지 제99호 서식]

				조정결의서			
				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담당자	담당	과장	재관	담당자	담당	지출원	
발의일자		분야		발의일자			
계약일자		부문		지출부등기			
원인행위부등기		정책사업		당초 원인행위액			
예산구분		단위사업		기원인행위 조정액			
예산부서		세부사업		금회조정액			
원인행위번호		단위과제카드					
변경차수		목					
당초원인행위일		세목		조정후 원인행위액			
		원가목					
적 요		채관자					
		채관자명 (실거래처)					
		사업자번호					
		주민번호					
		주소					
		예금주					
		지급계좌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성 명 : (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제(개)정안	수정요구안	사 유
제0조(00)	제0조(00)	○ —

2024년 월 일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24-12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 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0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공원결정(변경) 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4-116호(2024.10.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꿈나무어린이공원,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에 대하여
2. 용산구 고시 제2020-126호(2020.07.09.)로 실시계획 인가 및 용산구 고시 제2024- 116호(2024.10.04.)로 실시계획 인가(변경)된 도시계획시설사업(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86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꿈나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1) 공원조성(1,352.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기간 : 2020년 7월 9일 ~ 2024년 5월 31일

바.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사.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02-2199-760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용산구공고 제2024-1270호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공사완료 공고

1.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2435호, 1972.12.30.) 및 동법 시행령 부칙(1973.03.21.) 공원결정(의제) 및 서울시 고시 제2023-392호(2023.09.07.)로 공원결정(변경) 되고, 용산구 고시 제2024-117호(2024.10.04.)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이촌어린이공원,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에 대하여
2. 용산구 고시 제2020-9호(2020.01.16.)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용산구 고시 제2024-117호(2024.10.04.)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이촌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1-60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2) 사업의 명칭 : 이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내용(면적)

- 1) 공원조성(1,736.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시행자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용산구청 7층 공원녹지과)

마. 사업기간 : 2020년 7월 9일 ~ 2024년 5월 31일

바. 준공 관련도서 : 게재 생략

사.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원녹지과(☎02-2199-760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동대문구공고 제2024-1299호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31호(1996.8.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중전 도시설계지구)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1998-380호(1998.12.8.)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호(2007.1.18.)로 변경결정된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장안동 314-1번지 외 2필지에 주민제안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 열람 및 의견 제출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동 대 문 구 청 장

I.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II.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 02-2127-4946)

III. 열람취지

- 대상지는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부지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주민제안 된 도시관리계획(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시계획시설 및 건축한계선 변경 등)을 열람공고하는 사항임

IV.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 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배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장안동 286번지 일대	33,325	-	33,325	서고시 제231호 ('96.8.14.)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합계	33,325	-	33,325	
	제3종일반주거지역	9,945	-	9,945	
	준주거지역	23,380 (2,070.7)		23,380 (2,070.7)	전체구역 (대상지)

※ 당초 사가정길에 결정되어 있던 일반미관지구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로 폐지되었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총괄표 (변경없음)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9	1,068	14,977	3	268	6,641	3	475	5,402	3	325	2,934
대로	2	331	4,815	-	-	-	1	149	2,762	1	182	2,053
중로	1	144	5,401	1	144	5,401	-	-	-	-	-	-
소로	6	593	4,761	2	124	1,240	2	326	2,640	2	143	881

주) 상가사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해당사항이며, 연장 및 면적은 CAD 구적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기정	대로	3	43	25~ 28	보조간선도로	1,240 (182)	전농동광장	장안삼거리 (중로1-148)	일반 도로	-	건고시제738호 (' 63.12.24.)
기정	대로	2	100	30~ 38	보조간선도로	1,660 (149)	장안삼거리 (중로1-148)	용마산길 (대3-47)	일반 도로	-	서고시제360호 (' 07.11.15.)
기정	중로	1	148	20	보조간선도로	2,200 (144)	광로1-5	대로3-43	일반 도로	-	건고시제2493호 (' 66.6.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59 (59)	장안동 469-1	장안동 476-2	일반 도로	-	서고시제15호 (' 07.1.1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65 (65)	장안동 469-2	장안동 475-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60 (160)	장안동 469-1	장안동 476-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66 (166)	장안동 469-2	장안동 475-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53 (53)	장안동 469-17	장안동 476-3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90 (90)	장안동 476-2	장안동 476-3	일반 도로	-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장이며, CAD 측정값으로 실제 현황과 다를 수 있음

2) 주차장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기정	①	주차장	장안동 286-9번지 일대	586.7	동고시제1호(' 98.1.9.)

3) 자동차정류장 : 변경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해제	①	교통 시설	자동차 정류장	장안동 314-8번지일대	2,070.7	감) 2,070.7	-	서고시 제457호 ('78.9.7.)	

※ 기결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필지인 314-1, 314-8, 314-12의 토지대장 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기정 면적을 2,059.6 → 2,070.7㎡로 정정함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자동차 정류장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해제	- 대상지는 2002년 이후 시내버스차고지로서의 용도를 상실하였고 이후 20여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자동차정류장)과 이용현황이 부정합하게 사용되어왔음 - 향후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재사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를 통한 합리적인 도시관리 및 효율적 토지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방재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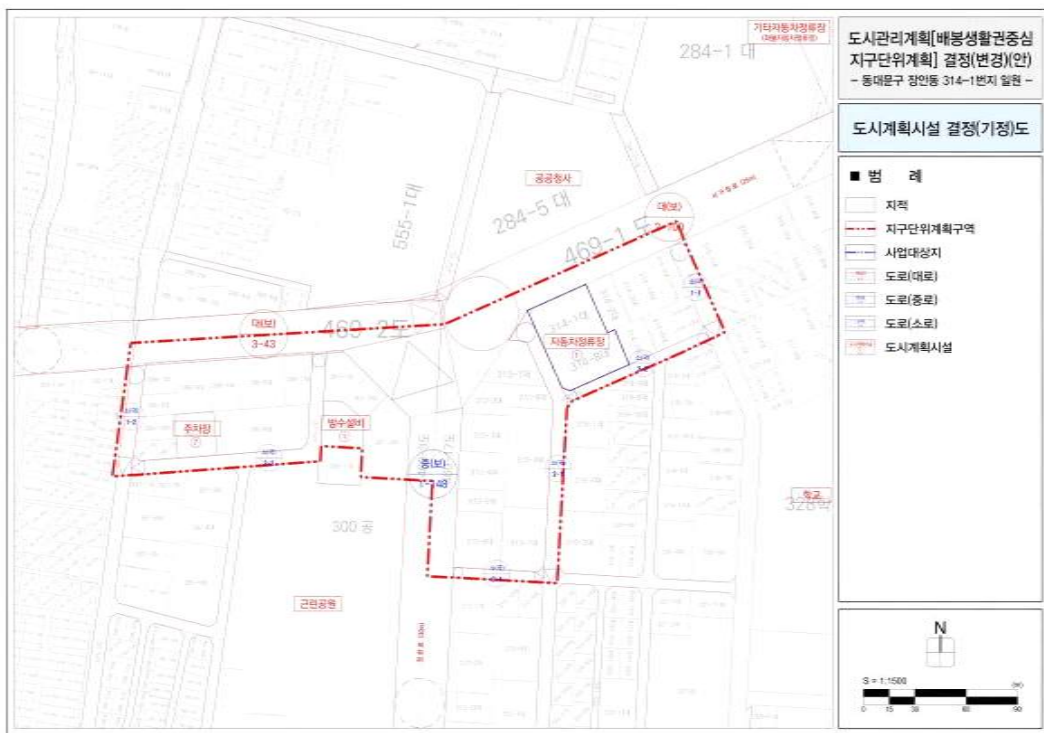
1) 방수설비 : 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방수설비) 결정조서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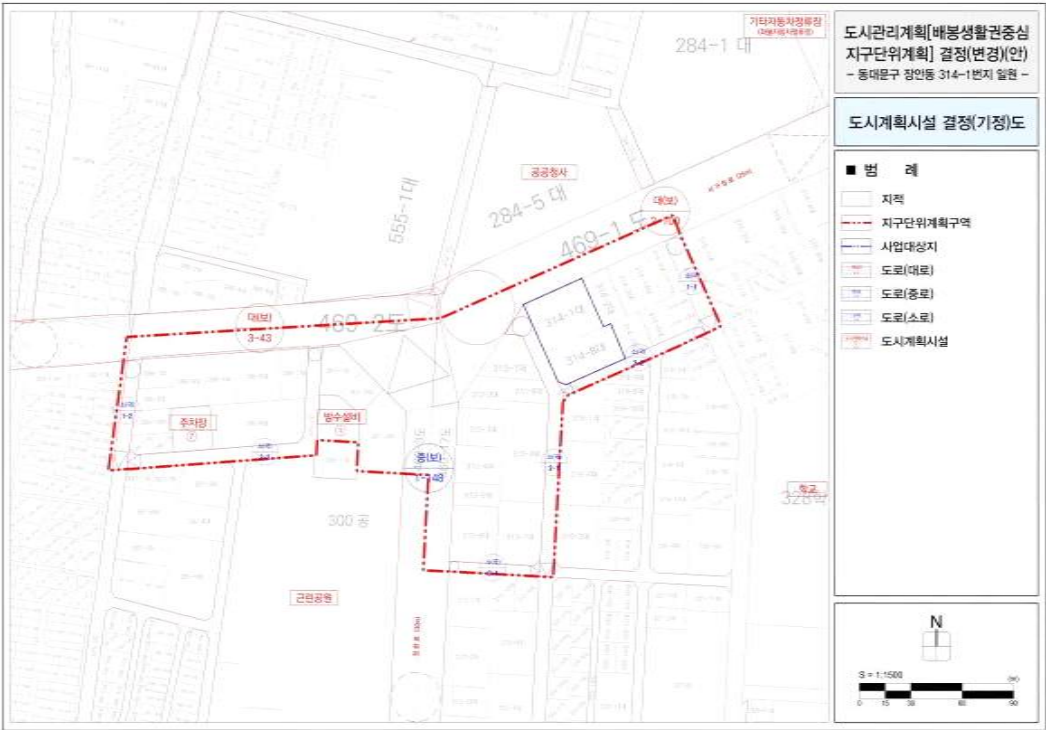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방수설비 (장안3빛물펌프장)	장안동 301-4외 1	1,114.1 (574.1)	-	1,114.1 (574.1)	동고시 제2000-94호 (2000.11.23.)	

주)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면적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최대개발규모 : 변경없음

구 분	최 대 개 발 규 모		비 고
	기 정	변 경	
간선변	1,500	2,000 이하	적용예외 - 기계발전 대지규모가 최대개발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이면부		1,000 이하	

2.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획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위치	대지면적 (㎡)	획지면적 (㎡)	비 고
기정	①	B2	4,789	314-1	1,161.0	2,061.0	획지계획
				314-8	900.0		
변경	①			314-1	1,160.5	1,978.7	획지계획
				314-8	810.7		
				314-12	7.5		
기정	⑤			314-7	390.0	400.0	획지계획
				314-12	10.0		
변경	⑤			314-7	390.4	390.4	-
신설	⑥					A	92.0

※ 가구번호 B2(4,789㎡)에 해당하는 도면번호 ①~⑤중 대상지가 포함된 도면번호 ①,⑤,⑥(2,461.1㎡)만 명기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획지 ①	○ 획지 면적 변경, 지번추가 - 면적 2,061㎡→1,978.7㎡ - 314-12번지 추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결정되어있는 314-12번지를 획지⑤에서 획지①로 이전
획지 ⑤	○ 획지 면적 변경, 지번제외 - 면적 400.7㎡→390.4㎡ - 314-12번지 제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에 포함되는 장안동 314-12번지를 획지①로 이전
획지 ⑥	○ 획지 ⑥ 신설 (공공청사) - 면적 92.0㎡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해제에 대한 공공기여 토지제공을 위하여 획지⑥ 분리 신설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의 용도(불허/권장용도) : 변경

■ 건축물의 용도 결정(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1 층
기정	불허 용도 1)	간선변 (A)	•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бат데리 등 관련 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이면부 (B)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권장 용도 2)	간선변 (a)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주)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설치할 수 있는 용도는 예외로 함

2.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20% 이상, 1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전 층		1 층
변경	간선변 (A)	- 미관지구 내 불허용도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бат대리 등 관련 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3)		-
	불허용도 1)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SR3 (C)	- 당해 용도지역 내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근린생활, 판매시설, 그 외의 기타시설 중 - 금속가공 및 제작, 기계수리, 제조업, 창고시설, 고물상, 폐기물 및 차량수리 및 제작, 정비, 세차, 폐차, 타이어 및 бат대리 등 관련 소매점, 건축자재, 목공소, 난방수도, 광고물제작업, 페인트 등과 관련된 업종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성기구취급업, 실내경마장 및 이와 유사한 실내사행행위업, 성인전용전화방, 성인전용PC방 및 이와 유사한 성인전용업 -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포함)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택시차고지 제외)		-
	권장용도 2)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지정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차고지에 한하며 지하부에 해당 법에 따른 보유 차고 면적기준을 준수하여 조성할 것) - 업무시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별표2]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송 부대시설에 한하며, 해당 용도 연면적을 500㎡ 이상 확보할 것)		-
	SR4 (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주) 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상 설치할 수 있는 용도는 예외로 함

2. 전층권장용도의 경우 전층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면적의 20% 이상, 1층 권장용도의 경우 권장용도면적이 주차장을 제외한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3. 지정용도(가)의 경우 해당 법에 따른 차고 면적기준 및 운송 부대시설 500㎡ 이상 충족시 지정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봄

■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물의 용도	장안동 314-1 일대 불허용도 (C) 신설 장안동 314-1 지정용도 (가), 공공기여용지 지정용도 (나) 신설	■ 금회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해제 및 준대중교통인 택시차고지 기능의 유지를 위해 자동차정류장 해제부지의 택시차고지 입지가 가능토록 불허용도 (C) 신설 ■ 자동차정류장 해제부지에 관련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지정용도 (가), 공공기여용지에 대한 지정용도 (나) 신설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용적률·높이) : 변경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건폐율, 용적률, 높이)

도 면 표 시	위 치	계 획 내 용		
SR1, SR3	간선변 (사가정길, 장한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높이	기준높이(m)	-
			최고높이(m)	50 이하
SR2, SR4	이면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
		높이	기준높이(m)	-
			최고높이(m)	25 이하

■ 건축물 개발밀도 분류표 변경 사유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건축물 개발밀도	SR3, SR4유형 신설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 부지에 건축물 용도 지정을 위해 SR3, SR4유형을 신설하였으며, 각 유형별 입지를 고려하여 SR3(택시차고지)은 당초와 같은 간선변 밀도 및 높이, SR4(공공기여용지)는 이면부 밀도 및 높이 적용

3. 건축물 건축선·배치·형태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배치	• 건축선 후퇴폭원이 상이한 2개가 만나는 지점은 후퇴거리가 큰 폭원만큼 후퇴 • 도로경계선 변경시 결정도 폭원만큼 건축선 지정으로 간주 • 간선변 : 3~5m • 이면부 : 1~2m	결정도 참조

※ 조서 및 결정도 표기사항 외 기타 건축선·배치·형태에 관한 변경사항 없음

※ 314-1 일대 : 건축한계선 조서 변경 없음, 결정도 변경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 간선변 : 3~5m - 이면부 : 1~2m	결정도 참조

※ 조서 및 결정도 표기사항 외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314-1 및 314-8 일대 : 전면공지 조서 변경없음, 결정도 변경 (부지 서측 차도형 전면공지→보도형 전면공지) (도면)

2.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주요교차로에서 일정구간 및 간선변 (폭 25m이상 도로) -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 원칙적 금지	결정도 참조

※ 조서 및 결정도 표기사항 외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사항 없음

※ 314-1 및 314-8 일대 : 차량출입불허구간 조서 변경 없음, 결정도 변경

3. 경관 및 환경친화 요소 :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비 고
옥상녹화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2001.10.24.)' 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벽면녹화	'서울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에 의하여 설치토록 권장	
생태면적률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2004.6.)' 에 의해 적용할 것을 권장	
옥외광고물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모든 옥외광고물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옥외광고물등의 특정 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 2004-158호)' 기준을 준수	
빗물이용시설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름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의 기준에 따라 설치	
야간경관조명	- 간선도로에 면하는 건축물에 대해 설치 권장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경우 설치 권장	

주) 간선도로변이라 함은 사가정길(25m), 장한로(30m)변을 말함

라. 인센티브 항목

1. 용적률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방 식	비 고
상한용적률	기부채납시	허용용적률 $\times$ (1 + 1.3 $\times$ 가중치 $\times \alpha$)	- 가중치란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α란 공공시설제공부지 제공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2$ 3필지 이상 $\alpha = 0.3$ (동일소유자는 1필지로 계산)
공동 개발	공동개발(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alpha$	2필지 $\alpha=0.1$ 3필지 $\alpha = 0.15$ 4필지 이상 $\alpha = 0.2$
대지 분할	-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2$	국공유지 소유의 현황도로 분할은 제외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전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주차장제외건축면적) $\times 0.1$	건축면적의 20% 이상시
		1층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 $\div$ 1층바닥면적) $\times 0.05$	1층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시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위치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의무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구조 $\alpha=0.5$ - 개방형구조 $\alpha=1$ - 건축법상 설치의무면적은 제외
	쌈지형공지		위치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alpha$	- 피로티구조 $\alpha=0.5$ - 개방형구조 $\alpha=1$
	건축 한계선	전면 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div$ 대지면적)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 후퇴로 발생된 공지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시 제외
건축물 외관에 관한사항	옥외광고물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야간경관조명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건축물 시공 전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환경 친화적 건축물	옥상녹화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제공면적 $\div$ 대지면적) $\times 0.2$	서울시 보급형 옥상녹화기준 준수시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등		준수시	기준용적률 $\times 0.05$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비 고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생태면적률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5	• 서울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 적용편람 기준 준수시
개방 화장실	-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3	
주차 및 차량동선	공동주차통로 및 출입구		준수시	기준용적률 x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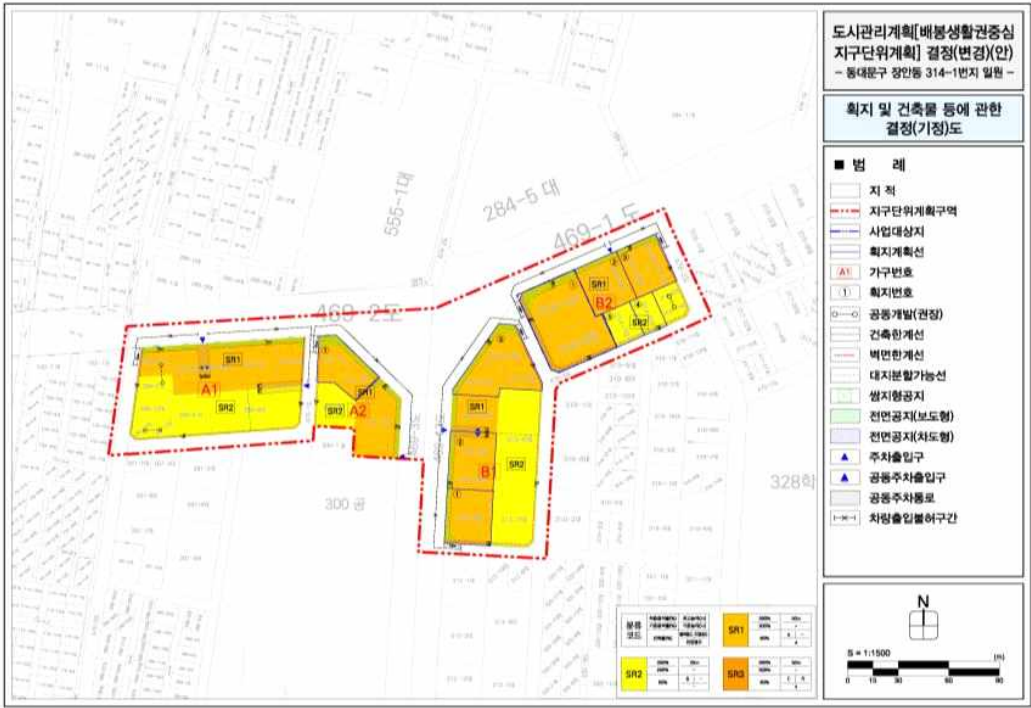
※ 전층권장용도와 1층권장용도는 중복적용 불가

2. 높이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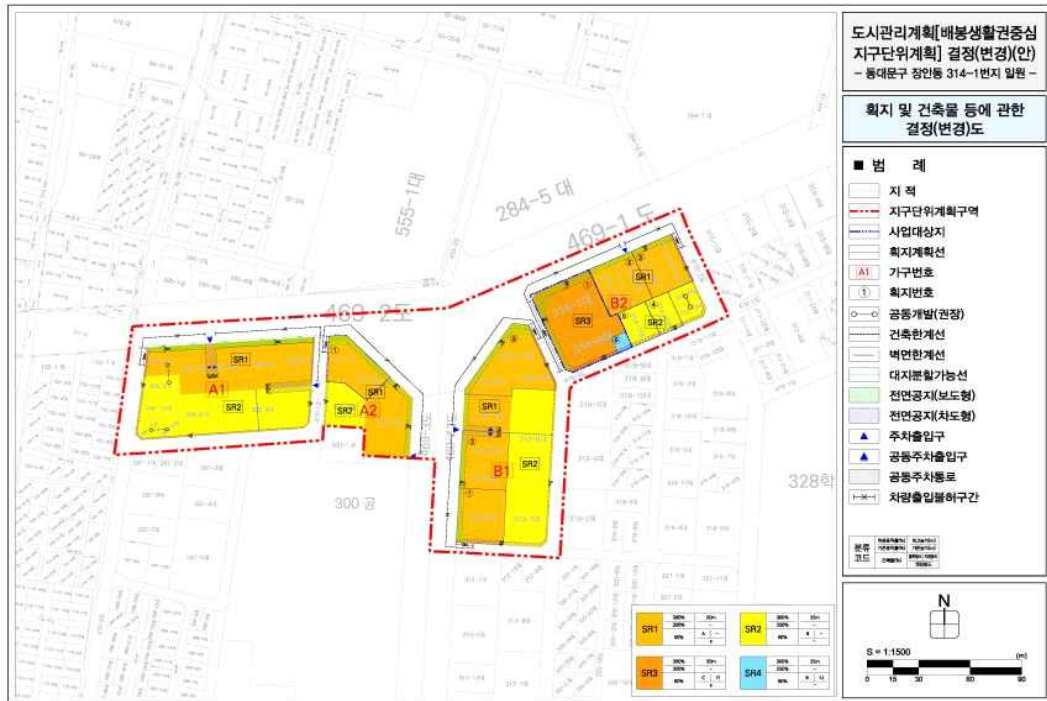
■ 높이 완화항목 및 내용 (변경없음, 해당없음)

항 목	완 화 조 건	산 정 방 식
최고높이 완화	기부채납시	최고높이 x [1+(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의 대지면적)]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④ 공공기여에 관한 계획

가. 공공기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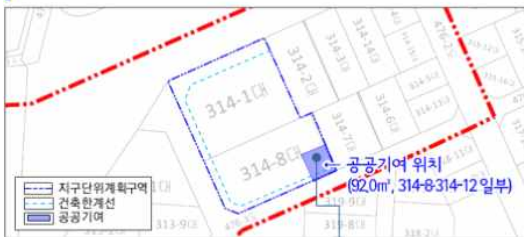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버스차고지) 관리방안(2017.12, 시설계획과-16148)」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복합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안 개선(2022.08, 시설계획과-24877)」에 따라 3,000㎡ 미만 소규모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해제에 따른 공공기여율을 5%로 규정하고 있음
- 금회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의 면적은 2,070.7㎡으로 ‘3,000㎡ 미만 소규모 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공공기여율 5% 기준을 준용하여 토지면적 기준 103.53㎡ 이상 공공기여 제공 필요

나. 공공기여 계획(안)

위 치	공 공 기 여 사 유	공 공 기 여 내 용	공 공 기 여 량
동대문구 장안동 314-8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해제에 따른 건축물 조성 후 기부채납	하수도건설사업관리사무소 - 동대문구 치수와 수요시설 - 하수도 건설사업관리 감리 휴게 및 사무공간	- 기준 : 2,070.7㎡ × 5% = 103.53㎡ 이상 - 계획 : 토지 92.0㎡ + 건축물조성비 토지환산 11.9㎡ = 103.9㎡

공 공 기 여 계 획 (안)

공공기여 위치 및 용도



공공기여 계산식

공공기여 기준
(시설 면적의 5%)
103.53㎡



공공기여 시설

명칭 및 관리부서	하수도 건설사업관리사무소 (동대문구 치수과)
용도	- 동대문구 하수도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 수행 관련 휴게 및 사무공간 - 수시 현장출장 및 야간·공휴일 근무를 고려하고 효율적인 시공 품질관리 업무를 위해 별도 관내사무실 필요



건축물 설치비용 토지환산

- 건축물 규모 : 연면적 약 42㎡
- 건축물 공사비 = 42㎡ × 3,753,636원/㎡** = 157,652,712원
*2022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
- 500㎡ 미만 공공업무사무소 신축 : 3,753,636원/㎡ (부가가치세 제외)
- 공사비 토지환산 = 공사비 ÷ (공시지가** 2배)
= 157,652,712원 ÷ 13,184,000원/㎡ = 11.9㎡
**2023 기준 대상지 공시지가 6,592,000원/㎡

- 토지면적(92.0㎡) + 건축물 조성 건축공사비(건축면적 42㎡ 내외) 토지환산면적(11.9㎡) = 약 103.9㎡

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획지는 제외)
2. 공개공지·쌈지형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조성방법의 변경 및 신규 설치
4.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구역과 연결한 대지의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에 따를 것을 전제함)
6.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 설치)

V.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끝.

◆ 노원구공고 제2024-176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387호(1978.8.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673호(1978.12.21.)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271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491호(2023.1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83호선)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변경)

- 기 정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11-34 ~ 월계동 157-10
- 변 경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다. 사업의 명칭(변경)

- 기 정 : 광운로12길~마들로1길간 동서연결도로 개설
- 변 경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중로1-83호선) 조성 공사

라. 사업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455)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도로	서고제387호 (78.8.3.)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2,579㎡
시행	중로	1	83	20~22	집산 도로	1,800 (455)	월계동 (중1-182)	공릉동 (중2-124)	일반도로	서고제387호 (78.8.3.)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2,579㎡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

- 기 정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변 경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5년간
- 변 경 :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이내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편입 (m)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78,329	9,664.2					
1	월계동	411-7 7	도로	31	9.5	노원구				
2	월계동	403-1	도로	4,252	315.0	서울특별시				
3	월계동	419-7	도로	62	62.0	서울특별시				
4	월계동	산154	임야	125	125.0	정OO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755			
5	월계동	411-3 4	대	951	951.0	국(기획재정부)				
6	월계동	411-8 5	임야	354	308.4	조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60-2			
7	월계동	411-4 3	도로	2,800	259.5	서울특별시				
8	월계동	412-1	철도	4,216	474.7	국(국토교통부)				
9	월계동	85	철도	87,033	1,274.5	국(국토교통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편입 (m)	소유자		관계인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0	월계동	163-3	구거	98	97.5	노원구				
11	월계동	163-2	철도	1,250	4.2	노원구				
12	월계동	162-7	철도	195	195.0	국(국토교통부)				
13	월계동	154	철도	4,660	58.1	국(국토교통부)				
14	월계동	159-1	철도	1,120	1,120.0	국(국토교통부)				
15	월계동	106-2 0	철도	11,680	14.1	국(국토교통부)				
16	월계동	158-1	답	409	409.0	국(국토교통부)				
17	월계동	158-2	답	2,495	27.6	국(국토교통부)				
18	월계동	158	답	1,655	13.5	국(국토교통부)				
19	월계동	154-8	철도	3,506	3.2	국(국토교통부)				
20	월계동	157-1 0	철도	293	293.0	국(국토교통부)				
21	월계동	106-1 7	철도	7,316	142.1	국(국토교통부)				
22	월계동	152-6	도로	3,191	3,106.1	서울특별시				
23	월계동	106-3	철도	40,637	401.2	에이치디씨현대 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 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406 37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차.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24-176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2023.11.1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가2, 소로3-가3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다.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가2, 소로3-가3호선) 조성 공사

라. 사업규모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3	가2	6	특수 도로	127 (127)	월계동 158-2	월계동 85	보행자 전용도로		•총복결정 - 도로 74.5㎡ - 완충녹지 61.8㎡ - 유통업무설비 568.9㎡ •입체적 결정 : 78.9㎡
시행	소로	3	가2	6	특수 도로	127 (127)	월계동 158-2	월계동 85	보행자 전용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3	가3	6	특수 도로	107 (107)	월계동 85-7	월계동 78-1	보행자 전용도로		•중복결정 - 도로 72.0㎡ - 완충녹지 75.2㎡ - 유통업무설비 395.3㎡ •입체적 결정 : 123.6㎡
시행	소로	3	가3	6	특수 도로	107 (107)	월계동 85-7	월계동 78-1	보행자 전용도로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이내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소로3-가2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105,673	784.3						
1	월계동	412-1	철도	4,216	35.5	국(국토교통부)					
2	월계동	85	철도	87,033	295.8	국(국토교통부)					
3	월계동	163-4	철도	412	10.7	노원구					
4	월계동	162-1 0	철도	142	23.0	국(국토교통부)					
5	월계동	106-2 0	철도	11,680	320.1	국(국토교통부)					
6	월계동	106-2 1	철도	2,190	99.2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소로3-가3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편입 (m)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계				142,963	666.1						
1	월계동	78-1	철도	1,071	184.7	국(국토교통부)					
2	월계동	100-1	철도	5,653	166.0	국(국토교통부)					
3	월계동	85	철도	87,033	44.6	국(국토교통부)					
4	월계동	85-7	철도	49,206	270.8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148 /49,206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차.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공고 제2024-176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1호(2023.11.16.)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완충녹지)

다.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중로3-가1, 소로1-가1, 소로2-가1, 소로2-가2, 소로2-가3, 소로3-가1, 완충녹지 : 완충녹지①, 완충녹지②) 조성공사

마.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라. 사업규모

-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중로	3	가1	12	국지 도로	541 (541)	월계동 85-7	월계동 106-20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16.0㎡
시행	중로	3	가1	12	국지 도로	541 (541)	월계동 85-7	월계동 106-20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소로	1	가1	10~13	국지 도로	572 (572)	월계동 106-3	월계동 106-3	일반 도로	-	
시행	소로	1	가1	10~13	국지 도로	572 (572)	월계동 106-3	월계동 106-3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2	가1	10	국지 도로	227 (227)	월계동 106-3	월계동 106-21	일반 도로	-	
시행	소로	2	가1	10	국지 도로	227 (227)	월계동 106-3	월계동 106-21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2	가2	10	국지 도로	198 (198)	월계동 106-3	월계동 85-7	일반 도로	-	
시행	소로	2	가2	10	국지 도로	198 (198)	월계동 106-3	월계동 85-7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2	가3	10	국지 도로	176 (176)	월계동 154	월계동 163-2	일반 도로	-	• 중복결정 - 유통업무설비 211.3㎡
시행	소로	2	가3	10	국지 도로	176 (176)	월계동 154	월계동 163-2	일반 도로	-	
결정	소로	3	가1	6~7	국지 도로	273 (34)	월계동 152-6	월계동 154-7	일반 도로	노원구고시 제9호 (93.2.18.)	
시행	소로	3	가1	6~7	국지 도로	273 (34)	월계동 152-6	월계동 154-7	일반 도로	-	

- 녹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	①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54번지 일원	1,811.1	-	
시행	①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154번지 일원	1,811.1	-	
결정	②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4,893.2	-	
시행	②	녹지	완충녹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85-7번지 일원	4,893.2	-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이후 6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착수일로부터 38개월 이내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도로

○ 중로3-가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편입 (m)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내용	
계				196,473	6,827.5						
1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6.1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 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 /40637
2	월계동	106-2 0	철도	11,680.0	1,226.3	국토교통부					-
3	월계동	158-2	답	2,495.0	142.7	국토교통부					-
4	월계동	106-2 1	철도	2,190.0	1,081.4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5	월계동	87-1	철도	2,054.0	45.8	노원구					-
6	월계동	85	철도	87,033.0	36.9	국토교통부					-
7	월계동	84-5	철도	1,178.0	242.6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	"				1139 /1178
						한국철도공사	"				39 /1178
8	월계동	85-7	철도	49,206.0	4,045.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	"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				148 /49206

○ 소로1-가1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편입 (m)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계				40,637	11,350						
1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11350.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 식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 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 /40637

○ 소로2-가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71,073.0	2,340.9						
1	월계동	106-21	철도	2,190.0	102.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2	월계동	106-20	철도	11,680.0	253.9	국토교통부					-
3	월계동	158-2	답	2,495.0	106.1	국토교통부					
4	월계동	106-19	철도	3,658.0	285.9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				
5	월계동	106-18	철도	3,097.0	183.9	국토교통부					
6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1,035.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 0637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 /40637
7	월계동	106-17	철도	7,316.0	373.8	국토교통부					

○ 소로2-가2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90,152.0	2,070.4						
1	월계동	85-7	철도	49,206.0	1,680.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148 /49206
2	월계동	87-6	대	234.0	58.3	노원구					-
3	월계동	87-7	대	75.0	16.0	노원구					-
4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315.8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				36634.1/4 0637
						한국철도공사	"				4002.9 /40637

○ 소로2-가3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56,982.0	2,442.6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404.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
2	월계동	154	철도	4,660.0	1,679.4	국토교통부					
3	월계동	158	답	1,655.0	345.4	국토교통부					
4	월계동	154-8	철도	3,506.0	5.7	국토교통부					
5	월계동	106-3	철도	40,637.0	8.1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6634.1/406 37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4002.9 /40637

○ 소로3-가1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2,434.0	240.7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218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2	월계동	154	철도	4,660.0	15.0	국토교통부					
3	월계동	163-2	철도	1,250.0	7.7	노원구					

- 녹 지

○ 완충녹지①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99,467.0	1,811.1						
1	월계동	154-7	철도	6,524.0	204.7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2	월계동	163-2	철도	1,250.0	170.2	노원구					
3	월계동	154	답	4,660.0	1,396.1	국토교통부					
4	월계동	85	철도	87,033.0	40.1	국토교통부					

○ 완충녹지②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153,341.0	4,893.2						
1	월계동	106-20	철도	11,680.0	1,149.5	국토교통부					
2	월계동	106-21	철도	2,190.0	284.3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3	월계동	87-1	철도	2,054.0	93.0	노원구					
4	월계동	85	철도	87,033.0	259.8	국토교통부					
5	월계동	84-5	철도	1,178.0	101.0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9층(한강로3가, 현대아이파크몰)				1139/ 1178
						한국철도공사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2동				39/ 1178
6	월계동	85-7	철도	49,206.0	3,005.6	에이치디씨 현대산업개발주식회 사	„				49058 /49206
						한국철도공사	„				148 /49206

아.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

자.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노원구청 미래도시과

차.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미래도시과(☎02-2116-064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공고 제2024-216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56-1번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02-2155-6785)
- 관계 도서: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Ⅰ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경	1	학교	기정	변경	서초동 1356-1	16,529	감)3,719	12,810	서울특별시 공고 504호 ('82.12.29.)	-
			중학교	각종학교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학교	• 시설의 면적 -기정: 16,529㎡ -변경: 12,810㎡ • 시설의 세분 -기정: 중학교 -변경: 각종학교	• 본 부지의 일부(3,800㎡)를 해제하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학교시설의 누락된 필지를 정정(추가81㎡)하고자 함. • 본 부지는 영동중학교가 이전 후, 서초문화예술 정보학교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사용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의 시설의 세분을 중학교→ 각종학교로 변경하고자 함.

○ 공공청사 결정(신설)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2	공공청사	교육지원청	서초동 1356-1	-	증)3,800	3,800	-	-

- 공공청사 신설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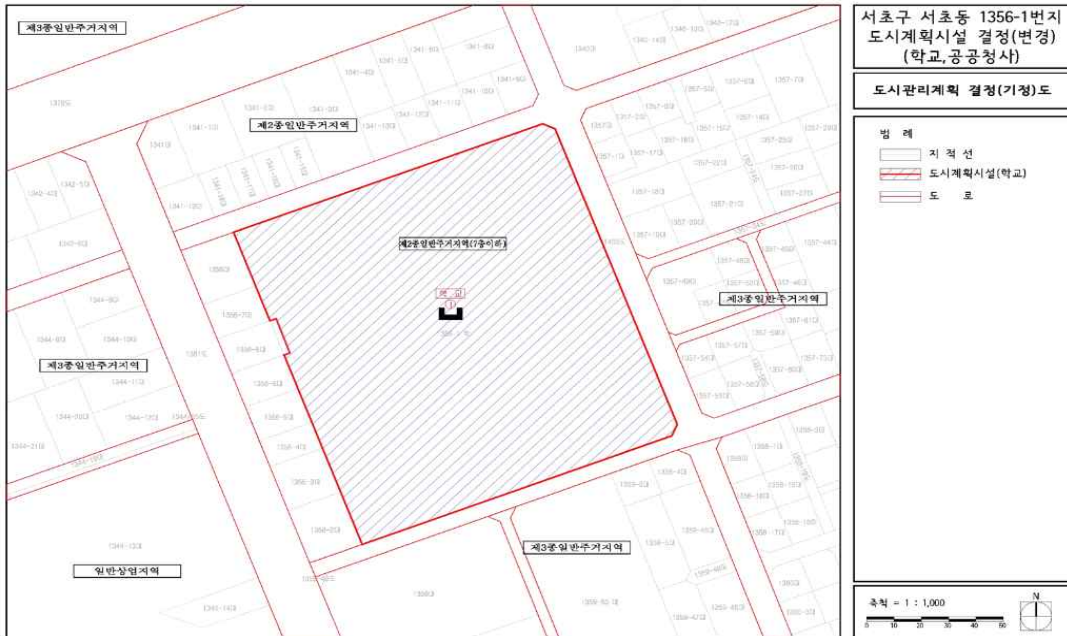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시설결정면적 -신설: 3,800㎡	협소한 업무공간 확보, 노후화된 청사의 개선을 통해 교육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학교) 부지의 일부를 해제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신설하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건립하고자 함.

○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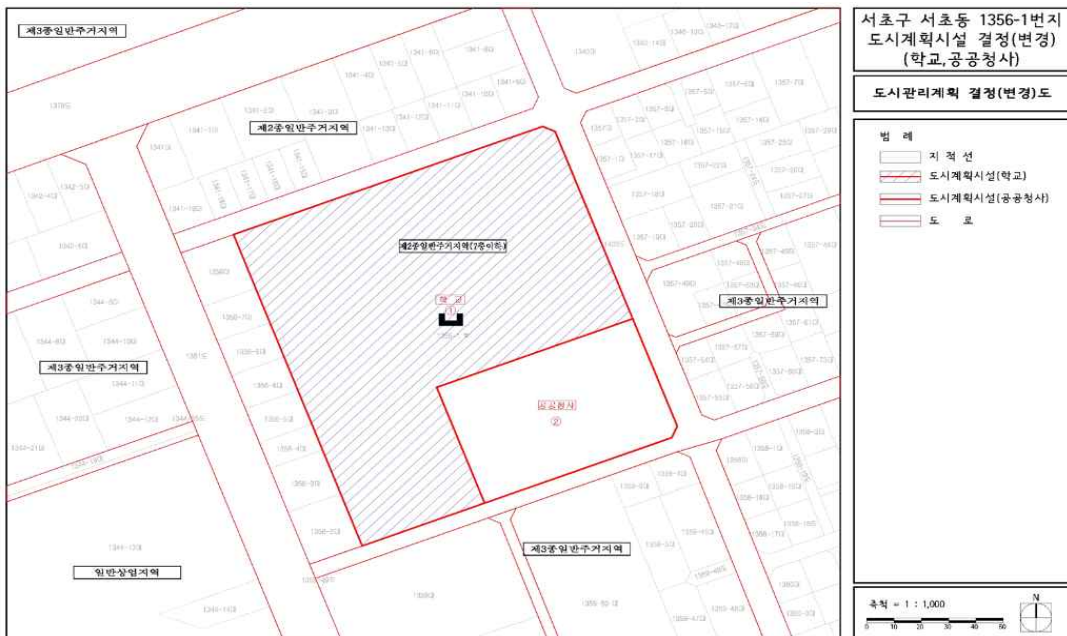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또는 m)	비고
학교(변경없음)	30	120	5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공공청사	60	200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공공청사) 결정(안)은 관계기관(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고시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0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에너지공사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 104
 - 면 적 : 일시 19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지역난방용 열수공관 확인 굴착
5. 점용기간 : 2024.10.7.~2024.10.2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구로구청(체육진흥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42-71번지
 - 면 적 : 1,8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천 구일역 하부 농구장·풋살장 신규 조성
 - 내 역 : 농구장(28m×17.7m) 1개소, 풋살장(37m×17.7m) 1개소,
가동형 헬스(4m×5m) L=205m
5. 점용기간 : 2024.10.10. ~ 2029.10.09.
6. 공사기간 : 2025.02.01. ~ 2025.0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15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내발산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01번지 일원
 - 면 적 : 1,073㎡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스공급 설비
 - 내 역 : 지하밸브실 1동, 방산탑 1기, 환기구 1동, 부대시설
5. 점용기간 : (당초) 2019.07.23. ~ 2024.07.22.
(변경) 2024.07.23. ~ 2029.07.22.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17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장(기전설비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번지, 19-1번지
 - 면 적 : 19.4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가로등 설치
 - 내 역 : 공원가로등 6개소
5. 점용기간 : (당초) 2019.03.08. ~ 2024.06.30.
(변경) 2024.07.01. ~ 2029.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 일원
 - 면 적 : 5,636.5㎡ 일시 16,228.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 보차도교 설치
 - 내 역 : 보차도교 1식(L=118.0m, B=32.0m)
5. 점용기간 : 2021.11.12.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1.11.12. ~ 2024.11.12.
(변경) 2021.11.12. ~ 2026.05.31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4-42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1-1번지 일원
 - 면 적 : 1,209.8㎡ 일시 7,002.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 보행교 설치
 - 내 역 : 보행교 1식(L=110.5m, B=10~15m)
5. 점용기간 : 2021.11.12. ~ 영구
6. 공사기간 : (당초) 2021.11.12. ~ 2024.11.12.
(변경) 2021.11.12. ~ 2025.11.12.

정 정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2794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업무정지) 재개 정정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723(2024.10.04.)호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 재개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재개 정정 내용

업 체 명	행정처분 재개 내용		정정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주식회사 예일기술단 건축사사무소 (舊 주삼호기술단건축사사무소) (2021-14)	행정처분(업무정지) ' 24.11.01.~' 25.02.21.(113일) *기 정지기간 210일 제외 (23.1.20. ~ 8.16.)	행정처분(업무정지) ' 24.11.01.~' 25.04.05.(156일) *기 정지기간 209일 제외 (23.1.20. ~ 8.16.)	업무정지 잔여기간 재산정

◆ 서초구공고 제2024-2177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정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9.24.)로 결정 고시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4-2136호(2024.10.10.)로 공람공고한 공고문에 정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 본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 도시계획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17일

서 초 구 청 장

I.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II.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초구 도시계획과, 방배4동 주민센터

-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sb0038@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II. 공람내용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① 정비계획의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	증) 5,076.4	5,076.4	역세권 활성화사업

■ 정비구역 결정 사유서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5,076.4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율(%)	비 고
합 계		5,076.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78.3	3.5	-
	도 로	178.3	3.5	기부채납
택지(획지)	소 계	4,898.1	96.5	-
	획 지	4,898.1	96.5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 용도지역·지구 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5,076.4	-	5,076.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76.4	감) 4,898.1	178.3	3.5	
일반상업지역	-	증) 4,898.1	4,898.1	96.5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98.1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해당사항 없음)

4.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구분	면적(㎡)	추산가액(원)	단가(원/㎡)	비고
토지	3,270.50	94,470,000,000	28,885,492	- 토지면적당 단가임
건물	5,628.25	2,989,000,000	531,071	- 건물면적당 단가임
집합건물	1,804.90	39,152,000,000	21,692,061	- 토지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대지지분당 단가임
합계 (A)		136,611,000,000		

■ 매입대상 종전자산 추산액

매입대상 국공유지로서 종전자산 제외 평가액 (B, 원)	청산대상자 종전자산가액 (C, 원)
- (국공유지 추정액)	13,611,100,000 (종전자산 합계액의 10%로 추정)

※ 종전자산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추산액 - 매입대상 종전자산 추산액
= A - C = 122,949,900,000 원

■ 종후 아파트 분양가

주택형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세대수	단가(천원)/공급(3.3㎡)	세대분양가(천원)	세대수	단가(천원)/공급(3.3㎡)	세대분양가(천원)
39	2	16,490	903,840	1	14,840	813,400
49	4	16,180	1,108,610	2	14,570	998,300
59	2	15,880	1,298,590	13	14,290	1,168,570
74	5	15,430	1,570,990	2	13,880	1,413,180
84	86	15,130	1,744,790	22	13,610	1,569,500
105	34	14,970	2,136,490	26	13,480	1,923,840

■ 중후자산 추산액

분 양 수 입 집 계 표 (천원)							수 입 총 계 (천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합 계	
조합	일반분양	임대(의무)	임대(소형)	조합	일반		
105,376,610	239,386,850	4,419,220	5,657,340	12,133,460	13,487,150	380,460,630	380,460,630

■ 총사업비 추산액

항 목	금액(천원)	구성비	포함 내용
공사비	156,825,270	61.51%	건축 및 부대시설 공사비, 건축물철거비
보상비	19,407,413	7.61%	청산대상자 청산금, 이주 및 손실보상금
관리비	4,327,280	1.70%	추진위·조합 운영, 소송비용 등
설계비	2,520,852	0.99%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문화재조사비, 지질조사비, 기타 설계용역관련비용 등
감리비	2,430,791	0.95%	건축, 전기, 소방 등
부대경비	56,690,189	22.2%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예비비	12,747,463	5%	기타 향후 청산 시까지의 돌발발생 제비용 등 (총사업비의 약 5%)
총계	254,949,258	100%	

■ 비례율 추정결과

중전자산(C)	총 수입(A)	총 사업비(B)	비례율
122,949,900	380,460,630	254,949,258	102.08%

■ 토지등소유자별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

추정 종전가액 (천원)			300,000	400,000	500,000	7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변동률			102.08%								
예상권리가액(천원)			306,240	408,320	510,400	714,560	1,020,800	2,041,600	3,062,400	5,104,000	7,145,600
예상추정 분담금	39TY	813,400	507,160	405,080	303,000	98,840	-207,400	-1,228,200	-2,249,000	-4,290,600	-6,332,200
	49TY	998,300	692,060	589,980	487,900	283,740	-22,500	-1,043,300	-2,064,100	-4,105,700	-6,147,300
	59TY	1,168,570	862,330	760,250	658,170	454,010	147,770	-873,030	-1,893,830	-3,935,430	-5,977,030
	74TY	1,413,180	1,106,940	1,004,860	902,780	698,620	392,380	-628,420	-1,649,220	-3,690,820	-5,732,420
	84TY	1,569,500	1,263,260	1,161,180	1,059,100	854,940	548,700	-472,100	-1,492,900	-3,534,500	-5,576,100
	105TY	1,923,840	1,617,600	1,515,520	1,413,440	1,209,280	903,040	-117,760	-1,138,560	-3,180,160	-5,221,760

※ 분담금 추산액 = 추산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b)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비례율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 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0	6~8	국지 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제20 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4	6~8	국지 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 도로			

※ ()는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해당함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0	소로3-20	- 일부구간 도로확폭 (B=6m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통을 위하여 확폭
소로3-24	소로3-24	- 일부구간 도로확폭 (B=6m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통을 위하여 확폭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계획면적(㎡)	비고
신설	관리사무소		서초구 방배동 874-11번지 일원	43.64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소 계		662.10	지상4층
		주민운동시설		186.30	
		커뮤니티 룸		50.40	
		주민회의실		88.48	
		주민도서관		256.53	
		독서실		80.39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5,076.4	획지	4,898.1	서초구 방배동 872-11 번지 일원	19	-	-	19	-	-

8.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신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5,076.4	획지	4,898.1	서초구 방배동 872-11 번지 일대	공동주택, 업무·근린 생활시설	60 이하	250 이하	700 이하	12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라 의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 ◦ 주택공급계획 : 252세대(임대주택 포함) ◦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th></tr><tr><td colspan="2">합 계</td><td>252세대</td><td>100.0</td><td>공공임대주택 53세대 포함</td></tr><tr><td rowspan="5">분양 주택</td><td>소 계</td><td>199세대</td><td>79.0</td><td></td></tr><tr><td>40㎡미만</td><td>3세대</td><td>1.2</td><td></td></tr><tr><td>40~60㎡미만</td><td>21세대</td><td>8.3</td><td></td></tr><tr><td>60~85㎡미만</td><td>115세대</td><td>45.6</td><td></td></tr><tr><td>85㎡초과</td><td>60세대</td><td>23.8</td><td></td></tr><tr><td rowspan="4">공공 임대 주택</td><td>소 계</td><td>53세대</td><td>21.0</td><td></td></tr><tr><td>40㎡미만</td><td>13세대</td><td>5.2</td><td rowspan="3">「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td></tr><tr><td>40~60㎡미만</td><td>24세대</td><td>9.5</td></tr><tr><td>60~85㎡이하</td><td>16세대</td><td>6.3</td></tr></table>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252세대	100.0	공공임대주택 53세대 포함	분양 주택	소 계	199세대	79.0		40㎡미만	3세대	1.2		40~60㎡미만	21세대	8.3		60~85㎡미만	115세대	45.6		85㎡초과	60세대	23.8		공공 임대 주택	소 계	53세대	21.0		40㎡미만	13세대	5.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40~60㎡미만	24세대	9.5	60~85㎡이하	16세대	6.3
구 분		세대수	비율(%)	비 고																																																					
합 계		252세대	100.0	공공임대주택 53세대 포함																																																					
분양 주택	소 계	199세대	79.0																																																						
	40㎡미만	3세대	1.2																																																						
	40~60㎡미만	21세대	8.3																																																						
	60~85㎡미만	115세대	45.6																																																						
	85㎡초과	60세대	23.8																																																						
공공 임대 주택	소 계	53세대	21.0																																																						
	40㎡미만	13세대	5.2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40~60㎡미만	24세대	9.5																																																						
	60~85㎡이하	16세대	6.3																																																						
원화사항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방배지역중심인 대상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로 제외)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의무사항)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250% 이하 → 상한용적률 700.0%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3m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대지 내 공지		◦ 공개공지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준 (허용)	상한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동·서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보도형 전면공지 북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차도형, 2m 보도형 전면공지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8m이상)								
		교통처리계획	◦간선도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서초대로)								

9. 공공기여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5,076.4	4,898.1	1,577.08	178.3	-	-
기준/상한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 상한용적률 = 70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부담 면적) = ① + ② + ③					
	①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 면적)	- 도로(정비기반시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 178.3㎡ 순부담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78.3㎡ - 0㎡ - 0㎡ = 178.3㎡(순부담 면적) ▶ 가중치 적용 공공기여량 : 178.3㎡ × (250/700) = 63.68㎡				
	② 기타시설 (공공시설)	- 기타시설(공공기여시설) ▶ 공공시설(업무시설, 운동시설) 면적 ㉠ 업무시설 : 505.97㎡(대지지분 186.46㎡ + 환산부지면적 319.52㎡) ㉡ 운동시설 : 531.08㎡(대지지분 186.82㎡ + 환산부지면적 344.26㎡)				
	③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건축물 대지지분 476.35㎡				

구 분	산정내용																				
공공기여율 (순부담률)	- 「서울특별시 역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기여율(순부담률) 산정(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 {(700%-250%)/700%} × 1/2 = 32.15% 이상 ≤ 계획 32.19%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table><tr><th>구분</th><th>세부명칭</th><th>위치</th><th>층 (전용층)</th><th>면적</th><th>비고 (관리청)</th></tr><tr><td>공공임대 업무시설</td><td>먹거리 창업센터</td><td rowspan="3">내방역 역사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내</td><td>지상2-3층</td><td>전용면적: 1,238.24㎡ 연면적: 2,192.78㎡</td><td>건축물 (서울시)</td></tr><tr><td rowspan="2">공공 체육시설</td><td>스쿼시장</td><td>지상1층</td><td>전용면적: 387.31㎡ 연면적: 794.37㎡</td><td rowspan="2">건축물 (서초구)</td></tr><tr><td>클라이밍장</td><td>지하1층</td><td>전용면적: 746.28㎡ 연면적: 1,402.71㎡</td></tr></table>	구분	세부명칭	위치	층 (전용층)	면적	비고 (관리청)	공공임대 업무시설	먹거리 창업센터	내방역 역사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상2-3층	전용면적: 1,238.24㎡ 연면적: 2,192.78㎡	건축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스쿼시장	지상1층	전용면적: 387.31㎡ 연면적: 794.37㎡	건축물 (서초구)	클라이밍장	지하1층	전용면적: 746.28㎡ 연면적: 1,402.71㎡
	구분	세부명칭	위치	층 (전용층)	면적	비고 (관리청)															
	공공임대 업무시설	먹거리 창업센터	내방역 역사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상2-3층	전용면적: 1,238.24㎡ 연면적: 2,192.78㎡	건축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스쿼시장		지상1층	전용면적: 387.31㎡ 연면적: 794.37㎡	건축물 (서초구)															
		클라이밍장		지하1층	전용면적: 746.28㎡ 연면적: 1,402.71㎡																
1) 공공임대업무시설(먹거리창업센터)의 관리청은 서울시로 하며, 서울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공공체육시설(스쿼시, 클라이밍장)의 관리청은 서초구로 하며, 서초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3)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4) 향후 서울시·서초구 운영부서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부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1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계획기준	◦ 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용」 (국토부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4조 제6항 및 제7항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는 5%로 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산출근거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53세대(연면적 6,862.05㎡) ▶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3세대(연면적 1,260.03㎡)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40세대(연면적 5,602.03㎡) - 전체 공공기여량(1,577.08㎡)의 30.2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476.35㎡ 공급			
건립규모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설계획(안)			비율
	합계(세대수)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세대수)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세대수)	
합계	53	13	40	100.0%
40㎡ 이하	13	13	-	24.5%
59㎡ 이하	24	-	24	45.3%
74㎡ 이하	6	-	6	11.3%
84㎡ 이하	10	-	10	18.9%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실행방법	실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합 또는 신탁업자	증) 199세대 (현황:53세대, 계획:252세대)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범죄예방 설계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1개소 이상 설치	-
영역성 강화	◦특정 지역에 대한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내 출입차단기를 설치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	생활환경 ◦보도, 공공보행통로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화재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관할소방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피난·방화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	
	수재해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및 하수도시설 용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교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 분포 ◦식재된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식이 어려운 수목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목을 이식 후 새로 조성되는 조경 내 재식하는 방안 검토	

15. 세입자 주거대책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적격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원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예정
-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 예정(53세대 임대주택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활용)

16.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비오름 및 동식물상	비오름 보전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및 상업 및 업무지비오름, 평가제외 등급 ◦주요 동식물상의 서식처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지역 내 소규모 녹지공간 및 소생태계 조성
	2.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녹지모양, 내·외연결성 등 검토하여 녹지공간 적정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생활 환경	1.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 주요 지형 변화없음	◦주변 토지이용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등 조사 - 대상지 전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지역과 조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처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유유지
	2.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을 참조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예상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 에게 위탁처리
	3.물순환 (생태면적률) 및 수질	생태면적률 30%	○	◦대상지 내로 기존 건축물이 운영중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 경미 ◦운영시 오수발생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응 계획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 계획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4.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도로, 저층 건축물 일대로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건물 배치
	5.대기질·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경미	◦비산방진망,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녹지대 최대 및 에너지절약 계획
	6.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후 감소추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7.친환경적 자원 순환(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등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운영시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처리
	8.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에너지효율 극대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기법 (태양열 이용, 자연채광, 고효율 조명장치 등)을 최대 반영할 계획
	9.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 진동발생 ◦운영시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준수 등 녹지대 조성 및 복층 유리 설치 등
	10.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 여가공간 확보	○	◦대상지내 휴식·여가공간은 없음	◦부대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휴식 ·여가 공간 조성
	11.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	◦대상지 북서~북동측 지역은 주거 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입지	◦북측 저층주거지에 부형향을 최소화 건축계획 수립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 주거지 일조 부영향 지점 발생	
12.보행친화 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이면도로로 보차혼용	◦부지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랑 및 보행동선 확보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 미설치	-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도로 보관소 설치 검토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②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관계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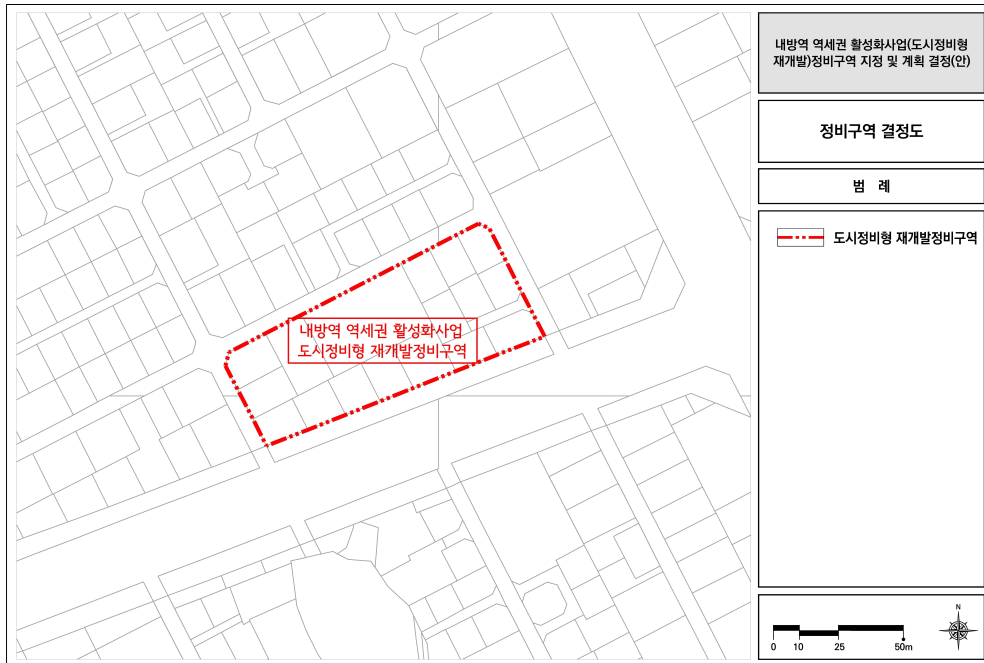
③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관계
도서 참조

IV. 관계도서 : 생략(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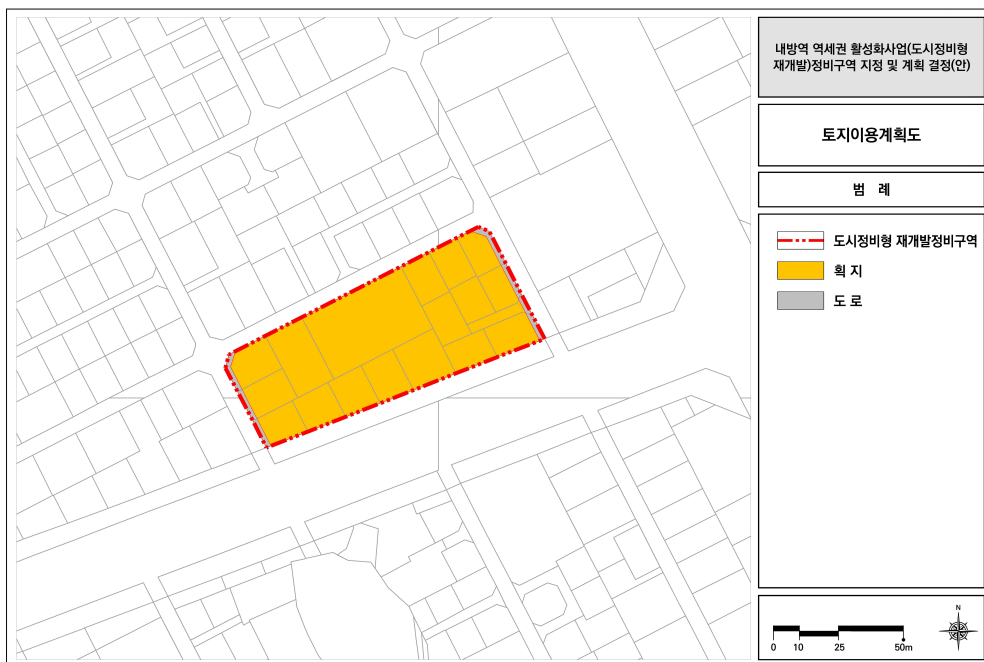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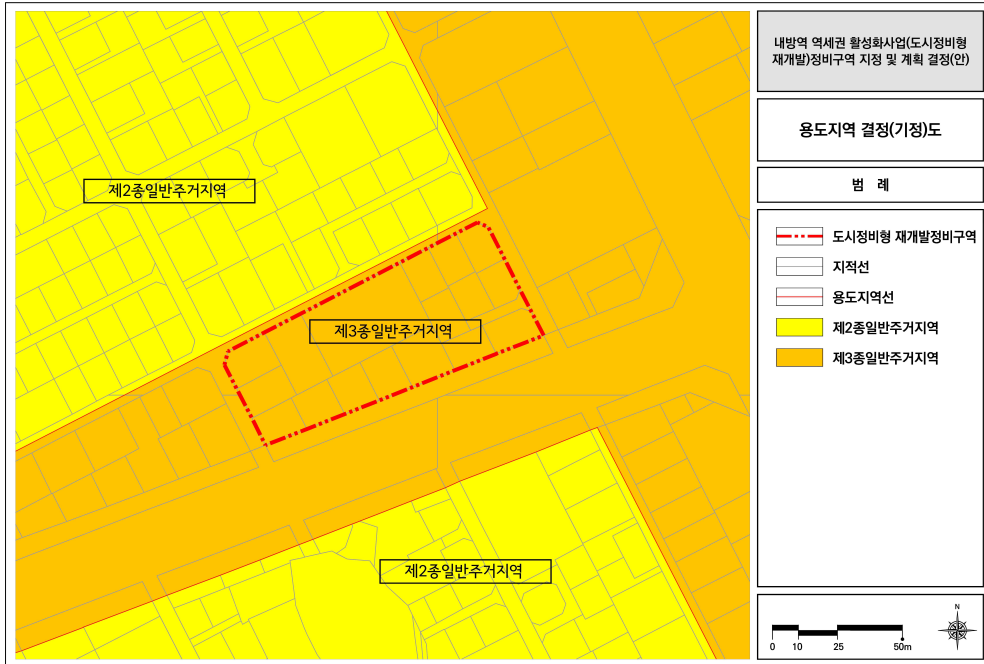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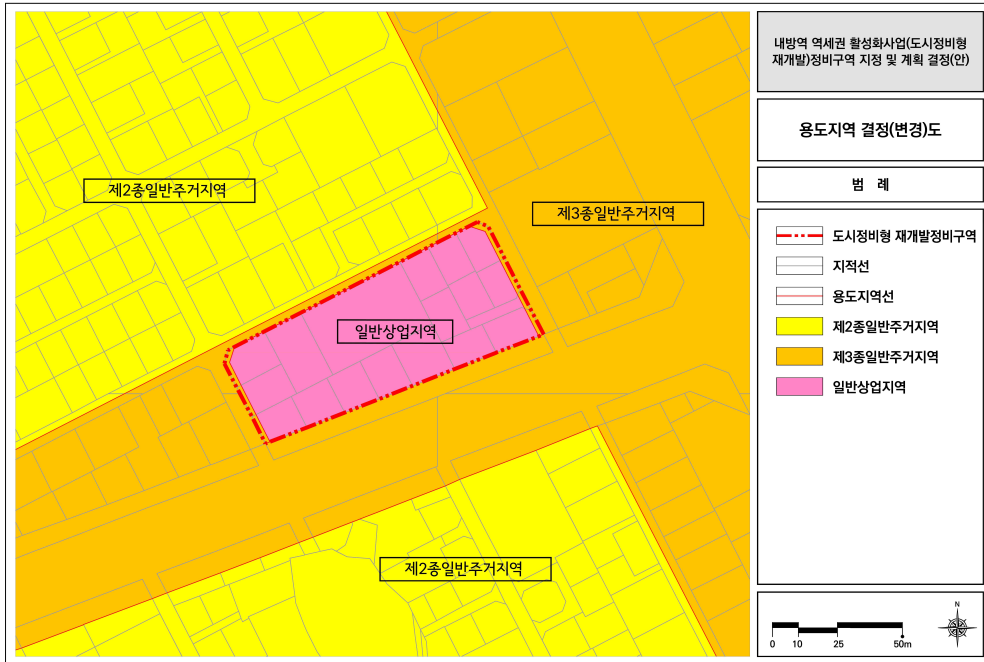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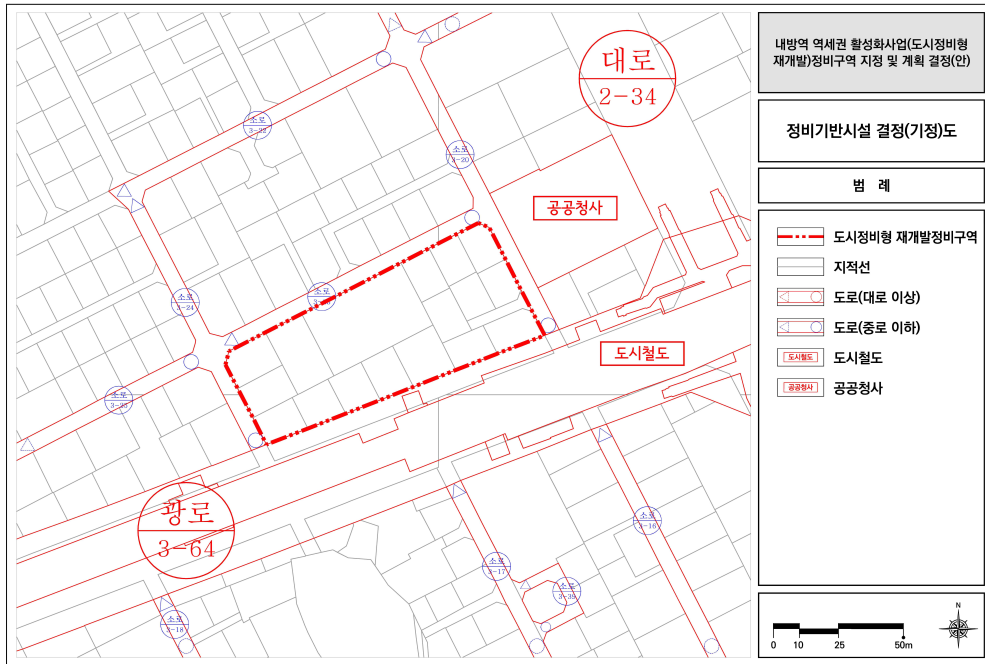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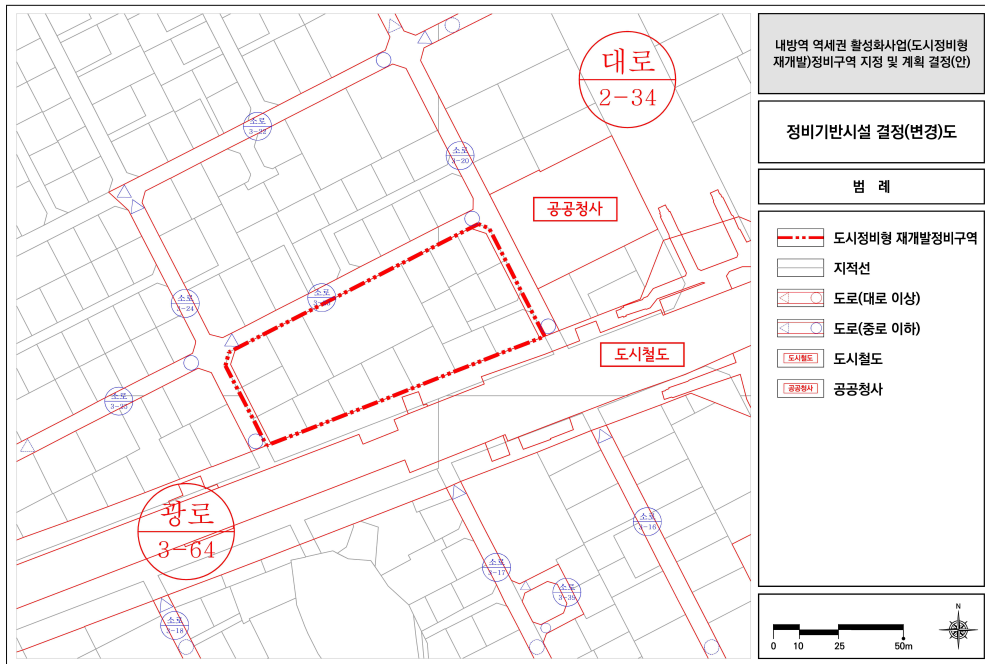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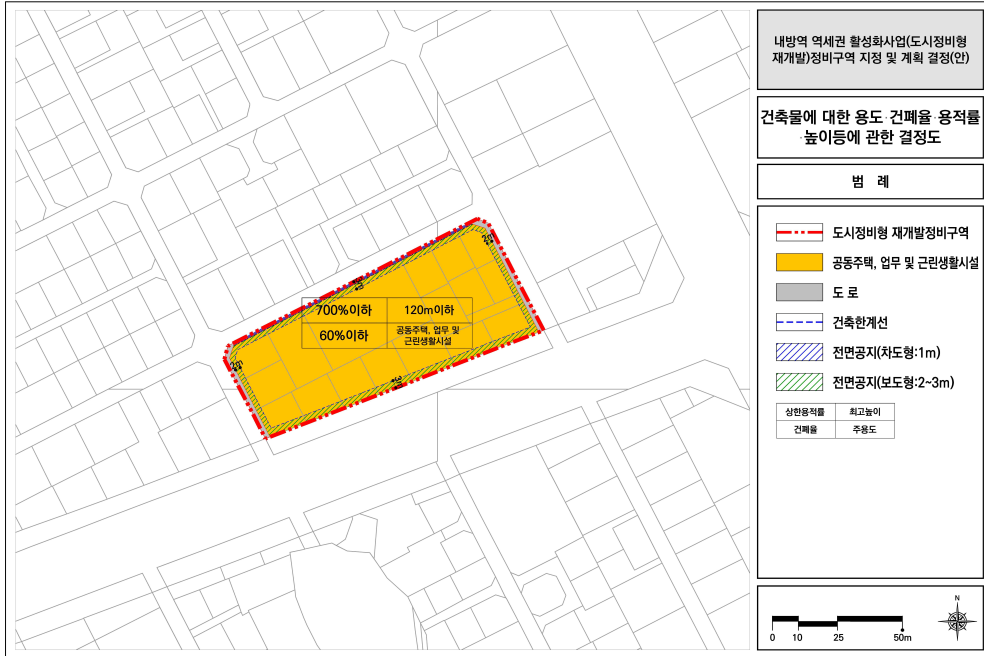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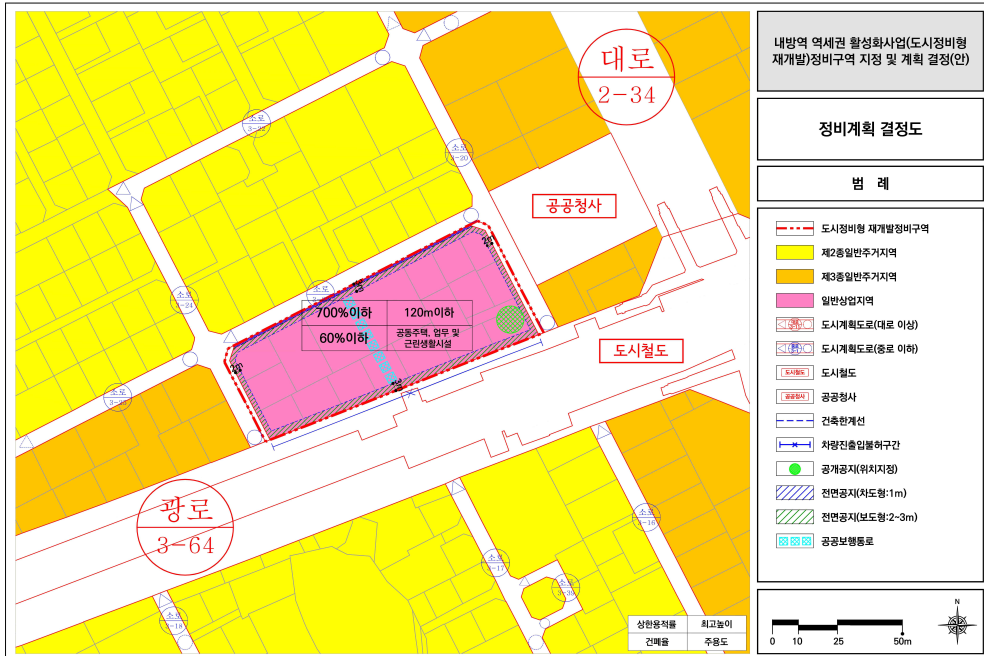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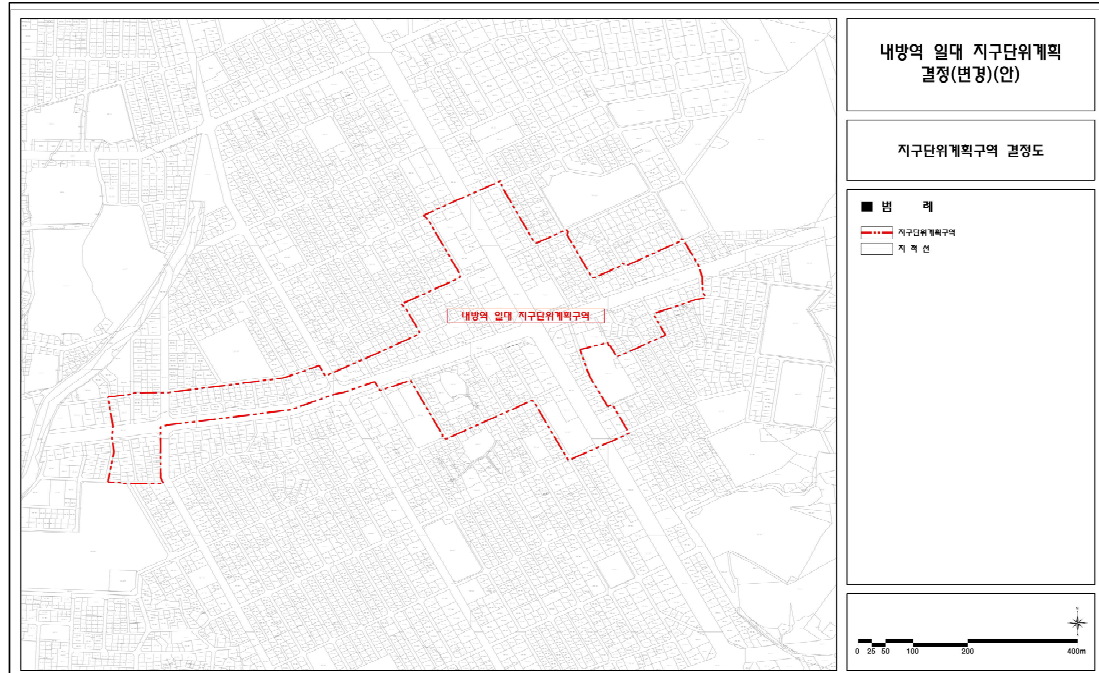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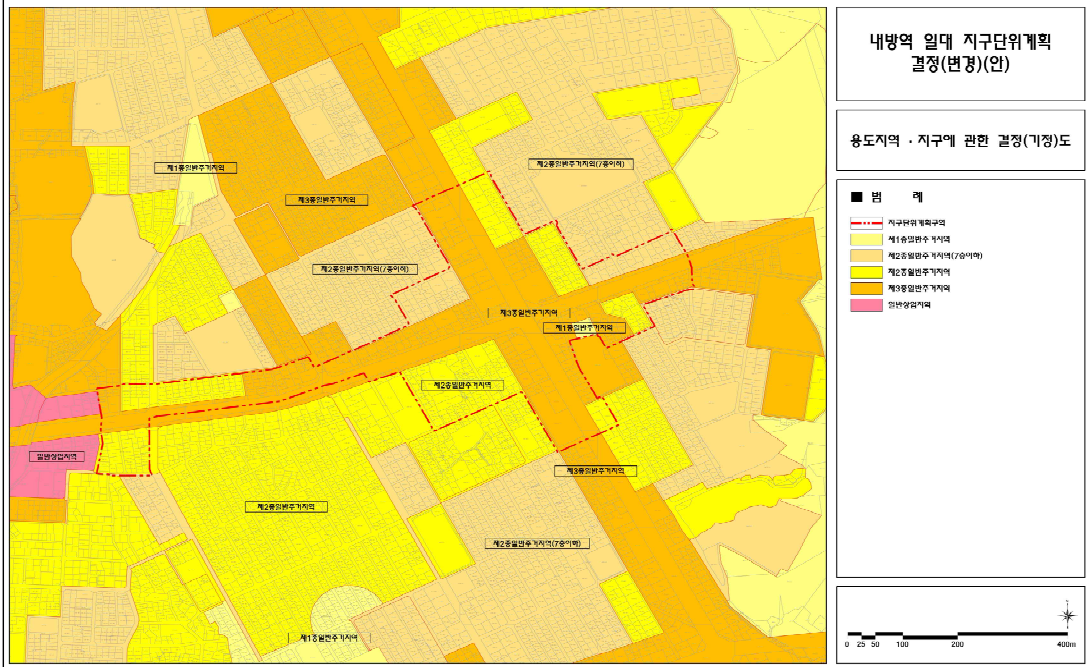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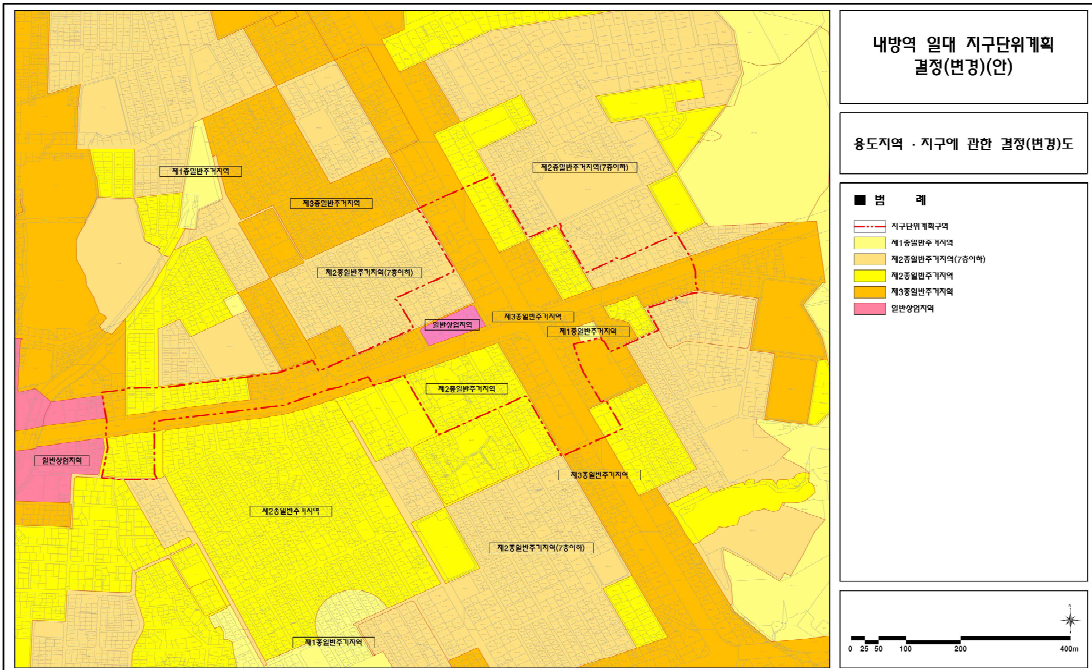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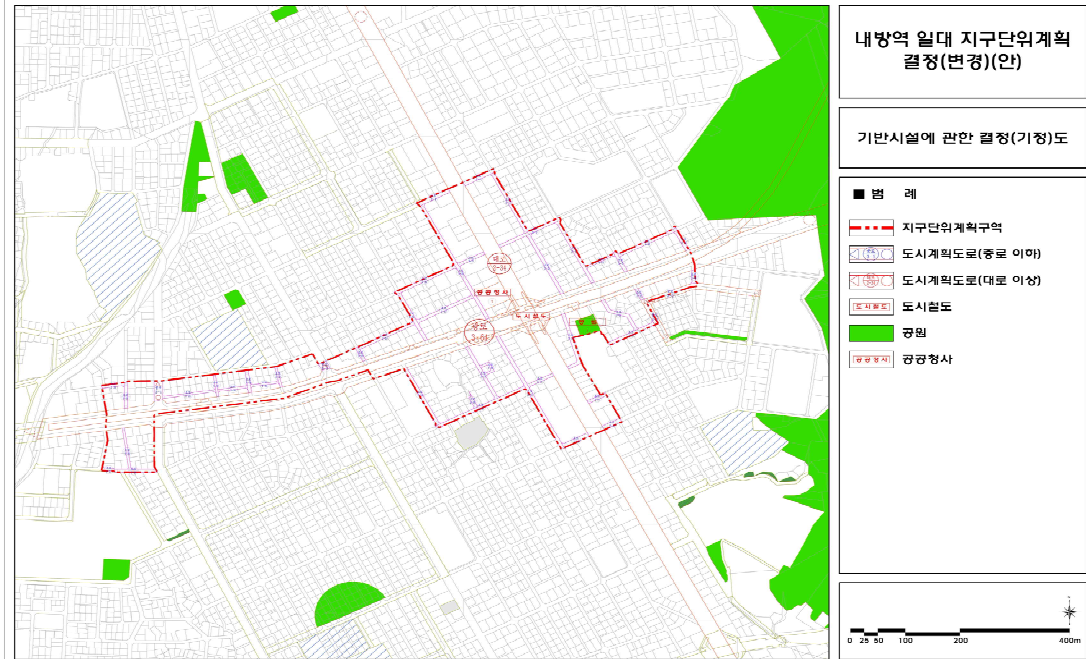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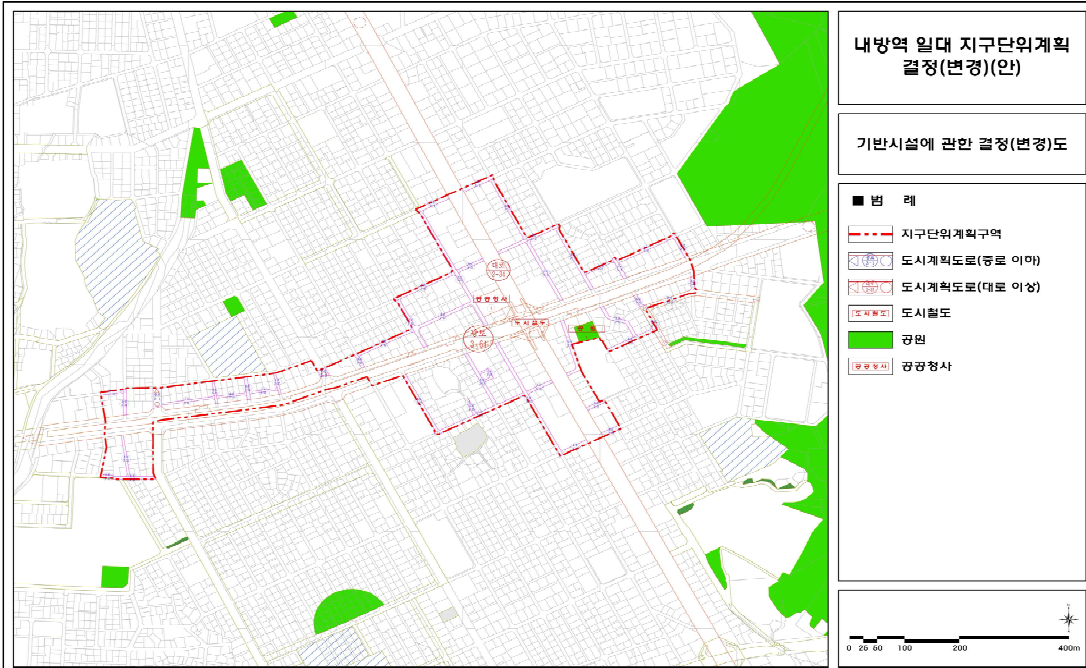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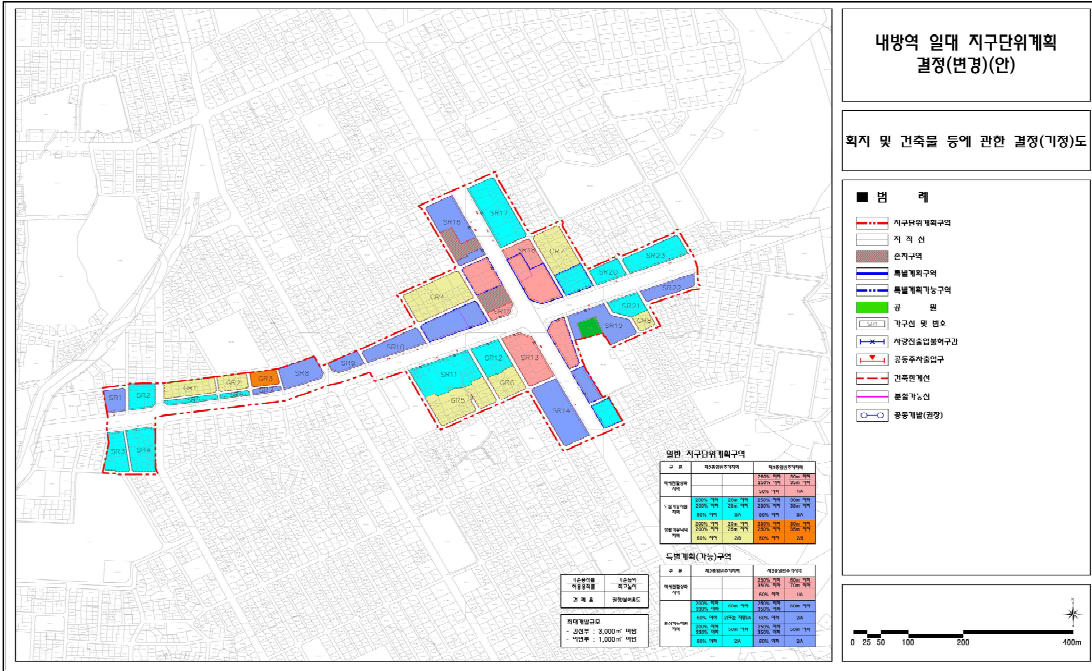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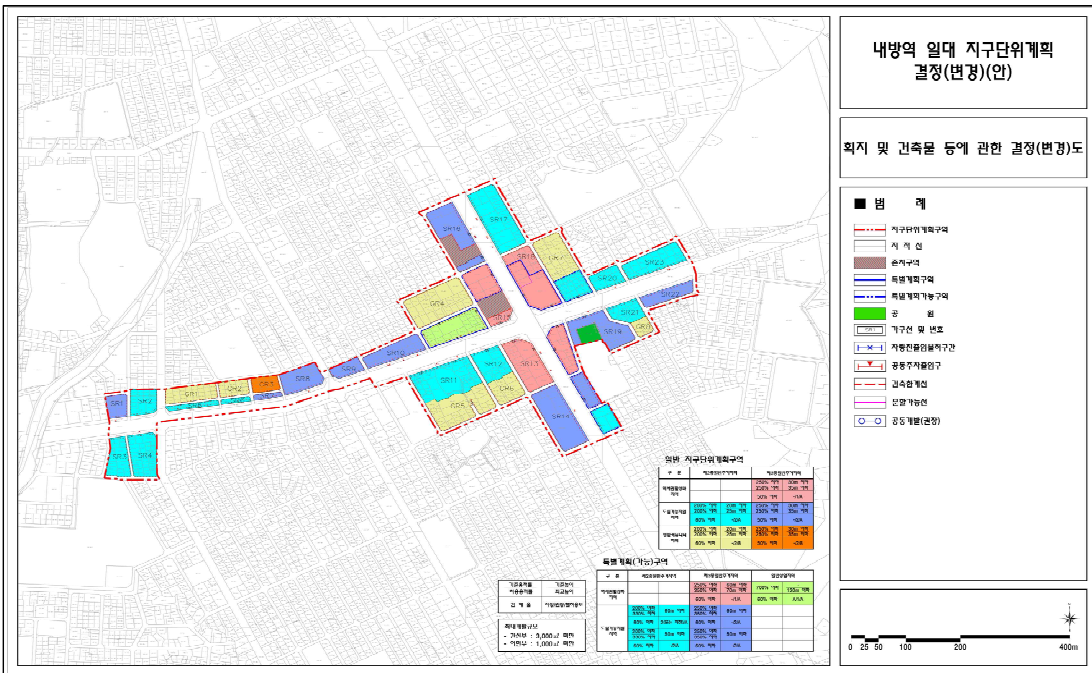
○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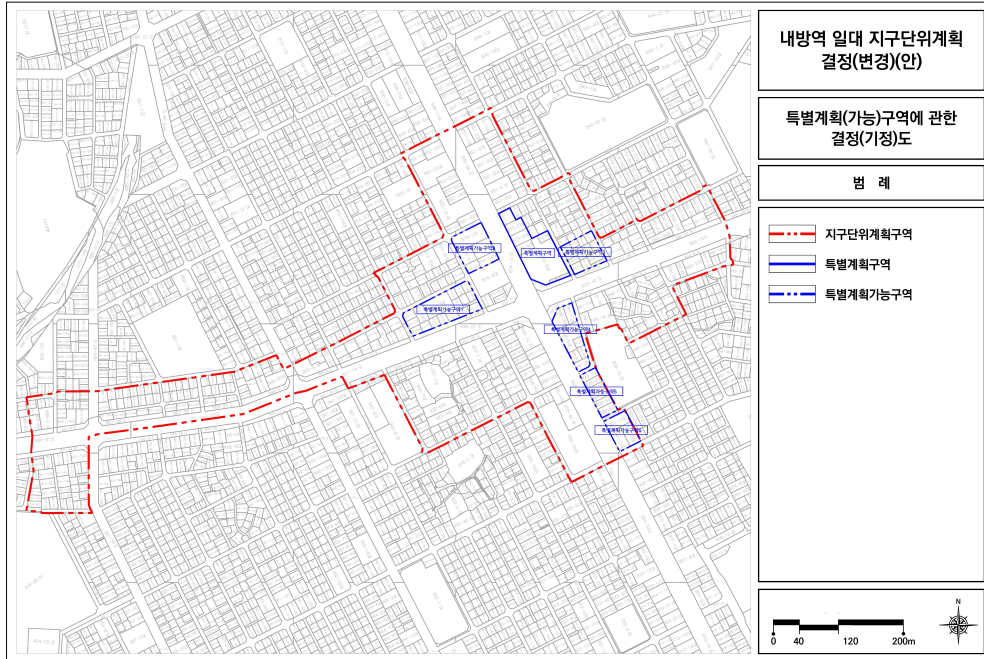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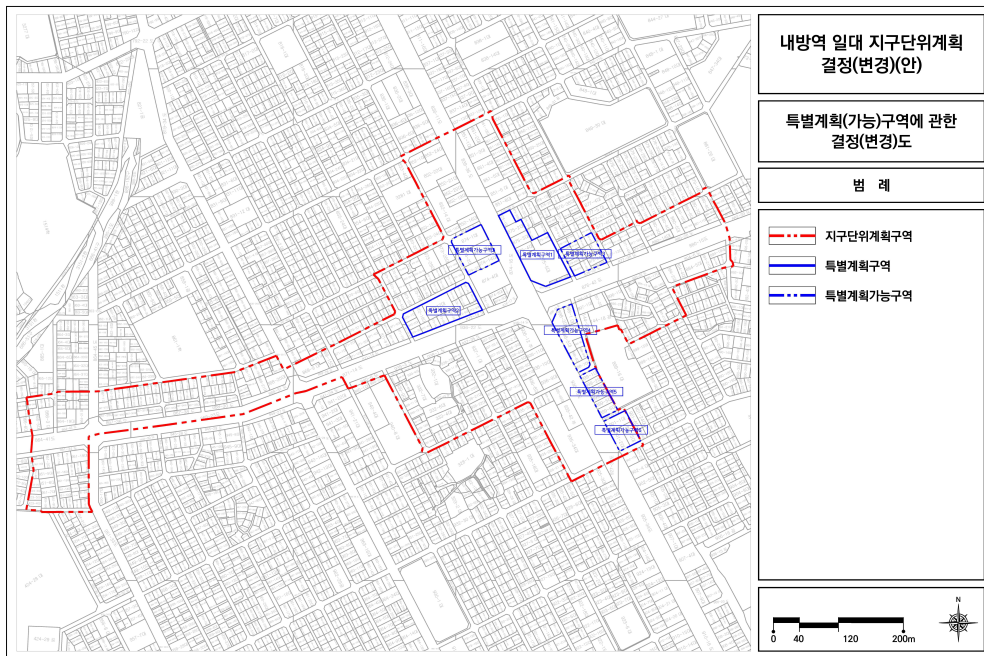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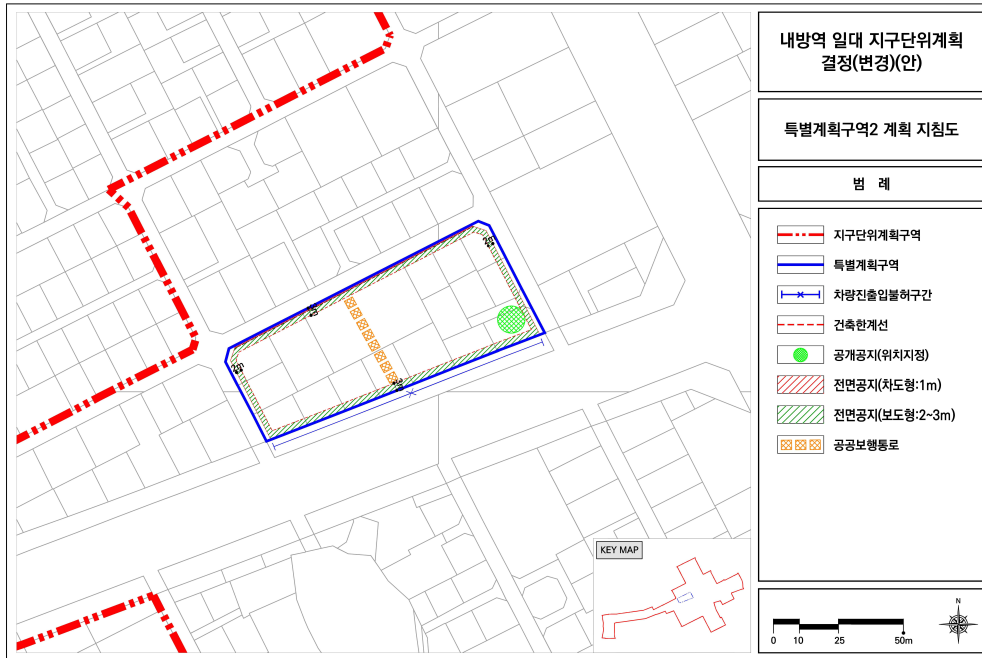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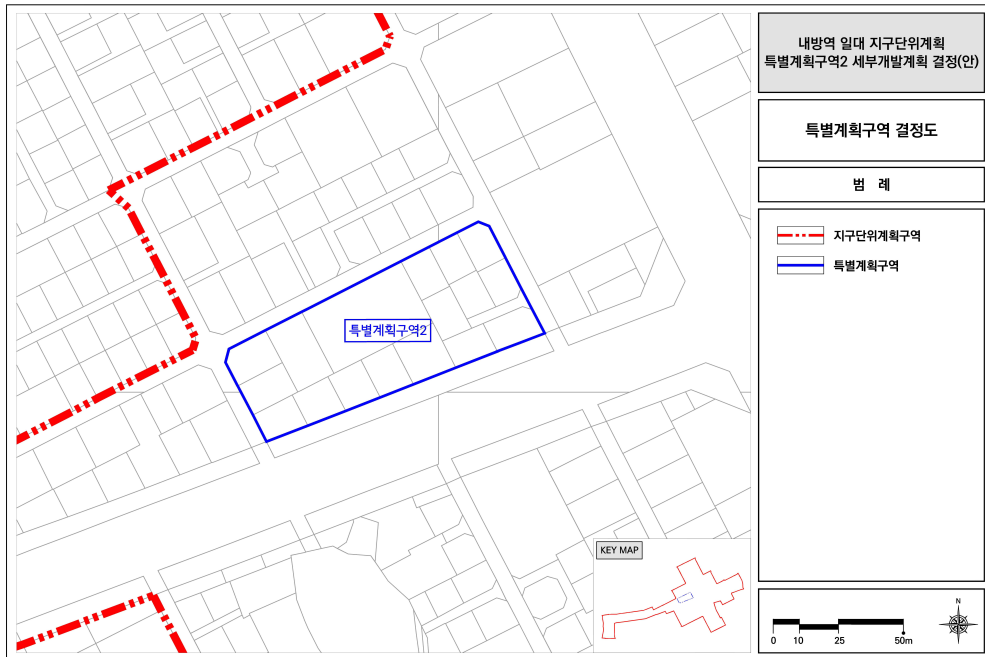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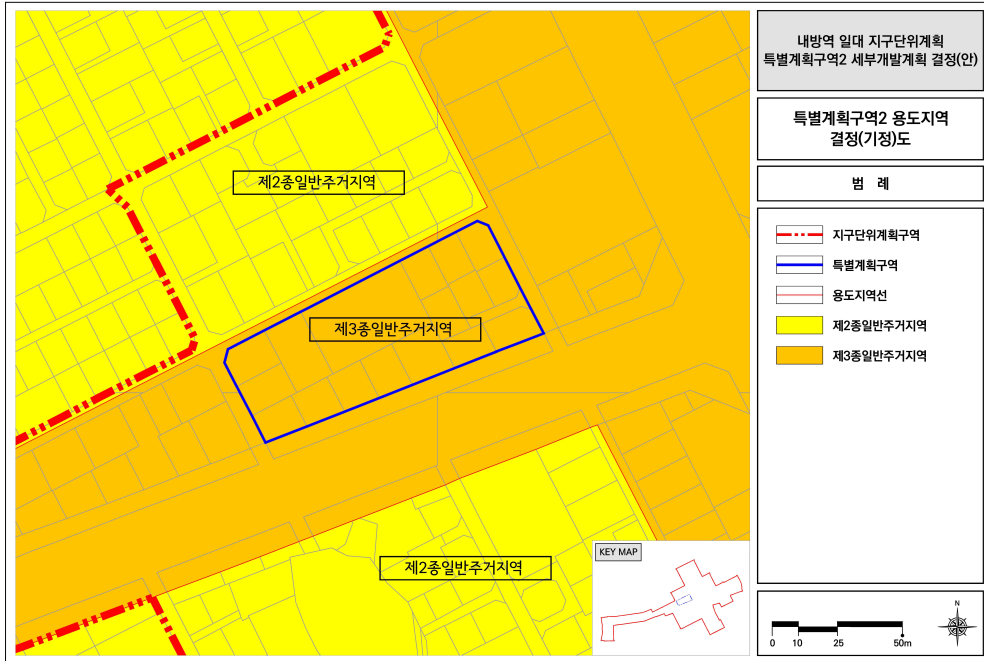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 계획 지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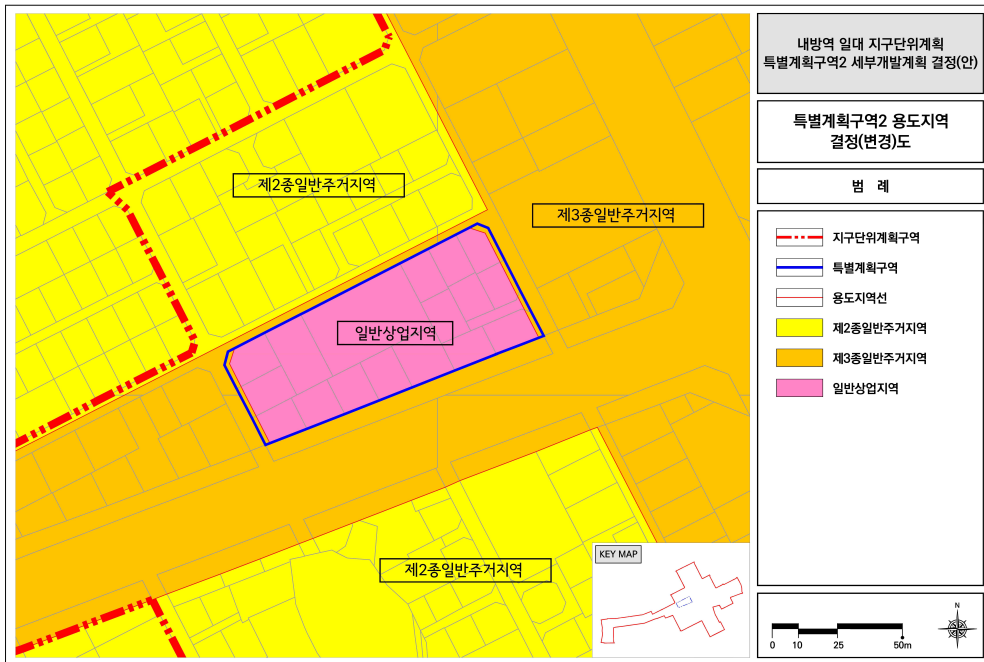
-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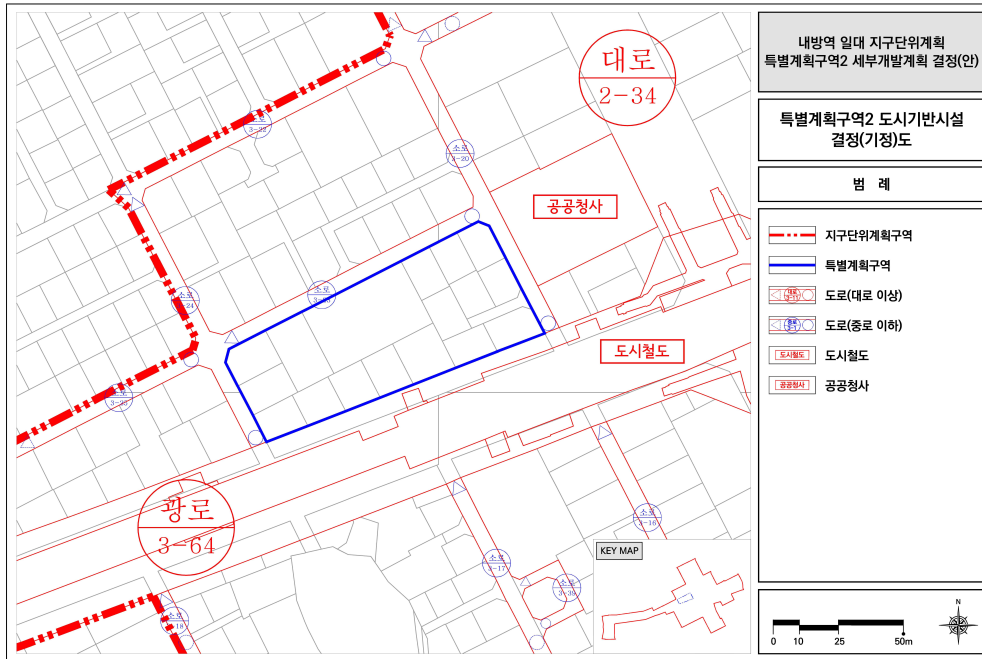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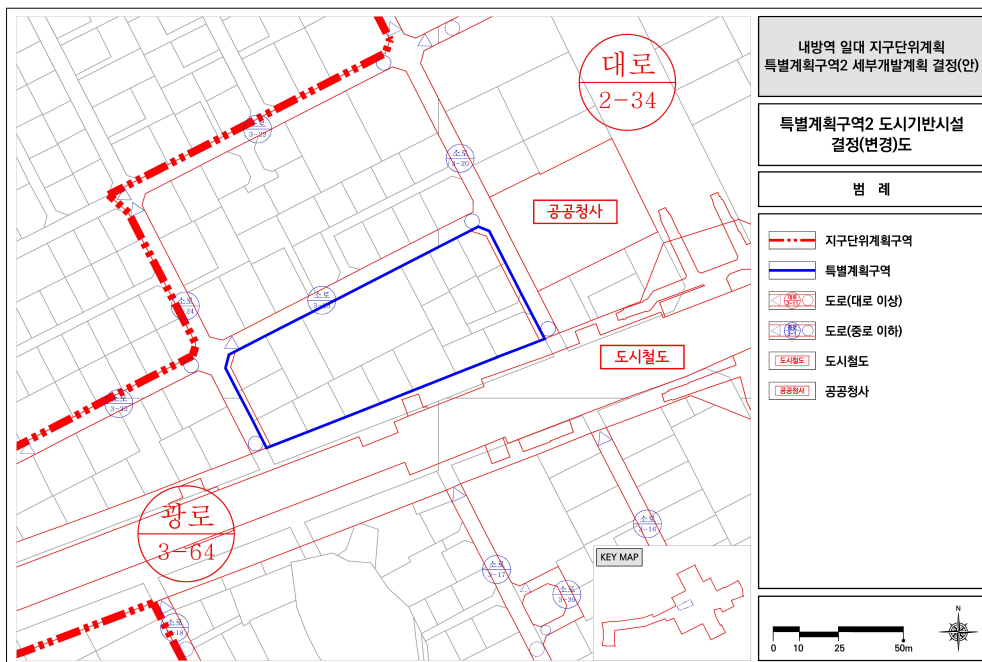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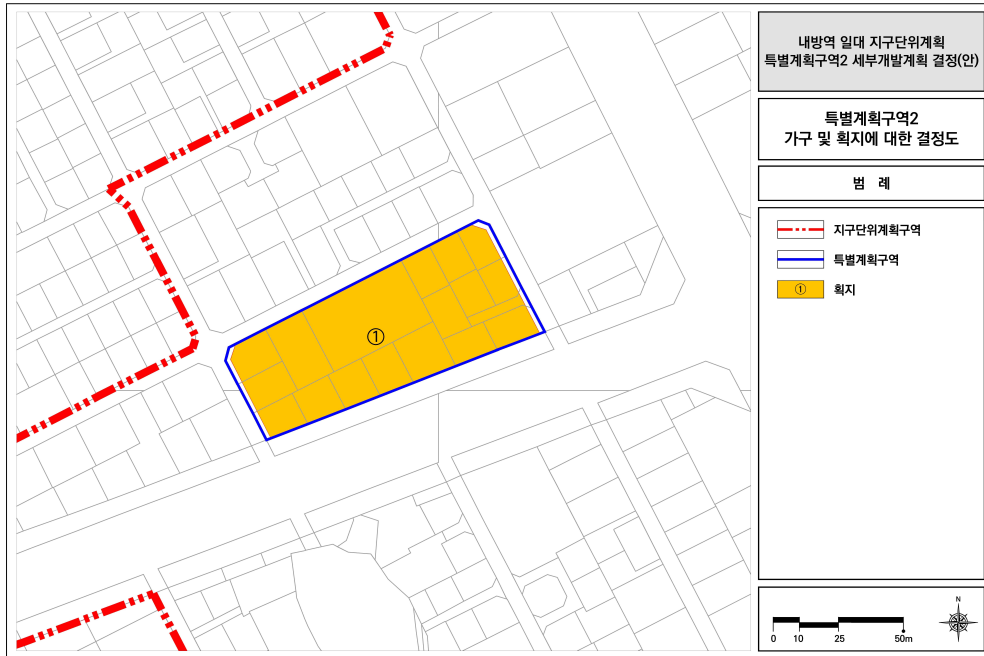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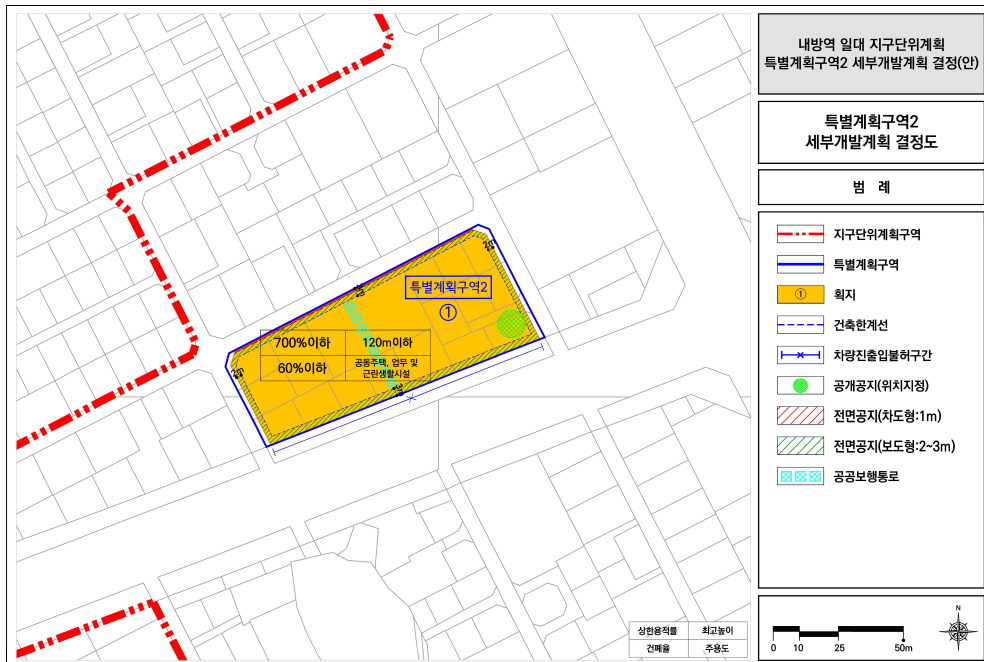
○ 특별계획구역2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 특별계획구역2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